



제1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10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4
1-1-③. 신성장기반자금	17
1-1-④. 채도약지원자금	21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6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9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33
1-3.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35
1-4.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8
1-5.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41
1-6.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44
1-7.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46
1-8.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48
1-9. 우수신제품발굴지원	50
1-10. 글로벌협력지원	53
1-11. 연수사업	55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59
1-13. 기술사관 육성사업	62
1-14.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65
1-15.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68
1-16.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72
1-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74
1-18.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77
1-19.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82
1-20.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85
1-21. 중소기업 기획역량강화 사업	89
1-22. 창업성공패키지	93
1-2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96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101

제2장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103
2-2. 사업조정제도	105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109
2-4. 기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112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114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116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118
2-8.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120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122
2-10.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125
2-11. 중소기업 금융공제 지원제도(공제사업기금)	128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133
2-13.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공제 지원제도	136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138



제3장 신용보증기금

3-1 신용보증	144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148
3-3 보증연계투자	150
3-4 유동화회사보증	152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56
3-6 매출채권보험	159
3-7 Job Cloud	164
3-8 희망창업아카데미	165
3-9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67

제4장 기술보증기금

4-1 2017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71
4-2 기술보증	172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75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78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181
4-6 전자상거래보증	184
4-7 R&D 보증	187
4-8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90
4-9 지식재산(IP) 보증	193
4-10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196
4-11 문화산업완성보증	199
4-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203
4-13 기술평가	207
4-14 벤처확인평가	210
4-15 이노비즈 인증평가	214
4-16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216
4-17 녹색인증평가	219
4-18 보증연계투자	222
4-19 투자옵션부보증	224
4-20 경영개선지원제도	227
4-21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229

제5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233
5-2.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236
5-3.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239
5-4. 플러스 모바일 보증	242
5-5. 사회적기업 전용 특례보증	245
5-6. 협동조합 특례보증	248
5-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250
5-8. 햇살론(지역업자) 신용보증	253

제6장 기업은행

6-1. 2016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263
6-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265
6-3. IP사업화자금대출	266
6-4. IBK창조기업대출	268
6-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270
6-6.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272
6-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274
6-8. IBK문화콘텐츠대출	275
6-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277
6-10. IBK시설투자대출	278
6-11. 토지분양협약대출	280

제7장 한국산업은행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282
7-2. 온렌딩대출	306

제8장 한국수출입은행

8-1. 201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309
8-2. 수출 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310
8-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312
8-4. 기술금융 프로그램	314
8-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316
8-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318
8-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320
8-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322
8-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324
8-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327
8-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329
8-12. 해외사업관련대출	331
8-13. 수입금융(수입자금)	334
8-14. 이행성보증	336
8-15. 무역금융	338
8-16. 해외온렌딩	340

제9장 한국무역보험공사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345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47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49
9-4 단기수출보험	350
9-5 중소기업Plus+보험	354
9-6 환변동보험	355
9-7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358
9-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360



제10장 대한상공회의소

10-1.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362
10-2. 산업혁신운동	365
10-3. 코참경영상담센터	368
10-4.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370
10-5. 올댓비즈	372
10-6.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373

제11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1. 수출애로상담	377
11-2. 이동 KOTRA	379
11-3. 해외시장조사	380
11-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381
11-5. 수출상담회	382
11-6. 무역사절단	383
11-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384
1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385
11-9. 한국우수상품전	386
11-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387
11-11. 온라인 마케팅(buyKOREA)	388
11-12.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389
11-13. 지사화사업	390
11-14. 월드챔프	392
11-15.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395
11-16.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397
11-17. IT수출상담지원센터	398
11-18.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400
11-19. 해외IT지원센터	401
11-20.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지원	402
11-21. 경제한류 해외진출지원	403
11-22.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육성(Medi-Star Initiative)	404
11-23.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405
11-24. 방산물자 교역지원	406
11-25.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408
11-26.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지원(Global Partnering)	409
11-27. KOTRA 해외시장뉴스	410
11-28. 해외시장 설명회	412
11-29.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414
11-30.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415
11-31.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417
11-32. 열린무역관	419
11-33. 수출인큐베이터	420
11-34.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KAPP)	422
11-35.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424
11-36. 무역투자상담(해외투자진출 지원)	426
11-37.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428

11-38.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털(OIS)	429
11-39.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430
11-40. 국내복귀기업 지원	432
11-41. 글로벌 M&A 지원	434
11-42. KOTRA 글로벌 CSR 사업	435
11-43.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사업	437
11-44. 교육·연수	438

제12장 한국무역협회

12-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440
12-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442
12-3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위원서비스	444
12-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446
12-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448
12-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450
12-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452
12-8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454
12-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456
12-10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458
12-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462
12-12 무역기금 융자	464
12-13 용역 및 전자적 무채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466
12-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468

제13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472
13-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474
13-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476
13-4. 거래 공정화	480

제14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84
14-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490
14-3.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494
14-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97
14-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500
14-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503
14-7.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506
14-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508
14-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512
14-10.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515
14-11.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519
14-12.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522
14-13. 기술보호 역량강화	524
14-1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	526



제15장 창업진흥원

15-1.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530
15-2. 본(Born)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532
15-3. 창업선도대학육성	535
15-4. 대한민국 창업리그	538
15-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540
15-6.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542
15-7. 창업인턴제	545
15-8. 청소년 비즈쿨	547
15-9. 창업아카데미	549
15-10. 창업대학원	550
15-11.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551
15-12.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553
15-13. 스마트창업작터 운영	555
15-14.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558
15-1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560
15-1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563
15-17. 재도전성공패키지	565

제16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16-1-1. 소공인특화자금	569
16-1-2. 성장촉진자금	571
16-1-3. 일반경영안정자금	576
16-1-4. 수출고용특별자금	578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16-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80
16-2-2.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584
16-2-3. 상권정보시스템	587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16-3-1. 소상공인 경영교육	590
16-3-2. 역량Jump-Up프로그램	592
16-3-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594
16-3-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596
16-3-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598
16-3-6. 나들가게 육성	601
16-3-7. 프랜차이즈화 지원	604
16-3-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607
16-3-9.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610
4장. 소공인 특화지원	
16-4-1. 소공인 특화센터 사업	613
16-4-2.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616
16-4-3.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619
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16-5-1. 희망리턴패키지	622
16-5-2. 재창업패키지	624
16-5-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626

6장. 전통시장 활성화	
16-6-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629
16-6-2. 상권활성화	632
16-6-3. 온누리상품권 발행	635
16-6-4. ICT 전통시장 육성	638
16-6-5. 청년상인 육성	640
16-6-6.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643
16-6-7.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645
16-6-8. 시장마케팅 지원	649
16-6-9.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652
16-6-10.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655

제17장 타부처

17-1. 수출 중소기업 해외지사 대행	660
17-2. 미국 C-TRAT 방문심사 대응 지원	662
17-3. 손쉬운 FTA 품목분류	664
17-4. FTA 원산지 이해와 활용	666
17-5.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669
17-6. 제3자 확인 및 인증수출자 제도	671
17-7.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675
17-8. 'SOS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677
17-9.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679
17-10.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681
17-11.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683
17-12. 지식재산권 활용·보호 지원	684
17-13. 글로벌 IP기업 육성	687
17-14.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사업	690
17-15. 기술금융	692
①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694
② 지식재산권(IP) 담보·구입 대출	695
③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	696
17-16. 에너지융합리화자금	697
17-17.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699
17-18. SW지식재산권 평가 보증	701
17-19. 무역기금 융자	703
17-20. 무역보험 제도	705
17-21. 식품외식 종합자금(융자)	706
17-22. 병역대체복무제도	707
17-23. 외국인고용허가제	709
17-24. 청년내일채움공제	711
17-25.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함께하기	712
17-26.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715
17-27.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718
17-2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720
17-29.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활용	722

제 1 장

중소기업진흥공단

1-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	1-10. 글로벌협력지원	53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10	1-11. 연수사업	55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4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59
1-1-③. 신성장기반자금	17	1-13. 기술사관 육성사업	62
1-1-④. 재도약지원자금	21	1-14.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65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26	1-15.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68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9	1-16.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72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33	1-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74
1-3.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35	1-18.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77
1-4.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8	1-19.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82
1-5.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41	1-20.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85
1-6.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44	1-21. 중소기업 기획역량강화 사업	89
1-7.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46	1-22. 창업성공패키지	93
1-8.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48	1-2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96
1-9. 우수신제품발굴지원	50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101

1-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3조 5,850억원
 - * 창업기업지원자금(1조 6,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75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55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750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전략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 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 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
 -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용자 방식

- 중진공에서 용자신청·접수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용자 절차

- 용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용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일 조정 가능
 -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 (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용자신청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를 신청·접수

- 기업평가
 -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용자대상 결정
 -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용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 용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용자약정 체결 후 대출
 -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 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업은 예외)
 -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이상 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전력산업 또는 제조업 영위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부실기업,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단,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⑩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용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하며, 실질 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자금도 추가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 ⑪ 용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운전자금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자금(수출금융)),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포함), 재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 ⑫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용자, R&D 보조금 지원 등 정부지원 실적(누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단, 수출금융, 고성장기업육성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 제외)
- ⑬ 다음에 해당하는 대출금 조기상환 기업
 - ▷ 당해년도 대출자금을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한 기업(단,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신청가능하며, 회전금융방식의 수출금융은 제외)
 - ▷ 대출만기가 1년이상 남은 대출 건의 대출잔액 전부를 일시 상환하고, 상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 단, 시설자금 조기상환 중 지원시설 매각 등 조기상환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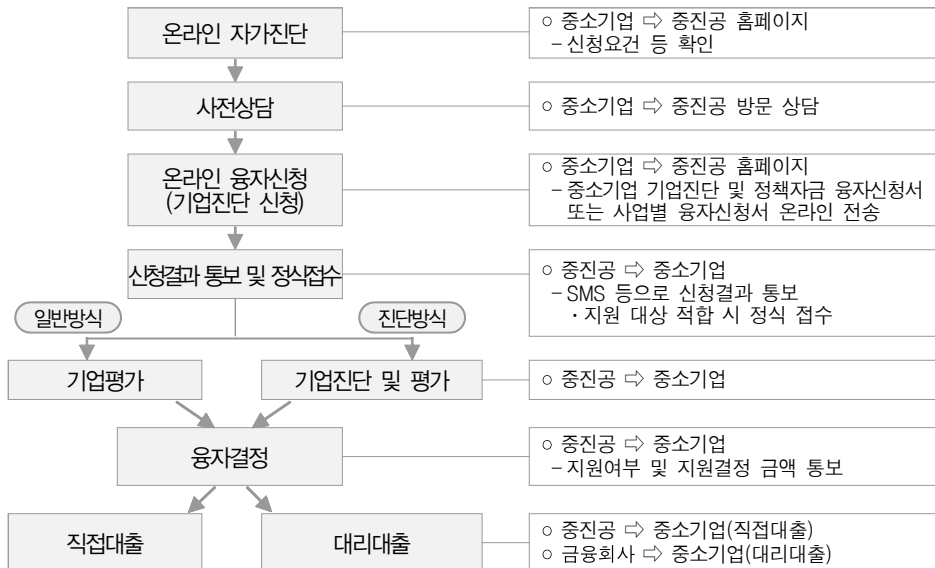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7.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 재도약지원자금
 -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자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자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장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 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 1조 6,50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11,926개사 중 8,16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8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12,920개사 중 9,299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 (일반창업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민간투자연계자금: 민간벤처캐피탈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 또는 민간운용사가 선정한 TIPS 창업팀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용자 범위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여성기업, 민간투자연계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일반창업기업지원
 -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용자상환금 조정형)
 - * 용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 2017.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포함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1,500억원

- 이익공유형 대출
 - ▷ 2015년 신청기업 468개사 중 38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8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 ▷ 2015년 신청기업 54개사 중 3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4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 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 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용자 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 대출금리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대출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 한도
 - * 고정이자 : 0.5%, 성과배분이자 : 대출일 이후 3년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
 -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이내)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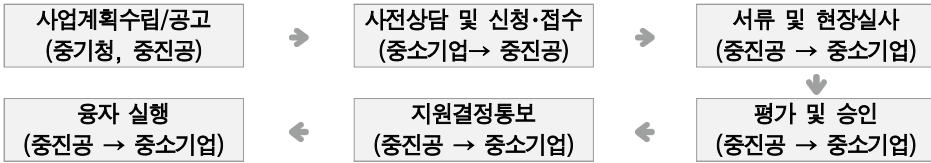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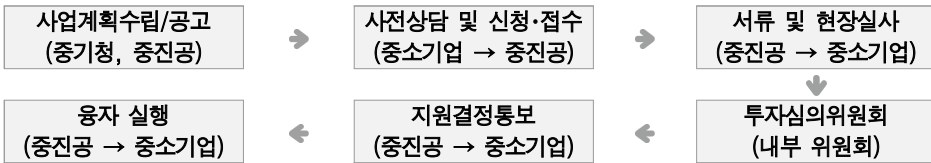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신청(동시 업로드)

처리 절차

○ 이익공유형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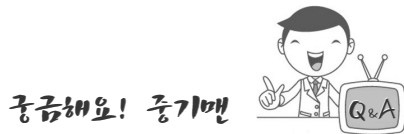


○ 성장공유형 대출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Q** 성장공유형 대출의 표면금리와 만기보장금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표면금리는 대출기간 중 이자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금리이며, 만기보장금리는 중진공이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되는 이자(상환 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금리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1-1-③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 8,80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4,701개사 중 3,98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8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4,488개사 중 3,50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0억원

지원 대상

- 신성장유망자금,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 지원
 - ▷ (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4개년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으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 * 단, ①의 경우, 최근 4개년의 시작년도와 최종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가능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 (단,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금리)

-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이내, 매출액의 150%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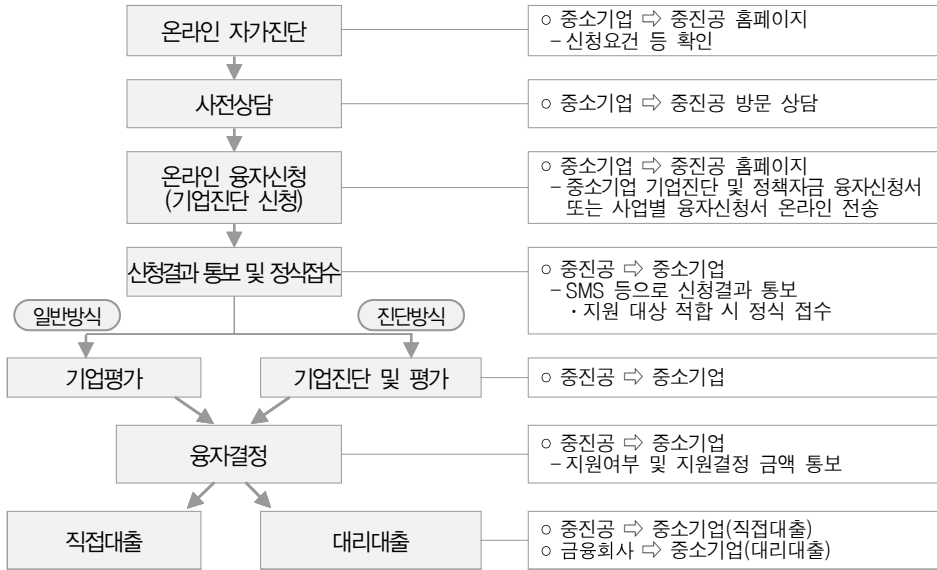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7. 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④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550억원

* 규모산출 : 1,020개 업체 × 250백만원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지원금액)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전환의 대상일 것
 - ▷ (용자신청)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
 -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 (용자신청)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

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제외)
 -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기업 구조개선 진단 대상기업

* (구조개선진단 대상) 은행권이 구조개선진단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 단, 기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기업은 <2.공통사항>바. 용자제한기업 중 ⑥항의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적용에서 제외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대상기업

* (경영개선진단 대상)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용자 범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단,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 운전자금

-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지방소재 5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매출액 150% 이내
 -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기업회생인가기업의 회생채무 상환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기업당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용자 방식

-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재창업자금은 용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기업지원자금)
- ▷ 제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 ▷ 재해중소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 75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2,895개사 중 2,621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3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2,175개사 중 1,64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제외)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용자 범위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 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한중 FTA 피해,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경기부

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1.05% 가산
 -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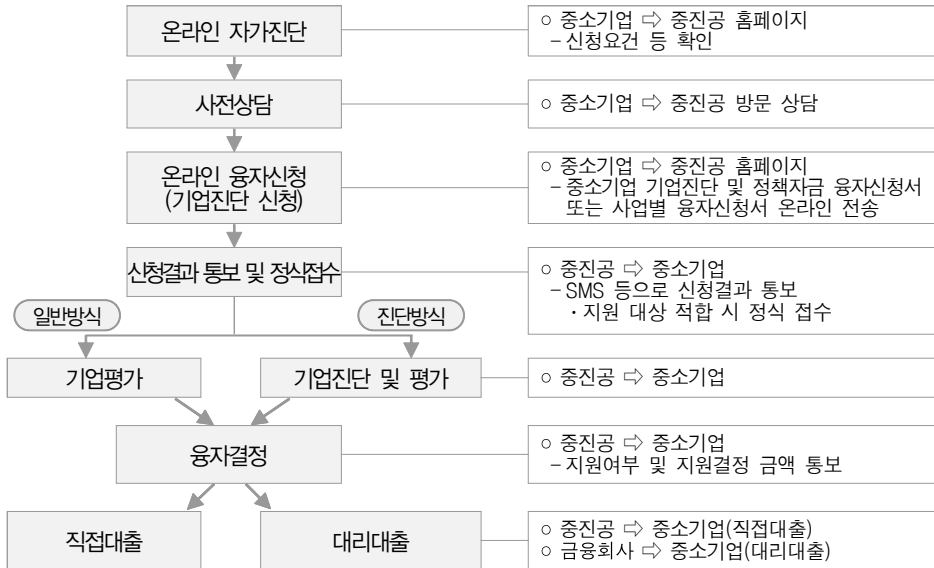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 2017. 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1-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및 수출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 5,750억원
 - * 2015년 신청기업 2,008개사 중 1,67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1억원
 - * 2016년 10월말 신청기업 1,881개사 중 1,54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9억원

지원 대상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으로 구분 지원
-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용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개발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상에서 제외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사업화: 중소기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기업청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용자 범위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 (수출금융지원)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해외 인증획득, 해외 판로개척, 해외 마케팅,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

*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금융 : 1년 이내(일시상환)
- * 수출계약기준의 경우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한 어음 매입 시 정산

○ 대출한도 : 기업 당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운전자금,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중 수출사업화자금은 5억원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 클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수출실적 향상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유망소비재산업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40억원 이내
- ▷ 글로벌진출지원자금 수출금융 용자 한도
- * (수출계약기준)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 (수출실적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용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용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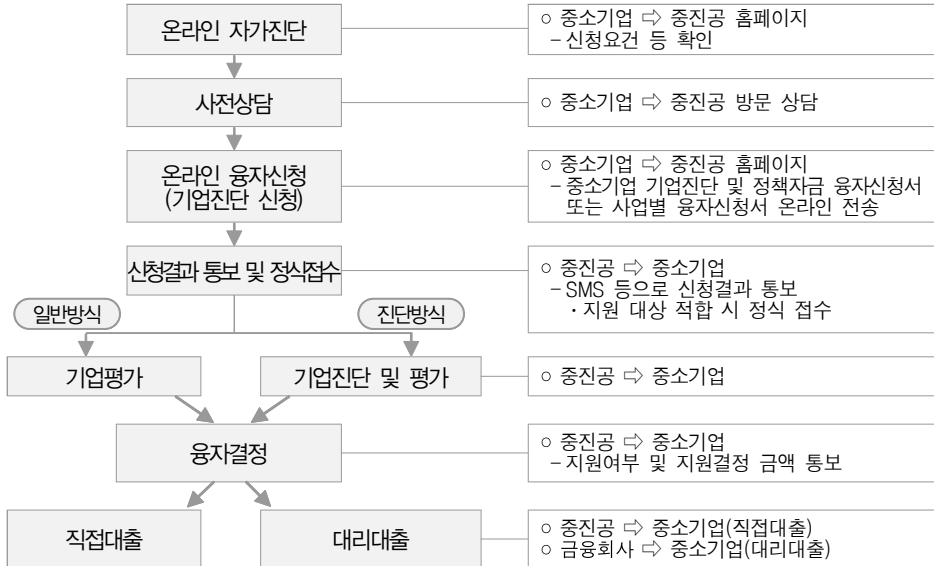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7. 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임**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1-2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해외전시회(35회), 무역사절단(133회), 수출상담회(5회), 지역특화사업(15회) 등

* '16년 기준이며,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지원 대상

각 지자체 관내 소재 수출중소기업 및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 폐업 중인 기업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해외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유명 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 개최 지원 • 전시회 참가비용 및 편도 항공료 등 지원
무역사절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 구성 및 파견 •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수출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수출상담회 참가비용 무료)
지역특화해외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산업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각 사업에 따라 추진비용 일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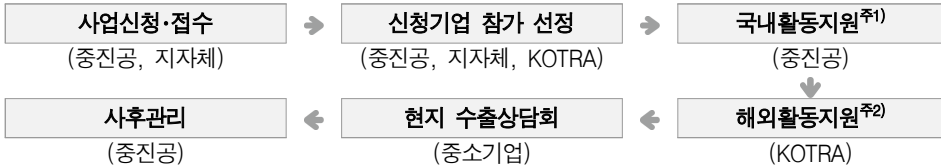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기타 수출 관련 증빙자료

처리 절차



주1) 카탈로그 수집·송부, 항공예약, 출장자확정, 사전간담회, 인솔출장 등

주2)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원 배정 등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사업 신청 및 일정 관련)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해외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되며, 무역사절단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해외바이어 발굴비, 통역비, 편도 항공료(1인) 등이 지원됩니다.

용어설명

사후관리 해외마케팅지원사업(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진공이 수행하는 타사업(정책자금, 컨설팅, 연수 등)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외마케팅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1-3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 임차료의 80% (2차년도는 50%)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 세계 13개국 22개 지역 298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지원 대상

제조업(전업률 30%), 도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hp.sbc.or.kr>)상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우편 접수
 - * 제출처 : (우) 52851,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수출인큐베이터 담당자 앞

심사·평가내용

- 경영평가(20%), 제품의 시장성(30%),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35%), 수출 인큐베이터 지원효과(15%)
 - * 수출유망중소기업, 혁신형 기업(Inno-Biz, 벤처기업 등) 등은 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신청 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파견자 재직증명서, 파견자 이력서, 파견자 고용 보험가입내역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3, 9678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http://hp.sbc.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 Q**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수출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나요?
- A** 수출사랑방은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임시 사무공간, 상담실, PC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Q** 입주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A** 입주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입주활동실적에 따라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1년 입주 후 입주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활동의 적극성, 입주 후 수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연장 승인여부를 검토합니다.

→ 용어설명

수출사랑방 중소기업자가 수출상담이나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지역 내에 단기간 출장하는 경우, 세계 13개국 22개소 수출인큐베이터 내 공동 사무공간을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

1-4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고성장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가젤형)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구축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규모

620개사(전체 예산 310억원)

* '16년 지원현황 : 618개, 250억원(평균 48백만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최근 4개년('13~'16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증가한 중소기업(단, 수도권 이외 지역중소기업은 연평균 15% 이상)
- ▷ 상시근로자 수가 최근 4개년의 및 최종 연도에 5인 이상인 기업
 - *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16년 12월말 현재 청년(만 29세 미만)을 고용 중인 고성장 기업은 가중치 부여(청년 고용 1명당 1.5명 계산)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 ▷ 「2017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상의 융자제한기업 제외
- ▷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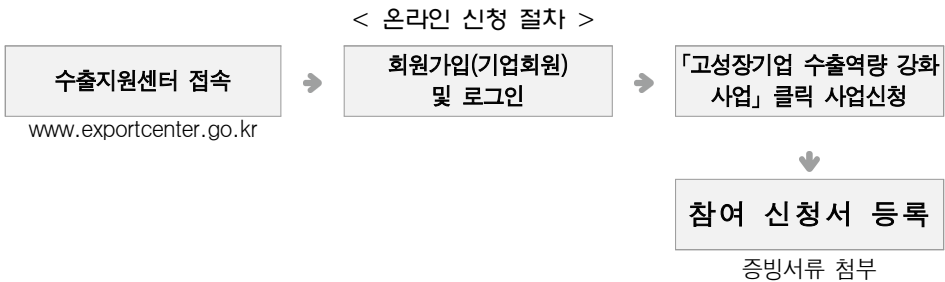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휴·폐업종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 ✓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에 지정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고성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프로그램 경비지원
 - ▷ 지정 : 해외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외국어 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 ▷ 자율 : 수출교육, 해외전시회, 마케팅인력 신규채용 등
 - * 인건비(관세사, 변호사, 컨설턴트 등), 출장비(항공료 등), 무역보험,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비, 각종 시스템 구축비용, R&D비용 등 지원불가
- 정부지원금 지원 : 최대 1억원 지원
 - ▷ 매출액에 따른 정부지원비율 상이(최대 1년 이내 지원)
 - * 100억원 미만 기업 : 70%
 - * 100억원~300억원 미만 기업 : 60%
 - * 300억원 이상 기업 : 50%

신청·접수

매년 초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4개년, 국세청 홈택스 출력본), 고용관련 서류(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수출실적증명서(수출기업의 경우, 무역협회 혹은 관세무역개발원 발급본), 청년고용우대관련 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서 등)

1-5

차이나하이웨이 프로그램

| 중국진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진출 및 현지화를 위해 「중국 진출 역량진단 → 중국 진출 로드맵 수립 → 마케팅·현지화」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10개사 내외(전체 예산 150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16년 지원현황 : 231개사(신청 1,505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중국에 既진출 하였거나 신규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

- ▷ 우량기업에 선정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수출액 100만불이상(유망) / 미만(초보)으로 구분 모집
- ▷ 중국 소비자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소비자 기업 및 창업기업 우선 선정(가점 부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 대외무역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인 업체

지원 내용

- 중국 진출 전략 수립과 마케팅을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구분하여 다년간(2년간)지원
 - ▷ (준비단계) 기업 희망에 따라 중국 기초교육, 시장조사, 중장기 전략 컨설팅 지원 및 연간 진출 계획 수립

- ▷ (이행단계) 기업 수요 맞춤형 자음마케팅을 중심으로, 일부 공동 추진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마케팅 지원
- ▷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55백만원(수출초보), 70백만원(수출유망)

신청·접수

'17. 1월 중 공고예정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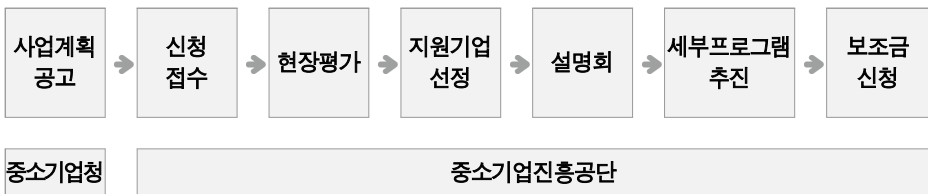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지식서비스업) 지식서비스 역량, 시장이해역량, 수출마케팅 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등
- (제조업) 수출인프라, 시장이해역량, 수출마케팅 실행역량, 지속성장역량, 재무건전성 등

신청 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참여계획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15년 재무제표, '14~15년 중국 수출실적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공지사항 內 모집공고문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92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 055-751-9491, 9713, 9716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정부지원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참여기업이 수행기관 활용 또는 자체수행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총사업비 정산을 완료한 후, 총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설명

중장기 전략 컨설팅이 무엇인가요? : 중진공이 선정한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맞춤형 중국진출을 위한 최적의 중국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동 프로그램은 「중국진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선택 프로그램이며, 미 참여시 지원한도 전액(50백만원)을 자유투자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1-6

GMD(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사업

| 민간 수출전문기업(GMD)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창과정(수출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 지원하여 성공적인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전체 예산 12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내수수출초보기업(직전년도 수출 10만불 이하), 신시장 진출 희망기업, 또는 신제품 수출 희망기업(신제품 판단기준은 관세청 HS 10단위 변경 여부로 판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등

지원 내용

제품 수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제공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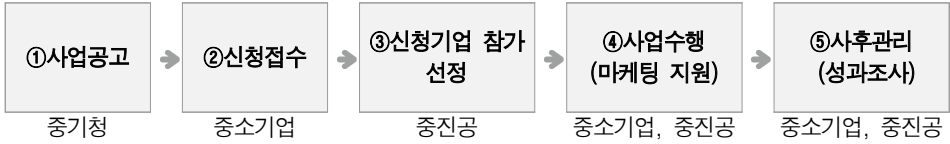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온라인 사업신청 양식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 055-751-9494/9717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1-7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기반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마케팅비용 및 노하우 부족으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부터 홍보마케팅, 해외 구매오피 발굴까지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도와 드립니다.

지원 규모

2,100개사(전체 예산 30.07억원)

* '16년 지원현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130개사, 검색엔진마케팅 70개사, 글로벌 홍보마케팅 1,200개사, 온라인수출관 700개사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받은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채무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기업주 포함)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글로벌 홍보마케팅	• 영문 e-상품페이지 제작 및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제품 해외홍보 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대응, 무역상담 등 후속관리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택일)
검색엔진마케팅	• 지원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글, 야후 등 해외유명 포털사이트에 검색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사이트 최적화 및 홍보 지원
온라인수출관(7개권역)	• 운영권역 :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 현지어 기반의 상품페이지, 거래제외서 제작 등 해외 구매오피 발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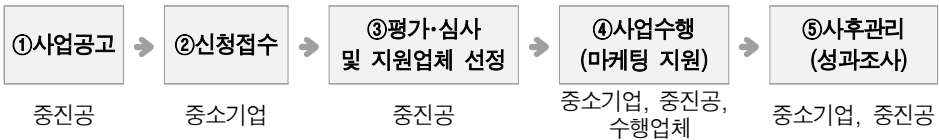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1588-6234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www.gobizkorea.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별도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A 기업부담금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22만원, 검색엔진마케팅 100만원이며, 글로벌 홍보마케팅 지원, 온라인수출관 지원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용어설명

검색엔진마케팅 : 중소기업의 외국어 홈페이지가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일정기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이트 분석, 키워드 선정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

1-8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 지원사업

| 해외바이어에 대한 맞춤형 국내업체 알선 및 수출지원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받아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사업으로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문가가 알선 이후에도 해외바이어와 알선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 성사율을 높이고 있는 바이어 맞춤 서비스입니다.

지원 규모

2,200건 내외(전체 예산 8.35억원)

* '16년 지원현황 : 해외바이어알선지원 2,200건, 방한바이어 지원 130건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바이어

지원 내용

해외바이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알선(BMS) 및 방한바이어 지원(VAP)

분 야	내 용	신 청
바이어알선 지원 (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및 검수 • 최적의 중소기업 발굴 및 매칭 	해외바이어
방한바이어 지원 (V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동방방문 및 미팅 스케줄 조정, 미팅지원 • PT 대행 및 통역지원, 무역상담 등 정보제공 	국내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신청·접수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중 수시)

신청 서류

사업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등

* 사업 참여계획서 양식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www.gobizkorea.or.kr) 신청 게시판 참조

처리 절차

신청 접수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알선 의뢰 접수 ▷ 바이어 의뢰 신청 건 평가(무역 전문가) - 바이어유효성여부 파악(이메일, 유선확인, 신용조회 실시)
발굴 매칭	국내업체 발굴 및 알선(B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전문가 및 지역본(지)부 활용, 최적의 중소기업 발굴 ▷ 중소기업에겐 해외바이어를, 해외바이어에겐 최적의 중소기업을 알선 소개
부가 지원	방한 바이어 지원 (VAP)	▷ 방한 바이어 대상, 국내업체 동반 방문, 미팅지원 및 통역 등 현장 밀착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바이어 구매알선팀 : 02-3667-7997

궁금해요! 증기맨



- Q**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는 것에 대한 기업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A** 방한바이어 지원(VAP)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 Q** 방한바이어 지원(VAP)을 받은 후 그 이후 발생하게 되는 바이어와의 거래진행 사항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A** 방한바이어 지원(VAP)사업은 바이어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에서부터 방한 이후 수출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 Q** 지원자격이 있나요?
- A**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국내에 초청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통역이나 무역상담지원만 필요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해외바이어 알선(BMS : Business Matching Service) 해외 바이어의 인콰이어리를 받아 최적의 국내업체 발굴하여 알선

방한바이어 지원(VAP : Visitor Assistance Program) 해외바이어가 중소기업 업체방문을 위하여 방한하는 경우 업체동반방문, 통역 등을 지원하여 사후관리 지원

1-9

우수신제품발굴지원

| 창업초기 아이디어 중소기업 제품 마케팅·홍보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마케팅을 진행함으로써 온라인 홍보에서 국내·외 판로지원까지 제품이 원활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00개 제품 내외(전체 예산 3.29억원)

* '16년 지원현황 : 선정지원 제품수 330개 제품 마케팅 홍보 지원

지원 대상

제조업 <소비재 시제품 이상을 보유(생산)한 기업>

▷ 지원자격 : 3년 미만, 창업기업 또는 신제품 출시(2년 이내)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국세, 지방세 체납종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온라인 홍보 전시장, 소비자평가단을 통한 입소문마케팅, 판로 지원(국내정책매장 아임쇼핑, 민간대형 유통사 등) HIT500 웹사이트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Tool 제공

구 분 (지원비율)	내용	정부지원한도
Step1 온라인 홍보전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홍보 전시장 구성·HIT500사이트 내 제품홍보페이지 제작 및 등록 	무상 지원
Step2 온라인 입소문 마케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사이트 회원) 제품평가 및 온라인 홍보 홍보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이트 회원 대상) 	선정제품 모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제품 체험단 운영 (소비자 직접체험) SNS 연계 홍보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이벤트 등) 	선정제품 모두 지원

구분 (지원비율)	내용	정부지원한도
Step3 제품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 확보 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동 행복한백화점 4층매장 아임쇼핑입점 *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기획관 입점 • 유통사 MD 마케팅 ·판로 코칭 (유통사 선정 제품) 연계 	참여제품중 전문가평가단 선정 우수 제품 지원

신청·접수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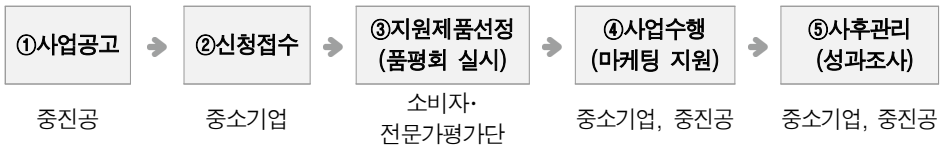
- * 접수기간 : 1차(2017,1월) 2차(3월) 3차(7월)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홈페이지 공고 참조)

제출 서류

온라인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종 인증서 등

- * 신청양식은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 신청게시판에 게재된 온라인 사업신청 양식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 055-751-9753, 055-751-9758
-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 HIT500 사이트(www.hit500.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HIT500 신청방법과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중기제품HIT500 (www.hit500.or.kr)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HIT500 하위메뉴 중 HIT500 신청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유통사MD) 온라인평가 및 제품 실물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평가단이 쉽게 제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시 제품 이미지, 설명, 장점 등을 자세하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Q HIT500 선정 후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HIT500은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참여업체의 활동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좌우되는 쌍방향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HIT500사이트에 제품홍보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사이트 회원들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제품체험단, 아임쇼핑, 각종 타 사업 연계지원 프로그램 신청(중기제품홍보지원, 마케팅 판로 코칭, Gobizkorea 상품 등록) 등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업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더 큰 마케팅·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1-10

글로벌협력지원

| 산업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국제협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기반 구축 - 해외 협력파트너 알선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협력 등) - 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지진출 및 현지정착 지원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역내 회원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역내 진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역내 중소기업 현장에 경영·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우리 중소기업과 APEC 역내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지원

신청·접수

- 사절단, 세미나, 상담회 등 개별행사는 일정 확정시 '홈페이지(www.sbc.or.kr)의 공지사항' 을 통해 신청접수
- 산업협력관, 코리아데스크 등 현지 지원사업은 국제협력처로 문의

지원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2, 9675
- 중소기업 정책정보 : www.bizinfo.go.kr

용어설명

APEC중소기업혁신센터 : APEC 역내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지원을 위한 센터로서,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컨퍼런스 및 매칭 상담회 개최, 회원국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음

1-11

연수사업

| 중소기업 CEO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CEO 및 경영·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실무 적응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기법, 신기술 습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합니다.

지원 규모

연간 45,000명(직무역량향상연수·온라인·정책연수인원), 400개사(맞춤연수 지원업체수)

* '16년 지원현황 : 44,093명, 맞춤연수 405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지원 내용

- 8,982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400여개의 다양한 직무역량향상연수 운영
-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운영(맞춤연수)
-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정책연수)
 - * 정책자금, R&D, 인력, 수출마케팅 등 중기 지원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
 -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식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 과정
 -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연수, 글로벌마케팅사관학교 등
-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 실시(현장맞춤형연수)
- 수요자 접근성 개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인터넷·모바일연수, MOOC(온라인 무료공개수업) 제공

신청·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별도 심사, 평가 절차 없음)

- * 직무역량향상연수, 온라인연수 : 과정 개설 전 신청 필요
- * 과정별로 신청 기업의 연수비 부담 필요

제출 서류

연수신청서(훈련위탁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소기업확인시 : 중업원수 기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 재무제표 제출
- * 연수원 환급과정의 경우 훈련비 환급 지급을 위한 사업주 통장사본 제출

처리 절차



연수 과정

연 수 분 야		주 요 연 수 내 용		
Off line	직 무 역 량 향 상 연 수	◦ 최고경영자	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 창의인재양성	계층역량강화, 직무역량향상(문제해결형 코칭연수)	
		◦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관리, 품질관리, 국제인증	
		기 술 연 수	◦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설계기술, 공장운영시스템, 제조자동화 등
			◦ 스마트융합	ICT융합기술, 전기전자, IT, PLC/제어
			◦ 생산기술	기계, CAD, 유공압, 메카트로닉스, 플라스틱
	맞 춤 연 수	◦ 문제해결형	개별기업의 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연수	
		◦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국제연수	
On line	온라인 연수	◦ 인터넷연수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하는 연수, MOOC(온라인무료공개 수업), 오프라인 연수와 결합한 혼합형(Blended) 연수	
		◦ 모바일연수		

연수비 소기업, 신규연수과정 등 연수비 20~50% 감면실시

- * 신규연수과정은 2017년 신규로 개설된 연수과정(온라인연수를 제외한 **NEW**표시 과정)
- *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고용보험 환급 가능
- * 신청기관 : 연수비 환급신청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 * 신청시기 : 교육종료 후 14일 이후
- * 신청서류 : 훈련비용지원신청서(소정양식), 수료증 사본,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계산서 사본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 *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연수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연수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보험 환급신청 후 수령
- * 고용보험 환급여부 및 처리절차가 과정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연수비 감면제도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직무역량향상연수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	30%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2가지 중 1가지 충족)
 -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50인 미만(기타 그 밖의 업종 10인 미만)
 - 매출액 :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 충족

문의처

- 중소기업연수원(안산) : 031-490-1472, <http://sbti.sbc.or.kr>
- 중소기업호남연수원(광주) : 062-250-3000, <http://gjti.sbc.or.kr>
-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경산) : 053-819-5001, <http://gsti.sbc.or.kr>
-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창원) : 055-548-8045, <http://jhiti.sbc.or.kr>
-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 033-550-5000, <http://global.sbc.or.kr>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업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카드로 결제시 노동부 고용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으므로 기업카드 또는 현금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 용어설명

모바일러닝 :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사용자를 위한 '중소기업연연수원 모바일러닝 (<http://mlearn.sbc.or.kr>)' 앱(App)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연수생들이 편리하게 학습 할 수 있는 모바일 학습 환경제공

1-12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 지원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인력유입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80개 특성화고, 306억원

- 학교당 평균 1.5억원 내외 지원

* '16년 지원현황 : 181개 특성화고, 306억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의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 「취업맞춤반」 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신청·접수 '17년 1월 예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별도 확인

추진 절차

절차	내용	일정
사업공고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공고 ▪ 사전설명회 개최 	1월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월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2~3월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사업비교부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중간점검 (지방중기청→참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지방중기청) 	9월
사업비 정산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결과보고 (중진공→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62~4, 9824, 9874)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 참고

궁금해요! 중기맨



-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약속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연계 전 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1-13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 중소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4~5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혁신형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기술사관 육성 16개 사업단(전체 예산 51억원)

* '16년 지원현황 : 16개 사업단 2,372명 교육

지원 대상

- 사 업 단 :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 연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 학 생 :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및 전문대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학 교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학 생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기 업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sanhakin.smba.go.kr)

- 신규신청 사업단은 특성화고-전문대 간 2:1이내의 단일 컨소시엄으로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3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 : 055-751-987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협약 대학으로 진학해야 되나요?
- A**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협약되어 있는 대학 및 해당학과로 진학해야 합니다.
- Q**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기술사관 개설 현황('16.11월 기준)>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영광여자메디텍고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울산공고
부산울산	동익과학대학교	기계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대양전자통신고, 부일전자디자인고
	경남정보대학교	전자정보	금정전자공고, 부산디지털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경북공고, 대구서부공고
광주전남	청암대학교	신재생전자제어	-
	순천제일대학교	자동차기계	광양하이텍고, 여수공고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	부천공고, 평촌공고, 산본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두원공고, 삼일공고, 시화공고, 김포제일공고,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리라아트고, 서울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충남대전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백석문화대학교	스마트폰콘텐츠	천안상업고
충북	충청대학교	디지털전자통신	-
경남	창원문성대학	기계	-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기술사관육성 16개 사업단(전문대 16개 + 특성화고 28개)

1-14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중소기업과 대학(전문대·일반대)을 연계하여 맞춤 기술인력을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 및 청년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4개 대학(전문대 12, 일반대 2), 28억원

○ 대학당 2억원 이내

* '16년 지원현황 : 14개 대학(전문대 12, 일반대 2), 28억원

지원 대상

○ 대 학 :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신청 유형

신청대학은 산학협력 유형 3개(협화·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중소기업 및 협회·단체(또는 중소기업)와 '예비협약' 을 체결하고 사업신청

구 분	협화·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특화기능	· 대학과 협화단체간 산학협력 체결 · 회원사 인력 수요, 공동 채용 등 관리	·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력체결 · 중소기업별 맞춤 산학협력 체제 구축	· 협회·단체형 및 중소기업형 병행
공통기능	·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은 산학맞춤 기술인력 공급,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		

○ 학 생 :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는 전문대 및 일반대 졸업예정자

- 협회·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킥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 내용

‘기업-대학-학생(졸업예정)’ 간 협약을 통해 맞춤형교육, 현장실습, 1팀-1프로젝트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비용 지원(대학당 2억원 내외)

구분	내용
산학맞춤교육	·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전공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100시간(일반대 120시간) 내외 실시
현장실습	· 기업현장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협약기업에서 현장 기술연수(4주 이상) 후 취업연계 지원
1팀-1프로젝트	· 기업-학생-교수가 팀이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신규아이템 개발 등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타	· 취업매칭,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신청·접수

17. 2월 예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교육환경,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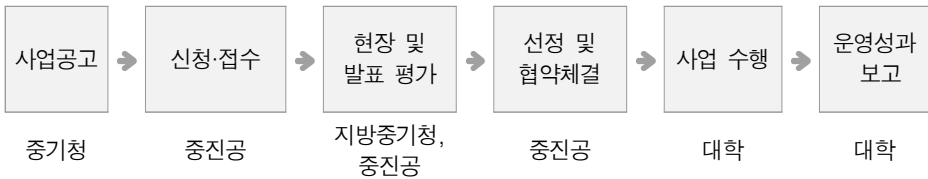
- 현장평가 : 교육환경 및 사업계획서 확인
- 발표평가 :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대상 대학 선별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sanhakin.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687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6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산학맞춤 기술인력에 참여하는 학생과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참여학생은 전공수업과는 별개로 산학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화된 심화교육 이수 후에 대학과 협약된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중소기업청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52개 주권대학 67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 ('16년 사업비 103.57억원)

* '16년 지원현황 : 학생(근로자) 1,575명

지원 대상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 ▷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 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할 경력이 없어야 함
 - ▷ 단, 졸업일 기준 취업해야 함

지원 내용

- (재교육형)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중소기업 기준, 등록금의 65% 이내에서 지원)
 - ▷ 재교육형 동시채용 : 재교육형 근로자가 최초 학기 개시와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로 학비 전액 지원
- (채용조건형) 핵심인재 유입을 위해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 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학위 졸업 후 해당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경우로 학비 전액지원

신청 자격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추진 절차

단 계	수행 방법	비 고
사업공고	● 신규 주관 대학 모집공고 (http://sanhakin.smba.go.kr)	중소기업청 (별도공지)
신청접수	● 신규 주관대학의 참여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대학 → 관리기관 (별도공지)
현장실태조사	●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대학 현장실사	관리기관 → 대학 (별도공지)
대면평가	●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청대학에 대한 대면평가 실시	중진공 → 대학 (별도공지)
주관대학 선정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관대학 최종선정	중소기업청 (별도공지)
협약	● 주관대학-관리기관 간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	당사자 (별도공지)
학생/기업 모집	● (재교육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입학할 희망하는 대학에 추천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이 각각 대학에 참여 신청	주관대학 (봄학기 : 11~2월) (가을학기 : 6~8월)
3자 계약	● (재교육형) 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기업대표-근로자-대학 간 3자 계약 체결 ● (채용조건형·재교육형의 동시채용) 학생과 기업을 대학이 선발한 후, 상호 매칭이 완료되면 3자 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학기개시 전)
학과운영	● 계약학과 학위과정 운영	주관대학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참가신청서 제출
 -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요망드

문의처

- 담당부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042-481-4493)
- 수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21, 9876)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2017년 봄학기 기준 전국 52개 대학 67개 학과)
 - ▷ <https://sanhakin.smba.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궁금해요! 중기맨



- Q** 중소기업 대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나요?
- A** 현행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3조 2항에서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자의 계약학과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 Q**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 A** 중진공은 매년 1월, 전국 대학 등록금 평균의 약 60% 수준으로 책정된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준등록금을 공시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등록금은 전문학사 과정 1,741,800원, 학사 과정 2,325,800원, 석·박사 과정 2,993,000원입니다.
- Q** 졸업 후 기업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나요?
- A** 네, 그 기간을 의무 근무기간이라 하는데 이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재교육형은 졸업 후 1년, 재교육형 동시채용과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을 의무 근무해야 합니다.
- Q** 재학 중에 근무 중인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A** 재학 중 근무 중인 참여기업이 폐업,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된 등록금은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퇴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경우 또는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1-16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부정적 인식을 개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력유입을 촉진합니다.

인식개선 대상

대학생	고등학생(특성화고)	중학생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체험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특강 토크콘서트 교과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체험, 견학, 특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방송)

지원 내용

현장 체험, 콘서트, 특강,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국민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 대학생 : 전국 대학생 대상 여름·겨울 방학 2박 3일 캠프(특강, 단체 활동 게임, 중소기업 체험, 과제 제시 등) → 탐방프로젝트(2주, 업체 방문 및 과제 기획안 작성) → 최종 발표 및 시상
- 고등학생 : 전국 특성화고 대상 연극특강(전문극단과 함께 인식개선 스토리 연극 연습 및 발표) 및 토크콘서트(중소기업 CEO·인사담당자 등과 취업 관련 상담 및 입사 비법 공유)
- 중학생 :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 대상 3시간, 1일, 2주, 6주 과정 선택(특성화고 견학, 인식개선 강사특강, 중소기업체험, 문화 콘텐츠 활용 특강, 창작극 공연, UCC 제작 등)
- 국민 : 존경받는 기업인(성과공유 실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CEO)을 선정하여 미디어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

* 중소기업 나눔경영소 - 사장님이 멋졌어요 '16년 12월 ~ '17년 2월 방영(KBS1)

지원 규모

대학생	고등학생(특성화고)	중학생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10회 600명 (회당 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특강 : 65개교 4,000명 ▪ 토크콘서트 : 13개교 4,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0개교 11,600명 (회당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00명)

모집 및 선정

- 중학생 : 전국 학교에 공문 송부 후 선착순 선발(지역별 안배 고려)
- 고등학생 : 전국 학교에 공문 송부 후 선착순 선발(지역별 안배 고려)
- 대학생 : 공개 모집(자기소개서 심사, 지역별 안배 고려하여 선정)
-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 기업이 제시한 상생경영사례에 대해 근로자 및 동종 업계 임원평가, 온라인 국민 평가 등을 거쳐 선정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25, 9829)

1-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사업

|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원 규모

'17년 300개사 예정(연 예산 600억원)

* '14년 100개사, '15년 150개사, '16년 229개사 지정

신청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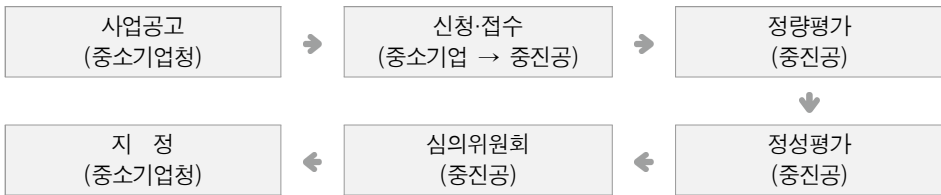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휴업기간은 불포함) 기업
 -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희 주점업, 무도유희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정 혜택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현장탐방기 제작 및 홍보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주요 일간지 보도 등 홍보
- 우수 중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 등 채용지원 등

지정 절차



지정 기준

- 정량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며,
- 정성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평가 방법

- 정량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량지표를 서면평가
- 정성평가 : 정량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서면평가시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평가 지표

구분	부문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정량지표	인재육성 노력 (A) (30)	A-1-1.	교육훈련비		20	서 면
		A-1-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가점(10)		
		A-1-3.	신규 우수인재 채용률	10		

구분	부문	영역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100)	인재 육성 성과 (B) (70)	기업 성과 (25)	B-1-1.	매출액 증가율	5	평 가
			B-1-2.	매출액 영업이익률	5	
			B-1-3.	기업의 성장성	15	
			B-1-4.	기술 및 경영 혁신성	가점(5)	
			B-1-5.	글로벌 경쟁력	가점 (5)	
		성과 보상 (45)	B-2-1.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	25	
			B-2-2.	정규직 비율	10	
			B-2-3.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10	
(100)	인재 육성 체계 (C) (100)	CEO의 의지 (25점)	C-1-1.	인재육성에 대한 CEO의 의지와 이해도	15	현 장 평 가
			C-1-2.	산·학·관 협력 참여 등	10	
		인재육성 인프라 (30점)	C-2-1.	인재육성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기업 인 프라의 적합성	30	
		인재육성 프로그램 (45점)	C-3-1.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기업 적합성	20	
			C-3-2.	인재육성 프로그램 시행방법의 적절성	25	

신청·접수

'17 상반기 중 중소기업청 공고 후 신청 접수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e-hrd.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개발처(055-751-9828~9)

1-18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진입 및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규모

530개사(전체 예산 61.5억원)

- 경영·기술(400개, 53.5억원), 특화형(30개, 3억원), 원스톱창업지원(100개, 5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16년 지원현황(선정기준) : 경영·기술(824개), 특화형(18개), 원스톱창업지원(129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 업력 제한 없음	•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특화형	• 업력 제한 없음	• 신서비스업분야, 미래성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 등
원스톱 창업지원	• 제조업 영위 기업 중 - 예비 창업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재창업자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중진공 정책자금)	• 창업공장 설립(변경) 승인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 신청하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 내용

과제 및 업력에 따라 전체 컨설팅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구 분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경영·기술· 특화형	업력 7년 미만	65%	최대 20백만원
	업력 7년 이상	30 ~ 50%	최대 30백만원
원스톱 창업지원		65%	최대 5백만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혁신계획서 현장평가를 통한 선정,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및 컨설턴트 매칭 방법 변경
 - ▷ 중소기업이 제출한 혁신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기업 선정
 - ▷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후 중소기업에서 컨설턴트 직접 매칭

기존('16년)		변경('17년)	
과제명	선정방식	과제명	선정방식
경영·기술·특화형 (매월접수)	신청(매칭) → 사전진단평가 → 수행계획평가 → 선정	경영·기술·특화형 (분기접수)	신청 → 현장평가 → 선정 → 워크숍(매칭)
원스톱 창업지원 (수시접수)	신청(매칭) → 온라인 선정평가		좌 동

신청·접수

'17년 2월부터 분기별 접수

-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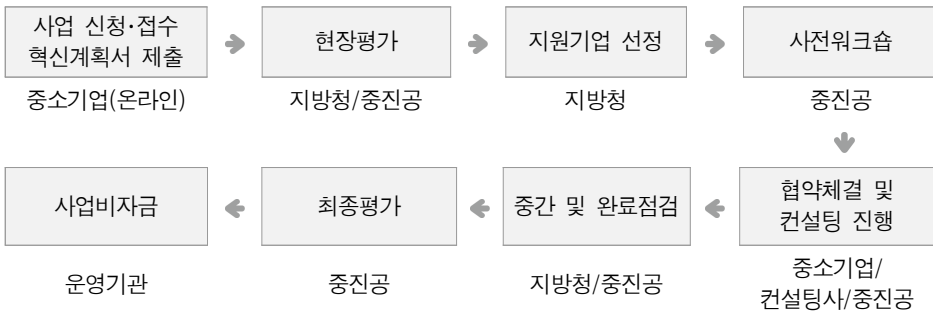
- 신청기업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
 - ▷ 현장평가: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컨설팅 신청기업의 컨설팅 목적 및 필요성, 추진의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방문 평가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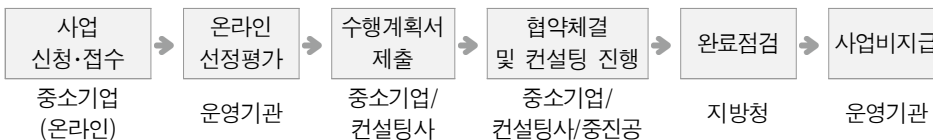
- 컨설팅 사업 참여신청서, 혁신계획서
- 제출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 경영·기술·특화형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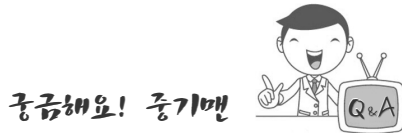


- 원스톱 창업지원 컨설팅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8909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5, 9844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 www.smbacon.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단, 컨설팅 기간은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 Q** 현재 '16년 컨설팅 과제를 수행중인데, '17년도 경영·기술 과제에 추가 신청 가능한가요?
- A** '16년 과제 진행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6년 사업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 Q** 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A**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www.smbacon.go.kr)의 컨설팅 길라잡이 코너를 통해 다양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1-19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 레저장비산업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전체 예산 25.24억원(계속과제 포함)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분야	해양레저장비 분야
전기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해양레저장비 전 분야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 '16년 지원현황 : 전체예산 33.25억원(신규과제 지원 : 5개사, 계속과제 지원(1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 기술개발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
- 기술사업화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R&D성공판정 기술 및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접수기간 내 서류제출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부도 또는 세금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중복과제 지원 불가)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內 '17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공고문 참조

우대 조건

- ▷ 부품소재전문기업,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디자인상품(GD)인증 보유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기술개발 : 자전거 · 해양레저 산업 관련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술사업화 : R&D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

구 분 (지원비율)	항 목	내 용	비 고
기술개발 (75%)	자전거 분야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참여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단독기술개발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해양레저 분야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한도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8억원 이내)	
기술사업화 (70%)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 시장성 및 역량 조사를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사업화 추진 유형 분석 지원	*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확인
	사업화 기획	- 사업화 추진 로드맵과 세부 연계지원 계획 수립 지원	
	맞춤형 사업화	- 사업화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제품화(시장검증 포함) 지원 - 매칭상담회(해외기술이전 및 국내 비즈니스 매칭 등)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 ▷ “기술사업화 지원” 신규제도 신설

신청·접수

‘17. 2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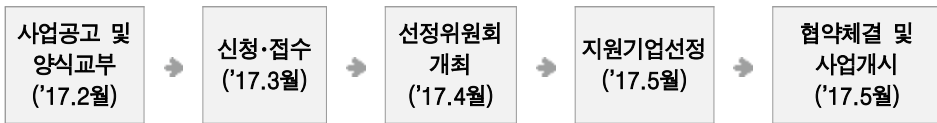
- ▷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통해 선정이 이루어지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
- ▷ 선정 관련 세부내용은 '17년 사업공고문 참조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17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 선정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5(9858)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0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지원

R&D 성공 후 사장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추가 R&D 지원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00개사(전체 예산 52.6억원)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500개사
- 사업화 기획 지원 : 60개사
- 시장검증 지원 : 35개사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 30개사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 및 기업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16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 446개, 사업화 기획 80개, 제품화 지원 48개

지원 대상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매출발생)가 없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사업화(양산, 매출발생)가 진행된 기업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의사항 등

- ▷ R&D 성공판정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 ▷ 특허등록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특허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지원 내용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사업 추천

-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와 시장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 추진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연계지원 방향 제시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질적 연계지원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 컨설팅을 제공
- 시장검증 : 시제품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양산단계 투자 의사결정전에 시장에 대한 검증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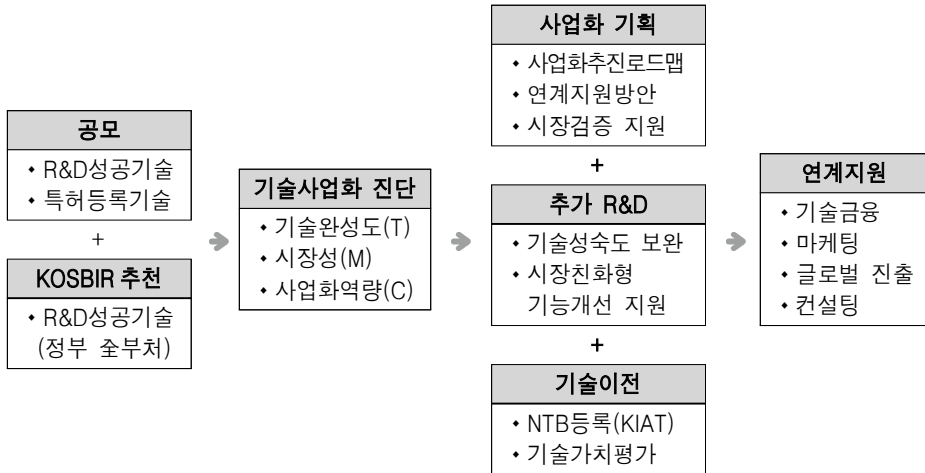
* 3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25%)

지 원 항 목	주 요 내 용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B2B기업중에서 고객사와 사양협약이 된 평가내용 •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시장테스트 (Market t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B2C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시장검증 •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시장진출 (Market ac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B2B, B2C기업중 초기 시장진출을 위해 필요한 내용 • 전문 바이어 상담, 디자인 개선 등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개발제품의 완성도 제고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시장 수요에 맞추어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 지원

* 1억원 이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35%)

지원 절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제품화 지원(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지원 등)을 폐지하고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7.2.1~2.17
- 접수방법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홈페이지(<http://techbiz.sbc.or.kr>)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 일체 우편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서류평가) 기술의 우수성, 차별성, 완성도, 기술의 시장 경쟁력, 구현 용이성, 성장성, 사업 수행 역량, 재무역량 등
 - *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 (발표평가) 사업화 기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 방향 및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평가
 - * 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 지원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신용조회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 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2개년 재무제표,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3, 9852
-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홈페이지(<http://techbiz.sbc.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1

중소기업 기획역량강화 사업

|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유도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체 역량 부족으로 R&D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유도

* 동 사업은 '17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용 변경 가능

지원 규모

1,000개사(전체 예산 5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기획역량 강화	• 정부 R&D사업 처음 참여 기업	신청한 기술개발 개념계획서 (5page이내 약식서류)를 토대로 기술전문기업 매칭을 통한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별표1]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 ✓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 당해연도 기 지원기업
- ✓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구축) 등 용역성 서비스
- ✓ 신청기업 또는 기술전문기업(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지원 내용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구 분	정부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
기획역량강화	80%	최대 5백만원

신청·접수

'17년 2월부터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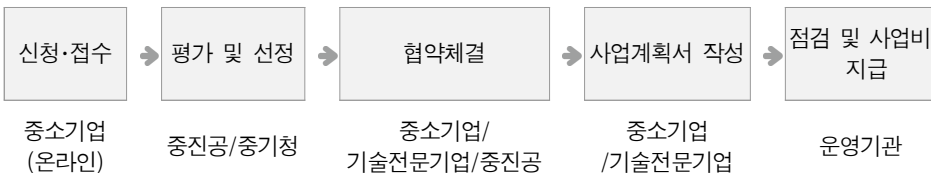
- 신청기업에 대한 R&D 지원 타당성 등을 평가
 - ▷ 선정평가: 사업 신청기업에 대해 R&D 목적 및 타당성, 수행방안,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제출 서류

- 기획역량강화 사업 참여신청서, 기술개발 개념계획서
- 제출방법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www.smbacon.go.kr) 온라인 제출

처리 절차

- 기획역량강화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8909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45, 9844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 www.smbacon.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도 참여 할 수 있나요?
- A**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Q** 협약 이후 회사 경영사정으로 컨설팅과제 추진 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컨설팅 플랫폼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중진공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 Q** 타 중앙정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R&D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A**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www.ntis.go.kr)의 국가 R&D 사업관리를 통해 다양한 정부 R&D 사업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

지원제외 업종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854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731	수의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1-22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CEO의 창업 수단계 패키지화 지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청년CEO들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화과정 및 단계별 후속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예산 500억원(500팀 내외)

- 사업비는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지원 대상

-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예정) 기업
 - ▷ 만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의 대표자('17.1.1기준)
 - * 단,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경력 보유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

- ①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②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③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④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 ⑤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 기술사, 기능장 등)

지원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 (예비)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
 - ▷ (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을 제공
 - ▷ (코칭)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지원

- ▷ (교육)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실시
- ▷ (기술)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 ▷ (사업비) 1년간 최대 100백만 원 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창업활동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산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 용도)
- * 단, 기술개발이 장시간 소요되는 고급기술의 경우, 2년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지원

- 후속연계 : 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track)
(보육·코칭, 기술개발, 정책자금, 마케팅·수출, 투자유치 등)

신청·접수

-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접수(창업넷홈페이지, <http://startu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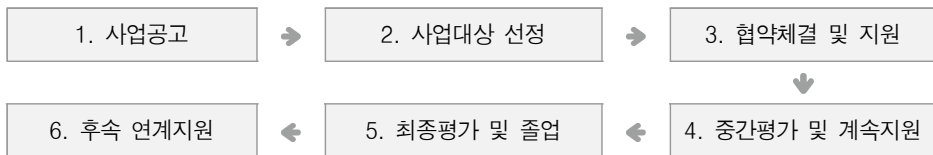
신청 서류

사업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자세한 사항은 '17년 사업공고문 참조

처리 절차

- 청년창업사관학교



문의처

○ 주요 연락처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 안산)	031-490-127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87 중소기업연수원 내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남 천안)	041-589-083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내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6층
호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주)	062-250-303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 호남연수원 내
대구경북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북 경산)	053-819-509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86 대구경북연수원 내
부산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경남 창원)	055-548-802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 473번길 22 부산경남연수원 내
중진공 창업기술처 (경남 진주)	055-751-9837 055-751-9838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창업진흥원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	1357(내선3번)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97(둔산동 931) 캐피탈타워 3층

○ 관련 홈페이지

- ▷ 청년창업사관학교(start.sbc.or.kr)
- ▷ K스타트업(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 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탱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가입 요건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구좌이상 (1구좌=1만원)
- 공제 금리 : 연 복리이자(연 단위 변동금리 적용, 홈페이지에 금리 게시)

가입 혜택

- 중소기업 사업주
 -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또는 필요경비) 인정
 - ▷ (연구·인력개발비) 납입금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 핵심인력
 - ▷ 5년 만기금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 ▷ 공제금 수령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최대주주와 배우자, 친족 등은 감면제외)
- 중기청 지원사업 우대 및 연계지원

분류	사업명	연계우대 내용	도입 시기
수출 (8)	수출역량 강화사업	현장 평가시 가점 1점, 수출마케팅 인력 공제 가입지원(납입금의 70% 이내, 지원한도 300만원)	기반영
	고성장기업(가젤형) 수출역량 강화사업	인건비 보조금을 신규 채용하는 해외마케팅 인력에 대한 공제 납입금으로 사용가능,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17.1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선정평가 시 가점 1~3점 부여	'17.1
	차이나 하이웨이	선정평가 시 가점 1~3점 부여	'17.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정부지원시책에 포함하여 참여실적 배점 인정 (최대25점)	'17.1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17.1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기반영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평가 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16.5
인력 (7)	중소기업 연수사업	공제가입 핵심인력 연수참여시 연수비 할인(30%)	기반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	선정평가 시 가점 10점 부여	기반영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민간(기업·근로자) 등록금 부담을 10%P 경감	기반영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우대 (5년 가입 시 가점 3~5점 부여)	'16.5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산학협력 프로그램 협약 시 선정우대	'16.4
	산업기능요원 제도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16.6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제, 추가 가입 시 가입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 우대 적용	기반영
판로 (4)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16.7
	제품 판로촉진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16.5
	성능인증제도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16.7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16.5
창	창업보육센터	BI 운영평가시 가점 2점 부여	'16.6

업 (6)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17.1
	창업선도대학	선정평가 시 가입인원 1명당 가점 1점부여 (최대3점)	'16.5
	창업맞춤형사업화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17.1
	청년창업사관학교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17.1
	글로벌 창업 및 외국인창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17.1
R & D (12)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기술혁신 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시장창출형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R&D 기획역량 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상용화 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공제가입 핵심인력 1인당 100점씩 마일리지 부여(최대 500점)	기반영
	제품 공정개선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최대 2점 부여	'16.8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6.8
	정보화지원사업(생산현장 디지털화)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7.1
	정보화지원사업(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7.1
기 타 (5)	미래혁신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16.5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16.6
	뿌리기업 지정증 발급	선정평가 시 가점 1~2점 부여	'17.1
	명문장수기업 확인	일자리창출 정책참여 가점 2점 부여	'16.5
	국방질충교역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시 가점 3점	'16.9

* 도입시기와 세부지원 내용은 향후 변경 가능

가입 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서 접수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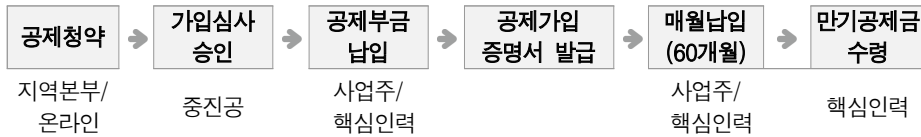
제출 서류

- 방문신청
 - ▷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국세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 사본(기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 ▷ 청약 신청서(온라인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 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24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2-6678-4265~8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궁금해요! 중기맨



- Q** 중소(견)기업의 대표자도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인센티브)이므로 개인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핵심인력의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업의 1)대표이사, 2) 최대주주, 3) 실질경영주에 해당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Q** 공제 가입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 A**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 제한이 없으며, 중소(견)기업 재직 근로자 중 사업주가 지정하는 핵심인력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Q** 기업납입금은 핵심인력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A** '중소(견)기업 기여금은 근로제공 이외에 '5년 이상 재직'의 추가적인 조건(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공제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해지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① 중소(견)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견)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
 - ②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 : 중소(견)기업 납입금 및 해지이자는 중소(견)기업에, 핵심인력 납입금 및 해지이자는 핵심인력에게 지급
- 다만, 핵심인력의 사망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일 경우에는 전액 핵심인력에게 지급

참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청년취업자)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중소기업 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시 적합한 공제금 전액 “1,200만원 + 이자” 를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공제

가입 대상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 벤처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핵심인력) 만 15세~34세 청년으로 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I, II 유형), 일학습병행제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된 자

사업 내용

- (가입기간) 2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3~5년) 가능)
- (가입금액) 핵심인력 납입금(300만원) + 기업기여금(기업, 300만원) + 취업지원금(정부, 600만원) ☞ 2년 근속(핵심인력, 1,200만원+이자)

문의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 1800-7900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제2장 중소기업중앙회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103
2-2. 사업조정제도	105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109
2-4.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112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114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116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118
2-8. 중소기업 중요성 바로 알리기 사업	120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122
2-10.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125
2-11. 중소기업 금융공제 지원제도(공제사업기금)	128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133
2-13.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공제 지원제도	136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138

2-1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중소기업의 자구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이 '14.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지원센터」를 설치('13.5.29)하여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지원 내용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 (연중)
 - ▷ 중소기업회계기준 인식도조사 및 의견수렴, 회계제도 개선 건의(정부, 국회)
-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관련 상담 (연중)
 - ▷ 적용대상, 회계처리 실무 등
 - ▷ 상담방법 : 홈페이지(<http://smac.kbiz.or.kr>) 또는 전화
- 중소기업회계기준 활용 회계와 세무실무 교육(온라인) (연중)
 - ▷ 수강방법 : 홈페이지(<http://smac.kbiz.or.kr>)
- 중소기업회계기준 기초 및 직무교육(오프라인) (연중)
 -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임직원
 -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mac.kbiz.or.kr>) 또는 전화

구 분	중소기업회계기준 기초교육	중소기업회계기준 직무교육
교육시기/시간	연중/7시간	연중/14시간(2일)
교육장소	전국(주요 광역시)	전국(주요 광역시)
교육인원	60명(회당)	55명(회당)
교육비	무료	무료

신청·접수

연중 수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 02) 2124-311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2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들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업종

모든 업종이 신청대상

- * 다만, 방위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산업보존구역안에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제외

신청 요건

- 형식적 요건
 - ▷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실질적 요건
 -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신청가능

신청 서류

- 일반 업종
 -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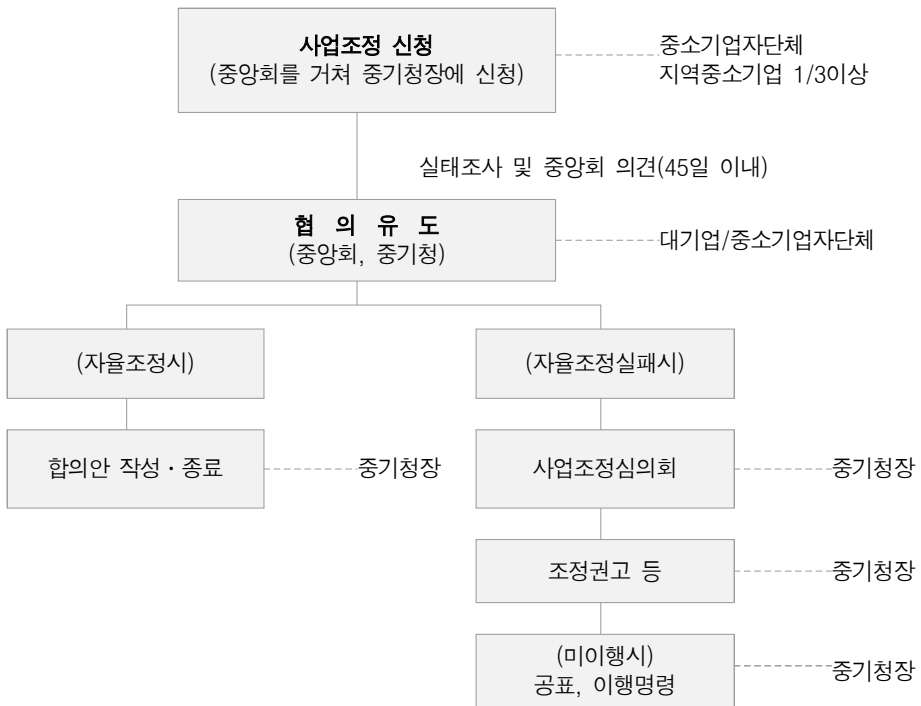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 SSM업종

- ▷ **(단체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SSM진출에 따라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명단,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 ▷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관련 서류 등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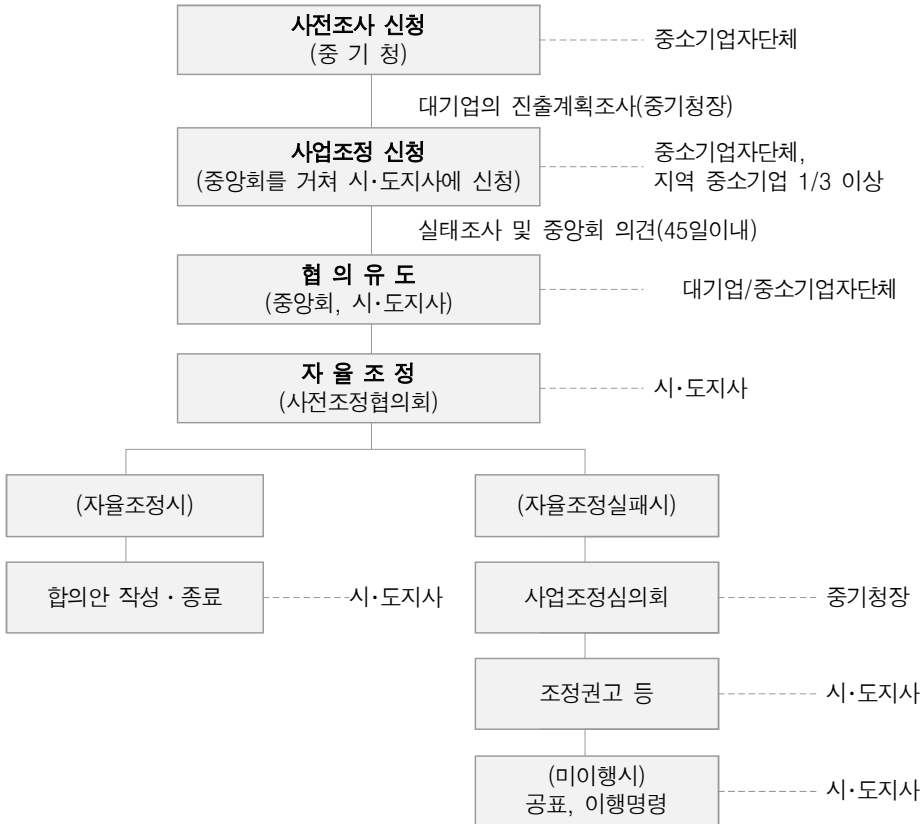
○ 일반업종



○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조정팀 : 042-481-3970
- 중소기업중앙회 : 유통업) 유통서비스산업부 : 02-2124-3172
제조업) 성장지원부 : 02-2124-313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사업조정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 A** 상생법 개정('14.2.7)으로 대기업 입점 전 또는 입점 후 180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대기업 SSM은 모두 사업조정 대상이 되나요?
- A**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혹은 총 개점비용의 51%이상 대기업이 부담한 점포만 가능합니다. 상품공급점, 대기업 지분이 49%이하일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Q**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나요?
- A** 동 제도는 일정기간 대기업 진출을 유예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상되는 사업조정의 형태는 사업진출 연기, 판매량 혹은 면적제한, 취급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 Q**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생법 개정('14.2.7)으로 권고 미이행 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Q** 대기업이 사업조정심의회 권고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생법 개정('14.2.7)으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0.5억원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이하 과태료로 강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용어설명

일시정지 권고란? : 사업조정 신청 시 대기업이 사업인수·개시 전일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반입 및 간판설치 등 사업을 위한 직접적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 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의 자율적 해결 도모

기업 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계약서 미교부,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 등 분쟁발생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 업종 : 제조, 수리, 용역업
- 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원사업자 요건
 - (제조·수리)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 1조5,000억원 미만
 - (용역)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 * 원사업자 매출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직접 신고
- 수급사업자 요건
 - 제조 등을 위탁한 원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
 - * 하도급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지원 내용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자율조정 유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물 변제, 기술·인력 탈취 행위 등

신청·접수

- 중앙회에 직접 신고(우편 접수)
-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접수 후 공정위가 협의회에 분쟁조정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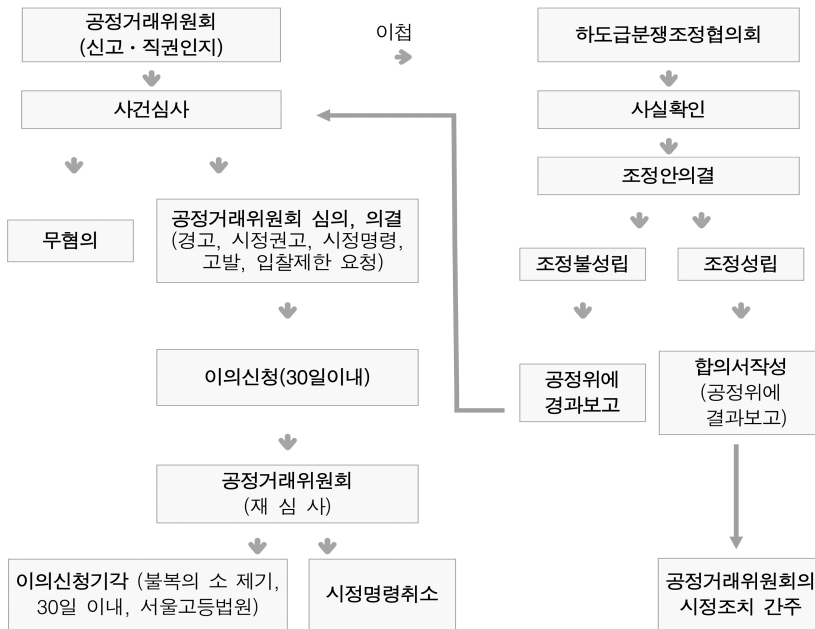
제출 서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하도급 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 신청양식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하도급분쟁 신고 → 분쟁 조정신청 안내(양식) 내려받기

처리 절차

하도급법위반 사건처리 절차도



* 분쟁조정은 협의회 사건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당사자 동의 있으면 30일 연장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02-2124-3133

궁금해요! 증기맨



Q 조정성립 시 효력은? 또는 조정불성립 시 향후 진행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A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위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공정위에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Q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내용이 경미하고 자진 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악질적·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외에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2-4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세대간 아름다운 바통터치 지원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고유기술, 전문인력, 경영노하우 등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거나 완료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가업승계·명문 장수기업 관련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연중)
 -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제도개선 연구·건의(정부, 국회), 정책이슈 발굴 포럼 개최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연1회)
 - ▷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 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명문 장수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중)
 - ▷ 명문장수기업 설명회 : 제도설명, 기업 의견수렴,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개최
 - ▷ 가업승계 차세대 CEO 스쿨 : 경영후계자 교육

구 분	입문과정	심화과정
교육횟수(기간)	연4회 / 3일	연1회 / 15주
교육인원	20명(회당)	30명(회당)

- ▷ 정보제공 : 명문 장수기업 사례집, 안내서, 핸드북 등 발간

-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경영후계자 네트워크 운영(연중)
 - ▷ 경영후계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경영 도모
 - * 회원 100여명, 8개 지역분회 운영

신청·접수

연중 수시(개별 사업별로 신청 필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5

무역피해구제 지원센터 운영

|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이내 지원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수입의 급증 또는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규모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지원 대상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 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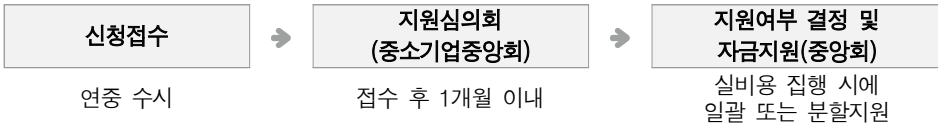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신청 서류

- 신청공문
- 조사신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조사신청서(또는 조사개시 결정서 또는 최종판정의결서) 사본
-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 약정서(소정양식)
-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서(소정양식)
- 무역구제 지원신청 현황(소정양식)
- 계좌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수입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 02-2124-3161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044-203-5852
-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www.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무역구제제도란? :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금지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무역구제 유형(부과요건)

- 덤핑방지관세제도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계관세제도 :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세이프가드제도 :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 불공정무역행위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2-6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지원

|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업종 중심의 단체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파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500개사 내외, 총 예산 210억원

* '16년 지원현황 : 해외전시회 184회, 수출컨소시엄 21회 등 총 197억원 지원

지원 대상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 및 수출유관기관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전시회 또는 개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

지원 내용

- 해외전시회 : 업체당 11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50%
 - * 공통경비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5억원 한도 내에서 공통경비의 70~90%
 - * 1단계 : 사전시장조사, 바이어 섭외비 등의 최대 90% 이내
 - * 2단계 : 현지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의 최대 80% 이내
 - * 3단계 : 초청바이어 항공료, 신용조사비용 등의 최대 90%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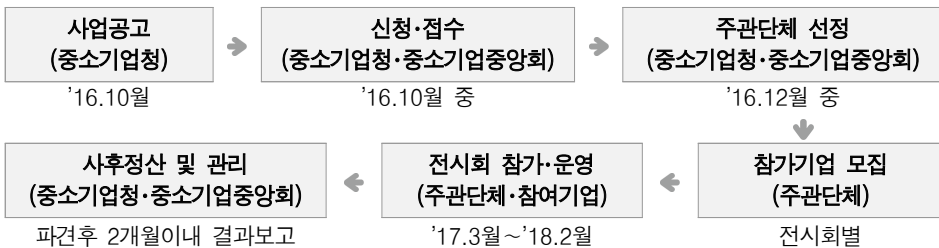
- * (주관단체) 로그인 후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 * (참가기업) 로그인 후 “전시회 정보 → 참가희망 전시회 → 신청”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및 각종 인증 자료 등 주관 단체별 요구 자료

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견적(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 견적서, 전시회 수준 평가자료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 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직전년도 기준 증빙자료 제출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협력부 글로벌마켓팀 : 02-2124-3184~8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한국관 단체 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가능한가요?

A 한국관 단체참가가 아닌 개별참가 전시회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목 적	제 도 의 종 류
중소기업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소액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규모별 경쟁제도 ▶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운영 ('16~18년 적용)
 -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 / 유효기간 : 2년

-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운영
 - ▷ 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운영
 -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 제조 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①해당 업체간 제한경쟁 가능 ②협동조합 업체 추천 이후 추천업체간 지명경쟁 가능
-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2017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성화
 - ▷ 제도 운영 세부사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반영 및 시행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2-8

중소기업 편견-ZERO 대국민 캠페인 사업

|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사업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공모전, 청소년 진로 체험,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팟 캐스트 진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 국민 인식도를 우호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층의 올바른 진로 선택,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사업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중소기업중앙회업무)제1항 제2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사업 내용

- 중소기업 주민번호(998868-1233119) 바로 알리기 교육
 - ▷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학생, 공무원 대상 눈높이 교육 실시
 - ▷ 중소기업 역사관 운영 및 중소기업 관련 기획전시 개최
 - ▷ 자유학기제 기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 대학교내 중소기업 인식개선 관련 과정 개설 (강원대, 한림대 운영중)

중소기업주민번호 998866-1233119 의미

☞ 앞 6자리는 중소기업의 규모적 위상을 표현

- 99 : 전체 기업체 99%가 중소기업 (3,542천개)
- 88 : 전체 기업근로자 88%가 중소기업 근로자 (14,027천명)
- 68 : 전체 국민의 68%가 중소기업 가족

☞ 뒤 7자리는 헌법이 정한 중소기업 관련 국가의 역할 표현

- 1233 :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한다」
- 119 :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관련 조문

-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공모전
 -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 동영상, 포스터, 아이디어 제안서 공모
 -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방송 프로그램 기획 공모전 : PD 및 방송작가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서 공모
 - ▷ 초·중등 교사 및 예비교사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안 경진 대회
- 중소기업 이해 교재개발
 - ▷ 중학생 자유학기제 교과서 '미니컴퍼니 경영' 개발
 - ▷ 초중등교사 보조용, 예비교사 교양과목,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 교육청 연수원 등 중소기업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교재 개발
- 연구용역
 - ▷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조사 (2016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도 54점, 대기업 72점)
 - ▷ 인식개선사업 성과제고 및 교과서 관련 연구
 - ▷ 교원양성대학 교양강좌개설 운영 및 교재개발 연구
 - ▷ 자유학기제용 선택프로그램 행복한 중기씨 교재개발
- 홍보사업
 - ▷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 ▷ 방송프로그램 및 동영상 제작 활용 : TV동화 행복한세상, 지식체널-e, 황금의 펜타곤 등
 - ▷ 중소기업 편견 타파를 위한 “제1회 중소기업을 빛낸 국민영웅 Awards” 선정 및 시상
 - ▷ 네이버와의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MOU 후속 홍보 사업 진행 (네이버 TV-캐스트 등)
 - ▷ 중소기업 선입견 제로방송 팟 캐스트 “시시각각” 운영
 - ▷ 청소년 중소기업 진로체험을 위한 중소기업역사관 및 기획홍보관 운영
 - ▷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 탁상용 캘린더 제작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02-2124-3301, 3390
- ‘행복한 중기씨’ 네이버 블로그(<http://smallgiantk.blog.me/>)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9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지원 내용

- ① 각종 행정 신청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 고용변동신고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업무상 재해 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 ②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 ③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번역 지원 (사업장 방문 및 유선 통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및 상해수습 지원 등

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체

고용 기간 4년 10개월 (3년+1년10개월)

* 성실외국인근로자 제도 도입 등으로 최대 9년 8개월 고용 가능

도입 국가 아시아 15개국

-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필리핀, 중국

고용 인원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이

내국인 피보협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협자수	고용가능 총 인원	신규 고용인원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명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명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명	150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명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 50인 이하 뿌리산업은 신규고용인원 +1명 추가 및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가능
- * 지방기업 및 인력 부족율이 심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 * 방문취업제를 통한 외국국적동포 고용 시 허용인원만큼 추가 가능

도입 쿼터 2017년도 42,300명+ α (제조업)

구 분	배정인원	비고
일반인력쿼터	30,200명+ α	1,4,7,10월 신청
재입국취업자	12,100명	수시접수
합 계	42,300명+ α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본부) 및 지역본부(지부)

신청 서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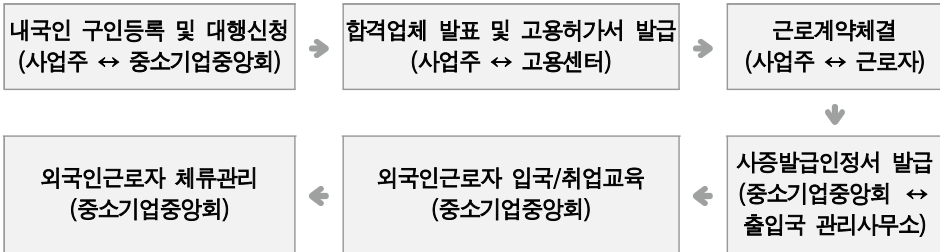
*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배정 기준

일정 요건에 따라 업체에 점수를 부여(가감)하고, 업체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 내국인 구인실적 등 4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부여(총점 100점)
- 출국만기보험 연체 등 3가지 요건에 의거 점수 감점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 02-2124-3281~4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0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제도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 ▷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 ▷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지급
-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5,675만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 =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근로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

과세표준	세율(%)	노란우산공제 절세가능액
12백만원 이하	6.6	500만원×6.6%= 330,000원
12백만원 ~ 46백만원 이하	16.5	500만원×16.5%= 825,000원
46백만원 ~ 88백만원 이하	26.4	300만원×26.4%= 792,000원
88백만원 ~ 1억 5천만원	38.5	300만원×38.5%= 1,155,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41.8	200만원×41.8%= 836,000원
5억원 초과	44.0	200만원×44.0%= 880,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주민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시 변경 가능

- 수급권의 보호
 -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시에도 안전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납부 부금 내 대출(공제계약대출) 가능
 - ▷ 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 전국 제휴 휴양시설 숙박, 병원 건강검진, 복지몰 이용 할인 혜택 제공 중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업종분류에 따른 다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매출액 8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및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 (경과규정)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일(2016.1.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업 · 소매업 · 서비스업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소기업·소상공인) 영위하는 사업체가 비영리법인의 대표인 경우 가입할 수 없음
-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미업은 공제가입이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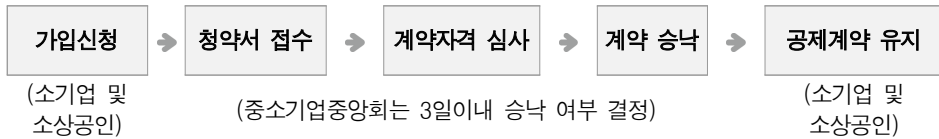
가입 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 부 금 월 5만원 ~ 100만원(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 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로 한함

가입 절차



-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 *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 * 계약의 취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가입 서류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문 의 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노란우산공제 스마트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1

중소기업 금융공제 지원제도(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수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및 단기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대출 3,285억원, 가입 업체 수 13,120개

대출종류	대출금액
부도어음대출(제1호공제금대출)	43억원
어음 및 수표대출(제2호공제금대출)	523억원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공제금대출)	2,714억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제4호공제금대출)	5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담배·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상조업, 대부업, 임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 대출종류 및 지원 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 한도
부도어음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을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어음 및 수표대출	•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7배 이내 - 담 보 : 10배 이내

대출종류	대출사유	지원한도
단기운영자금대출	•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 - 무보증 : 1~3배 이내 - 담보 : 10배 이내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예방과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필요할 때 * 신용보증기금 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상	부금잔액의 최고 20배 이내 (일석e조보험 금액의 100%)

○ 지원조건

분야	부도어음대출	어음 및 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대출이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신용등급별로 연3.5~9.3%	신용등급별로 연3.5%~9.7%	연4.65%
대출기간	3년	180일 이내	1~3년	180일 이내
담보 등	부금잔액 내 대출 : 연 3.5% 담보 대출 : 연 4.8% 신용보증서 대출 : 연 4.55~5.25%			매출채권보험 청구권의 근질권 설정

*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해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 : 연1.0~3.0% 감면

*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 요망

○ 부금종류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 부금이자 등

▷ 부금납부종료일 후 미해지 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 중도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left\{ \begin{array}{l} 12회 미만인 경우 원금만 지급 \\ 12회 이상 납부시 소정의 이자 지급 \end{array} \right.$

신청·접수

-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인터넷, 방문, 팩스)
- 대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및 각 지역본부·지부(방문, 부금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이용 가능)

신청 서류

-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및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처리 절차



문의처

- 가입 및 대출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6~9)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A**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 납입 4회 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 Q**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 A**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계약) 당시 정한 부금납부종료일이 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후 연속해서 3회 이상 부금을 미납할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부도어음 대출업체가 다른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A** 부도어음대출(1호), 어음수표대출(2호), 단기운영자금대출(3호)을 총 대출한도액(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부금잔액 10배 이내에서 차등 적용)내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발행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도 할인이 가능한가요?
- A** 정상적인 상거래로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지급장소가 은행인 경우)은 할인 대상이 되며 대출실행일 현재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Q**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단기운영자금 대출기간은 1~3년이며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또는 대출기간 내 매월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Q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매출채권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A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세금계산서, 영세율계산서만 가능하며 면세계산서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 대출의 대상은 무엇을 말하나요?

A 외상매출채권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결제기일 180일 이내)
* 상거래 기업 중 공제기업 가입자의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등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채권은 제외

Q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지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이차 일부(연1~3%이내)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매출채권보험이란? :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참조 (www.kodit.co.kr)

2-12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보증서를 그 동안 보증 시장을 독과점 해왔던 민영 보험사보다 저렴하게 발급·지원하여 드립니다.

가입 대상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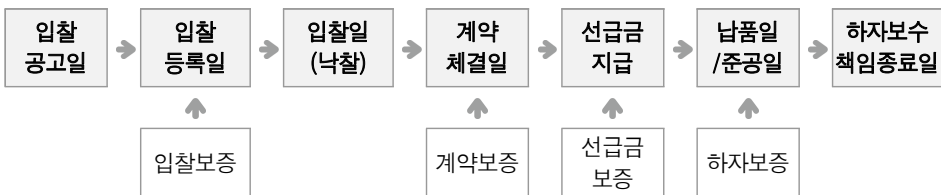
- * 공공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를 의미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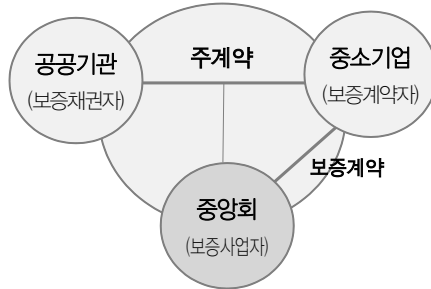
공공기관이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요구하는 ‘보증서’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보증 종류	보증 내용
입찰보증	입찰참여자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계약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선급금보증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급금(선급금, 중도금, 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
하자보증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
이행지급보증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제반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

<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체계 >



< 보증공제 체계도 >



이용 방법

중소기업중앙회(13개 지역본부 및 5개 지부), 보증업무 위탁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를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

신청 서류

거래신청서, 한도거래약정서(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구비서류 참조

처리 절차

방문 또는 전화 문의	1899-0098
상담 및 보증한도 안내	전화상담·홈페이지
보증약정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약정 심사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약정 체결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청약	중앙회 본부/지역본부/대리조합/홈페이지
청약심사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보증료 납부	가상계좌자동이체
증권 발급	중앙회 본부/지역본부, 전자보증

문의처

- 중소기업보증공제 대표전화 : 1899-0098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보증공제팀) : 02-2124-4342, 4348
-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www.g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업체별 보증한도(보증가능금액) 산정 방법?

A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 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로 구성됩니다.

- 기본보증한도 :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
- 부금보증한도 : 기업이 보증부금을 납입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 인정
 -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3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공제 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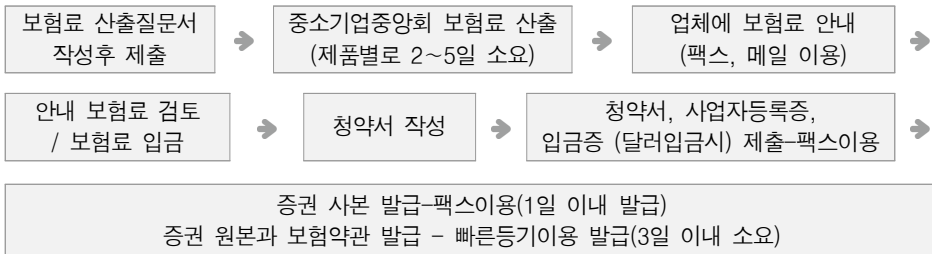
| 제조물책임보험 단체가입으로 보험료 경감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PL)을 부담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단체보험 가입시 개별 가입시 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 경감을 지원합니다.

PL 단체보험

- 사업개요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운영하여 기존 손해보험사 가입시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중소기업의 보험료 비용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PL대응력을 제고
- 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 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
 - ▷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과 관련된 생산물을 취급하는 자
- 보험료 고려사항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손해율 등에 따라 결정
- 특징 : 기존 손해보험사 대비 20~35% 저렴, 인수 거부 및 제한없음
 - * 장기간가입자 및 각종 인증마크,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보험료 추가 할인

가입 절차



PL교육(자문)지원

- 지원내용 : 강사(자문) 무료지원
 - * 강사는 내외부 PL 관련 전문가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
 - * PL교육의 경우 50인 이상(2개 이상 중소기업의 합동교육도 가능)
- 교육(자문)내용
 - ▷ PL법, 최근 PL동향 등 PL에 관한 사항
 -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 교육(자문)장소 : 신청 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 교육(자문)시간 : 2~4시간 범위 내
-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 신청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Fax. 0502-397-0200, 02-761-4432
(홈페이지 www.plkorea.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교육(자문) 절차

희망업체 신청·접수
(업체 → 중앙회)



강사 지정
(중앙회)



시기 협의·실시
(강사 ↔ 업체)



결과보고
(강사,업체 → 중앙회)

- 신청시기 : 수시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02-2124-4352~5
- 홈페이지 : www.plkorea.com 이메일 : pl@k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2-14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 기업 경영상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수제한을 최소화하여 공제(보험) 가입의 문을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장, 판매장, 사무실 등 시설 소유·임차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지원 내용

→ 용어설명

화재공제 : 공장 및 일반 물건의 화재로 인한 손해 보상

근로자재해공제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시 신체보상액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의 민사배상책임을 보상

재신종합공제 : 재물손해, 기계손해, 기업휴지(조업중단) 및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

영업배상책임공제 : 영업 수행상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재물손상으로 인한 손해 보상

건설기계안전공제 : 건설중장비의 화재·파손 등 재물손상 및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

○ 화재공제

- * 공제목적물(건물, 공장 등)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서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상

구 분		보 상 내 용
화재	직접 손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버락에 맞아 생긴 손해 및 그을음 또는 연기 손해 보상
	소방 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생긴 수침손해나 파괴손해 보상
	피난 손해	불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꺼내 임시 보관 중인 곳에서 5일 이내 공제의 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 소방손해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목적에 대한 잔존물제거비용 보상
손해방지 비용		사고발생시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

○ 근로자재해공제

- * 사업주(사용자)의 과실에 의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구 분	산재보험(강제보험)	근로자재해(임의가입)
가입주관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사 / 공제조합
담보내용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내용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산재초과분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송비용 / 1인당, 1사고당으로 결정

○ 재산종합공제

- * 공제대상자의 재물손해(Ⅰ), 기계장치손해(Ⅱ), 조업중단손해(Ⅲ) 및 배상책임(Ⅳ)을 보상하며 면책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각종 위험 담보
- ▷ 4가지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음으로써 규모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업무간소화 및 관리 편의
- ▷ All Risk 담보형식이므로 담보 누락을 최소화

부 문	담 보 내 용
제1부문 (재산종합 위험)	공제대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임차, 리스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 -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등 각종위험(일부 면책위험 제외)을 보상

부 문	담 보 내 용
제2부문 (기계위험)	공제대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 임차, 리스하는 기계장치가 아래 원인으로 인한 파손사고 손해를 보상 - 기계적 요인: 재질·설계·건설·조립상의 결함, 조절불량, 안전장치 고장 - 전기적 요인: 전압 과부족, 절연체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 - 기타: 기술부족, 종업원 부주의, 추락, 충격, 이물질 유입
제3부문 (기업휴지 위험)	제1,2부문의 사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자의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休止)됨에 따른 손실액 - 기업휴지기간 동안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상실액 및 손해액 경감을 위한 특별비용을 보상 * 총이익 = (매출액 +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변동비)
제4부문 (배상책임 위험)	공제대상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 - 일반배상책임(GL): 고지된 시설, 업무로 인한 배상책임 및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생산물배상책임(PL: Product Liability)

○ 영업배상책임공제

- * 담보지역(증권기재)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특별약관 기재)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공제대상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구 분	보 상 내 용	가 입 대 상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가입한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영업시설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업주가 가입하며 주로 음식점, 도·소매점, 사무실, 목욕탕, 숙박시설 등
도급업자 배상책임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제반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 시공자 및 도급업자 중 누구나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누구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완성되느냐에 따라 결정
주차장 배상책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전용주차장, 부속주차장, 빌딩 내 주차장

구 분	보 상 내 용	가 입 대 상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그 소유주의 부동산에 발생한 손해	공제대상자가 임차,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또는 건물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기소유자 및 중기임차자 (업체 또는 개인)

○ 건설기계 안전공제

- * 9종 건설기계를 포함한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광업 기계 등 모든 건설기계의 재물손해와 법률상의 배상책임, 개인 및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를 보상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설문서 접수(메일 또는 팩스)
- 신청기간 : 수시
- 처리기간 : 7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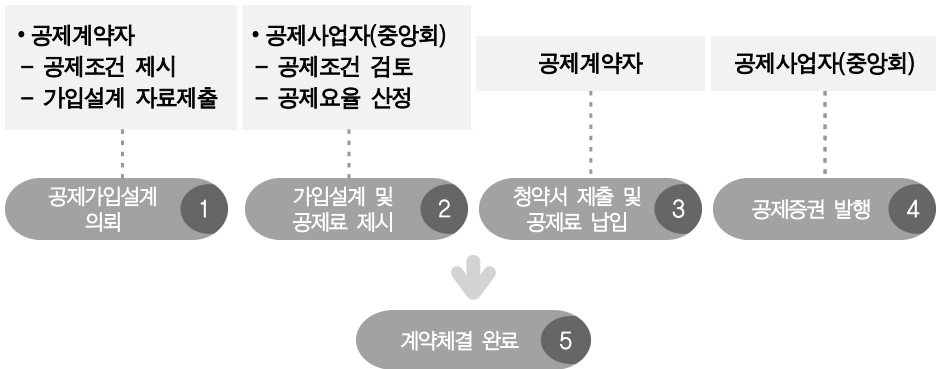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설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재공제 : 건축물대장(필요시)
- 영업배상책임공제 : 각 업종별 정보자료*
 - *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장 객실수, 면적, 좌석수 등
 - * 도급업자 : 도급계약서, 손익계산서 등
 - * 주차장 : 주차시설 정보, 면적 등
- 재산종합공제
 - ▷ 재산위험, 기계위험 부문 : 건물가액 평가자료(건축물대장 등), 유형·고정자산명세
 - ▷ 기업휴지 부문 : 매출액 자료, 재고자산 리스트, 변동비 자료

- 근로자재해공제 : 임금증명서류
 - ▷ 연간계약-재무제표, 구간계약-(하)도급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 건설기계 안전공제 : 건설기계등록증

처리 절차



문의처

- 전국대표 콜센터 1666-9988 (교환4번)
- 손해공제 홈페이지 www.insbiz.or.kr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02-2124-4356~9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3장 신용보증기금

3-1 신용보증	144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148
3-3 보증연계투자	150
3-4 유동화회사보증	152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156
3-6 매출채권보험	159
3-7 Job Cloud	164
3-8 희망창업아카데미	165
3-9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167

3-1

신용보증

|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41,5조원으로 운용

* '16년 지원규모(10월말) : 42.4조원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 ~ 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신보에서 증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우대보증	·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기업에 대한 보증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유망서비스 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대입, 공적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 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SMART 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M&A 보증	· 합병, 영업양수 등 M&A를 위한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 상시종업원(정규직)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 훈련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

*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뿌리산업, 콘텐츠사업 영위기업,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3-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경영혁신형기업 발굴

서비스업, 전통제조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혁신기업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경영혁신기업 발굴 및 인증기업에 대하여 연간 보증 8조원 지원

* '16년 3,036개 기업 인증 및 보증 8조원 지원(10월 말 기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전 업종)

지원 내용

금융지원

- ▷ 보증료를 및 신용보험료를 우대
- ▷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 * 중소기업은행에서 보증부대출 시 인증 수수료 지원 등
- ▷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신청·접수

메인비즈 홈페이지(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정, 마케팅, 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자료 등

처리 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 관리시스템(www.mainbiz.go.kr)에서 신청기업이 직접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현장평가 신청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신청
↓	
현장평가 수행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및 확인서 발급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 연 1회 사후관리 실시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 053-430-4508
- 경영혁신형기업 인증 홈페이지 : www.mainbiz.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 기존의 벤처, 이노비즈와 같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향상 등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을 의미

3-3

보증연계투자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복합금융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이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400억원 이내(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

* '16년 10월말 기준 지원현황 : 32개 기업, 244억원

지원 대상 기술력 및 경영진의 경영능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단, 창업기업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투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 30억원으로 신보의 보증금액 2배 이내로 운용하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보증심사등급	인수한도
K5 이상	30억원
K6~K8, SB1~SB2	15억원
K9 이하, 무등급, 기타등급, SB3 이하	10억원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기간 : 주식 3년~10년, 사채 3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개별기업 당 투자한도 변경
 - * (변경전) 30억원, 신보 보증금액 이내 → (변경후) 30억원, 신보 보증금액 2배 이내

신청·접수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및 각 해당 영업점에 문의

심사·평가 내용

- 투자대상기업 대표자의 경영능력, 사업성·기술성 및 재무건전도 등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용보증 신청 시 수집 자료 등

- ▷ 단, 기수집된 자료 중 투자심사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 생략 가능

처리 절차

업무절차	세 부 내 용	담당조직
투자상담	기보증이용기업 또는 신규기업 중 투자대상기업 발굴	영업점
↓		
투자조사	현장조사 및 표준신용조사서 작성후 담당부서로 추천	영업점
↓		
투자심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심사 진행	본점(자본시장부)
↓		
투자결정	투자심의위원회 또는 보증사업심사위원회 의결	본점(자본시장부)
↓		
투자집행	투자승인기업과 투자계약 체결 및 투자 집행	본점(자본시장부)
↓		
사후관리	투자기업 사후관리 및 Value-up 서비스 제공	본점(자본시장부)
↓		
투자금 회수(EXIT)	IPO, 상환·매수청구, M&A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	본점(자본시장부)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홈페이지 :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4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16년(10월말 기준) 중 1,584개 기업에 1.8조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

지원 대상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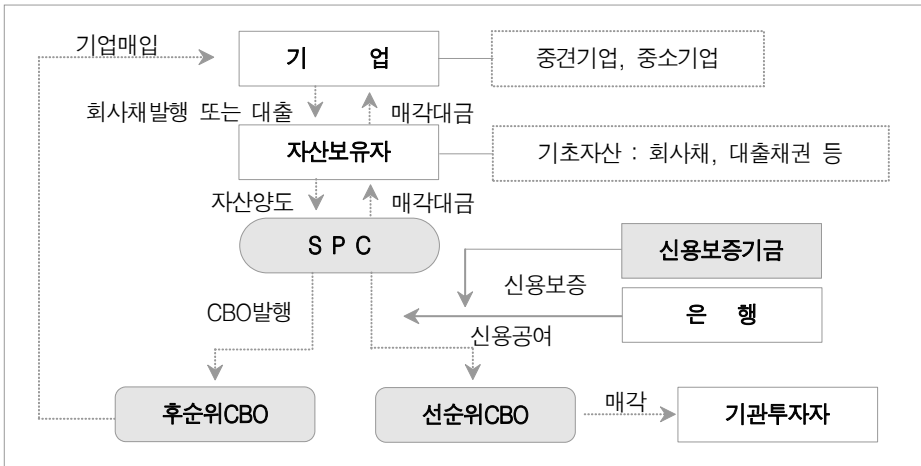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및 신용상태 취약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증금지, 보증제한, 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업종별 부채비율 상한선 초과기업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기업 EBITDA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2년 연속 “1” 미만인 기업 신보의 기업가치평가시스템에 의한 기업가치가 “0” 이하인 기업 또는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10” 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대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축법, 회생절차, 워크아웃 졸업 후 2년 미경과 기업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및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업 영위 기업

제도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재매입

< 유동화회사보증 구조 >



지원 한도

아래의 각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 이내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억원)

구 분	K4이상 (BBB이상)	K5 (BBB-)	K6 (BB+)	K7 (BB)	K8 (BB-)	K9 (B+)	K10 -
중소기업	150	120	100	70	50	40	30
중견기업	250	200	150	100	70	50	-

(주1) 신·기보의 일반보증 + 재단보증 +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 +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 매출액의 1/3~1/4 이내 ■ 기타업종 (도소매, 건설업 등) : 추정 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성장기업군 III·IV군인 기업(또는 회사채등급 BB이하)에 한해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차입금(본건 포함)이 당기매출액(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이내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와 기보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포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신보 유동화회사보증에 기초자산 차환 편입잔액이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
- 매출액, 자기자본 한도 산출 기준 변경

발행 금리

- 신용등급별로 2.54(K1등급, A등급) ~ 4.14%(K9등급, B+등급) 수준
 - ▷ 상기 금리수준은 2016.10.14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무보증공모사채 3년물 민평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후순위채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

신청·접수 연중 상시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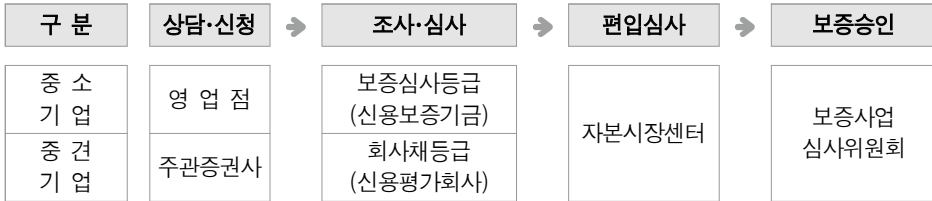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신보 영업점, 중견기업은 거래증권사를 통해 편입 신청

심사·평가 내용

- 최저신용등급 충족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입 결정

제출 서류 편입신청서류는 「신용보증 제출서류」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홈페이지 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용어설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법인체

후순위채권 : 채무변제순위가 선순위채권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선순위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고 잉여현금이 남아있을 경우 채권의 원리금이 지급

3-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지원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공급계획 2.0조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 제외)
 -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
- 대상시설 (철도, 도로, 항만 등 53가지 시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회생,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실기업

지원 내용 보증지원 누계 : 194개 사업, 총 20조 8,267억원

- ▷ 도로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등 34개 사업 10조 3,467억원
- ▷ 철도 : 신분당선 등 8개 사업 2조 4,202억원
- ▷ 항만 : 부산신항만 등 15개 사업 1조 8,121억원
- ▷ 터널 : 용마터널 등 8개 사업 1조 279억원
- ▷ 환경 : 순천에코그린 등 25개 사업 9,528억원

- ▷ 문화 : 국립해양박물관 등 15개 사업 5,196억원
- ▷ 학교 : 서울신도초교 등 41개 사업 1조 5,525억원

신청·접수

- 보증상대처의 확인을 받은 보증신청서를 서면 제출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심사·평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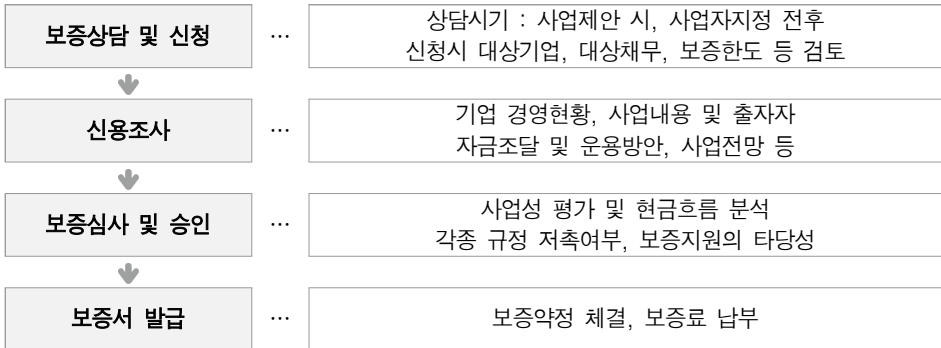
- 사업타당성, 출자자 자금조달능력, 주무관청의 보장내용 및 원리금 상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출 서류

자 료 명	비 고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주주명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실제경영자 포함
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거주주택
⑥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및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⑦ 금융거래확인서	본건기관,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⑧ 재무제표(최근 2기분)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기업 포함
⑨ 사업계획 관련 서류 사본	실시협약, 실시계획서 등
⑩ 금융약정 관련 서류 사본	대출약정서 등
⑪ 세무조정계산서상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보증료 중소기업 우대부분 적용 확인용

(주)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등 행정정보공유시스템 및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신보에서 직접 수집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부 : 053-430-447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6

매출채권보험

| 납품대금 때일 염려 없는 거래안정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보험인수 18조원으로 운용

지원 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어음보험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인수 부적합업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 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5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상품 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 ^e 조보험	15일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15일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보험계약자 규모 및 보험한도 등 변경

기 존		→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보험계약자 가입규모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가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견기업	
② 보험계약자 보험한도	30억원	보험계약자 보험한도	50억원	
③ 구매자 최고 보험한도	대기업: 최고 100억원 중소기업: 최고70억	구매자 최고 보험한도	대기업: 최고 150억원 중견기업: 최고 100억원 중소기업: 최고70억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신용보증기금은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보험인수구매자 등 결정

제출 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 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구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A 구매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A 보험금 지급청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3-7

Job Cloud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지원을 위한 집매칭 서비스

구직자에게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우수 중소기업 분류 : 좋은 일자리, 신보 스타, Main-biz, 유망창업기업
- 대학(희망사다리 장학생 포함), 특성화고 인력이 연계되도록 온라인 채용사이트 운영,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구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 ▷ 중기청 선정 Main-biz기업을 포함하여 신보 선정 좋은 일자리, 신보 스타, 유망창업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채용 정보를 상시 제공

지원 내용

- Job Cloud 채용 정보 등록 시 '워크넷'(고용노동부 채용사이트) 자동 연계
- Job Cloud를 통해 인력 채용 시 고용창출특례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용 및 보증료 할인
- 채용 박람회 참가 시 부스 사용료, 참가비 등 전액 무료

사이트 주소

www.kodit.co.kr 접속 후 '잡클라우드 바로가기' 클릭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53-430-44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8

희망창업아카데미

|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매년 15회(교육생 450명) 내외 창업교육 운영

* 15년 운영현황 : 14회 운영 (363명 수료)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가

*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선발

지원 내용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창업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창업일반과정, 창업아이템과정, 사업화추진과정, 재도전창업과정, 마케팅실무과정, 분야별 창업멘토링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신청기간 : 교육 시작 3주 전부터 선착순 접수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계획 등

제출 서류

희망창업아카데미 수강신청서(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창업 계획서)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리내용
창업교육공고 (D-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홈페이지, 유관기관, 매스컴(신문 등)
교육신청·접수 (D-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참가자 선정 (D-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착순으로 선정
교육진행 (D-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단계별 맞춤형 교육진행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 053-430-4498
- www.kodit.co.kr 접속 ⇒ 주요업무 ⇒ 창업지원업무 ⇒ 희망창업아카데미 신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3-9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유형 및 창업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약 5조원

* '15년 지원현황(공급) : 10,373개 업체, 4조 3,966억원 지원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이내인 유망창업기업

*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기술·지식창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금지기업)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 미회수 기업 등
- ✓ (보증제한기업) 휴업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차등 지원

- 예비창업보증 : 창업前 6개월 → 보증한도 10억원
- 신생기업보증 : 창업後 1년이내 → 보증한도 10억원
- 창업초기보증 : 창업後 1년~3년 → 보증한도 20억원
- 창업성장보증 : 창업後 3년~7년 → 보증한도 30억원

신청·접수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영업점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주민등록등·초본 등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
	사업자등록증명 등	Home-Tax 서비스(국세청)
	재무제표 등	Metagate System(세무사)
	금융거래확인서	채권은행 전산연계
고객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단 계 별	처리내용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 상담신청 ■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자료수집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신보 직접 수집(일부자료는 기업이 제출) ■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약정 및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 의 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www.kodit.c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지원대상 요건은?

A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종 류	대 상
전문자격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자격증(산업인력공단 등) 보유 · 교수, 박사, 연구원(3년이상) · 제조업, 프로그램제작업 등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 경력 10년 이상
아이디어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경진대회 수상 · 지식재산권 보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기술·지식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높은 기업 · 지식기반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등

Q 유망창업기업 단계별 우대내용?

구 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업 력	창업前 6개월	창업後 1년내	창업後 1~3년	창업後 3~7년
보증한도	10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보증료율	0.7% 고정	0.4%p 차감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100%	95%	90%



제4장 기술보증기금

4-1 2017년 보증지원계획(총괄)	171
4-2 기술보증	172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75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178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181
4-6 전자상거래보증	184
4-7 R&D 보증	187
4-8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190
4-9 지식재산(IP) 보증	193
4-10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196
4-11 문화산업완성보증	199
4-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203
4-13 기술평가	207
4-14 벤처확인평가	210
4-15 이노비즈 인증평가	214
4-16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216
4-17 녹색인증평가	219
4-18 보증연계투자	222
4-19 투자유선부보증	224
4-20 경영개선지원제도	227
4-21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229

4-1

2017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17년도 총보증 규모는 20.8조원으로, 신규보증 5조원을 포함하여 총 20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 2017년 20.8조원

* '16년 10월말 현재 보증잔액 : 21.1조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0월)		
보증잔액	204,000	211,385	208,000	4,000
기술보증	196,000	203,563	202,000	6,000
유동화회사보증	8,000	7,822	6,000	△2,000
보증지원	190,000	180,215	200,000	10,000
기술보증	187,500	178,702	197,000	9,500
신규지원	50,000	43,486	50,000	-
유동화회사보증	2,500	1,513	3,000	500

○ 창업·일자리창출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0월)		
기술창업 활성화	82,000	87,767	88,000	6,000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57,000	56,559	60,000	3,000
일자리창출	42,000	44,125	43,000	1,000
R&D보증 지원	35,000	36,385	40,000	5,000

○ 성장동력 분야 신규지원

(단위 : 억원)

예비창업 사전보증	R&D보증	지식재산보증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신성장산업 시설자금보증	합계
1,200	14,000	2,600	7,000	5,000	29,800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72

4-2

기술보증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7년 기술보증 잔액 20.2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6조원 별도)

* '16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0.4조원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을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국번없이 1357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증기맨



- Q** 기금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 A** 기금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4-3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
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017년 1,200억원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 : 1,378억원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예비창업자
- ✓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예비창업자 등

지원 내용

주요내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창업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 보증료 0.5% 감면 •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기초로 아이디어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 결정
↓		
창업멘토링	영업점 평가담당자	→ 창업자금 지원이 결정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 등 창업정보 제공
↓		
창업	예비창업자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 창업기업의 업종, 기술사업계획 등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지원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4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017년 8조 8,000억원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 : 8조 7,767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우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 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0.5%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히 30백만원 등
청년창업특례보증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 보증비율 우대(95%~100%) • 보증료 0.3% 고정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 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지식문화창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채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부리창업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중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부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첨단산업) 첨단기술, 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사물인터넷(IoT) 관련기술·제품을 사업화하는 기업 (유관기관 사업선정자)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4-5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보증제도

|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녹색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 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지원 규모

2017년 일자리창출기업보증 4.3조원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44,125억원,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지원 3,008억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일자리 창출기업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과 비교시 10% 이상 또는 20인 이상 고용증가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지원) 지원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확대로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효과와 관련이 깊은 업력, 업종, 고용실적, 기술성, 미래성장가능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일자리창출평가표 평가 결과 3개 이상 항목 충족 기업
고용창출 특별운전 자금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예정)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지원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우대보증 지정 • 보증료 0.2%~0.4% 감면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한도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신규고용 1인당 3~5천만원씩 최대 3억원(10인) 까지 지원	• 고정보증료를 적용 (1.0%)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중소기업 정책정보 : 국번없이 1357 (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의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신규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시간선택제 인력	30백만원 이내

4-6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보증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을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7년 7,000억원

* '16년 10월 현재 지원현황 : 6,645억원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 보증

-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대출, B2B일반자금대출
-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구 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50억원(담보보증 70억원)	30억원
보증료	기준보증료율에서 0.2% 할인	0.5% ~ 3.0%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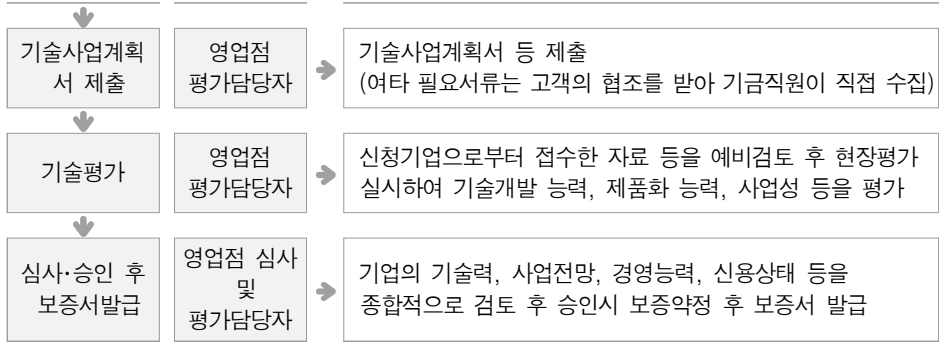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초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Q 전자상거래보증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불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보증제도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에 각각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구매기업	판매기업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리한 물품거래	판매기업 채권관리 업무경감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어음발행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담보확대에 따른 매출증가

4-7

R&D 보증

| 중소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개발 및 사업화연계 R&D 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0,000억원

* '16. 10월 현재 지원현황 : 36,385억원

지원 대상

R&D 개발·사업화를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 준비,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종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개업비, 창업비, 신주발행비, 법인설립비용 등 - (기술개발자금) 인건비 등 자체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 기자재 구입비, 기술도입비, 시험생산시설 건설·운전비 등
사업화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신청기술이 개발완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과제 • 대상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 등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자금

- ▷ 최근 5년 이내 정부 등 R&D과제를 성공한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R&D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R&D과제성공판정표'에 의해 성공판정 받은 과제 또는 최근 5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 공행 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증기맨



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4-8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 '16. 10월 현재 지원현황 : 808건, 1579억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KTRS 또는 KTRS-SM에 따라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 지원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장개척자금)
 -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 창업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 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등록된 특허권만 보증 대상이며, 이는 보증취급과 동시에 반드시 담보(근질권) 취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9

지식재산(IP) 보증

|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와 보증을 연계하여 IP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 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500억원

* '16. 10월 현재 지원현황 : 2,330건, 4,727억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 금융기관(기업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5백만원)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 창업후 7년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기술형창업기업)에 포함되어 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 활용 가능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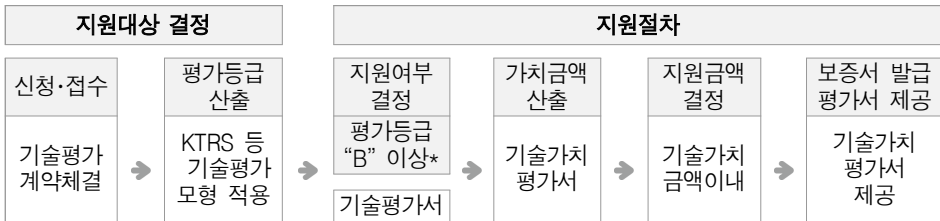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 우수 지식재산(IP) 사업화 기업의 경우 'BBB' 이상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신상표권 등	프랜차이즈,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 그 밖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한 미등록 지식재산(IP)		

4-10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융합(완료)기술의 개발·사업화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 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000억원

* '16. 10월 현재 지원현황 : 2,491건, 11,655억원

지원 대상

기술·산업융합을 진행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중인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융합 진행·완료 여부에 따라 '기술융합개발보증'과 '기술융합사업보증'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 기술융합개발보증
 - ▷ (대상기업) 기술융합 진행(기술도입·연구개발)중인 기업
 - ▷ 기술도입, 연구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술도입자금, 연구개발자금, 시제품 제작자금 등을 지식재산(IP)인수보증, 기업인수보증, R&D보증(개발, 사업화준비단계)을 활용
- 기술융합사업보증
 - ▷ (대상기업) 기술융합 완료 후, 사업화·양산중인 기업
 - ▷ 융합이 완료된 융합제품의 양산을 위한 자금을 R&D보증(사업화단계), 지식재산(IP) 평가보증 등으로 지원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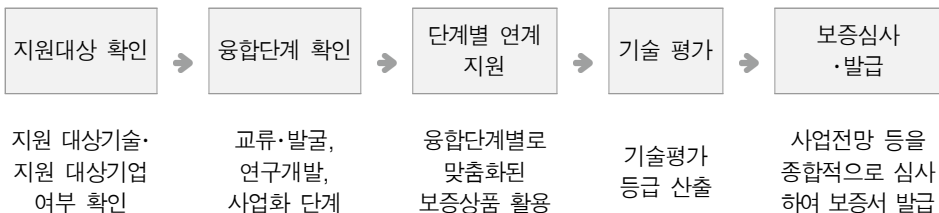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궁금해요! 중기맨



Q 융합의 진행 및 완료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한 판단기준이 있나요?

A 보증 상담·신청시 융합 연관성을 검토하여 융합 진행중인 기업은 '기술융합인증표' 충족여부로, 융합제품 양산중인 기업은 '융합판별표' 충족 여부로 판단

용어설명

융합 :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용화를 이루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기술, 사업 또는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기술, 신사업 또는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

4-11

문화산업완성보증

| 문화상품(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7년 1,000억원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584억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 프로젝트당 30억원 이내(고부가콘텐츠, 한류콘텐츠는 50억원 이내)
 - * 고부가콘텐츠 :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융합콘텐츠
 -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보증금액 결정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평가 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고부가서비스관련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청·접수

연중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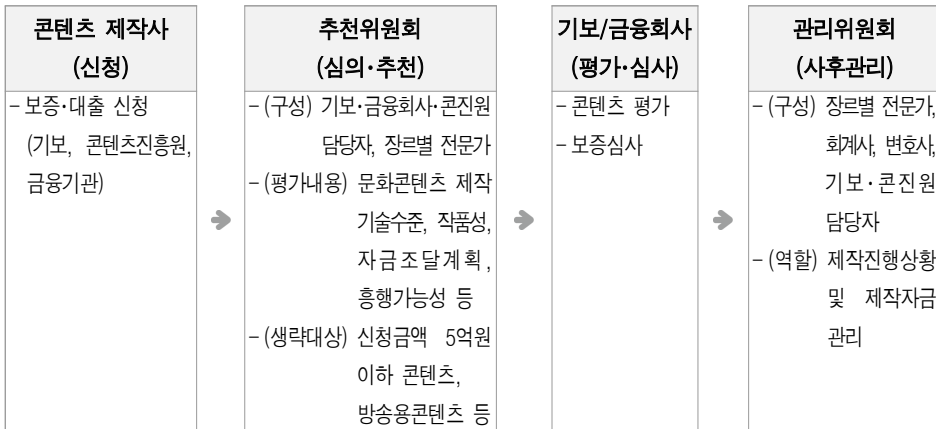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선판매계약서 사본 1부(선판매계약서가 있을 경우)
- 총제작비 예산서(자체 양식)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자체양식)
-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9)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금융지원단(061-900-6065)

궁금해요! 중기맨



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 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방송물납품계약서 등

4-12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제도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2017년 1,000억원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531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 대상기업 : 고부가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작코자 하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산업 영위 중소기업
- 대상자금
 -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 같은 기업당 최고 70억원 이내(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 ① 보증신청금액
- ② 총제작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 (대출취급 금융기관) 제1금융권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콘텐츠제작기획서 (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보증진행 절차 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 기술사업계획서 등 고객 준비서류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 보증심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발급	영업점 평가담당자	▶ 보증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궁금해요! 증기맨



- 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4-13

기술평가

|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 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평가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평가신청 제한기업

-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 평가 ▪ 기술신용등급 산출을 위한 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기술가치평가 :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사업의 기술성과 사업타당성을 평가

4-14

벤처확인평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상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벤처 요건
기술평가 보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신청 제한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평가료 및 수수료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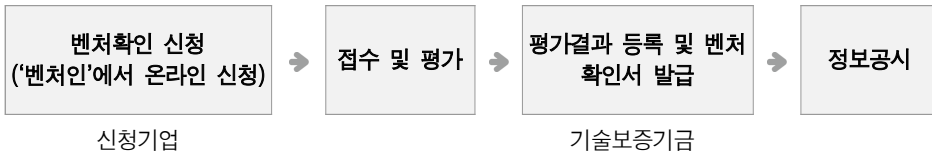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여관업
	55909	그외 기타 숙박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
	68121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2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68129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골프장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게임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96121	욕탕업
	96122	마사지업
	9612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4-15

이노비즈 인증평가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평가(중기청 공고)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 제한기업

-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2)
-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및 수수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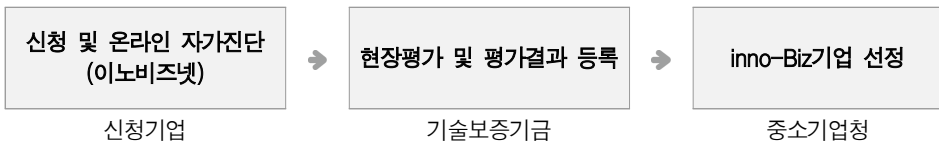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8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궁금해요! 증기맨**Q**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4-16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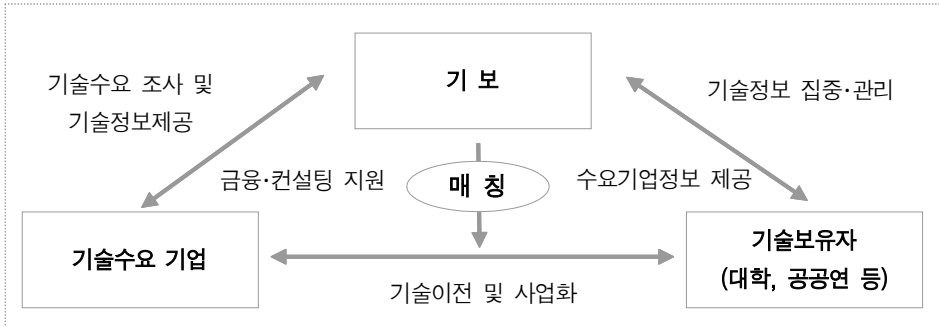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전 중개자로서 기술보유자, 기술수요자 간 기술거래 알선 및 협상과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 전국 모든 영업점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을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융합센터)
 -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을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대기업 등이 보유한 맞춤형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융합센터)
 -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기술융합센터)
 -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문 의 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IP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4-17

녹색인증평가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평가

기술보증기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관련 평가기관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녹색기술제품 확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제품으로 인증 대상을 구분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제품확인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86개 중점분야) 유명기술	녹색산업설비 및 기반 시설의 설치·공사, 녹색 기술 및 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109개 사업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이상인 기업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신청 서류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녹색제품확인
1. 녹색기술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기술(제품)설명서 5. 신청기술 소유권 또는 실시권 증빙자료	1. 녹색사업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신청사업설명서	1. 녹색전문기업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매출비중내역서 및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	1. 녹색기술제품확인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함) 4. 신청기술(제품)설명서 5. 녹색기술제품의 생산 증빙자료 6. 품질경영 및 제품성능 확인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등

처리 절차

- 녹색인증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인증신청 접수 및 심의·발급을 전담하고 인증평가업무는 기보 등 지정된 평가기관에서 담당
 - ▷ 전담기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녹색인증(전문기업 확인포함) 신청을 일괄접수 후 소관부처 지정 평가기관에 평가의뢰
 - * 녹색인증에 대한 심의·의결 등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 평가기관은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인증평가 수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4-18

보증연계투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투자 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미래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450억원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205억원

지원 대상 보증 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단, 녹색성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R&D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 배제
- ▷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이어야 충족
- ▷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지원 내용

- 투자종류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2배 이내,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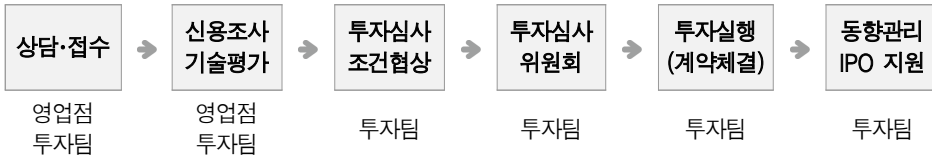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분	기존	변경
투자한도	보증금액 이내	보증금액의 2배 이내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투자팀) 및 각 영업점

처리 절차**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 투자팀 : 02-3215-5960~7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1544-1120

4-19

투자옵션부보증

|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보증을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보증부대출로 Seed Money를 우선 제공한 후, 일정시점 이후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금의 선택으로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입니다.

지원 규모 300억원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159억원

지원 대상 설립후 5년 이내 법인기업으로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 보증비율 : 전액보증(100%)으로 운용
- 보증료 : 0.5% 고정료를 적용
 - * 단, 옵션행사기한(5년) 도과 후에는 일반 보증료를 적용
- 옵션행사가격 결정 : 추정매출액에 의한 예상 주가가치를 산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행사가격을 결정
- 옵션행사시기 및 방법 : 보증실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년간 옵션행사 가능
- 투자전환시 발행되는 신주 : 전환상환우선주

신청·접수

'17.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 1544-1120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 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 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투자옵션계약 체결)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투자옵션계약 체결 및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투자옵션 행사여부 심사 및 신주발행	영업점/투자팀	보증지원 기업중 투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진행후, 승인된 기업에 대해 보증해지 및 신주발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 투자팀 : 02-3215-5960~7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4-20

경영개선지원제도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으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중 기보의 지원으로 경영애로 해소가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여 신규보증지원, 보증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술·경영컨설팅,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17년 300건

* '16년 10월말 현재 지원현황 : 255건

지원 대상

- 기술보증기금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관찰대상기업” 및 “중점관리기업”, 중소기업경쟁력강화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부진기업”, 보증사고관리규정에 의한 “사고유보기업” 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사고발생기업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을 받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지원 내용

- 신규보증지원, 보증 재조정, 기업지도, M&A 또는 기술거래 중개, 기술·경영컨설팅, 기타 경영·기술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
-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신규보증지원	• 신규보증은 일반 신규보증지원절차에 의하여 지원
보증재조정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보증기한, 보증료 등을 조정하여 경영개선 유도
기업지도	• 경영합리화 유도, 생산성 향상 또는 기술개발 지원
M&A 또는 기술거래중개	•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성장한계 극복,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기술·경영컨설팅	•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및 생존력 강화 도모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기타경영·기술지원	• 필요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의해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신청·접수

'17. 1. 2 ~ 12. 29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보증관할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경영정상화계획서

- 신청양식은 보증관할 영업점 문의, 신규보증 신청 시에는 보증신청서류 별도 접수

처리 절차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궁금해요! 증기맨



Q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영개선지원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경영개선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설명

진단컨설팅 : 경험이 풍부한 기술보증기금 컨설턴트가 실시하는 컨설팅 업무로, 경영애로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진단

부실예방진단 :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활동

4-21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대출 1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 내용

경영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재창업자금 지원

-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
 -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 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대출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중소기업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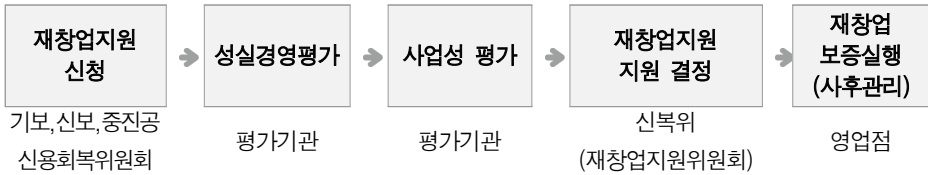
- ▷ 성실경영평가 : 도덕성평가를 위한 기업경영관련 범죄사실 등 조회하여 평가
- ▷ 사업성평가 : 사업지원 타당성 평가

제출 서류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자세한 내용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 재창업재기지원보증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회생관리센터(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궁금해요! 중기맨



- 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 A** 성실경영평가는 최대 채권기관(기보,신보,중진공 채무가 없을 경우는 중진공)에서 평가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Q**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 용어설명

성실경영평가제도란 : 재지지원기관별로 운용 중이던 도덕성평가를 중기청 범좌·근로법령위반 경력조회로 성실경영평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재창업 전 기업의 부도덕성, 범좌경력 등 성실경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 5 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5-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233
5-2.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236
5-3.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239
5-4. 플러스 모바일 보증	242
5-5. 사회적기업 전용 특례보증	245
5-6. 협동조합 특례보증	248
5-7. 채도전 지원 특례보증	250
5-8.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253

5-1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신용보증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보증잔액 17.8조원으로 운용

(단위 : 건/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0월
보증공급	건 수	275,845	350,944	375,150	448,844	394,492
	금 액	63,581	77,859	85,057	106,386	95,033
보증잔액	건 수	829,578	837,659	756,842	833,213	890,878
	금 액	135,148	142,719	144,501	162,423	177,008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

지원 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대여 보증 등
- 보증한도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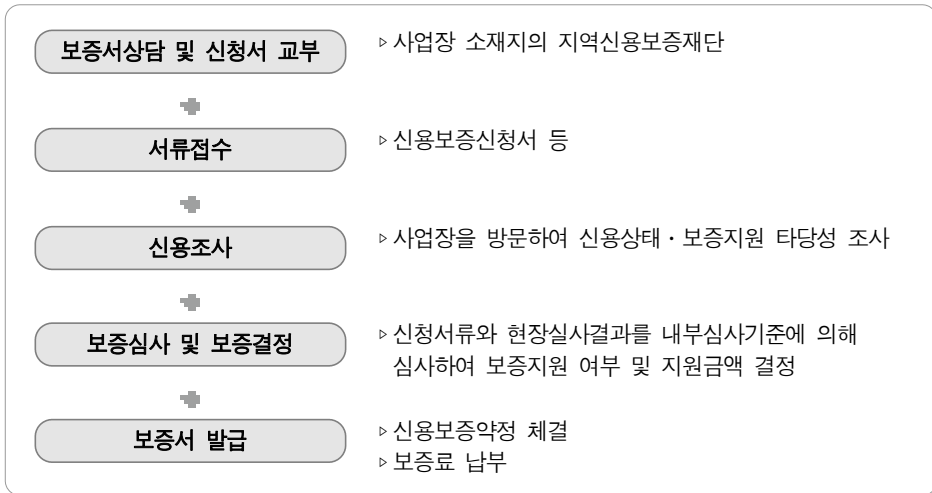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회사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2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재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재해관련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

지원제한업종 예외 기업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용 소상공인정책자금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받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70백만원(단, 제조업은 100백만원)

* 재해관련 피해금액,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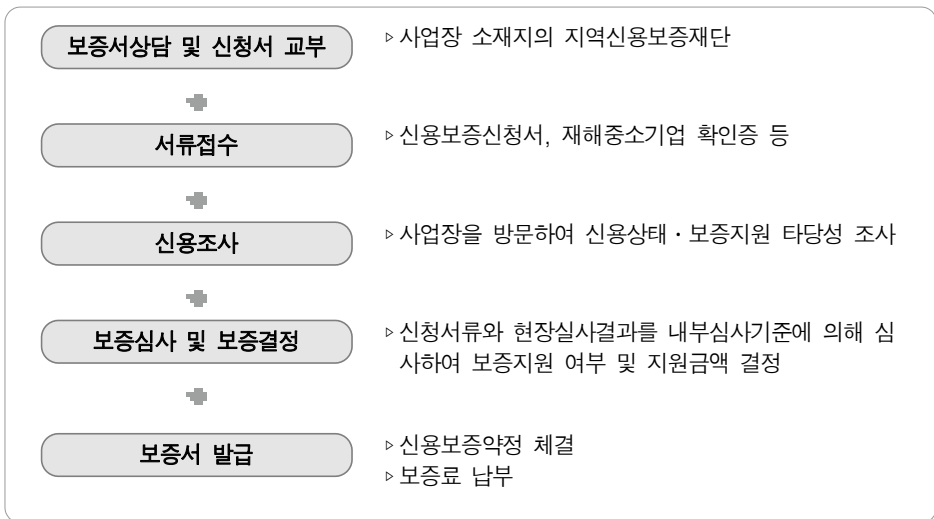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재해 피해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회사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재해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신보,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지원 불가능한가요?

A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
-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하지 않음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권에 신보, 기보 채무 포함
- 위 면책으로 신보, 기보가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

5-3

장애인가업 특례보증

| 장애인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장애인가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가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7년 8.8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가업 요건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회사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장애인확인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처리 절차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장애인확인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업력 6개월 이상" 을 판단하는 업력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로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5-4

플러스 모바일 보증

| 모바일 기반 금융회사 공동지원 신용보증

생업유지로 지역신보 및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바일 기반의 보증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7년 8.8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16년)
신한은행, KEB하나은행('17년 추가 예정)

지원 대상

[모바일보증]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으로서, 실제 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개인기업

[플러스대출] 모바일보증 대출취급 대상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모바일보증] 업체당 최대 20만원 이내 보증지원

[플러스대출] 금융회사 평가결과에 의해 대출지원

신청·접수

-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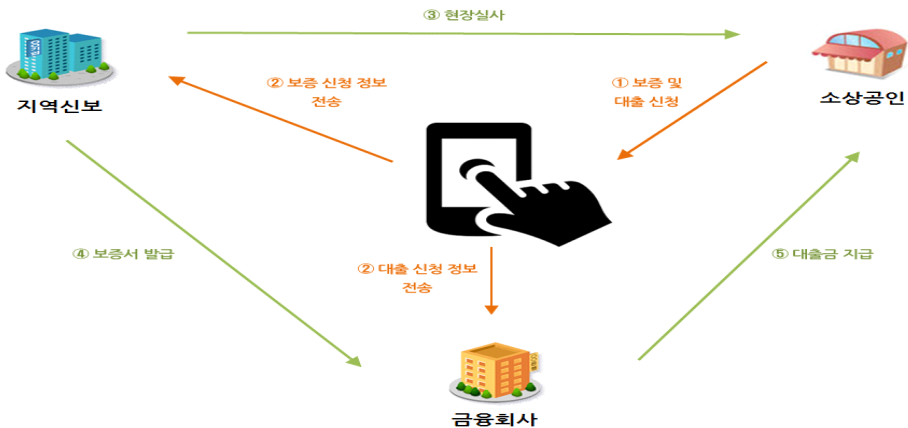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회사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을 이용 중인 개인기업 경우에도 플러스모바일보증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기존 보증금액과 본 모바일보증 금액 포함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보증 지원 가능합니다.

5-5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신용보증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7년 8.8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 취급 금융회사 : 기업은행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득한 사회적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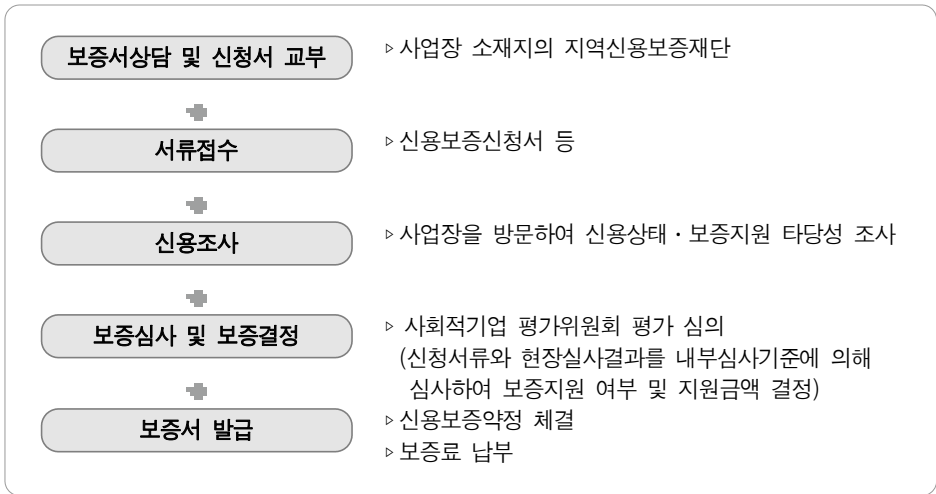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등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국세청 홈택스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금융회사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심사 평가시 사회적가치 충실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기준이 무엇인가요?

A 사회적가치 충실도는 해당 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확대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 지표로 구분됩니다.

- * 계량지표 항목 : 취약계층 고용률, 최근 1년간 근로자 평균급여 등
- * 비계량지표 항목 :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 역량, 이익의 사회적 목적 이용 정도 등

5-6

협동조합 특례보증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신용보증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일반보증 자금('17년 8.8조원 공급)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지원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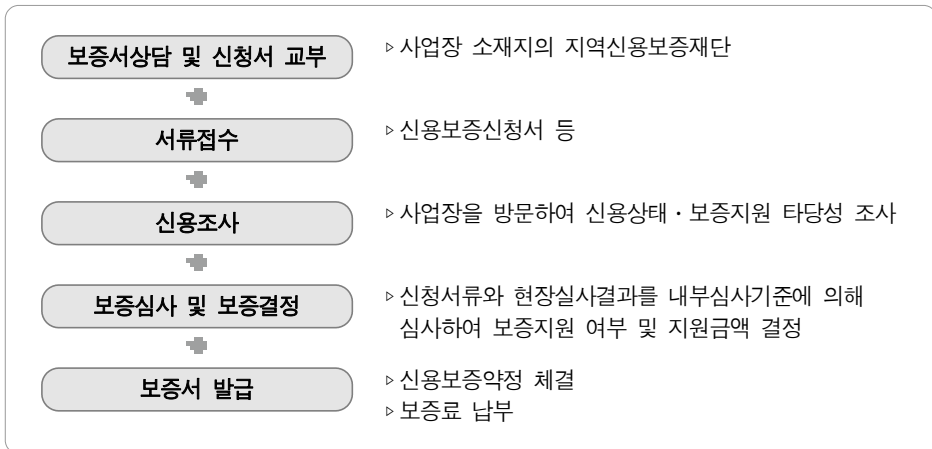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제표 등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국세청 홈택스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금융회사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처리 절차**문 의 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5-7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종결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00억원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 결정된 기업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2천만원 이하시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 생략

대상 요건

<성실실패자>

-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 ✓ 지역신보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가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 ✓ 파산면책결정 확정자 또는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를 완료한 자
- ✓ 지역신보 대위변제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영위하는 기업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

-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심의내용 : 부실발생경위, 사업성, 도덕성, 대표자의 경영의지 등

지원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보증지원

* 업종이 음식·숙박·도소매업인 경우 회생지원보증을 제외한 보증지원한도는 2천만원 이내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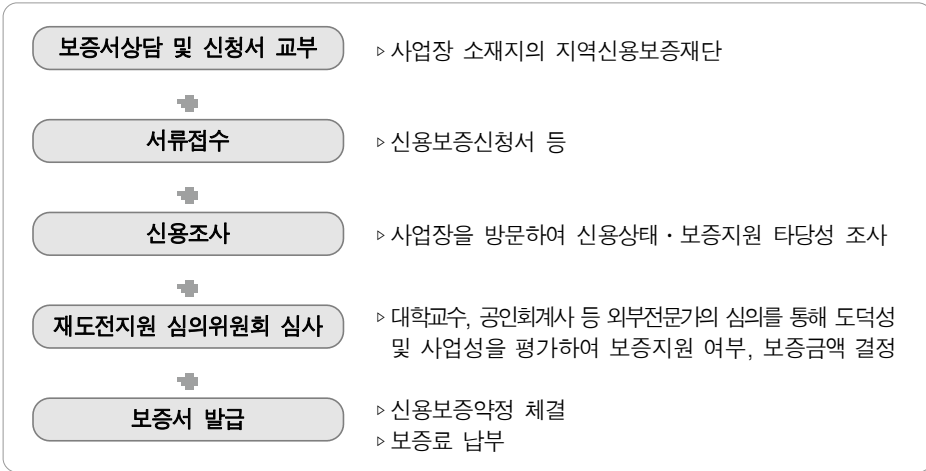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 평가

신청 서류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회사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재기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A 재도전 심의 평가는 총 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의 사업성(제품경쟁력, 영업전략의 확보 및 미래성장성 등), 도덕성(채무상환노력, 체납사실, 법규위반 등), 경영의지 및 경영능력(대표자의 경영의지, 경영능력 및 자금조달·운용계획), 실현가능성(사업재기계획에 대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증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5-8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채무보증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영세기업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단위 : 건/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	누계
보증 공급	건수	32,274	34,597	31,295	233,443
	금액	3,131	3,352	3,077	22,181
보증 잔액	건수	103,913	94,862	103,502	103,502
	금액	8,304	6,763	7,295	7,295

지원 대상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 분	햇살론(자영업자)								
지원목표	10조원('10.7.26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업무위탁	▷ 보증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								
지원 대상	기본요건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 저신용자(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저소득자(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상환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12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한도		<table border="1"> <tr> <th>운영자금</th> <th>창업자금</th> <th>대환자금</th> </tr> <tr> <td>2천만원</td> <td>5천만원</td> <td>3천만원</td> </tr> </table>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2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주택) ▪ 금융거래확인서 ▪ 소득금액 확인서류 ▪ 사업사실 확인서류 								

심사·평가내용

- 금융회사의 거래상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사실 확인서류, 임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금액 확인서류, 변제금납입확인서(회생지원 프로그램 성실히 이행),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등(창업기업), 대부업 채무정보 조회서(대환대출)

처리 절차

업무구분	업무처리 내용	담당기관
보증상담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 대상여부 및 보증금액 상담 ▪ 보증신청자 신용보증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서민금융사
↓		
보증심사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서류 후 지역신보에 송부 * 지역신보 전자보증서를 받고 대출 	서민금융사 (위탁업무 수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영위사실 확인 ▪ 심사기준표에 의거 보증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햇살론소상공인평가표에 따라 한도사정 ▪ 전자보증서 서민금융사에 송부 	지역신보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별첨 '지역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강원 www.gwsinbo.or.kr	본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 (SC은행 3층)	033-260-0001 (033-251-1356)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산업경제진흥원 3층)	033-745-3295 (033-745-3297)
	강릉지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644-1378 (033-644-1351)
	속초지점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 37 (기업은행 속초지점 4층)	033-638-9780 (033-638-9783)
	동해지점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250 (국민은행 2층)	033-534-1411 (033-534-1441)
	태백지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37 (신한은행 태백지점 2층)	033-554-0630 (033-554-0633)
경기 www.gcgf.or.kr	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2,3층	1577-5900 (031-259-7777)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경기 R&D센터 401호	031-888-5454 (031-888-5466)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8번길 7 대송프라자 3층	031-826-9092 (031-826-9086)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서현동) 농협중앙회 분당금융센터 3층	031-709-7733 (031-703-9944)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약대동) 204동 302호	032-328-7130 (032-328-7409)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주엽동) 신한은행 5층	031-968-7744 (031-968-0020)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 (신한은행)	031-482-8401 (031-482-8412)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통복동) 농협 평택시지부 3층	031-653-8555 (031-653-8556)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안양동) 농협 3층	031-387-3525 (031-387-3678)
	남양주시점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평내동) 리치플러스빌딩 502호	031-559-8160 (031-559-8166)
	이천시점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우리은행빌딩 4층	031-635-2514 (031-635-8796)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농협 정프라자 4층	031-366-8070 (031-366-8076)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중동) 골드프라자 A동 8층	031-285-8681 (031-285-8610)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 12층	031-434-8797 (031-434-8798)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51 (사우동) 제일메디칼센터빌딩 601호	031-997-1278 (031-997-1283)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031-543-1737 (031-543-1739)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 (금촌동) 경기빌딩 301호	031-942-7521 (031-942-7568)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경기 www.gcgf.or.kr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탄벌동) 3층	031-767-7100 (031-767-4100)
	양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융합지원센터 3층	031-850-3800 (031-844-7956)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반송동) 드림프라자 1001호, 1002호	031-613-8777 (031-613-8144)
경남 www.gnsinbo.or.kr	본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층 (창원컨벤션센터)	055-212-1250 (055-212-1276)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055-212-1250 (055-212-1275)
	진주지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055-743-5333 (055-743-5888)
	양산지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층	055-364-2181 (055-364-2185)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055-246-1788 (055-246-7260)
	거제지점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055-534-5800 (055-634-5805)
	김해지점	경남 김해시 가락로 105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3층	055-338-2390 (055-338-2396)
	사천지점	경남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중앙회 삼천포지점 2층	055-835-7480 (055-835-7484)
	통영지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중앙회 통영한려지점 3층	055-902-8300 (055-902-8306)
경북 www.gbsinbo.co.kr	본점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7층	054-474-7100 (054-474-7104)
	포항지점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경북경제진흥원2층	054-283-2730 (054-283-2704)
	경산지점	경북 경산시 원효로 15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3층	063-811-0790 (053-811-0793)
	안동지점	경북 안동시 남문로 20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054-854-3300 (054-854-334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중앙로 32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054-777-0140 (054-777-0139)
	영주지점	경북 영주시 번영로 149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054-631-8300 (054-631-8302)
	김천지점	경북 김천시 김천로 154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	054-433-1300 (054-434-1310)
	영천지점	경북 영천시 시장로 4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054-336-6800 (054-336-6900)
	문경지점	경북 문경시 중앙로 14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054-556-7400 (054-556-7404)
	상주지점	경북 상주시 상산로 260 농협은행 상주시지부 3층	054-531-3500 (054-531-3504)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광주 www.kjsinbo.co.kr	본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도천동) 경제고용진흥원1층	062-950-0011 (062-950-0063)
	동구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 하나은행 호남본부 5층	062-236-0045 (062-236-2366)
	서구지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14 새마을금고연합회 2층	062-362-0091 (062-363-0094)
	북구지점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41 삼성디지털프라자 4층	062-576-0091 (062-576-3535)
	남구지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3 광주은행 백운동지점 3층	062-654-8055 (062-654-8059)
대구 www.ttg.co.kr	본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5층(감삼동)	053-560-6300 (053-554-9905)
	유통단지지점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90,1층(산격동)	053-601-5255 (053-601-5176)
	범어동지점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3층(범어동)	053-744-6500 (053-744-9077)
	월배지점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09 2층(진천동)	053-639-4343 (053-639-4146)
	동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405,2층(신서동)	053-982-7500 (053-982-7515)
	중앙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KEB하나은행 3층(남산동)	053-256-0300 053-256-8998
대전 www.sinbo.or.kr	본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5층)	042-380-3800 (042-380-3897)
	동부지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16 (용전동, 삼우빌딩 2층)	042-380-3805 (042-345-0088)
	서부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87 (도마동, 신한은행 도마동지점 2층)	042-380-3806 (042-368-3860)
	북부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3층)	042-380-3808 (042-368-3880)
부산 www.busansinbo.or.kr	본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5층	051-860-6600 (051-816-4551)
	서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강로 1424 (하단동)	051-860-6730 (051-831-1180)
	동부산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07 (신세계프라자빌딩 8층)	051-860-6750 (051-755-6030)
	북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223 (괘법동)	051-860-6700 (051-316-6788)
	중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87-1 (남포동 6가)	051-860-6800 (051-242-6878)
	남부산지점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4 2층	051-860-6780 (051-611-8944)
	부산진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 부산은행 범일동지점 7층	051-860-6680 (051-714-2780)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서울 www.seoulshinbo. co.kr	본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577-6119 (02-3278-8114)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1577-6119 (02-3278-8166)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1577-6119 (02-3278-8136)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성수아크벨리 104-108호	1577-6119 (02-3278-8140)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NIPA빌딩 1층	1577-6119 (02-3278-8172)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 파레제페빌딩 302호7	1577-6119 (02-3278-8146)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B/D 6층	1577-6119 (02-3278-8134)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 파트너스타워 2차 203호	1577-6119 (02-3278-8168)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53 선진빌딩 6층	1577-6119 (02-3278-8174)
	강서지점	서울시 양천구 등촌로 216 SC제일은행 등촌동지점 2층	1577-6119 (02-3278-8170)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 국민은행 중화동지점 4층	1577-6119 (02-3278-8144)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1577-6119 (02-3278-8140)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2층	1577-6119 (02-3278-8148)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성원빌딩)	1577-6119 (02-3278-8164)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 신삼송빌딩 2층	1577-6119 (02-3278-8138)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603호	1577-6119 (02-3278-8191)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1577-6119 (02-3278-8188)
울산 www.ulsanshinbo. co.kr	본점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3층	052-289-2300 (053-289-8970)
	남울산지점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신정동) 농협 공업탐지점 2층	052-283-0101 (052-266-7994)
	동울산지점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052-281-8100 (052-281-8105)
	서울산지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 2층	052-285-8100 (052-285-8105)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인천 www.icsinbo.or.kr	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577-3790 (032-260-1570)
	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3층 (부평동)	032-508-1954 (032-508-1960)
	남부지점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41, 2층 (주안동)	032-889-3611 (032-889-3615)
	서인천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2층 (심곡동, 경인빌딩)	032-569-0321 (032-569-0325)
	계양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임학동, 훼밀리빌딩)	032-542-3911 (032-542-3918)
	남동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9층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1500 (032-260-1571)
	중부지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98, 2층 (송림동)	032-766-8090 (032-766-8094)
전남 www.jnsinbo.or.kr	본점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전남신보빌딩 3,4층)	061-729-0600 (061-729-0608)
	목포지점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061-285-0745 (061-285-0747)
	담양지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66 (광주은행 담양지점 2층)	061-729-0550 (061-729-0559)
	보성지점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1 (농협은행 보성군지부 3층)	061-729-0570 (061-729-0579)
	나주지점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에스타워 4층)	061-729-0540 (061-374-0549)
	여수지점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5층)	061-807-3600 (061-807-3613)
	해남지점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99, 3층 (KB국민은행 건물 옆)	061-802-2300 (061-802-2305)
	영광지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94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3층)	061-729-0590 (061-729-0599)
	광양지점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광양지점 2층)	061-794-3860 (061-794-3865)
	완도지점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24-1 (KT완도지사 2층)	061-555-8800 (061-555-8805)
전북 www.jbcredit.co.kr	본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1층)	063-230-3333 (062-230-3377)
	군산지점	전북 군산시 조촌안3길 20(조촌동) (군산상공회의소 1층)	063-452-0341 (063-452-0355)
	정읍지점	전북 정읍시 중앙1길 76(수성동) 정읍새마을금고 2층	063-533-6411 (063-533-6416)
제주 www.jeusinbo.co.kr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KT&G 4층	064-758-5740 (064-758-5748)
	서귀포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신중로 50, (KT 신서귀포빌딩 1층)	064-733-8133 (064-733-8136)

재단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
충남 www.cnsinbo. co.kr	본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530-3800 (041-541-9830)
	공주지점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5 (구, 공주시청 별관 3층)	041-858-4701 (041-858-4704)
	서산지점	충남 서산시 고운로 168 (신한은행 2층)	041-668-8871 (041-668-8879)
	천안지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622-9831 (041-622-9830)
	보령지점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29 (궁촌동 339-2)	041-933-9831 (041-933-9879)
	논산지점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7-10 4층	041-733-7161 (041-733-7165)
충북 www.cbsinbo. or.kr	본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043-249-5700 (043-237-0362)
	충주지점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00	043-249-5760 (043-856-9064)
	남부지점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043-249-5780 (043-733-9714)
	제천시지점	충북 제천시 풍양로 92	043-249-5790 (043-651-910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3층,14층,15층 (우)35220

전 화 : (042) 480-4201~2 / 팩 스 : (042) 480-4007,4008

홈페이지 : www.koreg.or.kr

대표전화 : 1588-7365



제 6 장 기업은행

6-1. 2016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263
6-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265
6-3. IP사업화자금대출	266
6-4. IBK창조기업대출	268
6-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270
6-6.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272
6-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274
6-8. IBK문화콘텐츠대출	275
6-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277
6-10. IBK시설투자대출	278
6-11. 토지분양협약대출	280

6-1

2016년 중소기업대출 지원현황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요 상품

구 분	주요 대출상품	상품 개요	비 고
우 수 기 술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기보의 기술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우수 IP보유기업에 자금지원	
	IP사업화 자금대출	·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IBK창조기업대출	· R&D과제 성공수행 기업 및 성장·기술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에게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평가기반 무보증신용대출	·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또는 일반기술평가등급(기업은행 자체평가)에 따라 금리 상한선을 차등 운용하여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에 저리로 자금지원	
수 출 입 지 원	수출기업육성 자금대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연계한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약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지원	
문 화 콘 텐 츠	IBK문화콘텐츠 대출	·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고부가서비스 산업 지원대출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지원	

구 분	주요 대출상품	대출 용도	비 고
시 설 투 자	IBK시설투자대출	·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토지분양협약 대출	·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고, 총 분양금액 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기업에 자금지원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111

6-2

IP보유기업 보증부대출

|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게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지원 대상 다음 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1. 기술보증기금
 - (1) 기술보증기금의「기술사업평가등급」BB등급 이상
 - (2) 기술보증기금의「IP 가치평가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2억원 이상
2. 신용보증기금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1억원 이상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포함)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동일인당 최고 100억원 이내

대출 기간 5년 이내 (수시로대출의 경우 1년 이내)

담보 조건 보증특약이 부여된 90%이상 부분신용보증서

우대 사항 기술평가료 지원 : 기업 당, 기술평가료 500만원(기보), 150만원(신보) 은행 지원(부가세포함)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6-3

IP사업화자금대출

| 기업이 보유한 IP를 담보로 자금지원

담보력은 약하나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1,500억원

지원 대상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점검항목’ 및 ‘기술등급’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지원대상 점검항목)

- ▶ 기업은행 신용평가등급 BBB+ 등급 이상 기업
-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의, 주의, 경보)이 아닌 기업
- ▶ 부채비율 400% 미만 기업
- ▶ 최근 2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시현하지 않은 기업
- ▶ 총자산 5억원 이상 기업
-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또는 분기별 과거 1년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기술등급) 기업은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TCB평가서 상 기술등급 T4 이상 판정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한도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로 최대 10억원 이내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 단,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서 상 내용연수 이내에서 가능

담보 조건 특허기술 가치평가금액의 40%를 주담보로 인정

우대 사항

- 특허기술 가치평가 비용(650만원) 지원
- 최대 연 1.0%p 이내 추가 금리감면 가능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6-4

IBK창조기업대출

|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성장잠재력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자금관리 및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과제 성공기업 및 기술·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상품 한도 6,000억원

지원 대상

- ◆ IBK창조기업 : 기업은행의 'IBK창조기업' 선정기업
- ◆ 성공기업 : 전문평가기관*이 추천한 R&D성공기업 또는 보증기관의 가치·기술평가등급** 우수기업
- ◆ 일반기업 : 기업은행에서 정한 '기술력 인정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 신보의 가치평가등급 FV1~2등급(FV1~9등급 中) 혹은 기보의 기술인증등급 BBB이상 또는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기술신용정보 BB- 이상인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한도

구 분	운전자금	시설자금
IBK창조기업	동일인당 15억원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기업	동일인당 10억원	동일인당 30억원
일반기업		

대출 기간 운전자금(최대 5년), 시설자금(최대 15년)

우대 사항

구 분	IBK창조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금리감면	연 1.2%p 이내	연 0.5%p 이내	연 0.3%p 이내
소요운전자금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되거나 금차 기술사업화로 매출신장 예상 시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소요시설자금	100% 범위 내 운용	90% 범위 내 운용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6-5

기술평가기반 무보증 신용대출

| 우수기술 보유창업기업에 무보증·무담보로 대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소요자금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합니다.

상품 한도 2,000억원 (동일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	신용등급	기술등급	기술신용등급
한국기업데이터 기술보증기금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BB+ 이상	T6 이상	B- 이상
	B+ ~ BB	T4 이상	
IBK기업은행	BB+ 이상	T6 이상	-
	B+ ~ BB	T4 이상	

■ 창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②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창업일

- ① 법인기업이면 법인설립등기일
- ② 개인기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등록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7년 이상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단순 전환한 기업
- ✓ 휴·폐업 또는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운전자금

담보 조건 해당사항 없음 (무보증·무담보 조건)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363

6-6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 유관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강소기업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수출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 ◆ 수출실적이 USD 1,000,000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이상인 기업
- ◆ '수출강소기업'으로 본부에서 선정한 기업
- ◆ 중소기업청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및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 ◆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한 기업6
-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 관세청으로부터 'AEO공인'을 획득한 수출 중소 및 중견기업 또는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수출 중소기업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대출 한도

○ 운전자금

수출실적	대출한도
1백만불 이상 ~ 3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5% ×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을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
3백만불 이상 ~ 5백만불 미만	수출실적의 20% × 대출취급일 최고고시 매매기준을 또는 7억원 중 큰 금액
5백만불 이상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시설자금 : 소요 시설자금 범위 내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7

수출입기업유동성 지원자금대출

| 수출입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악화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환율변동으로 일시적인 자금곤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중소기업

* 조기경보기업(예비주위, 주위, 경보기업), 연체종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주위 거래처 및 관리거래처)은 여신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수입결제자금, 수출물품의 원자재구입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등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기간	1년 이내. 다만, 분할상환식 신용보증서(부분신용보증서 포함)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 이내
대출한도	동일인당 5억원 이내(본부 승인여신은 승인금액 범위 내)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6756

6-8

IBK문화콘텐츠대출

|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 상품입니다.

1. IBK문화콘텐츠 특례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업무협약에 의한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서(90%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보증한도 소진 시 또는 대위변제로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다만, 협약 후 3년 이내에는 적용제외)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10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0%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3년간 0.2%p 우대

2. IBK문화콘텐츠 완성보증부대출

지원 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로부터 용자추천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서(95% 부분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신용보증서 보증기간 범위 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으로 최대 50억원 이내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 ✓ 보증비율 : 95% 부분신용보증서
- ✓ 보증료 : 0.2%p 우대

3. IBK문화콘텐츠 담보부대출

지원 대상 '문화콘텐츠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부동산 및 기타담보 (신용보증서 제외)를 제공한 기업

지원 분야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대출 한도 여신가능액×110% 이내. 다만, 본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취급 가능 (최대 130%)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6322-5205

6-9

고부가서비스산업 지원대출

|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영위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주요내용

*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용역공급(프로젝트)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을 보증하는 제도

▶ 프로젝트계약 후 최종 결제대금(보통 계약대금의 50~60%)을 계약완수 시점에 지급 받는 시장관행(집중지불방식 heavy tail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수요와 대금결제 간의 금융 갭(gap) 해소

지원 분야

운전자금 (수시로대출 제외)

대출 기간

1년 (기간연장 시 최대 8년 이내)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

담보 조건

담보의 필요 : 기술보증기금 85% 이상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 방법

일시상환

* 보증서상 우선상환 보증특약 문구 부여되는 경우 프로젝트 완성 후 수령하는 수익금으로 대출금이 자동 상환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6322-5205

6-10

IBK시설투자대출

| 시설 취득시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지원 내용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사업장부지자금 :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 사업장매입자금 :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 경락부동산자금 :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 건물자금 :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 기계자금 :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수입기계자금 :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 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 사업장임차자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용자 조건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문의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6-11

토지분양협약대출

| 토지분양 관련 소요자금 지원

정부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 포함)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 대하여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타행 토지분양협약대출의 대환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당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이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전매 포함)받고, 총 분양금액(계약금 포함)중 분양기관별 소정비율 이상을 납부하여 동 분양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중소·중견·개인기업(예비창업자)

대출 한도

별도 한도제한 없음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 가계 : 가계일반자금대출 (예비창업자에 한함)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단, 외화대출 : 8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 가계 : 5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유의 사항

IBK기업은행과 토지분양협약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을 제외하고는 토지분양협약대출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문 의 처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2



제 7 장
한국산업은행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282
7-2. 온렌딩대출	306

7-1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기업금융, 국제·투자금융 및 컨설팅서비스 지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회사채 주선 및 인수,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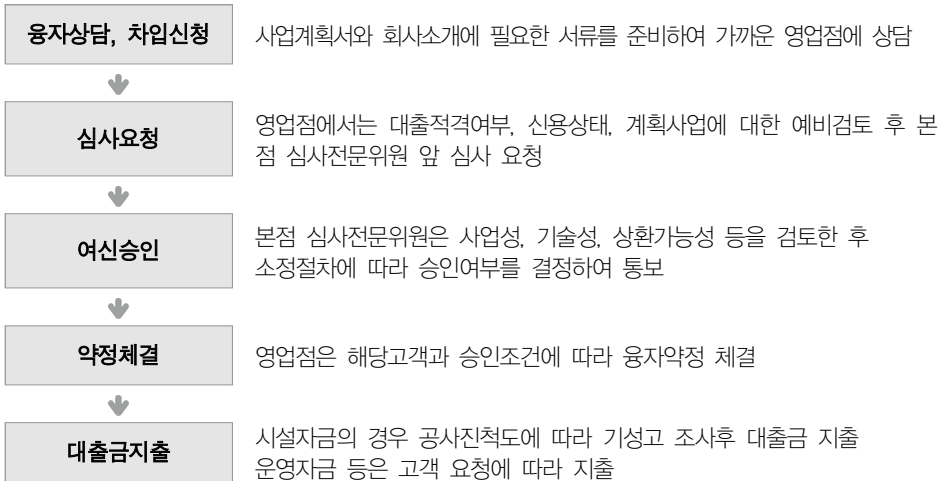
지원 분야

- 기업금융 지원
 - ▷ 기업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신축, 매입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자금
 - ▷ 원재료 구입 등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 ▷ 재정·기금 및 보증
 - ▷ 수출입금융(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 국제·투자금융 지원
 -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국제금융 주선
 -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M&A 업무,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PE업무
 - ▷ 파생금융상품,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등
- 컨설팅서비스 지원
 - ▷ 성장지원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Turn-Around 컨설팅 등

대출 조건

- ✓ 대출기간
 - * 시설자금은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통상 8년 이내 (최대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로 결정(최장 10년)
 - * 운영자금은 3년(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로 운용되며,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 ✓ 대출금리
 - * 수시 고시되는 자금별, 통화별,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금리 결정
 - *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 대출통화
 - * 원화, 외화(US\$, ¥, EUR) 중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 * 중소기업의 대출에는 통화전환옵션이 자동 부여되고, 일정 수수료 부담후 통화전환 가능

여신 거래 절차



문 의 처

- 기업금융 지원 : 각 영업점
- 국제·투자금융 지원
 -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발행시장실
 - ▷ 국제금융 주선 : 발행시장실
 -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 발행시장실
 - ▷ M&A 업무 : M&A실
 - ▷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 벤처금융실
 - ▷ Private Equity 업무 : 사모펀드실
 - ▷ 파생금융상품 : 금융공학실
 -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 금융공학실
- 컨설팅서비스 지원 : 컨설팅실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참고]

한국산업은행 주요 상품안내

I. 기업금융상품

1. 시설자금 상품

□ 일반시설자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설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토지 및 건물 구입자금 ▸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 기존시설의 개보수 자금 ▸ 타금융기관 상환용 시설자금 ▷ 기술개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 특수용도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직접투자자금 ▸ 공장(사업장) 인수자금(경락자금 포함) ▸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인수자금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 10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3년 이내 포함)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금리 (기준금리+스프레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 CD 또는 산금채유통수익률 ▸ US\$, ¥, Euro : LIBOR

2. 운영자금 상품

□ 일반운영자금

대출대상	▷ 기업의 경상적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 ▸ 단, 만기일시상환방식은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대출형식	▷ 일반대출, 사모사채인수
대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전 소요자금의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타 금융기관 운영자금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 단, 당행 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기업은 (추정매출액-감가상각비)의 50% 적용가능

□ 단기운영자금

구 분	약 정 기 간 (개별대출기간)	대 출 대 상
당좌대월	2년 이내	▷ 신용 및 거래상태가 양호한 당좌예금 거래고객
어음할인	2년 이내 (대기업 180일, 중소기업 1년이내)	▷ 실제 상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약속어음 또는 인수필 환어음
기업구매자금 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 거래중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전자방식 외상 매출채권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하고 당해 매출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판매기업(협력기업)
통장식외화 한도대출	1년 또는 2년	▷ 수출입거래 등으로 정상적인 외화수요가 있는 당행 신용평가등급 B ⁺ 이상 기업
미래채권 담보대출	2년 이내 (180일 이내)	▷ 구매기업이 추천하는 협력기업에 물품납품 이전에 생산자금을 지원
다모아 플러스대출	2년 이내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다모아 기업예금(연결계좌)에 수시 인출·상환이 가능한 원화 한도대출 연계
단기한도대출	1년 이내 (1,2,3,4,5,6개월)	▷ 단기간(6개월내에서 월단위)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터넷을 통한 신규 및 연장 가능)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구 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미래채권담보대출
차 주	협력기업	좌동
지원자금	납품자금	생산자금
용자시기	납품완료시	발주시
용자금액	매출채권 범위내	발주금액의 80%이내
담 보	확정매출채권	신보서(장래 매출채권)

3. 특별자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방법	금리우대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 성장동력확충 (미래성장동력, 첨단융합산업등)	대출 및 투자	원화 △0.3%P (중소·중견 △0.6%P) 외화 △0.1%P (중소·중견 △0.2%P)
	▶ 서비스산업 (지식, 유망 서비스산업 등)		
	▶ 경쟁력강화 (생산성향상 투자지원 등)		
	▶ 지역경제활성화 (지방 중소·중견기업 등)		
	▶ 고용창출산업 (고용우수기업지원 등)		
	▶ 사업재편 (사업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추진기업)		
	▶ 해외직접투자지원 (해외진출지원)	원화 △0.2%P (중소·중견 △0.5%P) 외화 △0.1%P (중소·중견 △0.2%P)	
파이어나어 프로그램	▶ 미래선도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투자	시설 원화 △0.6%P 외화 △0.2%P 운영 원화 △0.3%P 외화 △0.1%P
동반성장대출	▶ 대기업 협력 중소·중견기업	대출	대기업 예치금 이자 수익분을 감안하여 금리감면 (대기업별 협약사항에 따름)

4. 정책성 특별자금

구분	지원대상	지원방법	비고	
기술평가 (TCB)기반 기술금융 프로그램	▶ 기술력 우수한 벤처·중소기업 ▶ TCB(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1~T4' (‘양호’이상) 보유기업	대출 및 투자	신용지원	
설비 투자 펀드	안전	▶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및 안전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1.0%P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 계열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 ▶ SOC사업 등 대형투자프로젝트 ▶ 신성장 유망분야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전통 주력산업 ▶ 중국진출지원	주식·주식관련채 인수 원칙 (단, 투융자 복합 금융 및 회사채, 대출 지원 가능)	건별·업체별 지원한도 제한 없음	

5. 재정·기금 상품

기금명	차입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원부문
재정자금	기획재정부	10~20 (5)	선박현대화 지원사업, 복합화물터미널건설,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건설 등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10 (1~5)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 자금, 경영안전자금, 사업전환자금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4~12 (2~5)	관광숙박시설건설 및 개보수, 국민관광시설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1M~10	시설재수입, 수입재구매, 해외수주지원
		1~10	해외기업M&A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기업은행	5(2)	응용기술개발지원(일반, 기술담보)
정보통신기반조성자금	중소기업은행	5(2)	IT설비투자, 초고속공중망구축 등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자치단체	3~8 (1~3)	자동차, 정보화, 기술개발, 창업지원, 경영안정지원 등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한국에너지공단	3~15 (1~5)	절약시설설치, 집단에너지공급,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석유사업기금	한국석유공사	15(5)	도시가스배관
환경개선지원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3)	오염방지시설설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산업재해예방기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3)	산업재해 예방사업
재활용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10 (2~3)	재활용산업, 폐기물자원화, 기술개발, 유통판매지원
가스안전관리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4~8 (1~3)	도시가스시설개선, 가스유통구조 개선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10(5)	직원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	천연가스공급시설
전력산업기반기금	한전 전력기반조성 사업센터	8~35 (3~5)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축산발전기금	농협중앙회축산 발전기금사무국	1~10 (1~5)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 종합처리장 등

기 금 명	차 입 처	대출기간 (거치기간)	지 원 부 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1)	장애인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폐광지역대체 산업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10(5)	시설 및 운영
환경산업육성자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7 (2~3)	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8(3)	특정물질(대체물질)의 제조시설자금

6. 보증 상품

채무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KDB가 그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사채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발행하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하는 업무 ▷ 차관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차관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외채무에 대하여 KDB가 외국대주(또는 그 지정인) 앞 대외외화표시 지급보증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관련 지급보증 ▷ 기타외화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외화표시 지급보증 등 채무보증 및 신용장개설을 제외한 모든 외화지급보증
해외건설 보증 (이행성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Bid Bond) ▸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보증료를 (대여료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증료를 + 영업마진(고객신용도, 보증상품 등에 따라 차등적용)

7. 수출입금융 상품

수입 신용장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방식으로 수입물품 결제를 진행하는 고객 수요에 따라 수입신용장 발행 · 일람불, 기한부신용장 · 특수신용장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농축수산물 수출제도를 활용한 분할지급신용장(최장18개월이내) (GSM-102 프로그램) : 미국 생산품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미국농무성 (USDA) 연계은행이 결제대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
무신용장 수입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송금 결제방식으로 수출상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및 B/L사본, 수입 신고필증 등을 제시한 후 1년이내 외화 수입대금 결제용 자금대출 · 승인가능통화 : US\$, ¥, € · 대출기간 : 최장 1년(360일기준) 이내로 함(만기 원리금일시상환)
수출 환어음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수출계약서(D/P, D/A 조건 등)에 따라 선적 완료하고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매입(추심) · 수출(내국신용장 포함)환어음 매입(추심) ▷ 수출신용장 관련 서비스 · 수출신용장 통지, 양도, 확인
무역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D/P, D/A조건 등)에 의해 물품, 용역 등을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고객 앞 선적전 무역금융(내국신용장 제도, 무역어음 대출) 지원
KDB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B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상이 선호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임 · 양질의 Credit Line과 Global Network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기한부신용장 개설 지원 ▷ 저리의 무역금융 자금 확보로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지원 ▷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합한 대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거액 우수고객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및 금리 우대 · Nego 및 결제대전의 F/X Deal 연계 또는 환율우대 서비스 제공 · 수출입 통합한도 운용을 통해 수입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출 거래 및 수출한도 여유분에 의한 수입거래 가능 · 당일 접수된 신용장개설 신청건은 당일중 대외 전문발송

[문의 : 무역금융실]

II. 국제·투자금융상품

1.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기업의 신인도 제고
 - 신용평가회사의 공인된 평가등급이 필요한 공모회사채 발행은 발행자체로 금융 시장에서 고객위상이 올라가게 됨.

- 거액의 장기자금을 시장금리로 조달
 -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발행은 대출보다 유리한 금리로 거액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
- 자금의 용도와 만기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음
 - 고객의 필요에 따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등의 자금용도와 만기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음
- 최적의 자금조달을 위한 맞춤발행이 가능
 - 시장여건을 감안, 다양한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발행구조의 선택이 가능함
- 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발행절차	비고	담당	시기
대표주관계약	대표주관사선정, 인수단 구성 협의	고객/당행	D-21
Due Diligence	기업실사 진행	당행	D-18~13
이사회 결의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통보	고객	D-8 이전
최초 인수계약서 체결 및 사채모집위탁계약 체결	주관사-발행시간 계약	고객/인수단	D-8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금융감독원 신고	고객	D-8
수요예측	기관투자자 투자 참여	당행	D-5~4
정정신고서 제출 및 최종인수 계약 체결 (수요예측 결과 반영)	변경 내용 반영	고객/당행	D-4
청약, 납입	채권 발행 및 대금 납입	인수단	D-day

2. 해외공모외화채권 주선 및 인수

- 해외공모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 장기자금 조달 용이
 - 해외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형태로 발행(국내채권 : 만기 3년)
- 투자자 Base의 확대
 - 한정된 국내채권 투자자들에 비해 국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효율적 자금 조달 가능
- 대규모 자금 조달이 원활
 -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발행의 기재금액은 대부분 1억불 이상

- 국내 신용등급 향상에 긍정적 영향
 - 국제채권발행을 통해 국내·외 인지도 향상, 자금력 확충, 차입원 다각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신용등급에도 긍정적 효과 유발 가능
- 해외공모외화채권 발행 절차

단계	절차	수행작업	업무파트
1단계	신용등급 획득	회사재무 추정자료 작성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자료수집 및 Presentation 작성	
		신용평가사와 면담	
		경영진 면담	
		신용평가사 자체 분석	
		추가자료, 보완설명 등 사후 작업	
2단계	실사 및 주요 계약서 작성	발행사 신용등급 부여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주간사와 협의하여 법률고문, 회계법인, Agent 등 선정	
		정밀실사를 위한 예비 질의서 회사 앞 발송	
		정밀실사 및 기재취지서 작성 개시	
		증권거래소 등록 작업 개시	
		계약서 작성	
3단계	마케팅 및 로드쇼	필요 인허가 취득	기업금융실(RM), 발행시장실(DCM), 해외점포(Sales), 조사부(Research)
		예비 기재취지서(Red) 인쇄	
		리서치 자료 배포	
		로드쇼용 Presentation 등 자료 작성	
		로드쇼 기획 및 일정수립, 투자자 면담 주선	
		로드쇼 진행 중 투자자 면담 (대면 또는 컨퍼런스 콜), Luncheon presentation 등 실시	
4단계	발행가격 결정, 채권 배분 및 결제	발행계획 공식 발표	발행시장실(DCM), 해외점포(Sales), 자금운용실 (Trading Desk)
		잠정 기재취지서 (Red Herring) 배포	
		예상 금리 Guidance 설정	
		주문접수	
		발행자와 가격조건 협의	
		투자자 앞 채권 배분(Allocation)	
지표채권 수익률 결정 및 발행 가격 결정			
서명식			
채권 결제(Billing & Delivery)			
최종 기재취지서 (Offering Circular) 배포			

[문의 : 발행시장실]

□ 해외직접투자 절차



3. ABS 발행 및 신용공여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고객)가 보유자산(유동화자산)을 모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한 후 SPC가 이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는 것임 ▶ 유동화 대상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의 창출 및 시장평가가 가능하고 SPC앞 양도할 수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일반채권, 주책저당채권 등임
특징 및 효과	▶ 유·무형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상품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 패턴을 다양하게 구성 가능함
발행 조건	▶ ABS발행 만기구조, 금리 및 신용공여약정 기간, 금리 등의 조건은 발행구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동화계획 등록전 고객과 협의 결정

□ ABS 발행 절차

단계	절차	수행작업	시기
1단계	고객의 보유자산 분석/ 타당성 조사	고객 / 당 행	1개월 정도 소요
2단계	ABS발행구조 설계 (당행,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당행,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 SPc 앞 양도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자 앞 발행 가능한 선순위 채권의 규모, 만기등 결정 - 고객이 인수하는 후순위채권규모, 하자가 있는 양도 자산에 대한 고객의 담보책임 등 리스크 보완방안 결정	
3단계	신용공여 및 수탁업무 계약	당 행 - 신용공여 : 당초 설계된 ABS의 현금흐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대출실행으로 선순위채권의 원리금 상환 재원을 보강하는 조치로 유동화 계획을 등록하기 전에 신용공여한도 약정 체결이 필요 - 수탁업무 : 채권 원리금상환 등 SPc업무 대행	
4단계	금감원 앞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당 행	D-10
5단계	금감원 앞 자산양도등록 및 발행신고서 제출	당 행 - ABS채권 인수 또는 매출(당행)	D-day
6단계	ABS 발행		D+6
7단계	사후관리	- 기초자산에 의한 원리금회수 관리 - 일시적 자금부족시 신용공여(대출) 실행 등	

[문의 : 발행시장실]

4. M&A 업무

<p>M&A 주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관련 자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양수도, 합작사업 등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M&A 관련 금융주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의 목적과 형태,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금융주선 서비스 제공
<p>M&A 특 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성장전략 및 구조조정전략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자의 신규시장 진입시간 단축 ▸ 피인수기업의 인력, 기술, Know-How를 단시간 내에 습득 ▸ 한계기업의 퇴출전략 등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기업가치의 평가, 협상전략의 수립, 법률문제의 검토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기관의 자문용역 병행 필요
<p>M&A 절 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의뢰 : 절차 및 수수료 협의, 자문계약 체결 ▷ M&A전략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목표 및 전략의 규명 ▸ 업계 현황분석 및 M&A 타당성 검토 ▸ M&A 전략수립, 세부 실행계획 작성 ▷ 목표기업의 선정 및 접촉과 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가치 평가, 가능성 타진 ▷ 기본의향서 교환 : 거래조건, 가격결정방법 등 ▷ 정밀실사 ▷ 협상 및 계약체결 ▷ 대금지급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대금 수수 및 정부 인허가 등 법적절차 완료 ▸ Post M&A 업무수행 등 사후관리
<p>관련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 (주로 회사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관련)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관련)

[문의 : M&A실]

5. 주식 및 주식관련채 투자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에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기업 ▷ M&A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국내/해외 기업 ▷ 프로젝트 형태의 단위 사업 운영을 위하여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투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투자 ▷ 주식관련채권 ▷ 프로젝트투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주/우선주 등 ▷ CB, BW, EB 등 ▷ 특정 사업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 투자계약증권 형태 ▷ 투자대상별로 최적화된 별도의 구조화 투자상품 제공
투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별 개별 합의

[문의 : 벤처금융실]

6. Private Equity 업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
PEF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v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능력이 충분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비공개) 자금 모집 ▷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 회피 가능, 다양한 펀드 구조 설계가능 ▷ Equ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투자이익 실현을 위하여 주로 비상장 기업의 지분증권 등에 투자가 이루어짐 ▷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 고도의 전문가에 의한 투자로써 성과보수체계 채택 등을 통해 운용자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해소
PEF 업무 F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설립 ▷ 투자대상 발굴 (다양한 Network를 통한 Deal Sourcing, 예비검토 및 투자여부 잠정 결정) ▷ 투자승인 및 실행 (실사(회계, 법률 등), Valuation, Deal Structuring, 투자승인, 계약체결, 실행) ▷ 기업가치 제고 (경영진 선임(최소 1명의 이사), 투자계약서에 의한 사후관리, 기업 가치 제고 컨설팅, 사업구조조정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실행) ▷ 투자회수 (M&A, IPO, Secondary Sale, Tag Along, Put Option 등) ▷ 펀드청산 (회수금 분배 및 법인 청산절차 진행)

[문의 : 사모펀드실]

7. 대고객 외환거래

<p>거래 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 결제자금의 매매 ▷ 해외송금 및 수취자금의 매매 ▷ 해외 직·간접 금융을 통한 외화자금의 조달 및 상환 관련 외환매매 ▷ 기타 영업과 관련하여 수수한 외환의 매매 등
<p>거래 방식</p>	<p>【 현물환거래 Spot Transaction 】 외환매매거래일(deal date)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고객이 원할 경우 거래일 당일 또는 거래일 익영업일 결제거래로 스왑마진(자금비용)을 반영하여 거래 가능</p> <p>【 선물환거래 Forward Transaction 】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Value Spot)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외환매매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정산 또는 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 거래를 한 고객은 결제일에 인수도(delivery) 정산하거나, 반대거래를 통해 차액 정산할 수 있음 ▶ 선물환거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환차손익을 그 시점에서 정산 수수하여야 함 <p>【 외환스왑거래 FX Swap Transaction 】 특정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사용한 후 만기일에 원래 통화로 재교환하는 외환매매거래(두 통화간 일시적 과부족을 외환 스왑거래를 통해 해소)</p>
<p>이용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달러, 원화대 기타 통화간 거래 : 09:00 ~ 15:30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24시간 거래 가능 ▷ 거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거래계약 체결 :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거래와 외환스왑거래는 거래실행전 한도승인 절차 필요 ▶ 외환매매거래 실행 : 전화요청 및 거래환율 결정 ▶ 외환거래확인 : 확인서(Confirmation Slip) 교부 및 확인 ▶ 결제일에 거래대금 수수
<p>기타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중소기업에 대한 우대환율 적용

[문의 : 금융공학실]

8.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실시간 시장환율 기준으로 시장가 또는 지정가 방식으로 현물환 거래를 하는 시스템 <li style="padding-left: 20px;">: 거래수수료의 대폭인하로 소액의 외환거래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거래 가능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시간 : 09:00 ~ 15:20 (외환거래시장 영업일) ▷ 거래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대 외화간 거래 : USD/KRW, JPY/KRW, EUR/KRW ▷ 외화대 외화간 거래 : USD/JPY, EUR/USD ▷ 거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D기준 1,000불이상 100만불 이하 ▷ 거래수수료 (1 US\$당)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거래금액 (US\$)</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td>1천~1만</td><td>2.1원</td></tr> <tr><td>1만~5만</td><td>1.8원</td></tr> <tr><td>5만~10만</td><td>1.4원</td></tr> <tr><td>10만~20만</td><td>1.1원</td></tr> <tr><td>20만~30만</td><td>0.7원</td></tr> <tr><td>30만~50만</td><td>0.5원</td></tr> <tr><td>50만~100만</td><td>0.4원</td></tr> </tbody> </table> ▷ 거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터넷외환거래서비스 이용 신청 ▷ 거래한도 부여 ▷ 이용약정 체결 (전자서명) ▷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실행 ▷ 현금인출시 인출 수수료 1% 추가 <li style="padding-left: 20px;">* 거래 금액 및 수수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거래금액 (US\$)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거래금액 (US\$)	수수료																
1천~1만	2.1원																
1만~5만	1.8원																
5만~10만	1.4원																
10만~20만	1.1원																
20만~30만	0.7원																
30만~50만	0.5원																
50만~100만	0.4원																

[문의 : 금융공학실]

9. 파생금융상품

<p>주요고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환리스크 헤지 ▷ 원자재, 원유 등 상품가격의 변동리스크 헤지 ▷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 차입시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 원화 차입시 금리리스크 헤지 및 금리절감 ▷ 기관투자자(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채권 및 예금을 통한 Yield Pick-Up (금리, 환율, 지수 및 상품연동 채권 및 예금) ▷ 보유중인 외화자산의 금리 및 환리스크 헤지 ▷ 보유중인 주식의 주가변동 리스크 헤지
<p>기본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선물환 (Long-Term Forward) ▷ 통화스왑 (Cross Currency Interest Rate Swap) ▷ 통화옵션(Vanilla Option, Exotic Option) ▷ 금리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스왑(IRS) ▷ 금리옵션(Cap/Floor, Swaption) ▷ 개별주식(주가지수)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주식(주가지수)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Equity Linked Swap ▷ 상품(Commodity)파생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원유, 금속 등)관련 선도계약 및 옵션거래 ▷ Commodity Linked Swap
<p>구조화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환보다 유리한 조건의 환리스크 헤지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nge Forward, Enhanced Forward 등 Zero Cost 상품 ▷ Yield Pick-Up을 위한 투자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 산금채, 예금 판매 (Callable, CMS 등) ▷ 구조화채권 발행기관 및 투자자 대상 헤지상품 판매 ▷ 주식을 활용한 Equity Finance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 주식매각, EB/CB/BW 발행을 통한 Financing ▷ 주식관련체의 주식과 채권부분 strip 및 매매 ▷ 상품(Commodity)가격 리스크의 헤지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금리 등과 연계한 헤지상품

[문의 : 금융공학실]

Ⅲ. 컨설팅 서비스

1. 성장지원 컨설팅

내 용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재무전략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역	▷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기업 운영방안 및 기업발전 전략(조직, 프로세스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수립 ▷ 사업 및 재무상태 진단
사 례	▷ D사 인수금융 관련 재무전략 수립 ▷ A사 대출 및 주식인수 관련 컨설팅 ▷ G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 ▷ D건설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B공사 자금조달 전략 컨설팅 ▷ P사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 D사 구매절차 및 내부감사시스템 개선 컨설팅 외 다수

2. 사업타당성 검토

내 용	▷ 신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역	▷ 신규 사업 및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시장분석 및 시장진입전략 수립 ▷ 자금계획 등 재무전략 수립 ▷ 최적의 금융 솔루션 제공
사 례	▷ J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성 검토 ▷ D사 공장신축을 통한 신사업진출 가능성 검토 ▷ T사 호텔 인수에 대한 사업성 검토 ▷ E사 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 B사 선박 신조 등에 대한 사업성 검토 ▷ N사 외국기업 2차전지 사업부 인수타당성 검토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3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타당성 검토, 전략 수립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서비스 영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공기관, 기업의 해외진출 및 Global 전략 수립 지원 ▷ 국제기구, 외국기업 등 해외 Client의 국내진출전략 수립 지원 ▷ Global Project의 전략적 개발 및 금융지원 컨설팅 수행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병원 해외진출을 위한 사우디 현지 Financing전략 수립 ▷ N사 2차전지 관련 해외사업인수 컨설팅 ▷ K사 중국 진출 관련 사업성 검토 ▷ N사 중국 진출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컨설팅 ▷ A사 미얀마 목재사업 컨설팅 ▷ 뉴욕 A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 S사 카자흐스탄 유전광구 탐사사업 타당성 검토 외 다수

4. Turn-Around 컨설팅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정체 및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경영실태 진단 ▷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 제시
서비스 영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경영개선 및 가치제고 등 Turn-Around 전략 수립 ▷ Debt Restructuring, 자본구조 개선 등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수립 ▷ 사업분할·매수, 사업 재구축 등 핵심역량강화 전략 수립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경영개선방향 수립 ▷ D사 재무구조 개선방안 도출 ▷ C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H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D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I사 Turn-Around 전략 수립 ▷ S계열 Turn-Around 전략 수립 외 다수

[문의 : 컨설팅실]

[참고]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 국내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본 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7-4000	
본점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02)787-5717	02)787-5791~2
가산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STX V-Tower 2층	02)2081-3500	02)857-7598~9
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8 영보빌딩 1,2층	02)560-0300	02)565-8417
금천지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8 혜전빌딩 1,2층	02)3282-8900	02)851-0360
노원지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교보생명빌딩 1,2층	02)950-9500	02)934-7700
대치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대원빌딩 5층	02)2193-4100	02)2193-4198~9
도곡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4 아카데미스위트A동 2층	02)3498-3800	02)579-0247
마포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1,2층	02)3140-0400	02)3140-0460
양천지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03 목동로데오빌딩 6층	02)3219-8500	02)3219-8598~9
반포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7 래미안퍼스티지상가 5층	02)3488-8500	02)594-7998
서소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5 한산빌딩 1층	02)398-9500	02)398-9597~9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대각빌딩 1,2층	02)3488-7500	02)581-1036~7
동대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89 무궁화회관 2층	02)2192-7100	02)564-4398~9
성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3 세종빌딩2,3층	02)3408-9600	02)3408-9697~8
신문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우건설빌딩 1,2층	02)398-9600	02)398-9698~9
압구정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78 종산빌딩 1,3층	02)3218-0900	02)511-0822
여의도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2층	02)2000-0600	02)782-8321
이수지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89 2층	02)2182-8700	02)2182-8798~9
이촌지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한석빌딩 1층	02)2125-8000	02)2125-8099
종로지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1,2층	02)398-6700	02)735-0136
잠실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시그마타워 1층	02)2240-8200	02)2240-8298
잠원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65 미래빌딩 2층	02)2240-1500	02)2240-1598~9
한티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3층	02)3469-2300	02)3469-2398~9
◎ 경기지역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5 청담메디컬센터빌딩 1,2층	031)980-8800	031)997-5112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1 인창프라자 2층	031)350-1200	031)350-1298~9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산업은행빌딩 1,2층	032)620-1200	032)325-4761~2
부평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2층	032)363-5300	032)361-1198~9
분당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삼성생명빌딩 1,2층	031)789-1500	031)707-4152~3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송도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1층	032)540-8300	032)540-8398~9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경기새마을회빌딩 1,2층	031)220-7300	031)226-7330
시화지점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산업은행빌딩 1,2층	031)496-4400	031)498-2934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산업은행빌딩 1층	031)412-0600	031)487-6942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42 산업은행빌딩 1,2층	031)380-0900	031)388-0551~2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69 벤포스타빌딩 2층	031)280-6100	031)280-6197~8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31 네오타워빌딩 6층	031)850-8400	031)850-8498~9
인천지점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42 코아루파크드림 2층	032)450-3400	032)437-6028~9
일산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1 모아나빌딩 1,2층	031)920-4000	031)920-4099
정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93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B동 2층	031)789-4900	031)789-4998~9
판교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8 마크시티그린빌딩 2층	031)779-8100	031)779-8198~9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20번길 39 합정동 타임스퀘어빌딩 2층	031)659-0500	031)654-8198
산본지점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43-6 한숲스포츠헤센터 3층	031)420-9500	031)420-9598~9
반월지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15 워너스타워 2층	031)481-0400	031)481-0498~9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7 태성프라자 1,2층	031)350-3700	031)8059-0599
◎ 충청, 강원지역			
당진지점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서해빌딩 1층	041)359-2600	041)356-3691
대덕지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05 대덕터프라자빌딩 1,2층	042)939-8600	042)939-8698~9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산업은행빌딩 1층	042)600-6200	042)489-7494~5
아산지점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34번길 2 메디포스빌딩 2층	041)537-2300	041)537-2398~9
오창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7 오창리치아노 2층	043)249-2400	043)249-2497
천안지점	충청남도 천안시 민남로 82 소암빌딩 1,2층	041)559-2600	041)562-8364
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6 산업은행빌딩 1층	043)229-2900	043)255-9001
충주지점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1,2층	043)850-7700	043)852-2194
춘천지점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104 스카이원빌딩 1,2층	033)240-1400	033)240-1498~9
원주지점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2 골드플라자 1,2층	033)760-3800	033)765-1897~8
◎ 호남, 제주지역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61 산업은행빌딩 1,2층	062)958-1000	062)953-7984~5
금남로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8 대우증권빌딩 3층	062)519-8100	062)519-8198~9
목포지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06 산업은행빌딩 1,2층	061)280-5400	061)285-0353~4
여수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빌딩 1층	061)690-8500	061)682-0165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06, 2층	063)440-3600	063)442-5245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18 산업은행빌딩 1층	063)230-6600	063)230-6626
제주지점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44 대우증권빌딩 1층	064)720-1700	064)759-9015
◎ 영남지역			
마산지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한화생명빌딩 3층	055)290-3500	055)290-3598~9
경산지점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33 도륜빌딩 1층	053)819-1900	053)819-1998~9
구미지점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07 산업은행빌딩 1층	054)450-4700	054)453-5805
금정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비엔빌딩 1,2층	051)510-4700	051)510-4798~9
김해지점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81 동화선프라자 2층	055)310-2220	055)310-2299
녹산지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5 JH빌딩 3,4층	051)974-4100	051)974-4128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2층	053)606-2500	053)255-1460
경주지점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경주KT빌딩 1층	054)750-8300	054)750-8398~9
남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2 나인파크 2층	052)290-8400	052)290-8498~9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36 산업은행빌딩 1,2층	051)240-1600	051)240-1700~1
성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산업은행빌딩 1층	053)605-4600	053)584-6871~2
양산지점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역6길 9 BYC빌딩 2층	055)380-8500	055)380-8598~9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6 산업은행빌딩 1,2층	052)270-4900	052)271-0484~5
진주지점	경상남도 진주시 향교로 3 롯데인벤스 1,2층	055)749-4300	055)747-3407
창원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로 25 산업은행빌딩 1,2층	055)268-2700	055)285-0187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6 산업은행빌딩 1층	054)288-4500	054)272-1655~6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5 대우월드마크센텀상가 2층	051)749-8300	051)746-1797

□ 국외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토쿄지점 (KDB Tokyo Branch)	GranTokyo North Tower 36F 1-9-1,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6736, Japan	81-3)3214-4541	81-3)3214-6933
베이징지점 (KDB Beijing Branch)	27th Floor, West Tower, Twin Towers, B-12 Jianguomenwai Avenue,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PRC	86-10)6568-8858	86-10)6568-6978
상하이지점 (KDB Shanghai Branch)	Room 3810, 38th Floor, Shanghai World Financial Center, No.100, Century Avenue,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20, PRC	86-21)6887-1234	86-21)6877-5556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광저우지점 (KDB Guangzhou Branch)	Suite 1702, 17th Floor, International Finance Place, No.8 Huaxia Road, Pearl River New Town, Guangzhou 510623, PRC	86-20)8550-6008	86-20-8550-6010
선양지점 (KDB Shenyang Branch)	31F, CR Building, No.286 Qingnian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Liaoning Province 110004, PRC	86-24)3125-9988	86-24)3125-5096
싱가폴지점 (KDB Singapore Branch)	138 Market Street, #35-02/03, Capita Green, Singapore 048946	65)6320-7400	65)6320-7413
런던지점 (KDB London Branch)	16th Floor,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44-20)7426-3550	44-20)7426-3567
뉴욕지점 (KDB New York Branch)	320 Park Ave. 32nd Floor, New York, NY 10022	1-212)688-7686	1-212)758-3296
청다오지점 (KDB Qingdao Branch)	Room 01-06, 43th Floor, The HNA Center, No.234 Yan'an 3rd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Shandong Province, China 266071	86-532)8288-7700	86-532)-8288-7318
KDB홍콩 (KDB Asia Limited)	Suite 2005-10,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2524-7011	852)2810-4447
KDB아일랜드 (KDB Ireland Limited)	Ground Floor, Russell House, Stokes Place, St. Stephen's Green, Dublin 2, Ireland	353-1)4753-644	353-1)4753-658
KDB유럽 (KDB Bank Europe Limited)	H-1054 Budapest V., Bajcsy-Zsilinszky ut 42-46.	36-1)374-9903	36-1)328-5454
KDB브라질 (Banco KDB do Brasil S.A.)	Av.Brigadeiro Faria Lima, 3400 Ed. Faria Lima Financial Center 15 andar Conj.152 Itaim Bibi, Sao Paulo, SP, Brasil CEP:04538-132	55-11)2138-0000	55-11)2138-0150
KDB우즈베키스탄 (KDB Bank Uzbekistan)	3 Bukhoro street, Mirobod district, Tashkent, Uzbekistan 100047	998-71)120-8000	998-71)120-6970
프랑크푸르트사무소 (KDB Frankfurt Representative Office)	Bockenheimer Landstrasse 51-53,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49-69)920713-00	49-69)920713-99
호치민사무소 (KDB Hochiminh Representative Office)	Unit 604, Kumho Asiana Plaza Saigon, 39 Le Duan Street, District 1, HCMC, Vietnam	84-8)6291-7870	84-8)6291-7672
아부다비사무소 (KDB Abu Dhabi Representative Office)	Unit 1302, Etihad Towers 3, Abu Dhabi, U.A.E. PO Box 63057	971-2)666-3374/ 971-2)666-7173	-

영업점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양곤사무소 (KDB Yangon Representative Office)	#1808 18th Floor, Sakura Tower, No. 339 Bo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Myanmar	95-1)255150~1	95-1)255152
모스크바사무소 (KDB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Office 804, Entrance 3, World Trade Center, Krasnopresnenskaya nab. 12, 123610, Moscow, Russia	7-495)669-4405	7-495)669-4405
방콕사무소 (KDB Bangkok Representative Office)	15th 5L Athenee Tower, 63 Wireless Road (Witthayu), Lumpini,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66-2-168-8499/ 66-92-730-0748 (c)	66-2-168-8500
마닐라사무소 (KDB Manila Representative Office)	the 18th Level, Tower 1, The Enterprise Center, 6766 Ayala Ave., Paseo de Roxas, Legaspi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63-2-556-2267	63-2-556-0912
시드니사무소 (KDB Sydney Representative Office)	Suite 3304, Level 33, MLC Centre, 19-29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61-2-9221-3638	-

□ 관계회사

구 분	주 소	대표전화
산은캐피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산은캐피탈	02)6330-0114
KDB인프라자산운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3층	02)6333-3500
한국해양보증보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051)717-0900
KDB생명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02)6303-5000

7-2 온렌딩대출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회사설립 후 1년이 경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 호남·강원·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해당 요건 미적용
- ※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온렌딩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상품별 지원요건

구분		지 원 요 건
기본 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 (USD)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 * 중소기업은 국내 시설투자 용도로도 사용 가능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승용차 제외)
특별 온렌딩	미래·신성장동력	▷ 미래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 녹색인증분야 기술·사업기업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기업
	지방소재기업육성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
	지방은행우대	▷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지방소재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스마트공장보급	▷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기업

- * 기업의 영위업종,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구분	대출기간	거치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	3년 이내
운영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	6개월 이내
리스자금*	1년 이상 5년 이내	6개월 이내

* 리스자금 온렌딩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효성캐피탈)를 통해서만 취급

신청·접수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영업점 문의

○ '16.11월 현재 온렌딩 약정체결 중개금융기관

▷ 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씨티은행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아주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효성캐피탈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0582



제 8 장

한국수출입은행

8-1. 201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307
8-2. 수출 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308
8-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310
8-4. 기술금융 프로그램	312
8-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314
8-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316
8-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318
8-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320
8-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322
8-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325
8-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327
8-12. 해외사업관련대출	329
8-13. 수입금융(수입자금)	332
8-14. 이행성보증	334
8-15. 무역금융	336
8-16. 해외온렌딩	338

8-1

2017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전문적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주요 우대프로그램

- * 수출초보기업 육성프로그램
- *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 * 기술금융 프로그램
- * 상생금융 프로그램
- * 환위험관리 지원프로그램

○ 중소기업 주요 금융상품

분야		상품명
대출	수출관련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입관련	수입자금
	해외사업관련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보증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외국환	수출관련	수출환어음매입,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신용장확인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수입팩토링

8-2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

연간 해외 직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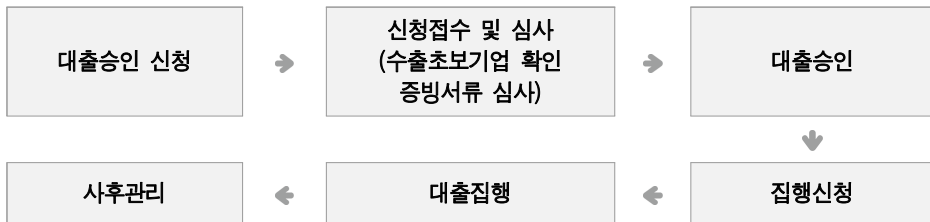
지원 내용

금리우대,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해외진출 지원등의 비금융서비스 제공

우대사항

- 대출금리 : 최대 0.3%P 인하
- 대출한도 : 수출성장자금 대출시 수출실적의 100%까지 한도 확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3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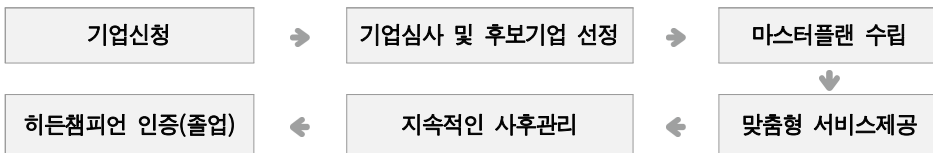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육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금융·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실행 절차



○ 기업신청

- ▶ 신청자격 :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외감법인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 SW개발·공급 기업 및 SI기업 등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15개 중소여신부점 및 출장소
- ▶ 선정기간 : 매년 당행 홈페이지 게시

○ 심사 및 후보기업 선정

- ▶ 선정기준 : 히든챔피언 적합도(80%) + 재무안정성(20%)
- ▶ 선정절차 : 1차심사(60점) → 2차심사(40점) →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 히든챔피언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 최종 선정 기업이 제출한 중장기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기업의 니즈(Needs)와 역량에 맞추어 수출입은행이 제공할 금융·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 플랜을 수립

○ 맞춤형 서비스제공

▷ 금융서비스

- “제품개발 → 생산 → 해외판매”에 이르는 기업의 글로벌화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범위에 걸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제공
- 금리우대 및 신용여신한도 확대

▷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 히든챔피언 카페, 히든챔피언 아카데미, 환위험컨설팅, 국제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산학협력 등

○ 지속적인 사후관리

- ▷ 매년 후보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수정 또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선정 취소

○ 히든챔피언 인증(졸업)

- ▷ 히든챔피언 인증가능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다면평가(EPIC)**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히든챔피언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히든 챔피언으로 인증(우대지원 5년간 유지)
- * ①수출액 3억/1억/0.5억달러 이상, ②육성기간 3년이상, ③회사존속 10년이상, ④신용등급 P4+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다면평가(EPIC) : 탁월한 성과(Excellence), 성장잠재력(Potential), 자립도(Independency), 국가경제기여도(Contribution)를 다면적으로 평가

평가 영역		평가 지표
1	Excellence 탁월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 기업의 매출액 성장율 · 해당산업의 수출 경쟁력
2	Potential 성장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 · 글로벌 특허 보유 여부
3	Independence 독립적 자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기업 의존도
4	Contribution 국가경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고용창출 기여 · 매출 대비 수출 비중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3779-5332

8-4

기술금융 프로그램

담보력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성을 평가하여 여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기술금융 지원 신청시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한 뒤 이를 반영한 신용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여신지원

* 적격 기술신용평가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 및 기술보증기금 중, 수출은행이 선정한 공신력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평가정보, 기술보증기금, 이크레더블)

① 기술신용제도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 지원대상거래 :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 기술력 평가등급 양호 이상(S,A)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수출이행능력 점수 70점 이상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70점 이상
- * '차세대 수출거래', '수출초보 중소기업' : 수출거래 안전성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상품 :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 신용등급평가 생략 가능
 - ▷ 정책조정률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최대 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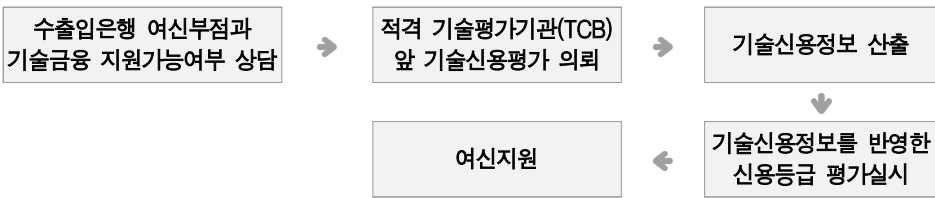
② 기술우대제도

- 지원상품 : 중소기업 대상 모든 여신(대출 및 보증)
- 우대사항 : 신용등급평가지 해당 기업의 기술력 적극 반영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지원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5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아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동반진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① 직접 지원

○ 개요

- ▷ 상생협약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당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또는 패키지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 공장 및 설비 증설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현지 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 현지 대기업 앞 납품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한 팩토링 등으로 지원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 이행정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해외투자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운영자금 : 3년 이내
 - 시설자금 : 30년 이내
- ▷ 수출팩토링 : 6개월 이내

② 간접 지원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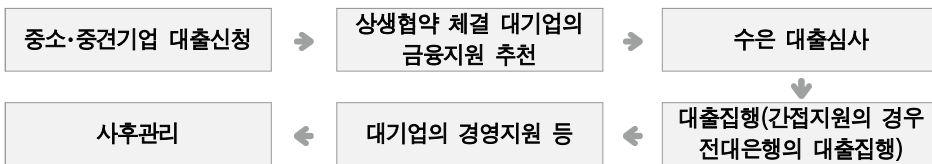
- ▷ 수출입은행이 현지은행 앞으로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고 현지은행이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에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은 현지은행 앞으로 Support Letter를 제공하는 등 협력기업에 대해 현지영업활동을 지원
 - 현지영업활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현지화로 제공하여 환위험관리 지원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8-6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추천을 받아 수출입은행이 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자금 또는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상생대기업이 당행 여신지원을 추천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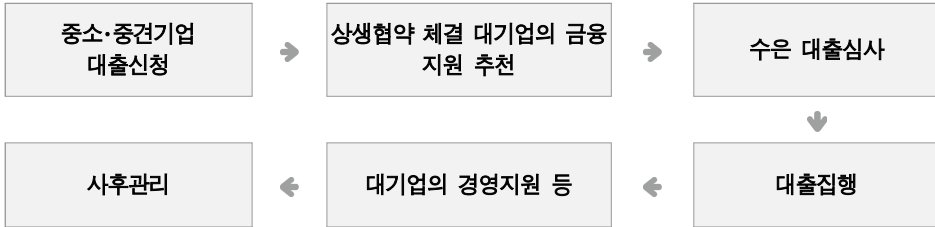
지원 내용

- 개요
 -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협력기업 앞으로 수출용 물품의 제작자금 또는 수출이행을 위한 이행성 보증을 지원
 - 대기업의 지원은 수출입은행과 체결하는 상생협력약정 내용에 따름
- 지원대상거래
 -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의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이 수출물자나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및 고객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 수출성장자금대출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 ▶ 수출이행자금대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7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협력대출)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을 차주로 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앞으로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즉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을 대신하여 중소·중견기업 앞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원청 대기업으로서 수출 및 외화가득효과가 큰 업종을 영위하며 국내 중소·중견협력기업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 (실질수혜기업 :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개요

- ▷ 원청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을 중소·중견협력기업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신용도 및 담보제공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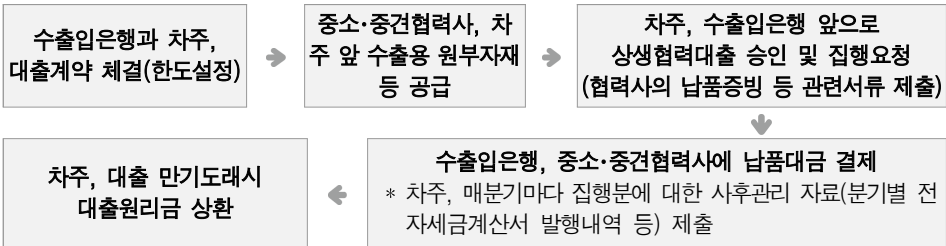
○ 지원조건

-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에 대한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 대출한도설정금액 : 대출신청월 기준 과거 1년동안 중소·중견협력사의 차주앞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실적의 1/2 이내에서 설정
 - 단, 한도설정시 개별대출기간을 1년으로 운용키로 약정한 경우, 1년간 납품실적 범위내 설정 가능
- ▷ 대출한도사용기간 : 한도설정일로부터 1년
 - 단,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출입은행과의 거래기간이 2년 이상인 차주사의 경우, 한도사용기간 2년 가능

- ▷ 대출금액 : 중소·중견협력기업의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중
 -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주사가 산정하여 신청한 금액
 - 대출승인신청일 직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주사가 현금결제한 금액
- ▷ 대출기간 : 건별 개별대출 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6개월
 - 단, 차주사의 한도사용기간이 2년인 경우, 1년 이내 가능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8-8

환위험관리 금융·비금융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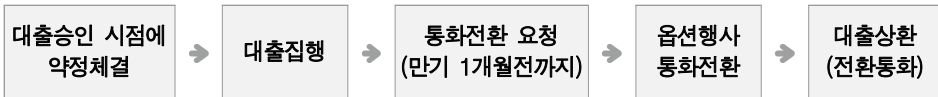
| 수출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위한 각종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 제공

수출중소기업의 대외거래에 따른 환위험관리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서비스입니다.

금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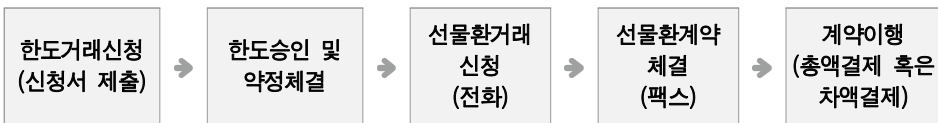
① 통화전화옵션

- 개요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② 선물환거래

- 개요 : 수출중소기업이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선물환 현재 시점에서 미리 확정하여 환율하락에 따라 외화의 가치하락을 방지하도록 지원
- 실행절차



비금융 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환위험관리 설명회 : 지방소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위험관리 개요, 필요성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 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 관련 정보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홈페이지(keri.koreaexim.go.kr) 게시

문의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하든챔피언팀(02-6255-5332)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02-6255-5715)

8-9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너지신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다만,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지원 내용

자금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다만, 기술평가 등급이 양호한 경우)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및 제작자금 용도 등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해외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단,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인수인 경우에는 실소요자금의 50% 이내(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대출기간

- 시설투자,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기술개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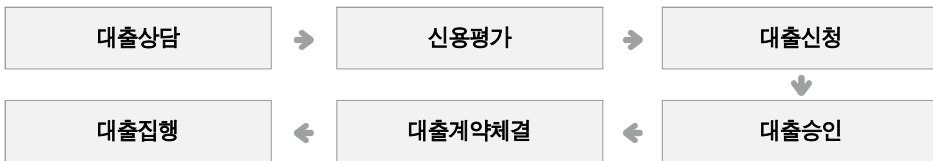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대전지점 : 042-489-9715
- 수원지점 : 031-259-6600
- 울산지점 : 052-274-5276
- 청주지점 : 043-237-0475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구지점 : 053-260-41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인천지점 : 032-235-6114
- 전주지점 : 063-271-6134~8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8-10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우대지원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90% 이내
 -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70% 이내
 -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250억원(유예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400억원(유예중소기업 600억원)까지 증액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 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1

수출금융(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단, 기술신용 지원으로 신용취급이 가능한 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임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중복수혜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2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해외투자자금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해외사업자금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

지원 내용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대출금액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
- 현지법인사업자금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
 - *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처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해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 (현지법인사업자금)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 02-3779-6303, 6919 / 02-6255-5304
-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64, 5273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8-13

수입금융(수입자금)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자

지원 내용

대출금액

- 수입소요자금 총액의 90%

대출기간

- 개별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거치 3년까지 가능)
 -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거치기간 설정불가)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 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4 이행성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국제입찰에 참여한 수출자가 입찰서상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증
 - 선수금환급보증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 계약이행보증 :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성능, 납기 등)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발주자 또는 수입자 앞 보상
 - 하자보수보증 :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
 - 유보금보증 :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 기타이행성보증 : 자재선수금환급보증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보상
- * 공동보증 제도 :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분담하여 신용도는 취약하나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제공
(문의 :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02-1800-5285)

보증금액(기간)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기간) 범위 내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6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 02-1800-5285 (공동보증제도)

지점 및 출장소

- | | |
|------------------------|-------------------------|
| ○ 부산지점 : 051-817-5050 | ○ 창원지점 : 055-287-6830 |
| ○ 대전지점 : 042-489-9715 | ○ 대구지점 : 053-260-4100 |
| ○ 수원지점 : 031-259-6600 | ○ 광주지점 : 062-232-6944 |
| ○ 울산지점 : 052-274-5276 | ○ 인천지점 : 032-235-6114 |
| ○ 청주지점 : 043-237-0475 | ○ 전주지점 : 063-271-6134~8 |
|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 |

8-15 무역금융

수출거래를 이행한 후에(선적후) 바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등 다양한 금융상품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수출환어음매입 :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 수출팩토링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포페이팅 :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환어음매입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의한 수출거래
- 수출팩토링 :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방식) 외상수출거래
- 포페이팅 : 당행 기준 일정 등급 이상 소재국가의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

대출금액

- 수출환어음매입 : 건당 미화 5만불 이상
- 포페이팅 : 건당 미화 1만불 ~ 5천만불

대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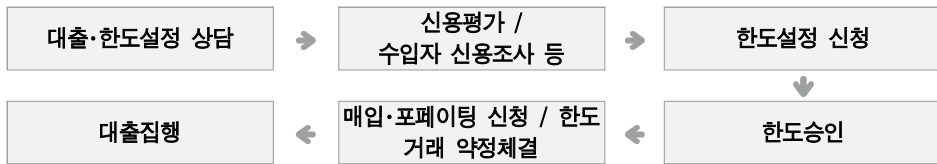
- 수출환어음매입 : 30일이상 2년미만(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또는 O/A 방식에 따른 수출채권 매입의 경우에는 30일 이하도 가능)
- 포페이팅 : 30일이상 2년미만

신청·접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무역금융실), 지점 및 출장소

제출 서류

수출환어음매입/수출팩토링한도설정/포페이팅 신청서, 외국환 거래약정서, 수출실적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명판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480

지점 및 출장소

- 부산지점 : 051-817-5050
- 창원지점 : 055-287-6830
- 대전지점 : 042-489-9715
- 대구지점 : 053-260-4100
- 수원지점 : 031-259-6600
- 광주지점 : 062-232-6944
- 울산지점 : 052-274-5276
- 인천지점 : 032-235-6114
- 청주지점 : 043-237-0475
- 전주지점 : 063-271-6134~8
- 구미출장소 : 054-462-7103
- 여수출장소 : 061-643-7714
- 원주출장소 : 033-748-0536

8-16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중개금융기관의 지점망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중소기업(건설·플랜트 및 해양기자재 중견기업 포함) 및 중소기업의 해외현지법인*
 -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의 경우만 가능
- '16. 10월 현재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 :
 - (주)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주)하나은행, 농협은행(주), (주)부산은행, (주)신한은행, 신한베트남은행

지원 내용

대상거래

- 수출촉진자금 :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
- 수입자금 :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 해외투자자금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사업자금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
- 현지법인사업자금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수출촉진자금의 경우 대상기업별 대출한도 기준에 의해 별도산정)

대출기간

- 수출촉진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시설투자,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기술개발)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그 외 거래)
- 수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그 외 거래)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운영자금) 또는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그 외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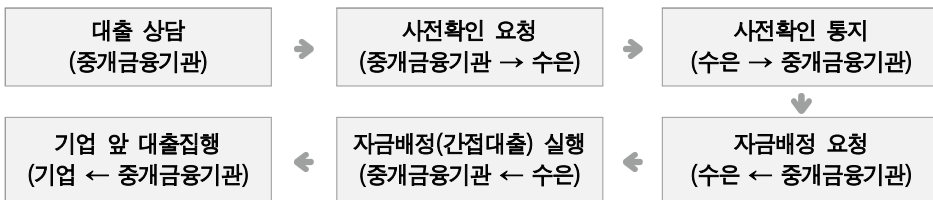
신청·접수

해외 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 문의

제출 서류

중개금융기관의 제출 필요 서류와는 별개로 해외온렌딩 대상 기업 적격검토 서류(수출입 실적 확인서, 3개년간 재무제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실 : 02-3779-6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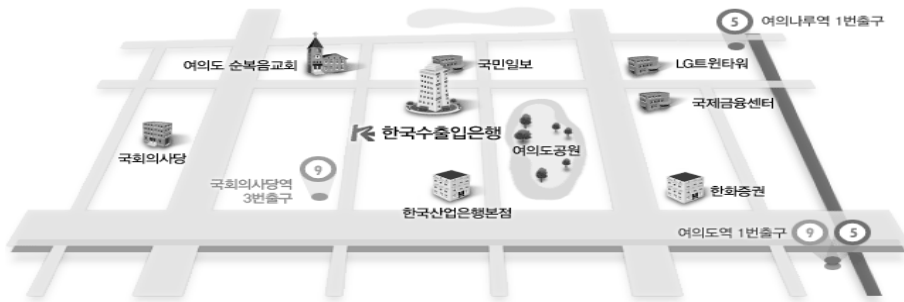
[참 고]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및 국내지점 현황

〈본 점〉

대표전화 : 02)3779-6114, 02)6255-5114


부 서 명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소중견 금융1부	상생금융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초보기업 및 취약산업 지원 E-mail: smesupport@koreaexim.go.kr	(02)6255-5296	(02)3779-6725
중소중견 금융2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해외사업, 수입관련 대출 및 보증(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제외) E-mail: smallbiz@koreaexim.go.kr	(02)3779-6304	(02)3779-6744
서비스 산업금융부	서비스산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에 대한 금융지원 E-mail: newgrowth@koreaexim.go.kr	(02)6255-5270	(02)3779-6779
전대금융실	국외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 업무 E-mail: iec@koreaexim.go.kr	(02)3779-6369	(02)3779-6746
무역금융실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수출환어음매입, 포페이팅, 팩토링), 해외온렌딩 E-mail: strade@koreaexim.go.kr	(02)3779-6480	(02)3779-6764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관련 정보제공 및 금융 컨설팅 E-mail: kocc@koccenter.or.kr	(02)1800-5285	(02)3779-6770



> (150-9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빌딩
/ TEL:(02)3779-6114 / FAX:(02)784-1030

〈국내지점〉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도권	인지천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빌딩 15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032)235-6114	032)442-6121
	수지원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031)259-6600	031)259-6609
중부권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042)489-9715	042)489-9716
	청주지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043)237-0475	043)237-0476
영남권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051)817-5050	051)817-6060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053)260-4100	053)754-1020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5층 E-mail: changwon@koreaexim.go.kr	055)287-6830	055)287-6831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052)274-5276	052)274-5278
호남권	광주지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스탠다드차타드은행빌딩 7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062)232-6944	062)232-6946
	전지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대한교원공제회관빌딩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063)271-6134 ~8	063)271-6139
출장소	구미출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054)462-7103	054)462-7105
	여수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빌딩 4층 E-mail: yeosu@koreaexim.go.kr	061)643-7714	061)643-7716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033)748-0536	033)748-0538



제 9 장

한국무역보험공사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343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45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347
9-4 단기수출보험	348
9-5 중소기업Plus+보험	352
9-6 환변동보험	353
9-7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356
9-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358

9-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수입자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지원 대상

국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전 세계 80여개의 신용조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만 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유의사항

- 공사 홈페이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수납방식	청구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납부기한
후불제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수수료 청구 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1장/월)	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 ('10년 1월부터 시행),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 가능
-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세금계산서 발행 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불가
- ▷ 조사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가 달라짐

<신용조사 수수료 : 중소중견기업>

보고서종류	가격(VAT 포함)		
	일반조사	재무제표미비	신용조사불가자 or 장기소요(40일초과)
요약보고서	33,000원	22,000원	면제
Full Report	49,500원	33,000원	면제

- * 현지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의 비용이 소요(공사부담)되는 바, 보고서의 내용이 미흡(재무자료 미비)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 부과

신청·접수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사이버영업점 가입

- ▷ www.ksure.or.kr 접속
-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 회원가입→사업자등록증 송부→ [승인]→회원가입

로그인

-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신청 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신용조사 신청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용-신용조사 신청’ 메뉴 선택
- ▷ 공사 DB검색(최근 6개월 이내 조사된 자료 있을시 시간절약)
- ▷ 조사방법 선택(구매/신규신청)
- ▷ 수입자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 ▷ 보고서 접수(평균 조사기간 2~4주 소요)
-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보고서 조회

- ▷ 사이버영업점 접속(or 신청자 E-mail로 발송)
- ▷ ‘국외기업 신용조사-신청-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수수료 납부

- ▷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로 수수료 납부
-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수납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자금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 무역협회 무역기금
-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 대출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 이행 자금대출 가능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보증 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보증 절차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보증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지원 분야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지원 내용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거래현황표, 수출거래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등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sure.or.kr) '신청서류 - 보험보증청약 - 수출신용보증'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신용보증 청약 → 신용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체결 → 보증서 발급 → 대출통지(기업⇒공사) →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기업⇒공사) → 신용보증부 대출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4

단기수출보험

|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 대상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지원 분야

- 신용위험 : 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회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 : 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지원 내용

가입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일반수출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구 분	내 용
중계무역	▷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방식
재 판 매	▷ 수출자가 해외지사(현지법인 포함)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하는 거래

운영방식

- 개별보험 : 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 : 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무역보험공사)가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구 분		개별보험	포괄보험
장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 보험 부보 신청 가능	▷ 고위험거래에 대한 보험부보 용이
	공 사	▷ 고위험거래에 대한 인수거절 가능	▷ 위험분산 용이
단점	수출자	▷ 고위험거래 부보 곤란	▷ 저위험거래·부보 의무
	공 사	▷ 위험분산 곤란	▷ 고위험거래 인수 의무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구 분	개 별 보 험
인수한도	▷ 특정 바이어와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최대보험계약 체결 가능한도) ☞ 다만, 예외적으로 수출입자간 수출계약 건별로 보험계약 체결 가능
보상한도	▷ 포괄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수출입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최대 누적액 ☞ 개별보험에 있어서 인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부보가 불가능하나, 포괄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보험관계는 성립되나 사고발생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

○ 보험 조건

구 분	내 용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 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 이내 ▷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부보율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음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 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영업점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5

중소중견Plus+보험

| 중소기업 전용상품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 내용

- 해외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지급시 수출 중소기업에게 해당 손실 보상
-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로 1년간 최대 2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최대 중소·중견기업 50만불까지 손실 보상(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담보위험	기본(필수가입)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자 미결제위험[신용위험]
	선택	수입국 위험 [비상위험], 클레임 위험[중소기업 限]
책임한도	기본(필수가입)	최대 U\$50만 [개별 수입자당 최대 U\$30만 이내 보상]
	선택	최대 1백만불
수 출 자	최근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수 입 자	공사 신용등급 R급 및 고위험·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입자 제외 [최대 20개사]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처리 절차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보험료 납부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6

환변동보험

|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수출기업, 수입기업, 해외투자기업중 신용상 문제가 없는 중소기업

*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통화 : USD, JPY, EUR, CNY)
-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 (수출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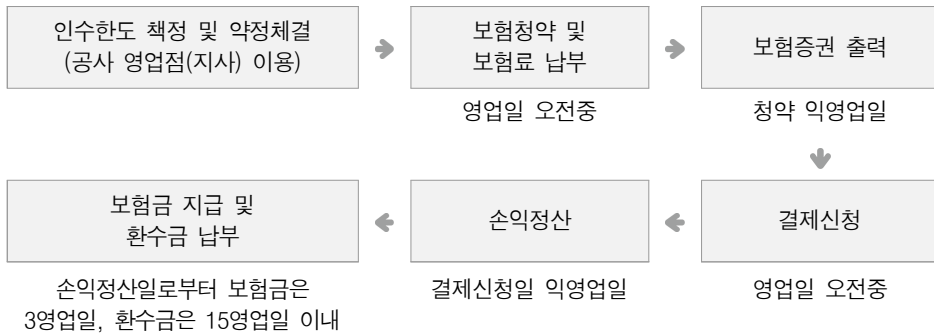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구 분	내 용	특 정
일반선물환 (Forward) (수출형 기준)	환율하락시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시 이익금 납부	환율하락시 보장 탁월하나, 환율상승시 이익금 부담이 큼

신청 서류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및 헤지수요 조사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www.ksure.or.kr, 재무제표 제출센터에서 파일 업로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최근 1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 * 대표이사 공사 내방하여 약정 체결(약정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중)
-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은행연합회 또는 은행 발급) 등

처리 절차



신청·접수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cyber.ksure.or.kr)에서 청약 및 결제신청

* 필요시 공사양식(공사홈페이지 <http://www.ksure.or.kr>에서 다운로드)이용, 팩스 신청 가능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환변동보험 인수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됩니다.

Q 보장되는 환율과 정산의 기준이 되는 결제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보장환율) = 청약일의 시장평균환율 + 결제일의 월말기준 SWAP POINT
(결제환율)

- ① 결제일 월말지정 = 결제일자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② 결제일 월중지정 = 결제일 전영업일 시장평균환율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SWAP POINT
- ③ 조기결제 신청시 = 조기결제신청일 시장평균환율 + 만기일이 속한 월의 최종영업일까지 SWAP POINT

→ 용어설명

환헷지 : 환율변동에 따른 환손실을 없애기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여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사전에 고정시키는 것

9-7

수입보험(수입자용, 금융기관용)

| 수입거래 지원

장기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 수입을 요하는 원유, 원목, 광물, LNG 등 주요자원, 시설재 및 첨단제품 등의 수입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분야

- 수입자용 : 국내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 금융기관용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보상

지원품목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의 주요자원
-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제품 (산업통상자원부 발급 '첨단제품 확인서' 필요)
- 관세법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방지 · 처리물품 등 관세감면대상물품
 - * 품목 해당 여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수입보험지원물품조회

보상 한도

- 수입자용 : 선급금 비율은 수입계약금액의 30% 이내로 하며, 부모율 100% (중견기업은 97.5%, 대기업은 95%)
- 금융기관용 : 대출원금(지급보증) + 약정이자

지원 대상

- 수입자용: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 선적되어야 하는 지원대상물품의 수입거래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보험계약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해외 수입계약상대방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 금융기관용 : 대출기간 1년 이내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중계무역 제외)
 - ▷ 국내 수입자(채무자) 공사신용등급 F급 이상

신청·접수 무역보험공사 국내지사

준비 서류 수입보험청약서, 상사현황표, 수입실적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무역지원사업 → 신청서류 → 보험·보증
 청약관련 → 기타보험 : 수입보험

처리 절차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9-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

| 해외 미수채권 회수

무역보험을 이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를 도모하고자 해외채권 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내용

국내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회수된 해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수 대행

유의사항

-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성공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 25% (공사 수수료 4% 별도) 내외 수준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 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 신청 → 수입가능성 확인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수 → 채권추심(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문의처

- 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 10 장

대한상공회의소

10-1.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362
10-2. 산업혁신운동	365
10-3. 코참경영상담센터	368
10-4.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370
10-5. 올댓비즈	372
10-6.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373

10-1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 생산제품의 불량감소, 품질향상 등을 통한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이 무결점, 무경합의 완전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기 위해 품질혁신시스템 구축 지도, 품질혁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싱글PPM 품질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200개사(전체 예산 10억원)

* '16년 지원현황 : '16년 품질혁신지도기업 340개사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뿌리산업인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
-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2]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뿌리산업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뿌리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
- ✓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세부사업 내역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품질혁신지도 (전문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요인 해소를 통한 품질향상 지도 • 작업표준화 및 작업환경개선 지도 • 싱글PPM, KS, ISO9001, 대기업 품질인증 획득 지도 등 	업체당 15일 이내

품질혁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혁신 마인드 함양 및 품질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품질혁신 교육 등 	전액 정부지원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싱글PPM 품질인증획득 신청기업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 	심사비 기업부담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접수

- 품질혁신지도 : '17. 2. 1 ~ 11. 30(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품질혁신교육 : 수요조사 후 교육일자 홈페이지 게시
- 싱글PPM 품질인증 : 수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sppm.korcham.net)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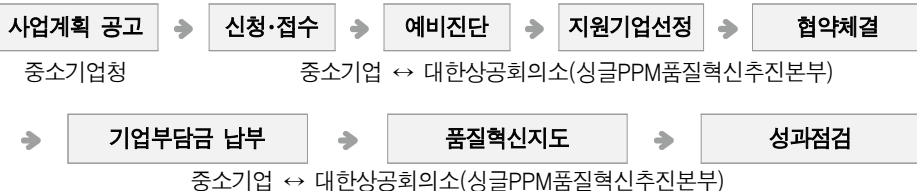
-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예비진단 시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과제 적합성 유무 확인
- 품질인증제 운영은 싱글PPM 품질달성 여부 등 25개 항목 및 불량률 현황 등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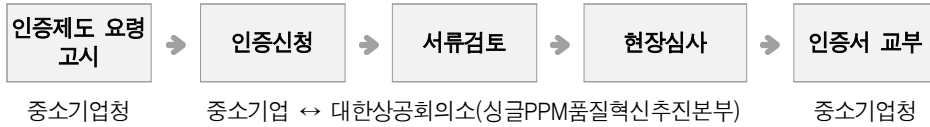
- 품질혁신지도·교육 :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싱글PPM 품질인증 : 신청서(불량률 현황 자료 포함), 추천서(모기업이 있을 경우),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의 홈페이지 <http://sppm.korcham.net>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용

처리 절차

- 품질혁신지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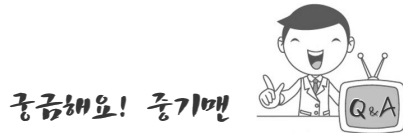


○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406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품질혁신팀(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
02-6050-3851~6 (<http://sppm.korcham.net>)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Q** 품질혁신지도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어느 시점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 A** 품질혁신지도사업은 지도신청 후 예비진단 결과에 따라, 지도기업으로 선정·협약 체결 후 입금
품질인증제 운영의 심사비 납부는 현지심사 2일전까지 입금 완료하여야 함

용어설명

싱글PPM(Single Parts Per Million)이란 : 제품 백만개 중 불량품이 10개 미만의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0-2

산업혁신운동

| 중소기업 현장의 불량률 감소,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등 종합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규모

1,500개社 내외(약 33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혁신운동 대기업 협력사(연계기업) 또는 미연계 기업(특정 대기업의 협력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① 연계기업 : 출연대기업으로부터 사전 참가신청과 진행을 추천받은 중소기업(대기업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원칙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 대기업 업종 특성상 2차 협력사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1차 협력사 및 고객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필수)
- ② 미연계 기업 : 특정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지원 내용 세부사업 내역(1개 분야만 선택 가능)

분 야	내 용	지원 한도
혁신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공정, 경영, 생산기술 개발분야 참여기업 혁신활동 컨설팅과 생산설비구축 지원 연계기업의 경우 출연기업과 협의해 지원금액 조정 가능 	2천만원 이내 (미연계)
스마트공장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업의 ICT기술활용정도 및 역량평가를 위한 현장진단 컨설팅과 생산성향상설비 구축 지원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연계 지원금액 : 2천만원 초과지원분에 대해 5(지원금액):5(기업부담) 매칭 미연계 지원금액 : 구축비용의 5(지원금액):5(기업부담) 매칭 의무 이며,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4천만원이내

신청·접수 '17. 7월(홈페이지에 공지)

-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홈페이지(www.iim3.org)에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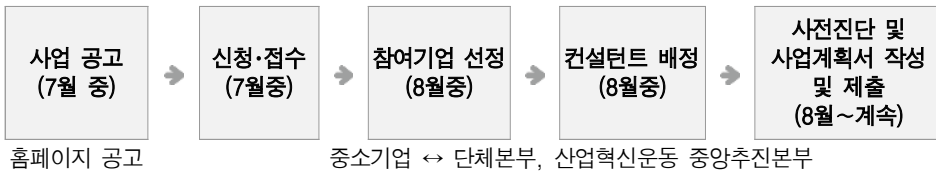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경영·제조 혁신, 기술 등 해당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CEO의 사업추진의지, 개선분야의 구체성, 생산성 효과성 등 심사 및 평가

신청 서류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명원 등

* 신청양식은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홈페이지 www.iim3.org 에 접속해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혁신활동 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운동중앙추진본부 산업혁신운영팀
02-6050-3279~80, csk150617@korcham.net
- 스마트공장 분야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보급확산팀
02-6050-2777, kdw@smart-factory.kr

궁금해요! 증기맨



Q 기술경영자문(컨설팅)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및 개보수는 필수지원 사항인가?

A 컨설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컨설팅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 및 개수 보수를 할 수 있음(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및 개수보수는 필수 지원 사항이 아님)

용어설명

산업혁신운동 : 대중소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범 경제계 차원의 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산업혁신 활동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3

코참경영상담센터

|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즉시상담 제공

법률/법무, 무역/관세, 인사/노무, 특허, 세무/회계, 창업/경영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연간 약 13,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 실시

지원 대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경영상담 서비스	내 용	상담분야
전화 상담 (1600-1572)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법무 ● 청탁금지법 ● 세무회계 ● 인사/노무 ● 무역/관세 ● 특허 ● 창업/경영
온라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	
방문 상담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	

신청·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경영상담센터 1600-1572를 통해 즉시 상담 가능함 (업무시간 10: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코참경영상담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 홈페이지 <http://www.korcham.net> (행사/교육 메뉴에서 코참경영상담 선택)
- 문의처 02-6050-3458, Fax 02-6050-3459

처리 절차

1단계 상담신청	→	2단계 상담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1572전화 상담신청 ▶ 온라인 상담신청 ▶ 방문 상담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완료 ▶ 전문위원 실시간 확인 후 답변 등록 ▶ 본소/구상공회 내 상담센터에서 상담

문의처

회원사업본부 경영정보서비스팀 T. 02-6050-3458

궁금해요! 증기맨



- Q**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A**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 상담이 가능함.
-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나요?
- A** 기업부담액은 전혀 없음.
각 분야 전문위원들은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 해주는 데 가치를 두고 있음.

10-4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지원

| 보험료 할인혜택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제품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상공회의소 PL보험

- 단체보험 할인적용으로 20~30% 보험료 인하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 제공
- 개별 가입보다 유리한 보험료 산정 및 사고처리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20% 추가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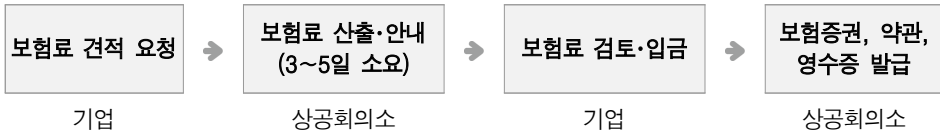
가입 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 가입 가능한 서비스 용역
 - ▷ 승강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 광고판, 광고탑 및 전광판 설치, 해체, 수리, 점검, 보수작업
 - ▷ 전기유지 보수작업 등

가입 지역

국내 및 해외(국가별 개별 가입 가능)

가입 절차



* 참여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공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Tel. 02-6050-3875(代) / Fax. 070-7614-3422)
- E-mail : plcenter@korcham.net
- 홈페이지 : <http://pl.korcham.net>

10-5

올댓비즈 (allthatbiz.korcham.net)

| 정부지원제도, 입지정보, 무료서식 등 기업지원 검색사이트

정부·지자체의 기업지원사업과 다양한 경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망라한 맞춤 검색 사이트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분야	내 용
정부지원제도 맞춤검색	정부·지자체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제도 정보를 사용자 조건에 따라 맞춤 추천
정부지원 문고 답하기	정부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각종 노하우 공유
경영상담	기업의 실무애로에 대해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 답변 제공
입지정보	입주 가능한 공장·벤처창업 입지 정보를 지역별로 조회
기업판결·판례	기업 경영에 참고할만한 판결·판례 정보(독과점, 노사 등)
민간서비스	금융·노무·회계 등 민간영역에서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및 상품 조회
기타	기업실무서식, 알아두면 좋은 경제경영 리포트, 법령정보 등 제공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정보서비스팀 T. 02-6050-3458
- 홈페이지 <http://allthatbiz.korcham.net>
- 이메일 allthatbiz@korcham.net

10-6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개 인력개발원에서 현장실무 중심 교육훈련 실시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 실업자를 위한 양성교육 및 취업지원
 - 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위탁받아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교육하고, 취업으로 연계
 - ② 교육분야 및 기간
 - ▷ 교육분야 : 기계(CAD/CAM, 금형), 전기, 전자, IT, 가구, 용접, IoT융합 분야 등
 - ▷ 교육기간 : 1년 이하
- 재직근로자를 위한 향상교육
 - ①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상의 등의 운영기관을 통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 ② 지원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기업체
 - ③ 지원내용
 - ▷ 컨소시엄 가입업체 근로자는 교육비 전액 무료
 - ▷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해 맞춤형훈련, 채용예정자훈련, 고용유지훈련 등 실시

교육훈련 주요실적 및 '17년 계획

○ 실업자 양성훈련 실적('93년~'15년)

(단위 : 명)

구분	확정 인원	수료 인원	취업		자격증	
			인원	%	인원	%
계	81,897	46,154	39,432	85.4%	36,714	85.1%
2년	59,112	26,332	23,007	87.4%	22,833	86.7%
1년	19,404	16,826	14,317	85.1%	13,881	82.5%
1년미만	3,381	2,996	2,108	70.4%	-	-

○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실적('93년~'15년)

(단위 : 명, 8H)

구분	계	컨소시엄	사업주위탁
인원	735,647	496,930	238,717

○ '17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양성훈련) 실시 계획

(단위 : 명)

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신산업 훈련분야	컨소시엄 전략분야
4,038	1,973	1,795	60	210

교육장소(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Tel. 02-6050-3913(대) / Fax. 02-6050-3599)
- 홈페이지 : <http://www.korchamhrd.net>

○ 개발원별 문의처

개발원	주 소	전화	Fax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20(용당동)	051-610-3123	051-626-4293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56블럭 625번지	032-810-6520	032-810-6526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235번지	062-940-3010	062-940-3019
경기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66번지(일산 대화역 10분거리)	031-940-6830	031-943-3767
강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165-1	033-430-9723	033-430-9729
충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283	043-730-0114	043-731-0608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415	041-850-9563	041-852-1280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659번지	063-472-2512	063-472-2519
서울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6	02-6050-3136	02-6050-3909

→ 용어설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 기업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가 중심이 되고 정부, 지자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차별화된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교육훈련사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기능인력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제 11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1. 수출애로상담	377		
11-2. 이동 KOTRA	379		
11-3. 해외시장조사	380		
11-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381		
11-5. 수출상담회	382		
11-6. 무역사절단	383		
11-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384		
1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385		
11-9. 한국우수상품전	386		
11-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387		
11-11. 온라인 마케팅(buyKOREA)	388		
11-12.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389		
11-13. 지사화사업	390		
11-14. 월드챔프	392		
11-15.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395		
11-16.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397		
11-17. IT수출상담지원센터	398		
11-18.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400		
11-19. 해외IT지원센터	401		
11-20.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지원	402		
11-21. 경제한류 해외진출지원	403		
11-22.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육성 (Medi-Star Initiative)	404		
11-23.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405		
		11-24. 방산물자 교역지원	406
		11-25.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408
		11-26.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지원 (Global Partnering)	409
		11-27. KOTRA 해외시장뉴스	410
		11-28. 해외시장 설명회	412
		11-29.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414
		11-30.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415
		11-31.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417
		11-32. 열린무역관	419
		11-33. 수출인큐베이터	420
		11-34.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KAPP)	422
		11-35.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424
		11-36. 무역투자상담(해외투자진출 지원)	426
		11-37.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428
		11-38.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털(OIS)	429
		11-39.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430
		11-40. 국내복귀기업 지원	432
		11-41. 글로벌 M&A 지원	434
		11-42. KOTRA 글로벌 CSR 사업	435
		11-43.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사업	437
		11-44. 교육·연수	438

11-1 수출애로상담

중소기업의 무역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검사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관세, 통관, 경영지원 등
- 지역별 상담

지역	연락처	
중국/홍콩/대만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내선 1번
아시아/대양주		내선 2번
미주/유럽		내선 3번
중동/아프리카/CIS		내선 4번
기타 문의		내선 0번

* 중국번호사 자문(매주 화, 목 13:00~17:00) : 02-3460-7222

이용 방법

1) 전화 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 2번 수출 컨설팅 선택 → 해당 전문위원 연결

2) 온라인 상담

-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tradedoctor.kotra.or.kr)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 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신청

3)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9)로 사전예약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수출애로상담데스크)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문의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219

11-2 이동 KOTRA

‘이동 KOTRA’는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수출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무료로 방문 상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상담 내용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수출금융, R&D 등)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이동 KOTRA’ 신청 →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기업정보 및 상담 요청사항 등록 → 방문 상담

지역	부서	연락처
서울, 경기북부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02-3460-7319
인천	인천KOTRA지원단	070-7931-0460
경기 남부	경기KOTRA지원단	070-7931-0450
부산, 경남	부산경남KOTRA지원단	051-740-4153
울산	울산KOTRA지원단	070-7931-0755
대구, 경북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659-2254
전북	전북KOTRA지원단	070-7931-0801
광주, 전남, 제주	광주전남KOTRA지원단	062-369-9054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전충청KOTRA지원단	042-862-8313
강원	강원KOTRA지원단	033-261-5312

* '17년 중 경남, 충북지역 신규 지방 지원단 개소 예정

문 의 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19

11-3 해외시장조사

전 세계 KOTRA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잠재 사업파트너 정보 조사, 맞춤형 시장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진출 타겟 시장에 대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9일 이내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개별 통보

지원내용 및 참가비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이용료(VAT 포함)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22만원(기본 3개사) - 잠재 바이어 추가 발굴 시, 건당 추가 5만원 - 입금 후 조사 착수
맞춤형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10,000원/항목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220,000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0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2배 적용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사업’ 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조사가능여부 검토(약 9일 소요) → 검토 결과 전달 → 조사 시작(3주) → 조사 결과 → (사업파트너연결지원) 사업 파트너와 교신지원(2개월)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 납부 시기 다름

문의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37~7339

11-4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글로벌 역량 평가와 품목별 분석을 통해 ① 역량 분석 결과 ② 품목별 시장성 ③ 수출 지원 사업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선 컨설팅(02-3460-7325) 신청 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1. 역량 분석 : 글로벌 역량 진단을 통해 성장단계(7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

* 성장 단계 : 초보내수 → 성장내수 → 유망내수 → 글로벌초보 → 글로벌유망 → 글로벌선도 → 글로벌강소

* 8개 역량 : 비전/마인드, 인력 및 자금, 인프라, 의사소통, 판촉/마케팅, 네트워크, 시장전략, 제품

2. 시장성 정보 : 국가별 시장성(접근성, 매력도, 성장성, 경쟁력), 수출입 동향 등 안내

3. 지원 사업 안내 : 896개 지원 사업(마케팅 128개, 역량강화 310개, 자자체 458개)을 성장 단계에 따라 안내

* 고객 요청(02-3460-7325) 시, 1:1 유선컨설팅 및 현장방문상담 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 GCL Test 설문 답변 → 분석 정보 확인(역량, 시장, 지원 사업) → 1차 유선컨설팅(02-3460-7325) → 2차 방문컨설팅(KOTRA 수출전문위원)

문 의 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25

11-5 수출상담회

한국 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업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KOTRA 및 공동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방한 유치가 확정된 바이어의 취급 품목과 일치하는 중소기업

참가비 무료

* 사업비는 KOTRA 및 주최기관(지자체, 유관기관)이 지원

지원 내용

- 선정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 추진
-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및 buyKOREA.org에서 연간계획 확인 → 주최기관(KOTRA, 지자체, 유관기관)에 사업신청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당 품목 바이어의 방한 유치 → 주최기관을 통해 방한 확정 바이어와 1:1 상담주선 추진 → 주최기관 및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출상담 후속 지원

* 2017년도 수출상담회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객안내센터(1600-7119) - 1번(KOTRA 사업안내)

11-6 무역사절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KOTRA가 지자체, 유관기관과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평가와 파견기관의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참가비

- 참가기업은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임등) 자체부담 원칙
- 해외사업비 예산은 파견기관이 부담

지원 내용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 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연간계획 확인 → 사절단 파견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참가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수출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성 조사 → 파견기관에서 참가업체 선정 및 사절단 파견 → 해외무역관에서 준비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추진 → 해외무역관 후속지원-지자체 무역사절단 구성, 파견활동은 중진공이 대행 수행

* 2017년도 무역사절단 일정은 KOTR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지원전략팀 : 02-3460-7330, 7331, 7333

11-7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참가비

전시회별,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의 50%상한 범위 내 지원
- 전시품 운송비 : 편도운송비 1CBM 한도 100% 국고지원
-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측 디렉토리 신청 등
-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약 → 사전 마케팅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문의처

해외전시팀 : 02-3460-7288, 7286, 3275, 3330, 7298

1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 개별참가시 KOTRA가 부스비, 해상편도 운송비, 해외시장조사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자금지원(600만원 한도 지원)

기본부스 (Shell Scheme)	기본부스비 70% + 편도 해상 운송비(1CBM/1부스) + 해외마케팅비(50만원한도)
독립부스 (Space Only)	독립부스비 100% + 편도 해상운송비(1CBM/1부스) + 해외마케팅비(50만원한도)

*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전시회 참가업체 또는 전시품 부피가 큰 업체의경우 운송료지원을 확대하여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전시마케팅 지원

* 현장지원 : 현지무역관이 개최기간 중 전시장 방문 및 애로사항 조치

* 사후지원 : 유망 상담건 발굴 및 추가 상담 지원/사후 수출성약 및 관리지원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심사 → 선정업체 발표 →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교부

* 상반기(1~6월) 전시회 신청 : 2~3월 중 / 하반기(7~12월) 전시회 신청 : 7~8월 중

문의처

해외전시팀 : 02-3460-7285, 7256, 7289, 7268

11-9

한국우수상품전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입니다.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참가비

100만원 (전시회별, 지역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전시장 임차 및 장치비
- 전시품 운송, 통관수수료(해상 단체 편도운송, 1CBM 한도)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진행 절차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전 마케팅 지원 (바이어 상담주선) → 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문의처

전략전시팀 : 02-3460-7272, 7273

11-1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SEOUL FOOD’는 1983년 최초 개최 이래 34년간 지속된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 전시회이자 국내식품업계의 해외수출을 지원하는 KOTRA 대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품목군은 식품, 식품 관련 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업

식품업체 및 식품관련 기기 분야

시기/장소

2017.5.16-19 / KINTEX

참가비

- 독립식 부스 : 2,420,000원
- 조립식 부스 : 2,860,000원 (* VAT 포함)
 - * 조기신청 시/ 부스규모별/ 소상공인(4인 미만 사업장) 참가비 할인
 - * 자세한 내용은 SEOUL FOOD 공식홈페이지(www.seoulfood.or.kr) 참고

선정 기준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및 신청금 납부
- 임차면적 소진 시 마감

진행 절차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D, PW 입력 후 신청 → 1차 마감 (추후 일정 통보)/ 참가비 완납 → 전시회 참가

문의처

전략전시팀 : 02-3460-7269, 7267

11-11

온라인 마케팅(buyKOREA)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 바이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업체를 연결함으로써 한국 상품의 해외 홍보, 해외바이어의 구매정보 중개는 물론 거래대금 온라인 결제(KOPS), EMS 국제배송, 화상상담 등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용 방법

KOTRA 기업회원 가입 후,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접속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구분	주요 내용
수출상품 등록	계정당 수출상품 50개까지 등록 가능 유튜브(YouTube)에 등록된 상품 동영상도 바이코리아에 등록 가능
바이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된 구매 오퍼 검색가능
인콰이어리 발송, 수신	바이오퍼 검색 후 연락희망 바이어에게 인콰이어리 발송 가능 자사 상품을 검색한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수신 가능
수출대금 결제	KOPS ¹⁾ 서비스 이용을 통해 바이어는 수출대금을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국내기업은 계좌로 결제대금 수취 가능 (별도 계약 필요)
수출상품 발송	EMS 배송신청 기능을 통해 수출상품 발송 (할인율 최대 16%) (별도 계약 필요)
화상미팅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온라인상으로 미팅 진행 가능
해외기업정보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비즈니스행사	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주1) KOPS(KOTRA Online Payment Service)란, 바이코리아 내에서 이용가능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문 의 처

중소기업지원전략팀 : 02-3460-7328

11-12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국내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 서비스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특히, 퇴직무역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 (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로 밀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내수기업

선정 기준 GCL Test, 해외시장성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 기업

* 수출 준비 및 의지가 있는 기업 우대

참가비 무료

지원 기간 1년(연중 모집)

* 1년간 지원 후 수출성약시 졸업, 수출성약이 없는 경우 업체의사에 의거 연장지원

지원 내용

-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진행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체 모집 공지 → 각 지원기관별 온라인 신청 → 신청심사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 종합컨설팅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수출기업화 및 졸업

문의처 수출첫걸음지원팀 : 02-3460-7538

11-13 지사화사업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OKTA 글로벌마케터(진입), KOTRA 지사화전담직원(발전), 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참가비(잠정)

- 진입단계 : 500,000원
 - 발전단계 : 2,500,000원 - 3,500,000원 (* 참가비는 뒷면 참조)
 - 확장단계 : 12,000,000원 - 20,000,000원
- * 상기 금액은 실제 서비스 수수료에서 국고 지원금을 제외 한 순수 업체 부담금

지원 내용

구분	기간	지원내용(잠정)	비고	주요타겟
진입	6개월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제품 수출가능성 점검, 현지 코디네이션	글로벌 마케터 (OKTA)	초보 (수출액 10만불 이하)
발전	1년	(수출 및 성약지원) 신규거래선 발굴,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컨설팅,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시장·산업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등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유망 (수출액 10만불~500만불 미만)
확장	1년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 및 제휴,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IP등록, 현지 법인설립, GVC, 기타	해외민간네트워크 (중진공)	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진행 절차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지사화사업’ 신청 → 심사(서류 및 현장실사) → 선정 → 참가비 납부 → 협약 체결 → 지사화사업 수행

문의처 유망기업지원팀 : 02-3460-7426

지사와사업_무역관별 참가비

단위 : 만원(V.A.T 포함)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중국 지역	중국	광저우	300	일본 지역	일본	나고야	350
		난징				도쿄	
		다롄				오사카	
		베이징				후쿠오카	
		상하이		북미주 지역	미국	뉴욕	350
		샤먼				시카고	
		선양				로스앤젤레스	
		선전(심천)				달라스	
		시안				워싱턴	
		우한			캐나다	마이애미	300
		정저우				디트로이트	
		창사				실리콘밸리	
		청두(성도)				토론토	
		충칭				밴쿠버	
		칭다오(청도)		브라질	상파울루	350	
		톈진(천진)			리우데자네이루		
		항저우			칠레	산티아고	300
		홍콩		멕시코	멕시코시티		
	타이완(대만)	타이베이		과테말라	과테말라	250	
동남 아 대양 주 지역	호주	시드니	350	중남미 지역	쿠바		아바나
		멜버른			파나마		파나마
	베트남	하노이	300		콜롬비아		보고타
		호치민			페루		리마
	필리핀	마닐라	300		에콰도르		키토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50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수라바야			파라과이		아순시온
	태국(타이)	방콕	250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캄보디아	프놈펜			CIS 지역	러시아	모스크바
라오스	비엔티안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블라디보스톡		250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지역	국가명	무역관명	참가비
서남 아 지역	미얀마	양곤				노보시비르스크	
	뉴질랜드	오클랜드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도	뉴델리	300		우크라이나	키예프	
		뭄바이			아제르바이잔	바쿠	
		방갈로르	25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첸나이			벨라루스	민스크	
	방글라데시	다카	몽골		울란바토르		
스리랑카	콜롬보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300		
파키스탄	카라치		이란	테헤란			
영국	런던		이스라엘	텔아비브			
독일	프랑크푸르트		350	이라크	바그다드	250	
	뮌헨			리비아	트리폴리		
	함부르크			터키	이스탄불		
프랑스	파리		카타르	도하	250		
벨기에	브뤼셀	이집트	카이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르단	암만				
이탈리아	밀라노	시리아	다마스쿠스				
스페인	마드리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스위스	취리히	쿠웨이트	쿠웨이트				
스웨덴	스톡홀름	알제리	알제				
덴마크	코펜하겐	모로코	카사블랑카	아프리카 지역	250		
오스트리아	빈	오만	무스카트				
핀란드	헬싱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그리스	아테네	모잠비크	마푸투				
폴란드	바르샤바	케냐	나이로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수단	카르툼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체코	프라하	탄자니아	다레살람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나이지리아	라고스				
불가리아	소피아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가나	아크라			

11-14 월드챔프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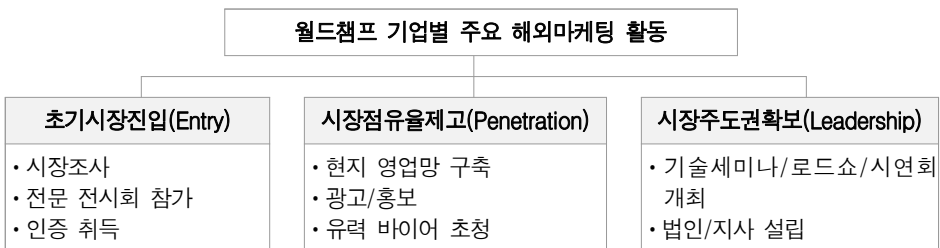
대상 기업 산업부/중소기업청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기업 (월드클래스300기업 또는 글로벌전문후보기업 등)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정기준 (산업부/중소기업청 선정)

① 공통조건	선택조건 (② 또는 ③)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소프트웨어,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100억원 이상)	② 월드클래스 300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 수출비중 20% ▪ 3년 평균 R&D 투자 비중 2%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또는
	③ 글로벌 전문기업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구간별로 차등 : 5천만불 미만 기업은 5% 이상, 5천만불 이상 기업은 제한없음

* 참고사항 : <http://www.worldclass300.or.kr/index.do>(월드클래스300)
<http://www.globalchamp.or.kr>(글로벌전문기업)

지원 내용



-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마케팅 계획 수립
-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시장조사, 영업망 구축, IR행사, 로드쇼, 전시회 등)

지원 규모

참가기업(50)과 정부(50)의 매칭펀드로 1억원 내의 사업비 조성

지원 기간

1년 단위로 최대 5년 지원

진행 절차(잠정)

한국형 히든챔피언 모집공고(산업부/중기청) → 선발기업 선정 (1,7월) → 선정기업 대상 월드챔프 참가업체 유치(2,8월) → 기업별 로드맵 수립(2,8월) → 사업개시(3,9월)

문의처

중견기업지원팀 : 02-3460-7227

11-15

세계일류상품 육성 사업

국가 수출을 이끄는 1,000개의 핵심 제품 육성을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7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을 선정하여 생산기업의 종합 해외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비

제조업, 서비스업 통합

구분	선정 기준
현재일류상품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참 가 비

무료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p>KOTRA가 직접 지원하는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사업</p> <p>(기업 맞춤형 지원)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인증, 특허 등 기업의 현황에 맞는 사업 추진 지원 및 무역관 수출 멘토링 서비스 제공</p> <p>(목표시장 맞춤형 R&D 개발 지원사업)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 희망기업 모집하여 5년간 해외시장 타겟 브랜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 무역관과 협업으로 초기 1~2년간은 목표 시장 맞춤형 상품 개발(브랜드, 디자인 등), 개발 완료 후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개발부터 판매까지 일괄지원
간접지원	<p>유관기관 지원사업 활용 시 우대 혜택</p> <p>(참여기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조달청, 중기청, IBK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등</p>

* 지원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절차

연 1회 실시

- 산업부 신규선정 공고 → 참가신청 → (간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간사기관이 접수, (간사기관 없는 경우) KOTRA가 접수 → KOTRA/업종별 간사기관 심의 → KOTRA/업종별 추천위 추천 →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 결정 → 선정 결과 발표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문 의 처

중견기업지원팀 : 02-3460-7229

11-16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이메일, 전화, 내방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 중 겪게 되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관해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현지 법규, 회계, 금융 등 시장진출 장벽, 리스크 관리, 대응책 등 상담

진행 절차

애로 상담 신청(이메일, 전화, 팩스) → 신청 내용 검토 후 해외 수주애로상담센터 자문위원이 이메일, 유선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문 의 처

플랜트팀 : 02-3460-7489

11-17

IT수출상담지원센터

ICT 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로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진출국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ICT(정보통신기술) 및 IT 융합 수출 기업

-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전자 부품, 기타 디바이스
- ▶ 소프트웨어(솔루션, 모바일앱)
- ▶ IT 서비스, 산업별(공공, 금융, 제조, 유통) SI 프로젝트 및 인터넷 서비스 등

이용료

무료

상담 내용

1) 해외 ICT 시장 진출 애로 해결 및 컨설팅

- ▶ ① 의사결정 ② 시험판매 ③ 전략적 제휴(유통/자본/R&D) ④ 계약 ⑤기업 및 제품의 현지화 ⑥ 현지거점 설립

2) 외부 전문가 연계 자문

- ▶ 해외 진출 관련 관세, 법률, 지적권, 금융 등 전문 분야 자문

이용 방법

- 1) IT수출상담지원센터 전화상담
 - 하드웨어(02-3460-7752), 소프트웨어(02-3460-7753), IT 서비스(02-3460-7754)
- 2)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tradedoctor.kotra.or.kr)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 3) IT수출상담지원센터 내방상담 (KOTRA 본사 5층, IT사업단 내 상담센터)
- 4) 수출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 방문 필요 시, 출장 상담 가능
- 5) 고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1번 사업 안내 선택 → IT수출상담지원센터 연결 요청 → 접수 및 상근위원 상담 → 필요시 외부 자문단 연결 → 사후 관리

문의처

IT사업단 : 02-3460-7752, 7753, 7754

11-18 ICT기업 해외수출지원(K-Global)

‘K-글로벌’은 주요 IT시장에 중소기업 해외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T분야 전시상담, 컨퍼런스, 기술교류, IR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바일, 부품, 정보보호, 디바이스, IT 서비스 분야 국내 IT기업

선정 기준 현지 시장성 평가

일시/장소

행사명	일시	장 소	국내기업
K-글로벌 런던	6월	런던	30
K-글로벌 실리콘밸리	11월	실리콘밸리	40
K-글로벌 차이나	12월	상하이	40

* 상기 일정 및 지역은 국내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사항

- ICT 관련 융복합사업 추진
 - * 무역(수출상담회), 정보(컨퍼런스), 투자(스타트업 IR), 기술전시(Tech 로드쇼)
-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발주처) 수요 연계 사업 추진 및 후속 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사절단’ 신청 → 신청서 작성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1:1 상담신청 → 상담주선 → 최종스케줄 확인 및 상담 준비

문의처 IT사업단 : 02-3460-7462

11-19

해외IT지원센터

국내 ICT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에 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설치 지역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대상 기업

진출희망지역에 대한 정보통신(ICT)분야 수출역량 보유 중소 벤처기업

선정 절차

서류심사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지원 내용

- 현지 사무공간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ICT 바이어 발굴 및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ICT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정보 제공 등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IT지원센터사업’ 신청 → 1차 서류심사 (ICT분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IT분야 중소, 중견기업) → 2차 심사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 등을 기준, 현지 전문가 심사) →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사후관리

서류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 전문가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기업소개서 - 해외진출 사업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 - 제품성 - 시장성

문의처

IT사업단 : 02-3460-7463

11-20

서비스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서비스 거점 KOTRA 해외무역관을 이용하여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콘텐츠(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 웹툰, 음악, 게임), 의료(스마트헬스케어,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관광서비스, 교육(이러닝), 금융(핀테크), SW, 물류, 지적권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

수행 시기

연중

참가비

100만원

지원 내용

- 거점무역관을 통한 1:1 밀착지원(로드맵 수립, 사업파트너 발굴 등)
- 거점지역 유명전시회 또는 무역시찰단 참가 지원(부스비 일부, 통역, 바이어 상담주선 등)
- 기업별 해외마케팅 개별 참가 지원
- KOTRA 주관 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지원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기업별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해외진출전략 도출 → 서비스 개시 ('17.12월 종료)

문의처

서비스산업팀 : 02-3460-7610

11-21

경제한류 해외진출지원

한류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제한류의 파급 효과를 국내 유망 제조 및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경제한류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신규 해외 수출 및 진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한류 박람회, 한류 연계 특화 마케팅 사업, 한류 심층조사를 추진하여 경제한류 분야 해외마케팅을 선도적으로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한류스타 MD상품 등 한류 기반 소비재와 방송, K-Pop, 스마트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뮤지컬, 게임, 문화와 산업(IT기술) 융복합, 패션, 미용, 한류스타 MD상품 등

수행 시기

연중 3~5회

지원 내용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 (KBEE, 코리아 브랜드 & 한류상품 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 한류의 글로벌 진출 지원 (2016년 개최지: 중국 2~3선 도시 : 선양, 충칭)

- * 2017년 개최 예정지는 한류 성장지역인 동남아, 중화권 예정
- ▷ 한류스타(연예기획사)와 중소·중견기업(서비스, 제조업)간 브랜드 매칭 사업
- ▷ KCON, MAMA 등 한류 공연 연계형 중소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사업
- ▷ 한류·CSR(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수출마케팅 사업

문의처

콘텐츠융합팀 : 02-3460-7608

11-22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육성사업 (Medi-Star Initiative)

‘의약품·의료기기 선도기업 육성사업 (Medi-Star Initiative)’은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수출 유망기업

수행 시기

연중

지원 내용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해외바이어 발굴, 개별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및 기타 마케팅사업을 활용하여 기업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참가기업 모집(연초) → 참가기업 선정 → 맞춤형 마케팅 지원(연중) → 점검 및 평가(연말)

문의처

의료바이오팀 : 02-3460-7623

11-23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병원 프로젝트의 수주와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현지 파트너·발주처 발굴, 국내 초청 설명회·상담회 개최, 현지 네트워킹,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내 기업(기관)의 프로젝트 수주와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대 상

해외 병원 프로젝트 수주 및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기업·기관·병원 등 또는 컨소시엄

- 노인요양원, 산후조리원, 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해외진출 보건의료분야
- 건설, 의료장비 소싱, 병원IT·의료시스템·설비 구축, 컨설팅, 위탁운영 등 프로젝트 관련 분야

수행 시기

연중(선정공고 별도 공지)

지원 내용

현지 진출과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네트워킹, 시장조사 등 해외 파트너 및 프로젝트 발주처 병원 등 관련 분야 초청 설명회 개최 및 1:1 상담 기회 제공 등

진행 절차

- 사업공고 → 국내 참가 컨소시엄 모집 → 평가 및 선정 → 프로젝트 수주 마케팅 지원
- 해외 병원 프로젝트 발주처 초청 설명회·상담회 연계 지원

문의처

의료바이오팀 : 02-3460-7620

11-24

방산물자 교역지원

KOTRA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국내 방위·보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방산·보안물자의 수출을 지원해드립니다.

구 성

-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합동 조직

지원 내용

사업	주요내용
정부간(G2G)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국 정부의 G2G 계약의사 확인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KOTRA(KODITS)의 G2G 계약 체결·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 계약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패키지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국 정부가 희망하는 산업·투자·자원 등의 협력을 위한 협상안의 종합 설계 지원
절충교역(Offs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대상국 절충교역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절충교역(민수 분야) 협상안 작성 및 이행지원
파이낸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수출건별로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수출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 KODAS 등 국내외 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방산보안수출선도거점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정보 및 구매정보 (인콰이어리) 제공

진행 절차

- 구매국 G2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능력 평가 및 선정 → G2G 계약 협상 → G2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KODITS) - 국내기업 간 이행 약정 체결 → G2G계약 체결(KOTRA(KODITS) - 구매국정부) → 계약 이행 (국내업체) 및 이행 모니터링(KOTRA(KODITS))

문의처

기획총괄팀 : 02-3460-7308, 수출계약팀 : 02-3460-7818

11-25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 육성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달 전문기업 1000개사 육성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수출기업 1000개사 (KOTRA 500개사, 조달청 500개사 선정)

선정 기준 해외마케팅 역량(70%) + 재무건전성(30%)

참가비 무료

지원 내용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이 벤더등록 지원, 해외조달시장 정보, 입찰보증 한도확대/ 금리우대/ 자금 지원 한도 우대 등 금융지원 제공

진행 절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참가기업 선정 → 참가기업의 요청에 따른 사안별 지원 → 점검 및 평가

문의처 공공조달팀 : 02-3460-7672

11-26

글로벌기업 파트너링 지원(Global Partnering)

‘글로벌파트너링’은 R&D 기반의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육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상 기업 글로벌 기업의 제품 소상개발 의뢰에 대응 가능한 부품소재 (중간재) 강소 중견 기업

선정 기준 필요 시 전문가 협의체 및 글로벌기업을 통한 사전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 선정

참가비 무료

지원 내용

- 글로벌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 글로벌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정부 R&D 자금지원, 기술 교육 등)
-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개최
 - * 일시/ 장소 : 11월/ 서울
 - * 글로벌 기업 50개사, 국내 기업 250개사 참가

진행 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 국내 기업 조사 → 제휴 및 매칭 지원 →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플랫폼 운영

문의처 소재부품팀 : 02-3460-7663

11-27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 해외시장뉴스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전세계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생생한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심층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 방법

-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m.news.kotra.or.kr)
- Facebook(facebook.com/globalwindow.kotra)
- 트위터(twitter.com/globalwindow)
- 매주 화·목요일 해외시장정보를 담은 이메일 뉴스레터 제공(신청 : 열린마당-뉴스레터 메뉴)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 주요 무역 통상정보

유 형	내 용
뉴스	세계 각국의 산업·상품, 경제·무역,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등
국가정보	세계 97개국 비즈니스 기초 국가정보 및 국별 출장자료·경제지표 정보
분석보고서	이슈 현안에 대한 심층 보고서, 지역·국별 진출전략보고서 등
비즈니스정보	상품DB, 산업DB, 기업성공사례, 무역사기사례, 해외인증제도 등
무역자료실	KOTRA 본사에 위치한 무역자료실, 관세율·무역통계 팩스 서비스 신청 안내
포토·동영상	포토뉴스, 온라인 설명회 서비스, 동영상 국가정보 등

○ 해외정보조사

담당팀	내 용
통상전략팀	글로벌 이슈 및 통상정보 조사
아대양주팀	일본·동남아대양주·서남아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구미팀	유럽·북미·중남미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중아CIS팀	중동·아프리카·CIS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중국사업단	중국·홍콩·대만 시장 산업/경제/통상정보 조사

문의처

통상전략팀 : 02-3460-7507~7508

11-28

해외시장 설명회

KOTRA는 설명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2017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연초 세계시장 조망,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의 권역별 이슈 점검, 수출유망 분야 제시
- 지방 설명회 동시 개최로 지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립 지원

구분	서울 설명회	주요 산업/지역 비즈니스 포럼	지방 설명회
일자	'17.1.10(화)	'17.1.11(수)	'17.1.12(목)
장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B1 하모니볼룸(잠정)	KOTRA 본사 및 IKP 회의실	추후 공지 예정
대상기업	2016년 해외시장진출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 유관기관(산업별 협회 등) 및 연구기관 관계자		
주요 프로그램	세계경제전망 및 권역별 진출전략소개	유망 산업 및 지역별 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전략 등	권역별 진출전략
참가비	100,000원 (잠정, *조기신청고객,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참가비 할인)	추후 공지 예정	추후 공지 예정
신청방법	'16.12월부터 KOTR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2017 해외시장 설명회 유망시장·전략분야에 대한 설명회 연중 수시 개최

지난 해외시장 설명회 시청

-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 포토·동영상 - 설명회·세미나 영상
- 일부 설명회는 발표자료 다운로드 가능(pdf 파일)
 - * KOTRA 설명회 일정은 추후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초기화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통상전략팀 : 02-3460-7507~7508

11-29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정상외교를 통해 도출된 경제·산업 부문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상외교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범부처 체계를 통해 지원해드립니다.

이용 방법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http://president.globalwindow.org>) 접속 후 무료이용

* 모바일 앱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정상외교경제활용” 검색 후 다운로드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구분	주요 내용
정상외교 성과	양국 정상간의 공동성명, MOU 등의 합의내용, 경제행사 및 달라지는 비즈니스 환경 등을 DB로 구축
정상회담 종합정보	정상 순방국/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업정보, 상품·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한국기업정보 등 정상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지원사업 참가 안내	정상외교 후속조치로서 정부부처·수출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관련사업 참가정보, 사업결과보고, 국가간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정부 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아이디어 제안	기업이 정상외교를 활용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부처·수출유관기관의 맞춤형 추진 사업을 안내하고, 신규 사업개발에 적극 반영
정상외교 활용사례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이나 정상외교 후속사업 참가를 계기로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하여 정상외교 활용방법 공유
경제사절단 활동 지원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동행할 경제사절단행사 관련 모집·신청·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행사 및 일정공유, 주요 활동 및 결과등록을 통한 정보 제공

문 의 처

성과확산팀 : 02-3460-3285

11-30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FTA가 체결은 되었는데, 복잡한 내용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우시다고요? KOTRA와 함께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협정문 내용부터 마케팅 상담까지 한-중국·한-베트남 FTA 활용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이 용 료

무료

사업 내용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주요기능

정보제공 	활용 상담 	애로지원 
FTA 홍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동향 조사 및 정보 제공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상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상담) 내방객 및 유선, 이메일을 통한 FTA 활용 상담 (이동 상담) 현지 기업, 진출기업 밀집지역 방문 상담 (헬프 데스크) 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FTA 활용 애로해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 인증 등 기업애로 사례 발굴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한중 FTA 마케팅 등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FTA 자문단 <p>가능별(법률·통관·회계 등), 산업별(화장품, 식품 등)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p>		

연 락 처

센터	전화	웹사이트
베이징	(86-10) 6410-6162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www.kotra.or.kr/KBC/qingdao
청두	(86-28) 8672-3501	www.kotra.or.kr/KBC/chengdu
광저우	(86-20) 2208-1600	www.kotra.or.kr/KBC/guangzhou
다롄	(86-411) 8253-0051~3	www.kotra.or.kr/KBC/dalian
톈진	(86-22) 2329-6631~3	www.kotra.or.kr/KBC/tianjin
하노이	(84-4) 3946-0511	www.kotra.or.kr/KBC/hanoi
호치민	(84-8) 3822-3944	www.kotra.or.kr/KBC/hochiminh

문 의 처

FTA지원팀 : 02-3460-7510

11-31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 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저반 활동을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선정 기준

인터넷으로 신청 후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고객 안내

수수료

일반서비스 : 300,000~500,000만원 (VAT포함) (*)

프리미엄서비스 : 600,000~1,000,000만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	[일반서비스] · 바이어 상담주선(4개사 내외) · 호텔예약, 차량임차, 통역원 자료 제공 ·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	[프리미엄서비스] · 바이어 상담주선(4개사 내외) · 2일간 상담지원(통역, 차량 지원) · 호텔예약 자료 제공 · 출장안내자료 및 상담장 제공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조사	· 관할지역 투자환경자료제공 · 현지 한국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등 상담 주선 (호텔 및 차량예약, 통역원 자료 제공)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사업’
신청 → 해외무역관에서 지원가능여부 검토(약 2주 소요) → 출장지원 가능시 고객에게
견적서 송부 →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약 2주) → 출장시행

참고 사항

출장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 : 122개 무역관

* 여행금지국가 출장지원 신청 불가

문의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34

11-32

열린무역관

‘열린무역관’은 국내기업이 해외출장 시 필요한 사무공간을 전 세계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

선정 기준

2개 이상 업체가 동일지역 및 일정에 신청하는 경우 선착순 배정

이 용 료

무료

지원 사항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 (무역관별 분기당 1회만 가능)

분류	세부지원 사항
사무공간	책상(컴퓨터 포함), 전화/ 팩스, 인터넷, 회의실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 통역원 지원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현지 공휴일은 서비스 미지원

진행 절차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열린무역관’ 사업 신청
→ 신청서 작성 → 일정검토 후 고객 통지 → 출장시행 (열린무역관 서비스 이용)

참고 사항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기간 : 출장 2주전 신청

문 의 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344

11-33

수출인큐베이터

현지 KOTRA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 지원서비스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수출유망품목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설치지역 및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설치지역		입주규모
중국	베이징	21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6	인도	뉴델리	16
	광저우	14	미국	뉴욕	23
	청두	10		LA	23
	시안	7		워싱턴	12
	충칭	7		시카고	18
베트남	호치민	12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하노이	15	러시아	모스크바	10
일본	도쿄	15	UAE	두바이	11
싱가포르	싱가포르	10	카자흐스탄	알마티	7
브라질	상파울루	10	칠레	산티아고	7

수 수 료

- 입주보증금 : 500만원
- 월 임대료(사용면적에 따라 부과)
 - * 전화, 인터넷 사용 등 관리비는 업체 실비 부담

입주 기한 최장 4년**지원 사항**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인터넷 등 행정지원
- 생활정착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KOTRA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진행 절차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참가 신청 (연중 수시) → 업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KOTRA·중진공) → 업체 선정통보 (약 1~1.5개월 소요) → 입주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준비 및 인큐베이터 입주

문 의 처

- 유망기업지원팀 : 02-3460-7430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 : 055-751-9673, 9678

11-34

자동차부품 공동사무소(KAPP)

‘Korea Autoparts Park(KAPP)’는 글로벌 완성차 거점지역에 공동 사무공간을 운영하여 현지 전담 마케팅등을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대상기업/선정기준

- 글로벌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지 즉시 대응 및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요구 받은 기업
- 해당시장 집중 마케팅을 위해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치를 고려중인 기업
- 현지법인/지사 설립은 되어 있으나 성과 제고를 위해 KOTRA와의 협업이 필요한 기업

* 단,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여 대기업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참 가 비 (지역별 상이)

- 디트로이트 : 1인실 연 4,600,000원, 2인실 연 7,900,000원
- 나고야 : 1인실 연 6,600,000원, 2인실 연 10,900,000원
- 프랑크푸르트 : 1인실 연 10,300,000원, 2인실 연 18,600,000원, (보증금 1,000,000원)
- 상하이 : 1인실 연 7,300,000원, 2인실 연 12,800,000원

지원 사항

○ 직접 지원 서비스

- * 사무공간 제공 : 독립공간(사무실) 및 공동 사용공간(회의실)
- * 현지 마케팅 활동 지원 :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기존 거래선 관리 등
(전담직원을 통해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

○ 간접 지원 서비스 (물류, 정착지원, 기타)

- * 초기 셋업 : 입주업체 신규 법인/지사 설립/비자발급 등 지원
- * 세일즈렙 활용 : 입주업체 세일즈렙 활용 희망시 업체선정 등 지원
- * 물류서비스 지원 : 무역관 공동물류센터 활용, 물류서비스
- * 현지 전시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

진행 절차

참가신청서 개별 접수 (관심기업 → 본사) → 무역관의
자격 심사 후 입주여부 확정 통보 →

- ①空사무실 있을시 :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입주
- ②空사무실 없을시 : 대기명단 → 입주계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 입주

문의처

소재부품팀 : 02-3460-7637

11-35

해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 사업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반품, 보세창고(중국지역)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스톡세일(stock sale) 등 현지 물류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영위
중소·중견기업

참가비

지사화 사업 참가비의 50% (지역별 상이)

	유형1	유형2	유형3
참가비(예시)	75만원	150만원	300만원
지원한도(연간)	60CBM	120CBM	240CBM

지원 사항

- 최적 물류수단 확보, 물류비용 절감방안 등 물류컨설팅 제공
- 현지 물류창고 지원
- 현지 물류전문업체와 협력하여 통관, 운송, 창고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 서비스 제공
- B2C 물류서비스(Fulfillment) 지원 (뉴욕, LA, 시카고, 도쿄), 보세창고 이용 지원 (중국 5개소 :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정저우, 항저우)
- 중국 반품지원공동물류센터 (상하이)

진행 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참가 신청
→ 글로벌 역량진단 실시 → 무역관 시장성 검토 및 품목 중복성 검토 → 예비
선정 및 물류비 예상 견적 산출 → 참가비 납부 및 가입 완료 → 협약서 체결 →
사업개시
- 공동물류센터 운영무역관 12개국 22개소(2016.12월)

지 역	무역관명
북 미(5)	뉴욕, L.A., 시카고, 마이애미, 토론토
일 본(1)	도쿄
중 국(8)	광저우, 다롄, 상하이, 베이징, 청두, 칭다오, 정저우, 항저우
유 럽(4)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런던
중남미(2)	파나마, 상파울루
아시아(1)	호치민
C I S(1)	알마티

문 의 처

유망기업지원팀 : 02-3460-7423, 7443

11-36

무역투자상담(해외투자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을 위해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이 용 료

무료

지원 내용

- 해외투자진출 지역별 절차 및 법규
- 투자유망지역 안내
- 법인설립 절차 및 인력 확보 방안 안내
- 지역별 상담

지 역	연락처	
중국/홍콩/대만 ※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내선 1번
아시아/대양주		내선 2번
미주/유럽		내선 3번
중동/아프리카/CIS		내선 4번
기타 문의		내선 0번

○ 분야별 상담

지역	상담 내용	상담 수행기관	상담 전화
중국	중국법률 자문 (매주 화, 목 13:00~17:00)*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중국 전문 변호사 2인	02-3460-7222
베트남	베트남 현지 변호사와 화상상담 (매주 수, KOTRA 16:00~17:30, 건당 30분 이내)**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하노이 및 호치민 무역관 베트남 전문 변호사 2인	02-3460-7218

* 중국변호사 자문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상담 후 화상상담 예약 스케줄 안내

이용 방법

1) 유선(전화) 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2번 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선택 → 해당 지역 전문위원 연결

2) 온라인 상담

-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tradedoctor.kotra.or.kr)접속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3) 방문(내방) 상담

- 전화(02-3460-7218) 연락 → 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방문 상담

* 내방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문의처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218

11-37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 진출이 활발한 7개국에 12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투자 진출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정착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현지 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 해외진출 우리기업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 * 현지 해외투자 이슈 및 경영정보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 현지 내수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 지원
 -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센터 현황

국가·지역		연락처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
	상하이	+86-21-5108-8771
	칭다오	+86-532-8388-7931
	광저우	+86-20-2208-1604
	다롄	+86-411-8253-0051/3
	시안	+86-29-8883-1060
베트남	호치민	+84-8-3822-3944
	하노이	+84-4-3946-051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1-574-1522
필리핀	마닐라	+63-2-893-1183/3244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
캄보디아	프놈펜	+855-23-999-099
폴란드	바르샤바	+48-22-520-6235
미얀마	양곤	+95-1-255-454
브라질	상파울루	+55-11-3175-301

문의처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53

11-38

해외 투자 진출 정보 포털(OIS)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OIS’는 24개 해외투자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투자 정보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해외투자정보 포털입니다.

이용 방법

-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OIS) : www.ois.go.kr
- KOTRA 회원가입 후 ‘통합시장정보’ 뉴스레터 구독

이 용 료

무료

제공 정보

주요 메뉴	내용
해외투자일반	해외직접투자 절차, 해외투자 체크리스트, 해외투자 지원기관
국별투자실무가이드	국가별 투자절차, 법인설립 가이드
해외투자동향	KOTRA 무역관 작성 해외투자속보, 유관기관 전문자료
상담실	해외투자 FAQ, 현장상담사례, 온라인 상담, 국내절차 FAQ
자료실	발간자료, 해외진출 한국기업 검색, 해외투자전문가정보
중국진출 노하우	법인설립, 현지경영, 청산, 국내복귀까지 중국진출 단계별 노하우 공유
뉴스레터	‘통합시장정보’ 뉴스레터

문 의 처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59

11-39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6개국에 12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 지원

구분	세부지원사업
권리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행정지원)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 지재권 애로 상담 지원 등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이동식 IP-DESK,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 · 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등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운영 조직

(6개국 12개소)

미국		독일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L.A	뉴욕	프랑크푸르트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방콕	호치민	도쿄

IP-DESK 비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비용
상표·디자인 출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지원(신청기업별 연간 8건) * 중국, 베트남 : 최대 \$300/건 * 태국, 일본 : 최대 \$500/건 * 미국 : 최대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 독일 : 최대 \$1,000/건(상표), \$600/건(디자인)
세관 지재권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별 연간 8건 * 중국 : \$300/건 * 태국, 미국 : 최대 \$500/건 * 일본 : 최대 \$700/건 * 베트남, 독일 : 최대 \$1,000/건
피침해 실태 조사 및 행정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1社당 3건) * 최대 \$10,000(피침해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침해감정서 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0% 지원하되 중복 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1社당 3건) * 최대 \$10,000

문의처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 02-3460-3357

11-40

국내복귀기업 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신설 또는 증설)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해외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할 것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할 것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배자) 동일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에서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 동일 기준)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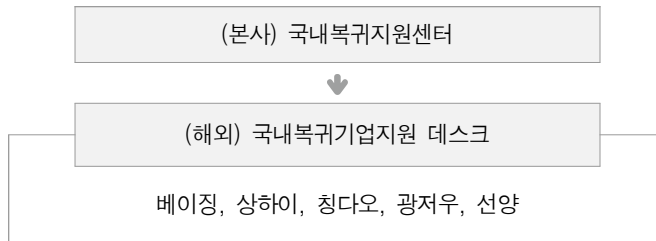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구 분	세부 내용	담당기관
보조금	- 입지 투자금액의 42%이내 (5억원한도), 설비 투자금액의 31%이내 지원 (입지설비 보조금 합계 최대 60억원 한도로 지원) (비수도권 복귀 시)	산업통상자원부 / 지방자치단체
세제	- 법인/소득세 최대 5+2년간 감면	국세청/관할세무서
	- 관세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 감면	관세청/KOTRA
인력	- 근로자 1인당 고용보조금 최대 1,080만원 지원 (1년간)	고용노동부/ 관할고용센터
	- 외국인 생산관리자에 E7비자 발급,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E9)	법무부/KOTRA
보증보험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한도우대 및 보증료 할인	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우대 및 수출 보증 보험료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구조조정 컨설팅	-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비용의 70% 이내) (한도 : 중국 CNY 50,000, 베트남 USD 5,000/1개사)	KOTRA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종합 상담	- 국내복귀 지원 정책 및 제도관련 상담 지원
선정 심사	-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신청 접수 및 선정 심사
지원제도 홍보	-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국내외 설명회 개최, 국내복귀 의향기업 발굴
기타 지원	- (의견 청취) 애로사항 수렴 및 각종 의견 청취 - (기관 협력) 유관기관 협력 및 제도개선 건의 등

운영 조직



문의처

해외투자지원단 : 02-3460-7362, 7364

11-41

글로벌 M&A 지원

M&A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지원범위 : ① 지분인수 ② 사업부문 인수(Spin-off) ③ 유무형 자산인수
④ 해외 판로개척 목적의 조인트벤처 설립(단, JV는 실행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 ① **(전략수립)** 지원단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 ② **(시장파악)**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 ③ **(딜소싱)**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매물기업 발굴
 - ④ **(딜 실행)** 매물기업 Pre-valuation (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진행 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가능
 - ⑤ **(사후지원)**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M&A 지원절차

참가신청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M&A지원단 전문가와 개별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관리

문의처

글로벌 M&A 지원단 : 02-3497-1110

11-42

KOTRA 글로벌 CSR 사업

KOTRA가 우리기업의 해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 신흥국을 도우면서 우리기업·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개최주기
글로벌 CSR	상생협력형 신흥국 개발협력사업	현지 특산품 개발을 도와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 * C 사는 인도네시아 코코넛 설탕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자사 제품의 원재료를 확보하고, 설탕 완제품의 내수 판매도 지원
	해외 기술학교 운영	우리기업이 현지 정부나 발주처 등에게 기술경험을 전수하여 현지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참가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도 기여 * K 공사는 탄자니아에 토지정보 구축 노하우와 관련 시스템 기술을 현지 관계기관에 전수하여 현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현지 진출 기반 구축
	자사 제품·서비스 기부	우리기업이 자사제품 및 서비스를 필요국가에 기부하여 현지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참가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 * 환경 방사선 감지기제조사인 s사는 필리핀 원자력 연구소에 자사의 감지기를 기부하고, 장비 활용 및 관리 방법을 전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주에 성공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우리나라의 기업·기관이 '시험인증', '연구개발' 분야관련 유휴장비 및 관련 기술경험을 공유하여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 및 기관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 관련 * 화학·환경분야 K연구원은 유휴장비를 에콰도르 기술표준원에 이전하고 기술을 전수하여 현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시험·인증 체계의 현지 전파 기반 마련
국내 CSR	다문화 무역인 육성사업	적정학력 및 언어능력을 갖춘 다문화 인재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를 선발하여 무역실무 교육을 통해 무역전문가로 육성하여 우리 기업의 무역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대상 기업 글로벌 CSR사업에 관심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 사업이 가능한 대기업*, 다문화 무역인 수요기업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추진시에만 사업비 지원

선정 기준 글로벌 공헌 정도,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 가능성,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 등

지원 내용 사업 기획, 실행, 사업비 일부, 현지 홍보 등

진행 절차 업체모집(상·하반기 각 1회) → 선정 → 사업계획 확정 → 사업추진

문의처 개발협력팀 : 02-3460-7527

11-43

해외전문인력 유치지원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R&D인력 등 해외 전문인력* 발굴부터 인터뷰 주선, 이력확인, 비자추천, 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대상 기업

국내기업, 연구소, 대학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해외전문인력을 유치하여 활용코자 하는 모든 곳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의 해외지사 및 해외 현지법인 포함)

유치 대상

- 다음 직종 및 학력/경력 요건 충족 인재
 - 직종 : 출입국관리법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7(특정활동) 및 D-8(기업투자) 비자 해당분야
 - 학력/경력 : 다음 중 하나
 - ① 4년제 학사 + 1년 이상 경력
 - ② 석·박사
 - ③ 경력 5년 이상

이용료

- 중소·중견기업 : 무료
- 대기업 : 110만원 (VAT포함, 직종별 1명 채용기준)

진행 절차

- Contact Korea 홈페이지(www.contactkorea.go.kr) 신청 → 해외 전문인력 발굴 → 인재정보를 기업에 송부 → 채용인터뷰 진행 → 학력·이력 확인 → 고용계약 체결 → 비자 추천

문의처

글로벌일자리사업단(02-3460-7395)

11-44

교육·연수

‘KOTRA 아카데미’에서는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외국인투자유치교육과정 등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한 KOTRA만의 무역·투자 분야 노하우를 고객 여러분께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육 과정

과정명	주요내용	문의처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 수출 유망 산업의 해외마케팅전문인력 양성 및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산업별 마케팅 교육과정	02-3497-1199
글로벌 지역전문인력 육성과정	- 신흥유망시장을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별 진출 전략과정 - 국내기업 투자대상국의 핵심 투자진출 실무교육 및 해외 연수과정	02-3497-1187
글로벌 비즈니스과정	- 주요 해외마케팅수단(해외전시, 계약/협상, 해외영업)을 활용한 기본실무능력과 계약, 협상 등 전문분야 실무역량 배양과정	02-3497-1187
외국인투자유치 교육과정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 투자유치업무 담당자들의 외국인 투자유치성과를 제고 하기 위한 과정	02-3497-1069
FTA 활용 업종별 교육과정	- 중소기업의 FTA활용 인력양성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 화학, 농수산, 디스플레이, 화장품, 의료기기)	02-3497-1182
주재원 사관학교 과정	- 중소·중견기업 해외 주재원 파견자 역량강화 과정(현지 경제·문화 이해, 노무·세무·통관 절차 등 실무 교육에 중점)	02-3497-1184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	- 개도국 무역투자 유관부처 공무원 대상 무역 역량강화 과정	02-3497-1199

참가비


과정별 상이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KOTRA 아카데미 → 연수신청 선택

문의처

KOTRA 아카데미 : 02-3497-1069, 1186



제 12장

한국무역협회

12-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440
12-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442
12-3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위원서비스	444
12-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446
12-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448
12-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450
12-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452
12-8 Kmall24를 통한 B2C해외직판 지원사업	454
12-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456
12-10 APEC 기업인여행자카드(ABTC) 발급	458
12-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462
12-12 무역기금 융자	464
12-1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466
12-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468

12-1

TradeSOS 무역애로건의 종합지원시스템

| 무역정책 애로 해결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수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무역애로건의 DB를 통해 기존 접수된 애로사항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15년 지원현황 487건

- 최근 2년간 지원현황
 - ▷ '14년 지원현황 : 655건 (무역산업 359건, 금융세제 41건, 고용환경 56건 등)
 - ▷ '15년 지원현황 : 487건 (무역산업 263건, 금융세제 14건, 고용환경 21건 등)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무역업계 애로사항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 신청, 접수, 검토, 완료 등 업무처리 과정을 무역업계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애로건의 처리 단계별로 업체 측에 이메일, 문자 등 통보
- 무역애로 DB 검색시스템 구축
 - ▷ 무역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 검색을 통해 업무에 활용 가능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애로건의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2

TradeSOS 무역전문컨설팅

| 전문분야별 무역상담 온/오프라인 지원

무역업체의 원활한 무역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특허, 해외인증, 국제계약, 세무 및 회계 등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15년 지원현황 19,271건

○ 최근 2년간 지원현황

- ▷ '14년 지원현황 : 15,588건 (수출입실무 9,332건, 통관관세환급 3,872건, 국제계약 1,394건 등)
- ▷ '15년 지원현황 : 19,271건 (수출입실무 10,780건, 통관관세환급 4,989건, 국제계약 1,407건 등)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무역실무, 통관절차/HS품목분류, 국제계약/클레임, 국제특허, 해외인증, 세무/회계, 환율/외환, 중국의 수출입절차(인증, 통관,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분야	상담요일	상담시간	컨설턴트
무역실무	월~금	09:00-18:00	전문상담역
통관절차/HS품목분류	월~금		관세사
국제계약/클레임	화/목		변호사
국제특허	월	13:00-18:00	변리사
해외인증	월~금	09:00-18:00	인증전문가
세무 및 회계	수	09:00-18:00	공인회계사
환율/외환	목	09:00-18:00	외환전문가
중국 수출입 제도	수	09:00-18:00	중국무역 전문가
중국인증	금	09:00-18:00	중국인증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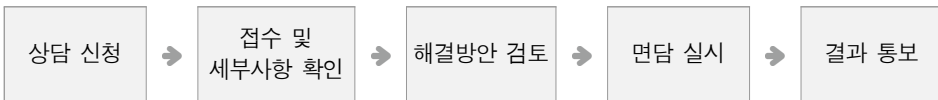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상담
- 전화상담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제출 서류

- 상담 신청서 작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3

TradeSOS 무역현장 자문위원 서비스

| 업체방문을 통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

품목 및 분야별 무역 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1:1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15년 지원현황 11,180건

- 최근 2년간 지원현황
 - ▷ '14년 지원현황 : 10,500건 (해외거래선발굴 3,490건, 수출입지원제도 2,241건 등)
 - ▷ '15년 지원현황 : 11,180건 (해외거래선발굴 3,308건, 수출입지원제도 2,268건 등)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종합상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출신의 무역분야 평균 30년 이상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무역현장 자문위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1:1 자문 상담(무료)
 - ▷ 총 47명, 무역협회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자문서비스 제공
- 해외시장 정보, 바이어 발굴 등 해외마케팅 관련 단계별 종합 컨설팅
- 업체 애로 발굴 및 해소
- 거래 단계별 맞춤형 무역실무 및 경영컨설팅 등
 - ▷ 거래선 분석, 무역서식 및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효과적인 바이어 대응과 협상 전략, 선적서류 작성, 무역클레임 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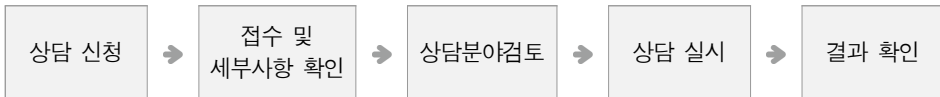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TradeSOS - 무역현장자문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서비스센터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4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 개최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 지원(부스임차료 최대 50% 장치비 최대 50%)

홍콩보석전, 라스베가스 보안기기전 등 12개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시장 수출증진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하고 부스이미지 고급화를 통한 한국관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2개 해외전시회지원, 180여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회명	시기	모집업체	공동수행기관
1	홍콩 춘계보석전시회	3.2~6	25개사	중기중
2	라스베가스 보안기기전	4.5~7	25개사	코트라
3	말레이시아 이미웅전	7.17~20	20개사	중기중
4	동경 스포츠 건강산업 종합전시회	7.25~27	11개사	중기중
5	홍콩 식품박람회	8.17~21	10개사	-
6	베를린 국제기전박람회	9.1~6	10개사	-
7	동경 국제선물용품전	9월 중	15개사	중기중
8	라스베가스 글로벌게임엑스포	10.3~5	5개사	-
9	인도 국제무역박람회	11.14~18	20개사	-
10	테헤란 자동차부품전	11월 중	11개사	중기중
11	상해 식품박람회	11월 중	11개사	중기중
12	베트남 국제 베이비 & 키즈 페어	11월 중	20개사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에 준하는 업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직접경비의 최대 50% 지급(전시회별 지원율 다름)

- ▷ 부스 임차료(최대 50%) 및 장치비(최대 50%) 지원
- ▷ 장치·운송·상담·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 ▷ 전시정보·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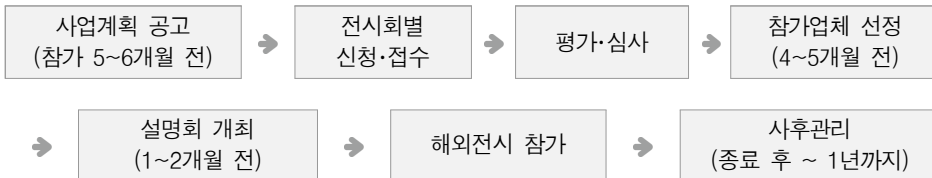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 ▷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sme-expo.go.kr>)
- ▷ KOTRA (<http://www.gep.or.kr>)

제출 서류

공동수행기관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무역협회로 서류제출

- 필수서류
 - ▷ 참가신청서 및 전시품목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정산용 통장(회사명의)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 최근 3개년도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선택서류
 - ▷ 국내외 전시회 참가증명서, 각종 규격인증/우수디자인/산업재산권 인증서, 정부/지자체 표창 사본 등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2-5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 글로벌 바이어를 초청하여 무역상담회 개최

전세계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1:1 종합무역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원 규모

13개의 바이어 초청 상담회 지원, 850여개사 한국관 참가 지원

* 지원 전시회 및 업체 수 변동 가능

	전시·상담회명	시기	초청 바이어
1	서울 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연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23~26	50개사
2	동경 한국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4.18~19	100개사
3	월드 IT쇼(WIS) 연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24~27	20개사
4	홈쇼핑 업체 초청 수출상담회	5월 중	30개사
5	아시아 유력 기업인 초청 파트너링 상담회	5월 중	30개사
6	베트남 한국우수상품 전시 상담회	6.1~3	50개사
7	북경 한류명품대전(K-Style Fair 2017)	7.6~8	50개사
8	한중 FTA 수출유망품목 바이어 초청 상담회	상반기 중	30개사
9	중국 국제 프리미엄 생활소비재전	11월 중	300개사
10	유라시아 유망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1월 중	15개사
11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 수출상담회 (Korea Grand Sourcing Fair 2017)	12월 중	150개사
12	중국 농식품 바이어 초청 상담회	12월 중	15개사
13	한-동북3성 경제협력포럼 및 상담회 개최	하반기 중	15개사

지원 대상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해당 권역 진출희망 국내 기업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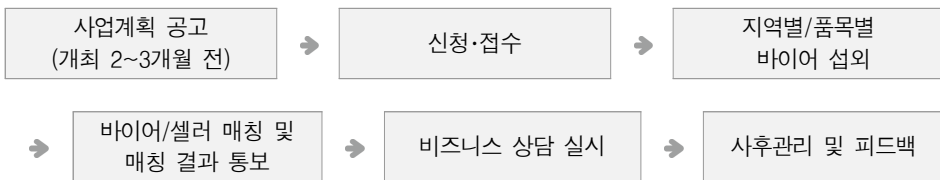
바이어 초청 · 바이어 매칭 · 상담회장 조성 등 지원

- 지역별/품목별 바이어 선정을 통한 전략적 비즈니스 매칭 지원
-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부대행사 동시 진행

신청·접수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 절차**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2-6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전략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정부 및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지원 규모

* 사절단 파견 일정 및 규모 변동 가능

	사절단명	시기	규모	지역
1	중앙아 신흥시장 개척사절단	3월	15개사	CIS 주요국
2	유럽 3대 유망산업 무역사절단	6월	30개사	독일/영국/ 프랑스
3	미국 동남부 무역투자 사절단	6월 중	20개사	미국
4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9월	50개사	러시아
5	신흥시장 경제협력/무역투자 사절단	하반기 중	30개사	라오스/ 미얀마 등
6	중동/대양주/아프리카 경제협력사절단	연중	20개사	중동/대양주/ 아프리카
7	한-중 FTA 무역촉진단	연중(3회)	20개사	중국

지원 대상

대상국가 진출 관심기업

지원 내용

- 공통경비 전액 지원
 - ▷ 각종 부대행사 개최비 - 비즈니스 포럼, 세미나, 공식 오만찬 등
 - ▷ 파견국 내 단체차량 임차비, 행사장 임차 및 조성비, 통역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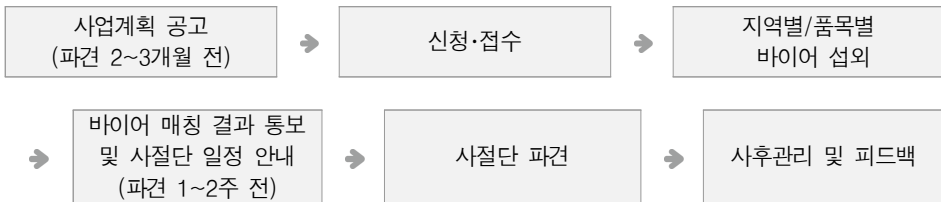
○ 현지 산업시찰 및 주요기업/기관 방문 지원

* 개별기업 항공임 및 체제비(숙박비 등) 제외

신청·접수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등

* 행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확인 필수

처리 절차**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12-7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

| B2B e-Marketplace를 기반으로 한 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kr.tradeKorea.com에 접속하세요. 거래제의서 작성/발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해외 바이어와의 매칭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빅바이어와의 상시 거래알선,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등 우리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부터 거래알선, 계약성사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 tradeKorea.com에 가입한 국내 기업회원

지원 내용

- 무역협회 바이어DB 활용 타겟 마케팅
 - ▷ 국내 기업이 직접 무역협회 바이어DB에서 바이어 검색
 - ▷ 관심바이어 대상 C/L(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
 - * 1개사 당 연간 200건 기본 발송 가능
-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 ▷ 무역협회 해외지부 관할 지역 대상
 - ▷ 해외지부에서 직접 마케팅 통해 관심 바이어 발굴 및 매칭
 - * 1회 신청 시 1개 지역 서비스 원칙 (연 3회 최대)
- 빅바이어 상시거래 알선
 - ▷ 글로벌 빅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국내기업과 상시 알선 지원
 - * 월 3곳의 빅바이어 초청

○ 미니사이트 제작지원

▷ tradeKorea 내 기업/제품홍보 페이지 무료 제작지원

○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 바이어로부터 공개가 허가된 인콰이어리에 한해, 구매오피 공개게재

신청·접수

○ tradeKorea 국문 페이지(kr.tradekorea.com)에서 신청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e-Biz전략실 : 02-6000-5219

12-8

Kmall24를 통한 B2C해외판매 지원사업

| 한국 우수 상품을 위한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 Kmall24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Kmall24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Kmall24(영문, 중문) 입점 및 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 연계 판매를 통한 B2C 해외판매를 지원합니다. Kmall24를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Cross-Border e-commerce)을 선점하세요.

지원 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 ▷ 패션, 뷰티, 유아, 생활용품, 식품, 문화상품 등 소비재 취급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B2C해외판매 부적합 상품(예. 중장비, 의약품 및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류 등)

지원 내용

- 통합 운영지원
 - ▷ 국내/해외 물류창고 활용 지원, CS응대 지원
 - ▷ 해외오픈마켓 입점지원(아마존, 티몰, 아마존 재팬, 이베이)
 - * 해외오픈마켓은 확대/변동 가능
- B2B거래 지원
 - ▷ Wholesale Inquiry 수신시 B2B 매칭서비스 밀착지원
(B2B 매칭 전문가의 계약체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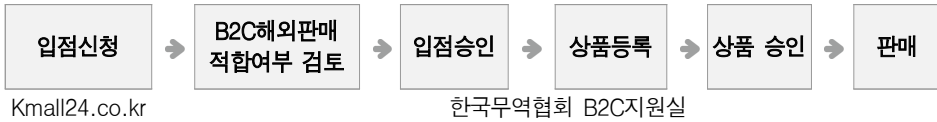
신청·접수

- Kmall24 국문 홈페이지(Kmall24.co.kr)에서 입점신청

제출 서류

- 기업은행 약정 확인서, 판매약정서 등 첨부서류 준비
- 자세한 내용은 [Kmall24.co.kr] - [입점안내] - [서류준비] 참고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콜센터 : 1566-5114
- Kmall24 국문 홈페이지(www.kmall24.co.kr) 참조

12-9

해외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중소기업 해외지사 설치 지원

해외지사 및 해외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합니다.

지원 규모 15년 지원현황 34건

- 최근 2년간 지원현황
 - * '14년 지원현황 : 40건
 - * '15년 지원현황 : 34건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이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추천기준
 - ▷ 해외지점
 - 신청일 현재 과거 1년간 외화획득 및 수출실적 확인 가능 업체
 -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 상기 두가지 조건 가운데 한가지 이상을 충족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출실적, 수출의지, 수출전망 등을 중점 평가)
 - ▷ 해외 사무소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출실적 유무, 수출경험,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수출입과 관련 없는 업종은 업종관할 주무부 장관 추천

지원 내용

-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따른 외화 송금에 필요한 인증추천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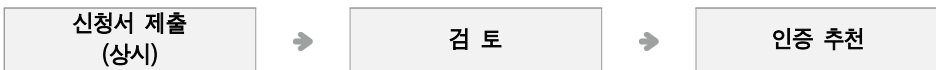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www.kita.net - 해외지사 설치 인증추천 - 추천서 다운로드
- 전화신청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 내방상담 : 한국무역협회(삼성역 트레이드타워 1층) 회원지원실 및 국내지역본부

제출 서류

- 추천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해외지사설치 인증추천란에서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 회사현황 : 개요 및 연혁, 연간매출액, 인원현황, 생산능력 및 가동률, 주요생산시설
 - ▷ 해외사업부문(향후 1년)
 - 해외지점(사무소)의 설치목적(목적, 파견인원, 운영비용 등)
 - 사업배경(시장규모/특성/유통 등의 현황, 수출계획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판매사업 계획 등

처리 절차



한국무역협회 해외지사설치인증추천 홈페이지 참조

문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10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

| 신속한 출입국 수속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멀티플 VISA 로서, 역내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59~90)일간 체류 보장하고,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한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추천 대상

법무부 훈령 제1007호 제3조에 의거

- ▷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도 인정
 -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 ▷ 해외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 해외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업체
- ▷ 외국인투자업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추천이 안되는 기업

- ✓ 상기 지원 대상 기업의 수출입 또는 투자업무 담당자라 하더라도 APEC 회원국으로의 출입국사실(최근 2년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이 없는 개인

추천 내용

- APEC 회원국중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을 보장

- 가입국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출입국 수속 가능
- ABTC 19개 가입국
 -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홍콩,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칠레, 일본, 브루나이(러시아: 1회 90일/연간 180일 체류초과 불가)
 -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으로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
- 카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신청·접수

한국무역협회 ABTC 홈페이지(abtc.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업체 공통서류(각 1부)
 - ▷ 추천의뢰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인감날인 필)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 소지자 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입력후 출력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월 이내
 -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표 참조)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연월 기준 최근 한 달전, 기업 인감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
- * 1인 기업으로 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세사실증명서로 대체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업체	수출/수입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해당년도(6개월 이전)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것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해외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 송금전문사본 - 해당 거래 은행 도장 날인	외국환은행(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 경제부에서 발행)
건설업체	해외건설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해외건설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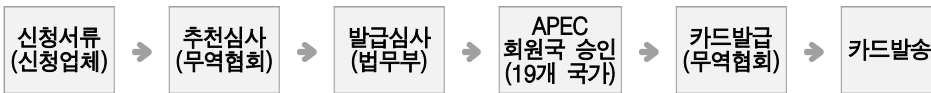
외국인투자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10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전시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후 원본 제출	
APEC중소자 경제단체 공무원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 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 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 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 개인서류(신청자 개인별 각 1부)

- ▷ 영문신청서(규정양식)+ 여권사진 부착(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규정양식에 빈칸없이 작성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 흰색배경/가로 3.5cm x 세로 4.5cm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
- ▷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 주민등록 후단번호 와 하단의 숫자정보 가린 후 복사한 여권사본 제출
- ▷ 정보이용동의서(규정양식)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 ▷ 서약서(규정양식)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 반드시 작성
 - 자필서명 및 기업인감 날인
-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온라인 발급,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온라인발급(공인인증서) 발급시스템 주소 : <http://crims.police.go.kr>
 - * 발급용도 :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미포함)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국문, 영문화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 수사경력회보서/업체명/신청자명' 표기
- *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함
-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벌금 납부한 날로부터)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한국무역협회 ABTC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궁금해요! 증기맨



Q ABTC를 신청하고 발급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얼마인가요?

A ABTC를 신청하신 후 추천심사에서 발급심사를 거쳐 각 국가별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4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다만 각 국가별 승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ABTC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거나 ABTC 홈페이지의 FAQ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설명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보장하는 카드

12-11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외국인력 고용 촉진 지원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무역업체에 사증(VISA) 발급을 추천합니다.

지원 규모 15년 지원현황 23건

- 최근 2년간 지원현황
 - * '14년 지원현황 : 26건
 - * '15년 지원현황 : 23건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
 - ▷ 외국인 사증발급 추천 선정업체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무역업체
 - ▷ 신청업체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 ▷ 사증발급 추천대상 외국인은 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포함)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 ▷ 하나의 신청업체는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2명이상 추천할 수 없음.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증 발급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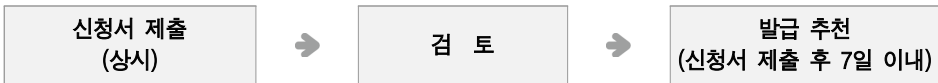
신청·접수

-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및 각 국내지역본부
 - ▷ 해당업체 방문 접수(우편,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 발급 불가)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서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 발급추천란에 게재된 구비서류로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 포함
 - ▷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1부(신청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
 - ▷ 회사소개서 1부(대표, 업종, 종업원수, 생산품목, 해외영업 등 서술)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 외국인 여권 사본 1부
 - ▷ 외국인 이력서 1부
 - ▷ 외국인 학력증명서(졸업장 사본 가능) 1부
 - ▷ 경력증명서(현지 공증서 첨부) 1부
 -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 외국인 고용 사유서(외국인 고용의 불가피성 서술)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2-12

무역기금 융자

| 수출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00억원

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시 감점 처리)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

지원 내용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

-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기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유의 사항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용자 조건

- 금리 : 연 2.75%(고정)
- 기간 : 3년(2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1, 4, 7, 10월의 25일)
- 용자한도 : 최고 2억원 (전년도 수출실적 \times 1/3)
 - *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신청·접수

-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 신청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업체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 무역기금 용자신청서
 - ▷ 무역기금 수출마케팅자금 사용계획서
 - ▷ 사업계획서(자율양식)(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 (은행이 발급한 2016년도 및 2015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출
 - * 단, 수출실적이 용자신청서의 14번 직수출(A)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수출실적법인 업체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선택서류
 - ▷ 용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서류제출
 - ▷ 온라인 신청서 서류 작성 또는 파일 첨부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에 문의
-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 : <http://fund.kita.net>

12-13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실적 증명발급

| 서비스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수출실적 확인을 통해 무역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15년 지원현황 6,677건

- 최근 2년간 지원현황
 - * '14년 지원현황 : 2,280건
 - * '15년 지원현황 : 6,677건

지원 대상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업체

지원 내용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실적 온라인 확인 및 증명발급
 - ▷ 용역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디자인, 컴퓨터 설계 자문업, 특허권, 상표권, 프로그램 제작 등
 -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 게임, 만화, 동영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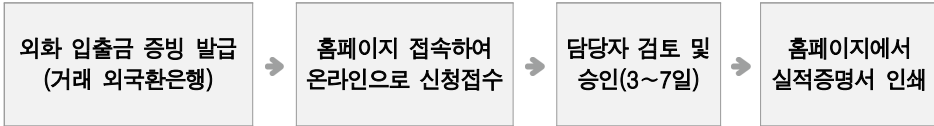
신청·접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제출 서류

- 용역/무체물 실적증명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홈페이지(<http://onlinetrade.kita.net>) 참조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온라인 접수 후 보통 최소 3일~최대 7일의 검토기간이 소요되며 검토 후 증명 발급 여부를 SMS / E-Mail 로 통보해 드립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2-14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FTA 활용 지원

FTA 전문가인 관세사, 회계사, IT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FTA 활용 능력을 배양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475개사

- 최근 2년간 지원 현황
 - * '15년 지원현황 : 353개사
 - * '16년 지원현황 : 464개사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 한도

- 업체당 최대 400만원 (10일) 까지 지원
 - ▷ 기업분담금 :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무료 또는 10~40%

<기업분담금 현황표>

직전년도 매출액	기업분담금
20억원 이하	무료
2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약 40만원)
5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약 80만원)
500억원 초과 ~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30% (약 120만원)
1,500억원 초과	지원금액의 40% (약 160만원)

지원 내용

- 체계적인 FTA활용 능력 확보를 위해 품목 분류에서부터 원산지 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 제공
 - ▷ 지원 일수 : 참가기업당 최대 8~10일(MD) 지원
 - ▷ 컨설팅 주요 내용
 - ① FTA 활용 실태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
 - ② 주요 원재료 및 완제품 품목 분류
 - ③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확인)서 발급
 - ④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점검 및 개선
 - ⑤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전략 수립
 - ⑥ FTA 활용 업무 메뉴얼 제공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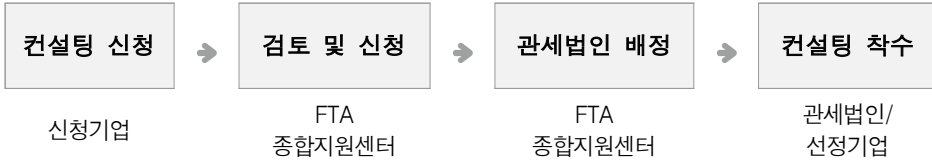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
 - ① 참가신청서(오프라인용) 1부
 - ☞ 온라인 작성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붙임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okfta@kita.net) 접수 (*단, 유선으로 접수확인 필수)
 - ② 사업진행 동의서 1부
 - ③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1부
 - ⑤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 ☞ 국제청 홈텍스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⑥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 자율양식) 1부
 - ⑦ 자재명세서(BOM) 1부
 - ☞ 신청단계에서 자재명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후 컨설팅 단계에서 구비 또는 작성 조건으로 생략 가능


처리 절차

- 지원기업 선정 : 적격업체 선착순(접수 기준)으로 선정



처리 절차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02-6000-7583~4(또는 ☎1380)
- 정책 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 13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3-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472
13-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474
13-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476
13-4. 거래 공정화	480

13-1

원가절감형 대·중소기업 공동사업

|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1차 협력사 또는 1차-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가절감형 과제(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제품 제작 등)를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8개사(전체 예산 10억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

수탁기업협의회 등록된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협력사)간 또는 중견·중소기업(1차협력사)과 중소기업(2·3차 협력사)간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제품기획에서 시작품(pilot) 제작까지 원가절감 효과가 큰 분야(설계·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작품 제작 등)의 개발비
- 지원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 지출항목 : 재료비, 테스트장비, 시제품제작비용 등
 - ▷ 기업부담금의 50% 이상은 주관·참여기업이 부담

신청·접수

'17년 1월 예정

- 사업계획서/신청양식 이메일·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제출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공고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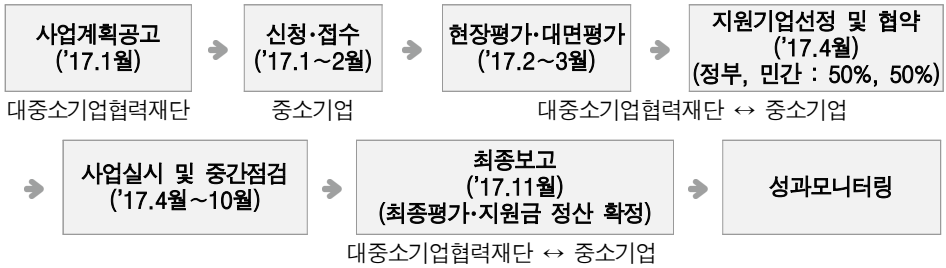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추진의지, 재무구조 건전성, 기대효과 등 현장 평가(20%) 및 대면평가(80%)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주관기업 경영현황표,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 사업공고 시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4477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 02-368-8473, 8463, 847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 www.win-win.or.kr

13-2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대중소기업간 구매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요처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기술협력, 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구매상담회 회차별 약 200여개 중소기업 지원(예산 2억원)

* '16년 지원현황 : 총 3회 개최, 596개 중소기업 참여, 1,472건 구매상담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하 '수요처')에 납품(입점), 기술개발 등의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상담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처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담여부 공지

수요처

✓ 기계·중공업, 건설·화학, 전기전자정보통신, 유통·서비스 등 전업종에 걸쳐 회차별 60여개의 수요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수요처 구매담당자와 1:1 상담기회 제공
 - ▷ 신청 수요처와 사전매칭이 성사된 기업은 30분 내외 오프라인 상담 지원
 - ▷ 상담회 당일, 현장에서도 상담 신청 가능
- 중소기업 우수제품(상품) 전시
 - ▷ 우수제품(상품)으로 선정된 30여개 중소기업 우수제품(상품) 전시대 마련
- 수·위탁 분쟁 법률상담, 기술보호 컨설팅, 동반성장 프로그램 설명회 등 부대행사 마련
 - ▷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기술보호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 개최일정

▷ 전국적으로 연 4회 개최(3, 6, 9, 11월 예정)

* 지역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세부계획 및 일정은 홈페이지(www.matchnet.or.kr)에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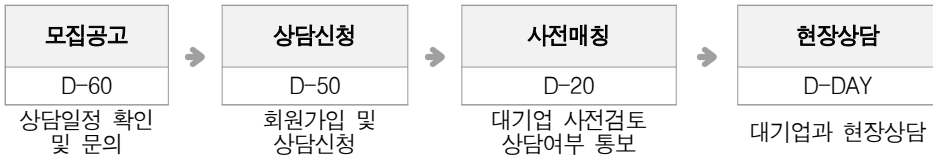
신청·접수

구매상담회 홈페이지 매치넷(www.matchnet.or.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제출 서류

- 매치넷 홈페이지에 신청기업의 기본현황, 기술제품 정보 등을 입력
- 현장 상담시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브로셔, 샘플 등 지참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4477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 02-368-8472
- 매치넷 홈페이지 : www.matchnet.or.kr

궁금해요! 증기맨



Q 구매상담을 신청하면 희망하는 수요처 구매담당자를 모두 만날 수 있나요?

A 실질적인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대기업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상담여부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13-3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대기업과 1·2·3차 협력기업과의 동등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모임 결성을 촉진하고, 교류활동·협력과제·동반성장 아카데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

50개 협의회(전체 예산 6억원)

- ▷ 동반성장 아카데미 : 11회 개최, 참가비 무료
- ▷ 교류활동 지원 : 50개 협의회

지원 대상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에 근거한 수탁기업협의회

- ▷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는 최소 5개 이상으로 구성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 필요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수탁기업협의회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수탁기업협의회 교류활동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한도
교류활동	· 회원사 대표,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수탁기업협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영노하우 전수 교육, 또는 회원사간 실시되는 기술·시장·경영정보 교류활동, 벤치마킹 등 운영비 지원 (임차료, 강의료, 회의비 등)	협의회당 5백만원 (총소요비용의 70%)

○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분야	지원 내용	수강료
동반성장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실무진 · (내용) 동반성장 이론, 수·하도급법 등 법률 실무, 동반성장 지원 정책 활용방법 등 · (시간) 1일과정 6시간, 2일과정 12시간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 · (내용) 협력적경영, 공정거래 법률교육, 동반성장 지원 정책 활용방법, 분과토론 등 · (시간) 1일 과정 6시간, 2일 과정 12시간 	무료

신청·접수

신청 접수 기간은 지원내용별로 상이

- 모집공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를 통해 신청
 - ▷ 동반성장 아카데미 : 상반기(3월)·하반기(8월) 수요 발굴
 - ▷ 교류활동 : '17년 3월, 6월, 9월
- 접수처 : partners@win-win.or.kr

심사·평가 주요내용

-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상호출자제한그룹 계열사 포함여부
- (교류활동) 교류활동 주요 내용 및 세부예산 적정성

제출 서류

수탁기업협의회 등록 신고서,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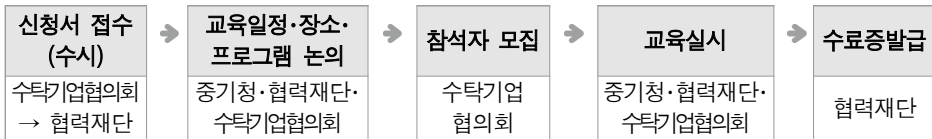
- (교류활동) 회원사 명단, 사업자등록번호, 교류활동 운영 계획서

처리 절차

○ 교류활동



○ 동반성장 아카데미



문의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4477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 02-368-879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수탁기업협의회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협의회 회원사는 5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수탁기업협의회 등록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스캔본을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 Q** 수탁기업협회를 결성하고, 활동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A** 협의회 회칙, 회원사 선정기준, 교류활동 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탁기업협의회가 동반성장의 교류채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주 모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용어설명

수탁기업협의회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회 명칭은 기업별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는 위탁기업별·업종별·지역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3-4

거래 공정화

|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및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지원 규모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법률상담, 공정거래 교육(20개사), 법률자문(60개사)

지원 대상

- (분쟁조정, 법률상담)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공정화 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분쟁조정)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 (법률상담·자문)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 지원
 - *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 제시 (재단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한 서면·방문·온라인 상담 지원)

- * (자문)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 지원
- **(공정거래교육)**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 * 지원사항: 강사료, 임차료, 교육자료 제작 지원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피해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률자문 범위 및 지원한도 확대
 - * 피해정도 및 사안의 심각성 등 고려하여 소송제기에 필요한 부분까지 지원

신청·접수

연증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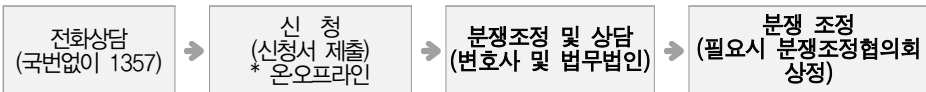
- 불공정신고센터(국번없이 1357)로 전화 상담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poll.smba.go.kr)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관련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 신청 *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
 - ▷ 이메일 : ssb@win-win.or.kr / 팩스 : 02-368-8479
 - ▷ 우 편 : (152-75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제출 서류

- **(분쟁조정, 법률상담)** 법률자문 신청서 또는 수·위탁 사전 분쟁조정 신청서·사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공정거래교육)** 교육 신청서 1부

처리 절차

- **(분쟁조정, 법률상담)** 전화 등 상담 후 신청을 통해 지원



- **(공정거래 교육)** 재단과 일정, 내용협의 후 교육(선착순 지원)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895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거래공정화부 : 02-368-8451(ssb@win-win.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Q**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위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위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무용품을 구매하거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 원재료의 구입은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위탁기업이 수탁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 A** 수·위탁 거래는 하도급거래와 달리 위탁기업의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의 매출액이 수탁기업보다 적더라도 수·위탁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 될 수 없나요?
- A**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수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Q**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나요?
- A** 수·위탁거래에는 판매위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조나 가공행위 없이 단순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14 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4-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484
14-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490
14-3.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494
14-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97
14-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500
14-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503
14-7.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506
14-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508
14-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512
14-10.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515
14-11.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519
14-12.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522
14-13. 기술보호 역량강화	524
14-1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사업	526

14-1

R&D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R&D지원 공통사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6개 사업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및 절차, 참여제한, 공고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60~80%이내(일부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중소·중견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단 내역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1개 중소중견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세부내용 공고 확인 요망)

지원 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306	1년	2	80%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645	2년	5	80%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821	2년	6	65%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573	2년	5	65%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신설)		58	1년	2	65%	
	공정·품질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285	9개월	0.5	75%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62	1년	1	75%	
	중견기업 글로벌도약 기술개발(후불형R&D, 신설)		60	3년	5 (先1/ 後4)	50%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32	2년	8	60~ 65%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38	1년	1.5	80%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년	1	75%	
		도약협력	308	1년	1	75%	
		전략협력	산연전용	248	1년	1.5	75%
			연구마을	178	1년	1	75%
			지역유망 (신설)	34	2년	4.5	75%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비용료)		153	1년	0.3	60~ 70%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55	1년	0.25	75%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신설)	50	1년	0.2	7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1,416	2년	5	55~ 65%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설)	72	2년	6	65%	
기술전문기업협력 (신설)		48	2년	4	65%		

신청 · 접수

- 신청방법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 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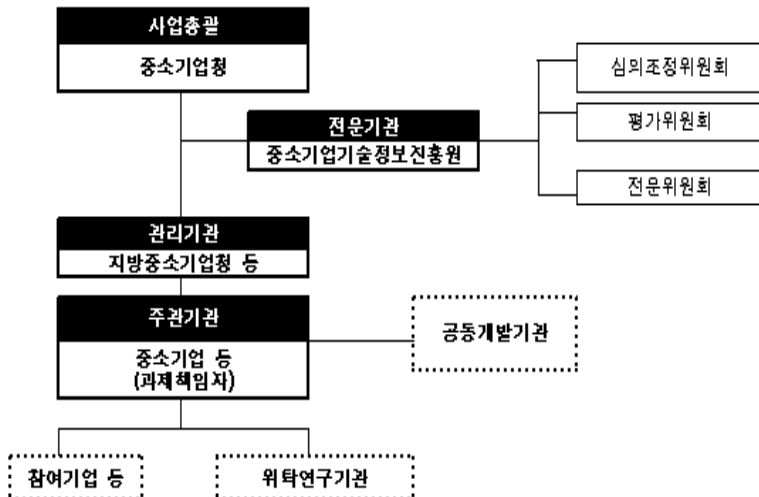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및 사업별 공고 양식 참고

처리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공고과제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조사(평가)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 또는 통합하여 추진

문의처

사업명	담당부서	전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술평가부	042-388-0312~0322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혁신기술평가부	042-388-0312~032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기술평가부	042-388-0331, 0341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융합기술평가부	042-388-0711~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융합기술평가부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융합기술평가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산학연기술평가부	042-388-0735~0736, 042-388-0740(연구장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61~3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창업기술평가부	042-388-0336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64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58~9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52~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개발지원부	042-388-0758~9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용어설명

관리기관 : 현장조사(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 지방중소기업청 등

전문기관 :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기획기관 : 기업에서 제출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기술개발과제를 기획하여 해당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운영기관 : 중소기업청장이 요건심사, 현장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주관기관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동개발기관 :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주관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과제책임자 :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

협약기간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총 기술개발기간(최초 기술개발 시작일 부터 기술개발 종료일)과 동일함

서면평가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

현장조사(평가) : 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조사(평가)

대면평가 : 기술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는 평가

투자심사 : 외부 투자기관의 심사위원들이 주관기관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연구비관리시스템 : 기술개발 과제별로 포인트의 집행, 연구비 카드, 정산, 환수, 기술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14-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394억원(신규 644개 과제 1,268억원, 계속 469개 과제 1,126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855개 중 신규 562개 과제, 계속 470개 과제 선정(과제당 2.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수출기업기술개발

- ▷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중소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지정된 기업
- ▷ 수출유망과제 : 최근 2년 내 연간 수출액 100만불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 유망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 수출초보과제 : 최근 2년 내 연간 수출액 100만불 미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수출 유망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지정된 신성장동력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내역사업명	내 용
수출기업기술개발 (821억원)	<글로벌강소기업과제(266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R&D를 지원하여 히트챔피언 육성 후보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자유응모)
	<수출유망과제(416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수출액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등 글로벌 유망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품목지정)
	<수출초보과제(139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35억원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액 규모에 적합한 글로벌시장 타겟품목을 발굴·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혁신기업기술개발 (1,573억원)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CT융합, 신소재,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분야 유망품목을 지원(품목지정)

○ 내역사업별 개편내용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구분	지원내용 및 한도
중소 기업 기술 혁신 개발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중소 기업 기술 혁신 개발	수출기업 기술개발
	혁신기업 기술개발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폐지 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으로 독립 재기획
-	-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2억원

신청 · 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 사업성 :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 및 사업별 공고 양식 참고

처리 절차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 (간접수출) 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출기업 기술개발	글로벌강소기업	1차	'16.12월	1월	2~3월	4월
		2차	2월	3월	4~5월	6월
	수출유망	1차	'16.12월	1월	2~3월	4월
		2차	2월	3월	4~5월	6월
	수출초보	1차	'16.12월	1월	2~3월	4월
		2차	2월	3월	4~5월	6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1차	'16.12월	1월	2~4월	5월
		2차	2월	3월	4~5월	6월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2~032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A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사용도 록하며,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 감하는 기술개발(R&D) 자금 집행·관리제도입니다.

용어설명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자유응모 : 신청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자유롭게 목표 및 내용 등을 정해 응모하는 과제

심의조정위원회 :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아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2%를 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14-3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신성장동력 창출

중소제조제품의 서비스화 및 전통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8억원(신규 32개 과제), '17년 신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제품서비스화 : 중소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신규서비스창출 : 전통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관련 합·단체
 - 식당 등 요식업, 숙박업,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업, 소규모 병·의원, 소형 운수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내역사업명	내 용
제품서비스화 (3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원 기존 제조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소규모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품목지정)
신규 서비스창출 (2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1.5억원 전통서비스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중소서비스기업의 신성장 동력화 촉진

신청·접수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창의·도전성, 기술성 : 서비스 모델 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사업성 :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지원 내용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협·단체 : 협·단체 확인서)
-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사업추진절차



○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서비스화	'16.12월	'16.12월~'17.1월	1~2월	2월
신규서비스창출	'16.12월	'16.12월~'17.1월	1~2월	2월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2~032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4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1,450개 과제(전체 예산 1,951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5,618개 중 1,332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1.4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 창조경제연계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타운) 추천기업
 -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인), 초기 전문VC, 선도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2인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5억원(기술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억원)		(자유공모)
	창조경제연계과제	최대 1년, 1억원		자유공모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전략분야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업력별 지원한도 차등 폐지 및 품목지정 방식 도입(일부), 수출평가 강화
 - ▷ 지원한도 : ('16) 3년이하 1.5억원, 3년초과 2억원 → ('17) 2억원 (업력무관)
 - ▷ 품목지정 : ('16) 자유공모 → ('17) 자유공모 + 품목지정(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품목)
 - ▷ 선정평가 : 수출잠재력 평가 배점 대폭 상향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12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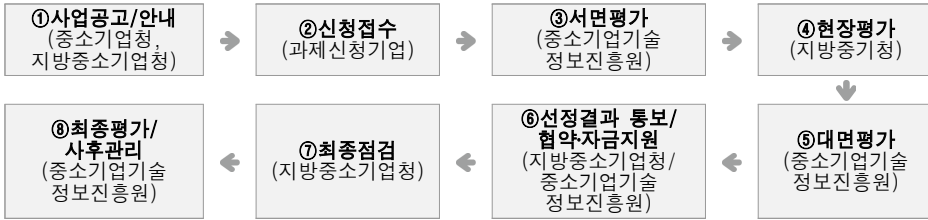
- 기술성 :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전략(타당성, 구체성, 역량 등)
- 사업성 : 수출잠재력 및 고용성과 창출 정도, 사업화 가능성 등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창업기업 과제 >



* 창조경제연계과제 : 서면대면평가(2단계)를 온라인평가(1단계)로 대체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 과제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41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자격요건의 경우 점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A**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14-5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대해 기술 개발비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구매

지원 규모

약 650개 과제(전체 예산 1,536억원)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232개 중 546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06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 를 발급받은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수요조사 과제)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국내수요처 R&D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 3년, 5억원	65% 이내	25% 이상	10% 이상
해외수요처 R&D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35% 이상	-
민관공동투자 R&D (수요조사, 기업제안)	최대 3년, 10억원	75% 이내	25% 이상	투자기업 1:1매칭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일부과제의 개발기간 변경
 - ▷ 전략분야(국방, 안전 분야 등) 과제의 개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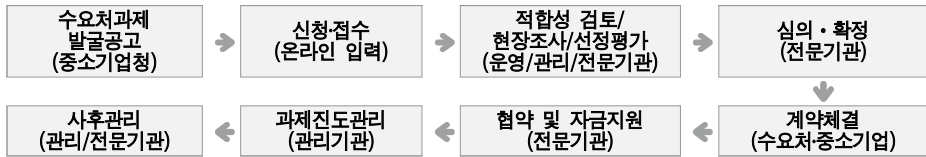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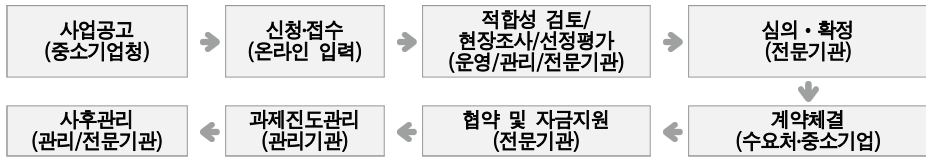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수요조사 과제 >



< 기업제안 과제 >



* (전문기관) 지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INKE, 기품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481-458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0711~0718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A** 기업제안 및 수요조사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A**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국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4-6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 5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40개 과제(전체 예산 75억원)

* '17년 신규 지원사업

지원 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 공동개발,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1단계 : 네트워크기획지원)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 성장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기획 지원으로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D기획 상세화

- (2단계: R&D)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네트워크 기획지원 (19억원)	최대 6개월, 30백만원	75% 이내	25% 이상
R&D(56억원)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7.1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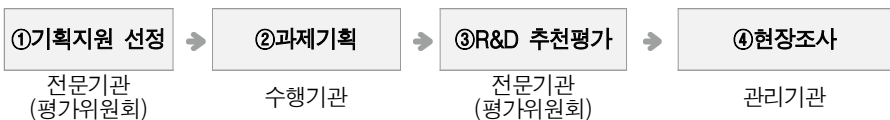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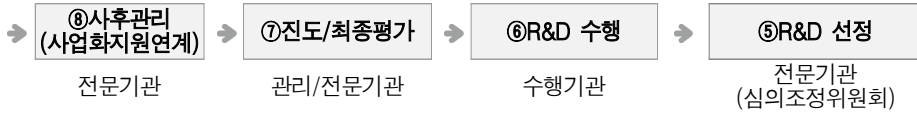
- (기획지원 선정)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R&D 선정) 기획과정의 충실성, 기획결과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R&D사업으로 연계(참여비율, 성과분배 등을 포함한 계약서 체결)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근거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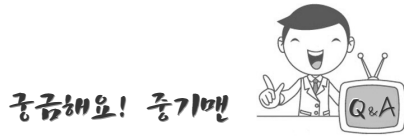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2, 0723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참여기업(사업화 지원기관 2개 이상) 등 총 5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 Q**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5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 혁신형중소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심의조정위원회** :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아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2%를 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14-7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사업

| 기술전문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R&D 성과 제고

중소기업과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 간 협력 R&D를 지원하여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8억원(신규 60개 과제), '17년 신설

* 기업 신청현황 · 예산집행 등에 따라 지원과제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 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기술전문기업 협력기술개발(60개, 48억원) : 중소기업과 기술전문기업간 협력 R&D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과제당 2억원 한도(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내용

- 기술성 : 과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등
- 사업성 :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

* 세부 평가항목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의 사업별 공고를 참고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21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4-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기술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약 2,500개사(전체예산 1,308억원)

- 첫걸음협력(387억원) : 600개, 도약협력(308억원) : 380개
- 전략협력(460억원) : 380개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153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16년 지원현황 : 약 3,000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첫걸음 협력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중소기업
 - ▷ 도약 협력 : 종사자수 5인 이상이거나(or)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지역유망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역별로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별도 안내 예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및 휴·폐업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공고문 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내용

-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 도약협력(308억원) : 기술력 상위 선점, 기술보완 등을 희망하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R&D 지원
- 전략협력(460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 산연 전용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자체 지원역량과 연계한 공동 R&D 지원
 - ▷ 연구마을 : 연구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집적을 통한 상시 기술협력 지원
 -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여 지역유망기업으로 육성
- 연구장비 공동활용(153억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 이용료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도약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2회 연장 가능)	60~70%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이 공동연구개발에 적합한 전문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첫걸음협력, 도약협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칭기관이 기업과 전문가를 매칭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편입
-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 신설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단, 연구마을·산연전용은 해당 주관기관에 신청
- 신청시기 :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1, 4, 7월
연구마을, 산연전용,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 연 1회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수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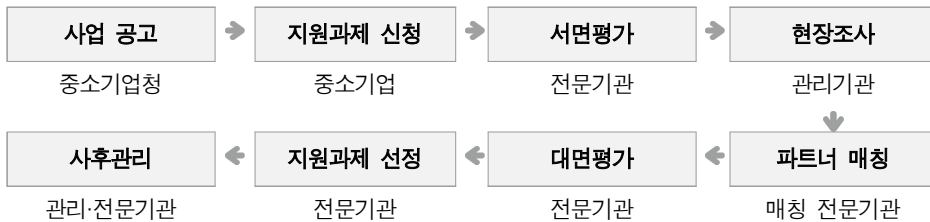
- 요건검토(중소기업 여부 등을 검토), 서면평가(사업계획서를 서류로 평가), 현장조사(현장실태 등을 조사), 대면평가(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성 등을 발표) 등을 통해 과제 선정
- * 세부 내역사업별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 서류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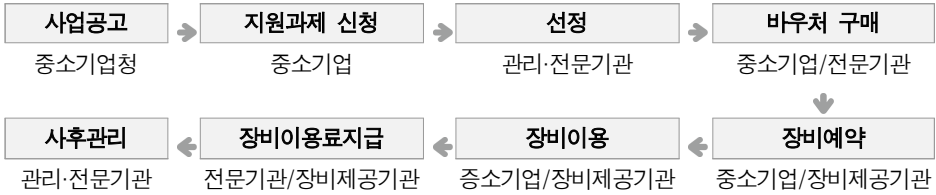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

처리 절차

- 첫걸음 협력, 도약 협력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6867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36, 0742, 0740(연구장비)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50 ~ 3356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는 대학·연구기관이 발굴한 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Q**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바우처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 A**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가 발급됩니다.
- Q**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 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는 유망중소기업을 의미하나요?
- A**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으로 기존에 지자체별로 지정·운영하고있는 유망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4-9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70개사(전체 예산 360억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695개, 298억원)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75개, 62억원)
- * '16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 546개 270억, 뿌리기업공정 61개 57억, 현장수요형 73개 50억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제품·공정개선(695개, 298억원)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9개월 이내
-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공정개선 : 생산공정의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뿌리기업공정(75개, 62억)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시장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수시 시행
 - ▷ 제품·공정개선 : 연 4회 시행 → '17년 1, 3, 6, 9월
 - ▷ 뿌리기업공정 : 연 3회 시행 → '17년 2, 5, 8월
- 지방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별도 공고)
- 가점 사항 변경

	2015년	2016년						
가점	-기업규모(1~3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20인이상 50인미만</td> <td>10인이상 20인미만</td> <td>10인 미만</td> </tr> <tr> <td>1점</td> <td>2점</td> <td>3점</td> </tr> </table>	20인이상 50인미만	10인이상 20인미만	10인 미만	1점	2점	3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비우처 적용 과제(직접비의 10% 이상) : 2점 -TCB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 3점 -내일채움공제 가업기업 : 최대 2점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 3점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 2점 -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20인이상 50인미만	10인이상 20인미만	10인 미만					
1점	2점	3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 3점 -내일채움공제 가업기업 : 최대 2점								

* 세부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접수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6년 12월	1,3,6,9월	2~11월	3~11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17년 1월	2,5,8월	3~10월	4~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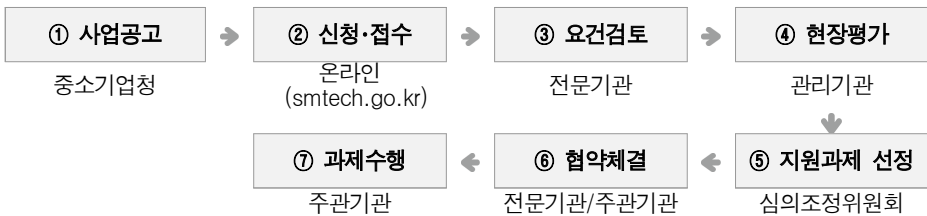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기술성 및 사업성, 수출실적 등을 현장에서 평가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 * 자세한 신청 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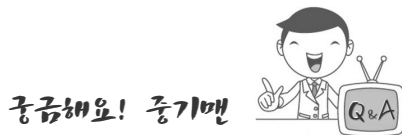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주관기관(중소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4460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개선 지원' 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지방기업의 정부 R&D 사업 접근 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경쟁사업 지원시 지역 특화 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제품개선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조건) 5천만원 이내, 개발기간 9개월 이내, 총사업비의 75%
 · (지원내용) 지역별 특화사업의 제품개선을 위한 기술개발과제 지원

14-10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 사업화 성공을 위한 R&D기획 지원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교육과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R&D기획지원(55억원) : 180개 과제/3,000명 교육
 - * '16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746개 중 178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0.27억원), 1,948명 교육 (온라인 포함)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51억원) : 300개 과제('17년도 신규사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R&D기획지원사업
 -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 ▷ 현장 기술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R&D기획 및 현장애로 기술 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총 사업비 75~10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지원기간 : 4개월~1년)까지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기획지원	최대 4개월, 25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년, 20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R&D연계지원의 유연성 확보 및 지원횟수 제한
 - ▷ 연계지원 : ('16) 신청과제별 해당 R&D사업만 연계 → ('17) 타사업 신청자격 부합시 교차 연계 가능(예: 창업과제 → 혁신형기술개발사업)
 - ▷ 지원횟수 제한(혁신과제만 해당) : ('16). 신청제한 無 → ('17) 1회로 제한(소급 적용)
- 기획역량강화교육과 연계한 기획지원 강화
 - ▷ 기획지원 조건 강화 : ('16) 기획지원 → ('17) 先기획교육 後기획지원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12월 중 공고 예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기획지원
 - ▷ 기획의 필요성(목표 적정성), 기술성 및 준비성(기획 기술의 차별성, 사전 준비정도 등)
 - ▷ 사업성(사업화 가능성, 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 기술애로 해결지원의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후 경제적, 기술적 기대효과 등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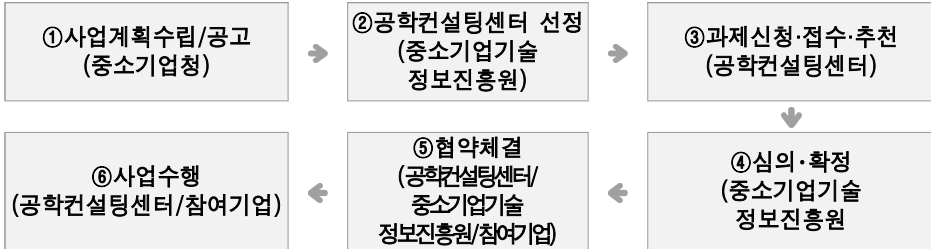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R&D기획지원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7, 444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6, 0212, 0739
- 홈페이지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연계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A** 기획결과 우수한 과제 중 창업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로, 혁신과제는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연계됩니다.
- Q**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A**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Q**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A**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국공립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용어설명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기술애로란? :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14-11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중소기업 생산현장 정보화를 위한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개별공장의 스마트화를 위해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구축 과 원산지증명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250개사(150억원)

* '16년 지원현황 : 160개사 지원

지원 대상

신청자격, 지원조건, 우대선정, 유의사항, 지원이 안되는 기업 등 개조식 작성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보완/확장/수출과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²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확장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또는 동시 구축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1천만원 지원)
 - (수출과제 신설)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 개발구축 및 도입기업 생산품 및 IT공급기업 통합시스템의 수출 지원(총 사업비의 60%, 최대 1.8억원 지원)
- * MES, POP, SCM 등의 통합 및 제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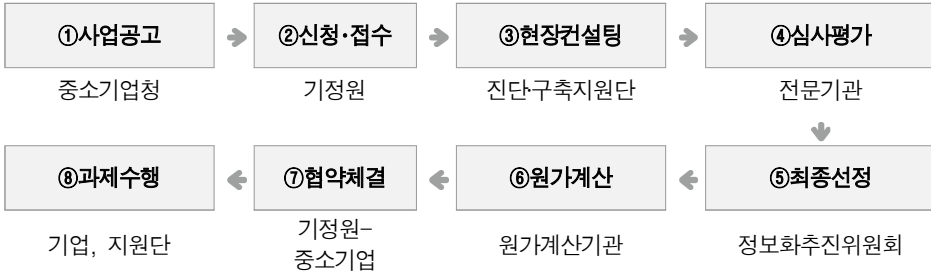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16. 12월 중 공고 예정)

- 기간 : '16. 12월 ~ '17. 1월 중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평가항목		배점
참여기업(40)	과제적정성	15점
	실행가능성	10점
	수출역량	15점
IT공급기업(60)	지원역량	20점
	지원전략	15점
	수출역량	20점
	사업관리	5점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추진절차, 추진일정을 그림·도표로 처리



문의처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 제공 홈페이지 순으로 안내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8, 0759
-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14-12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新T 기반 정보화솔루션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시스템(플랫폼) 및 솔루션을 구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전담인력, 유지비용, 기능개선 등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9개 협·단체 내외('17년 예산 40억)

* '16년 지원현황 : 10개 협·단체 신청, 4개 협·단체 선정

지원 대상

- (기본솔루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특화솔루션)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13 ~ '15년 개발과제로 선정된 협·단체는 신청 불가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경영혁신플랫폼과의 기술적 환경,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기본솔루션) 금융관리, 수납지급관리, 매입·매출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관리, 영업관리,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 지원

※ 사용방법 : 경영혁신플랫폼 웹사이트 접속(www.smplatform.go.kr) → 회원가입 → 기본솔루션 활용

- (특화솔루션) 업종별 협·단체 소속 회원사(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 지원규모 : 9개 협·단체 내외
-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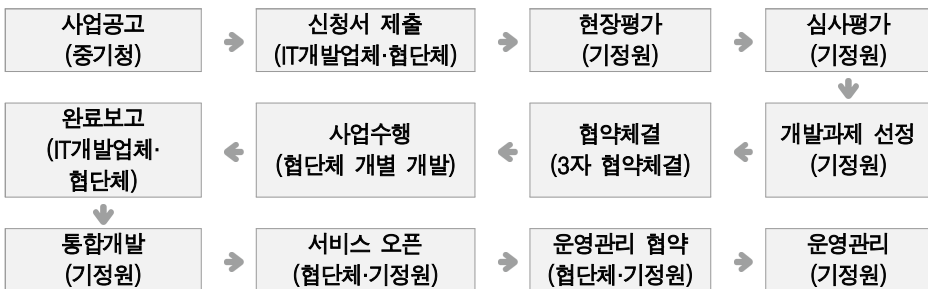
신청·접수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사업자단체
 -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 신청 기간 : '16. 12월 ~ '17.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경영혁신플랫폼 특화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2~4
- 경영혁신플랫폼 컨택센터 : 1644-1736
- 경영혁신플랫폼 홈페이지 : www.smplatform.go.kr

14-13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16년 지원현황 : 82개 신청기업 중 44개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기술유출 피해기업 우대(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희·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물리적보안(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단,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신청·접수

○ 기간 : '16. 12월 ~ '17. 1월 중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현장평가 평가항목	배점	심사평가 평가항목	배점
시급성 및 추진의지	40점	사업내용	30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40점	성과지표	10점
		운영·사업관리	20점
시스템 운영능력 및 인프라	20점	참여기업의 적정성	20점
		지원기관의 적정성	20점
합계	100점	합계	100점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8, 0759
-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14-1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중소-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성장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0개 컨소시엄(전체 예산 30억원)

- 기업협력형과제 : 7개, 20억원
- 연구소협력형과제 : 3개, 10억원
- * '16년 지원현황 : 기업협력형과제 7개 컨소시엄

지원 대상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참여기업(1개 이상)

- ▷ 주관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은 100억원 이상)
- ▷ 주관기업이 단독 신청할 경우에는 참여기업 탐색 및 컨소시엄 구성 지원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자금
- 세부사업 내역

구 분	내용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기업협력형과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전기획 및 공동기술개발 지원	2년, 6.3억원	65% 이내
연구소협력형과제 ('17년 신설)	원천기반기술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컨소시엄에 대학출연 연구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공동기술개발 지원	2년, 8억원	65% 이내

신청·접수

‘16. 12월 ~ ‘17. 1월

-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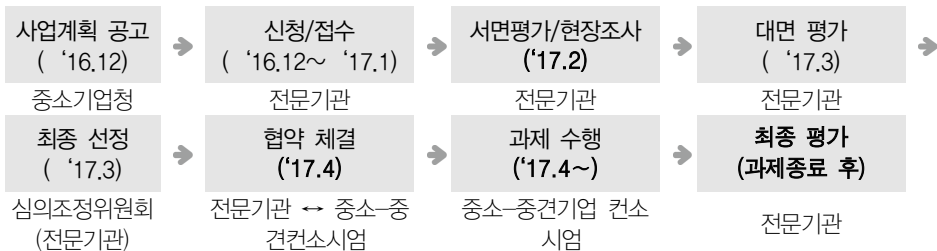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기술성 :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사업성 :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고용 및 수출가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 신청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 및 지침 참조

처리 절차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64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주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기술매칭지원단(한국지식재산전략원 주관)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기업을 탐색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용어설명

사전기획 : 본격적인 R&D 수행에 앞서,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신성장아이템 발굴, 시장진출, 사업화 전략구축 등 R&D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절차



제 15장

창업진흥원

15-1.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530
15-2. 본(Born)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532
15-3. 창업선도대학육성	535
15-4. 대한민국 창업리그	538
15-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540
15-6.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542
15-7. 창업인턴제	545
15-8. 청소년 비즈쿨	547
15-9. 창업아카데미	549
15-10. 창업대학원	550
15-11.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551
15-12.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553
15-13. 스마트창업터 운영	555
15-14.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558
15-1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560
15-1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563
15-17. 재도전성공패키지	565

15-1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활용, 성공노하우 전수, 상호협력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7년 예산 : 70억원, 78개 내외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2인 이상의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초기기업(3년 미만)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수행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지원 내용

- 창업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교육·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등
-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아웃소싱, VC유치, 해외마케팅 등 협력비즈니스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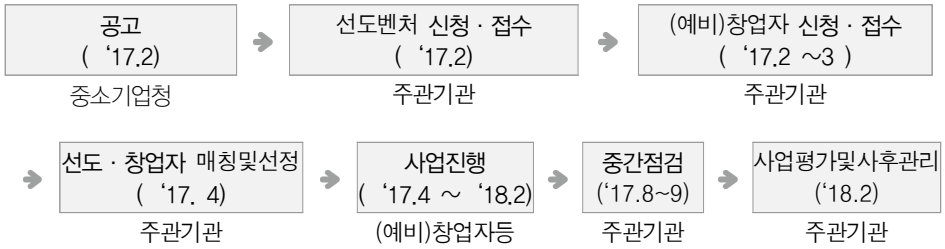
신청·접수

- 선도벤처기업 : ' 17.2월(예정), (예비)창업자 : ' 17.3월(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3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 : 042-480-4346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15-2

본(Born)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활성화

| 국내 창업자의 해외창업·진출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지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창업·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 글로벌 진출지원 33억원, 60여개팀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20억원, 30여개팀

지원 대상

-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을 보유한 5년 미만의 창업기업
- **(외국인 국내 창업 지원)** 학사학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외국인, 재외동포, 귀환유학생)
 -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기존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단,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캐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지원 대상)

유의사항 등

-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미국, 중국,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창업보육, 투자유치, 바이어 발굴매칭 및 네트워킹 지원 등
- (외국인 국내 창업 지원) 창업아이템 구체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연간 2회 예정(상하반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개념, 사업성·시장 분석, 재무계획 등(서면평가) →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대면평가)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영문),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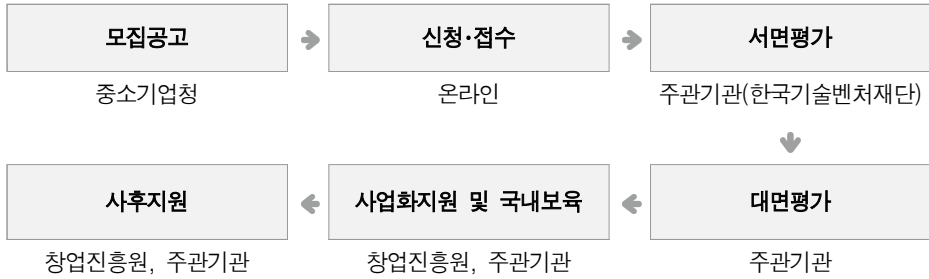
처리 절차

< 글로벌 진출지원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국내창업지원 >



문의처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02-3440-7302~7314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용어설명

액셀러레이터 : 성장 가능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초기자본 투자, 멘토링, 보육 등 사업성장을 위한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또는 기업

15-3 창업선도대학육성

| 대학을 지역 창업거점으로 육성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전문인력, 연구장비 등)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40개 대학, 1,050개사 내외(예산 922억원)

* '16년 지원현황 : 전국 34개 대학, 총 997개 과제(예산 753억원)

지원 대상

- (창업아이템 사업화)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업체당 최대 1억원, 850개사 내외)

* 후속지원 : 창업아이템사업화에 참여한 기업 중 우수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 홍보·마케팅 등 사업 고도화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 200개사 내외)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창업교육, 창업한 마당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투자유치 연계 등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창업선도대학 추가 선정(' 17.2월 선정 예정)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서면평가 → 교육 및 멘토링평가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기술성·시장성, 창업자의 자질 및 역량진단, 사업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별 자율운영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 창업아이템 사업화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화 지원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대학별 공고 → 신청·접수 → 선정 → 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 : 042-480-4353~9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궁금해요! 증기맨



-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 시 거주지역 이외의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해도 되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에 등록된 창업선도대학 소개 자료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신청은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A** 아닙니다. 창업아이템사업화는 나이, 학력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5-4 대한민국 창업리그

|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창업경진대회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CEO 발굴과 전국민 창업분위기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경진대회로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친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과 후속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2016년도 「도전! K-스타트업 2016」 4개부처(중기청, 미래부, 교육부, 국방부) 통합운영으로 KBS 1TV 12회 방영

지원 규모 150개팀 내외 (전체 예산 14억원)

* '16년 지원현황 : 관계부처 통합공고(3/15)를 통해 6,545개팀 참가신청 → 지역예선(106개팀 선정) → 통합본선 및 결선(10개팀 선정) → 왕중왕전(10개팀 순위결정)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초기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
- ✓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미래부),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청), KC-Startup Festival(교육부) 수상자(팀) 또는 수상 아이템
- ✓ 이전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비)창업자로 총 수상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지원 내용

- 통합본선 진출자(팀) 상금(최대 5백만원) 및 맞춤형 멘토링, 특허출원비 지원
- 왕중왕전 진출자(팀) 상금(최대 2억원) 및 후속 연계지원(사업화 연계, 박람회 참가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통합본선 및 왕중왕전 진출자(팀) 대상 맞춤형 멘토링 지원
- 통합본선 진출자(팀) 특허출원 비용 지원(250만원 한도, 희망자에 한함)
- 중기청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 지역예선 참가기회 제공
 - ▷ 지원사업 : 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신청·접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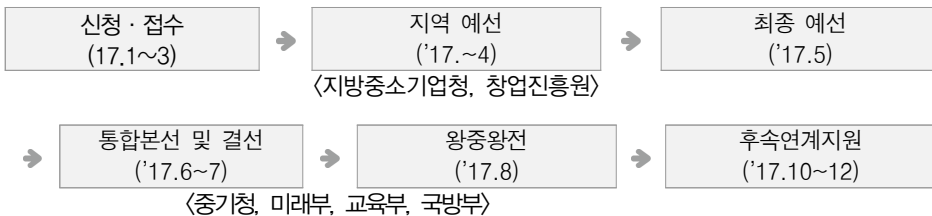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창업아이템에 대한 기술성 및 사업성 중점 평가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필수)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증빙서류는 예선(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별도 접수(개별 안내)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4409
-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 : 042-480-4390, 4398
- 신청·접수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5-5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이 주도하는 엔젤투자사/선도벤처 등이 유망한 기술창업팀을 엄선하여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시키기 위해 투자-R&D-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투자·지원하는 고급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200개 내외 규모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추천일(운영사에서 추천한 날 기준)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선정평가를 통해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차등 지원), 해외마케팅(최대 1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최대 2억원)를 추가하여 연계지원
-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인 밀착 지원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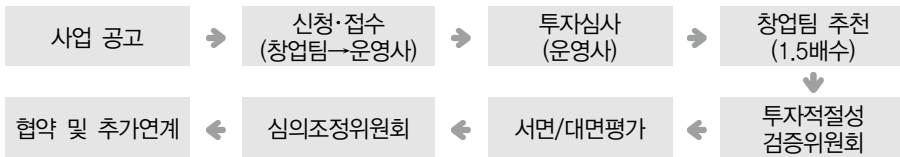
- 상시 접수 (각 TIPS 운영사 홈페이지 및 사이버 팁스타운 www.jointips.or.kr)

심사·평가내용

- 각 TIPS 운영사별 자체 평가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각 TIPS 운영사별 별도 양식)

처리 절차**문의처**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TIPS팀 : 02-3440-7425~6
-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 : 02-3440-7302~5
- 사업홈페이지(www.jointip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창업팀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기술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등 우수인력 중 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이면 가능합니다.

Q 하나의 운영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여러 운영사에 신청 가능하나, 향후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운영사와 투자를 약정하셔야 합니다.

Q 엔젤투자금 이외 기술개발자금에 대해서 지분확보를 하는지요?

A 기술개발자금은 정부의 지원자금으로 창업팀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팀이 성공으로 판정될 시 기술개발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하며, 실패할 경우 기술료 상환부담이 없습니다.

15-6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모델(Business Model)개발, 아이템검증개발, 시장진입 등을 도와 창업기업의 빠른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860개사 내외 (예산 500억원)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 기타 공고문상에 지원제외 대상

지원 내용

- 사업모델(BM) 혁신,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팀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정부사업 연계, 성과창출 프로그램 등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세부 지원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1억원(2년간)	BM혁신	아이팀검증	시장진입	후속지원 (수출·유통·자금 조달 등)
서비스	후속지원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팅(10백만원)	전문가 코칭 멘토링	특화교육	R&D 연계	투·융자 연계

신청·접수

2017년 2월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에 (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양식 참고

처리 절차

- 기업과 전문가 매칭, 해결 수행과제 선정, 자금과 멘토링 서비스로 문제해결 및 후속 성과창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절차 >



- * 후속 성과창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은 별도 일정에 따름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장과 : 042-481-891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후속 성과창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후속 성과창출 프로그램은 선정이후 우수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유통채널 확보, 자금조달, 수출, 기업공개 및 상장촉진 등을 지원합니다.

Q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제외국민 주민등록증(구 거소증)' 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사업 신청 후에 수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는 사업계획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마감이후에는 사업계획서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제출완료 버튼을 누른 뒤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반영이 됩니다.

→ 용어설명

사업모델(BM) : Business Model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15-7

창업인턴제

| 현장에서 배우는 성공창업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예비 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50명 (전체 예산 50억원)

- * 사업화자금은 인턴십 수료 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지원
- * 지원자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6년 지원 현황 : 인턴 130명, 사업화 80명 지원

지원 대상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대학(원)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내인 미취업자

- * (채용기업)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인턴 근무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지원 내용

- (인턴십) 기업 현장근무 지원(월 100만원 이내의 인턴활동비 지원)
 - * 근무기간은 기본 12개월이며, 평가를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 (사업화)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창업공간 임대 등 창업관련 비용(1억원 이내) 지원
 - * 사업화계획서를 제출한 예비창업자는 평가를 통해 인턴십 이전에 사업화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단, 인턴십을 수료한 경우에만 사업화를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내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기간) '17년 1분기 중 공고
- (선정방법) 요건검토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인턴을 선정하고, 인턴 수료 후 별도 평가를 통해 사업화지원 대상자를 선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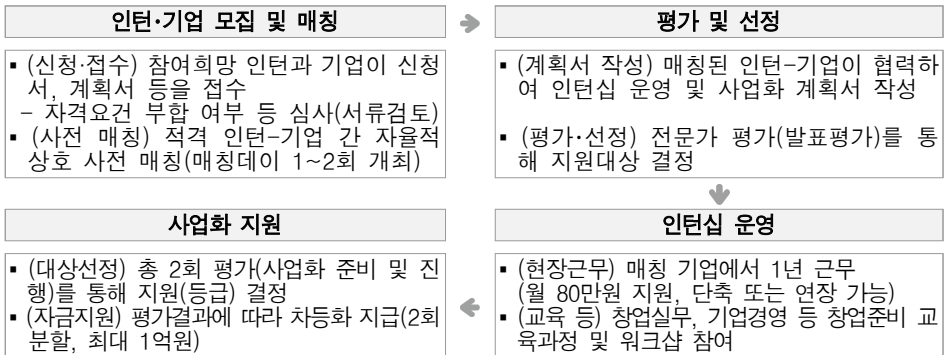
- ▷ (인턴십) 창업가적 자질, 인턴십 운영계획 및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인턴십 실적,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창업계획의 적정성 등

신청 서류

(인턴) 인턴계획서, (채용기업) 인턴십 운영계획서

처리 절차

- 인턴·기업 모집 →요건검토→인턴·기업 매칭→선정 평가→인턴십 운영→사업화지원대상자 선정평가→사업화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20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5-8

청소년 비즈쿨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꿈, 끼, 도전정신, 진취성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경제·창업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500개 초·중·고등학교(76.65억원)

* '16년 지원현황 : 448개교(초등 124개, 중등 109개, 고등 202개, 특수학교 13개)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지원 내용

- 기업가정신 및 창업·경제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등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신청·접수 '17. 2월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내용

- 운영의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교육인프라 구축 정도, 창업교육 효과 등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온라인신청) 및 사업운영계획서, 계좌개설확약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문과 함께 첨부

처리 절차



* 비즈쿨 캠프는 방학 등을 활용하여 별도 운영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5~6, 4469~70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창업교육 - 청소년 비즈쿨

15-9 창업아카데미

|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형 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조성 등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개 기관 내외(예산 : 20.8억원)

* '16년 지원현황 : 창업강좌 115개, 3천여명 교육 수료

지원 대상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3년 미만 창업자 포함)

지원 내용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지원 등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주요업종별 및 단계별 창업강좌, 멘토링, 네트워킹 구축 등

신청·접수 '17년 2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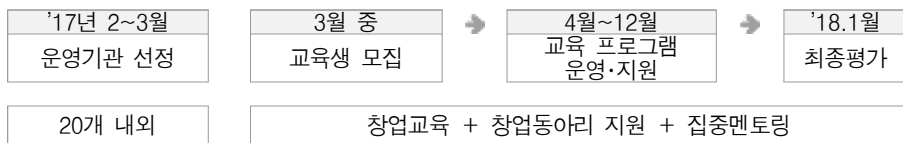
*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운영기관 모집계획 및 일정 변경가능

** 교육생 모집은 운영기관별 별도 모집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신청양식은 K-Startup(www.k-startup.go.kr)의 '공지사항(창업아카데미)' 게시내용 참조

처리 절차



* 운영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상이.

문의처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0-4467

15-10

창업대학원

| 창업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여 창업전문가를 양성

창업대학원 지원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를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5개 대학원(전체 예산 7.2억원)

* '16년 지원현황 : 5개 대학원(9억원)

지원 대상 5개 대학원(대학원별 30명 내외)

구 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 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5학기

지원 내용

- 각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 지원

신청·접수 각 대학원별 학사일정에 따름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 : 042-481-4445
-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053-620-2078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02-910-5728
- 부산대학교 기술창업대학원 : 051-510-1369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 031-290-5573
- 연세대학교(원주) 정경·창업대학원 : 033-760-248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15-11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 시니어의 성공적 기술창업을 위한 인생 제 2막 설계

시니어(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3개소 내외('17년, 47.4억원)

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창업 후 7년까지)

지원 내용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 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	창업교육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위한 제조업·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의 실전창업 교육과정 운영	전국 23개소 내외
	창업지원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을 제공 • 자문, 경영, 마케팅지원 등	
예비퇴직자 맞춤교육		•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창업 교육 및 멘토 방문 프로그램 운영	30개 기관 내외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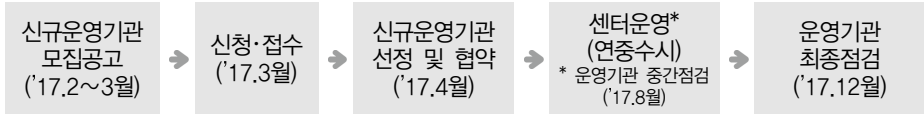
- 센터·스쿨 통합으로 전국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서 교육 및 보육 일괄 신청·지원

신청·접수 '17년 연중수시*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기간 상이함(K-Startup 참조)
 - * 신규 운영기관 모집 : '17년 4월 예정(K-Startup 참조)

처리 절차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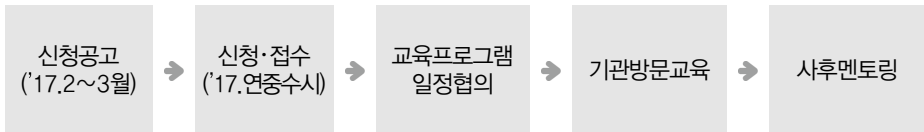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운영기관(지자체, 대학 등)

- * '17년 이전 지정센터 운영기간 : '17년 연중수시
- * '17년 신규 지정센터 운영기간 : '17년 4~5월부터

○ 예비퇴직자 맞춤교육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운영기관(지자체, 대학 등)

- * '17년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일정 및 교육시간, 프로그램 등 협의 후 진행(연중수시)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23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84, 4387~8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15-12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 규모

-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자

지원 대상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신고 및 납부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자치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신청·접수 '17년 연중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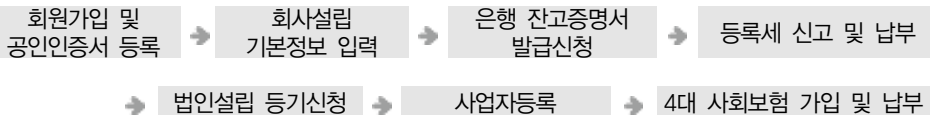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제한 없이 사용가능

신청 서류

절 차	관련기관	제출서류의 종류
상호검색	상업등기소	-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이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금융결제원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주금납입의뢰서
등록세납부	지자체 (행정자치부)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상업등기	대법원(등기소)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발기인총회기간축동동의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국세청(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될 경우 상가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사업허가·등록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4대 사회보험 신고	사회보험기관	사업장적용신고서,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취업규칙신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취업규칙신고서

* 음영부분은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설립 할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2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 042-480-4372
- 콜센터 : ☎1577-5475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 참조

15-13

스마트창업터 운영

| 온·오프라인 체험형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전국 18개 스마트창업터에서 체험형 창업교육과 사업 아이템의 사업모델검증, 시제품 구체화 등 후속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5,000명 내외 (전체 예산 98.4억원)

- 체험형 창업교육 : 4,000명 내외
- 사업모델 검증 지원 : 500팀
- 후속지원 : 140팀 내외
 - * '16년 지원현황 : 3,473명 교육, 397팀 사업모델 검증 지원, 100팀 후속지원(진행 중)
 - * 지원규모 변동가능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공고에 게시 예정)

지원 대상 대학생, 일반인 등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

지원 내용

- 체험실습형 교육: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한 체험형 창업교육
- 사업모델검증 지원: 고객수요 검증을 위한 최소요건제품 제작, 랜딩페이지 제작, 시장조사 활동비 등을 지원
- 사업화지원: 보육공간 제공 및 시제품개발, 지적권 출원·등록, 마케팅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최대 5천만원)

신청·접수 '17. 2월, 6월 2회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온라인 접수

심사·평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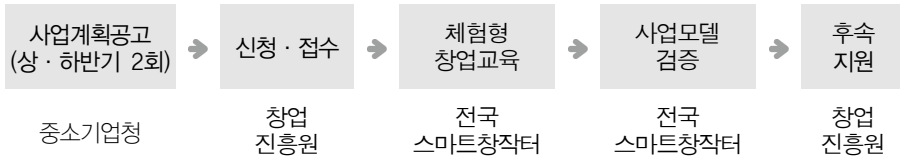
- 사업모델검증 지원 대상자 평가: 교육 과제물 평가, 사업계획 등을 평가
- 후속지원 대상자 평가: 사업모델검증 결과 평가, 창업팀 역량, 향후 사업계획 등을 평가

신청 서류

교육신청 시 별도 요구서류 없음

- * 사업모델검증 대상자 및 후속지원 대상으로 선발될 경우, 사업모델검증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처리 절차



- * 세부일정은 추후 사업공고문을 통해 명시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3982, 4524
- 창업진흥원 : 042-480-4391~2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체험형 창업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창업팀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짧은 주기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지속 반복하는 린스타트업 방식을 적용한 교육으로, 교육생이 직접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교육과정입니다.

Q 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한 경우 스마트창업터 사업에 지원 가능한가요?

A 체험형 창업교육 및 시장모델검증 지원 단계에서는 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신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화 지원 단계에서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창업사업화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용어설명

최소요건제품(MVP) : 상용화 목적이 아닌 고객반응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구현한 초기 시제품

랜딩페이지 : 고객이 처음 접하게 되는 웹/모바일 페이지로, 고객반응 검증용으로 사용

15-14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육성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부터 성장 프로그램까지 초기 창업 숙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40개 기업 내외(121.5억원)

* 16년 지원현황 : 청년창업자 170명(팀) 사업화 자금 평균 50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앱/웹, SW, 콘텐츠, 융합 기술(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팀은 4인 이하) 또는,

▷ 업력(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창업 지원사업 참여 경험자,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 등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평균 5천만원, 최대 1억원(총사업비의 70%) 지원 *

* 아이템 개발(신규채용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 기술이전비 등), 기술정보 활동(교육비, 문헌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등),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창업활동비 등으로 사업비 사용 가능

* 선정된 자(팀)은 10% 이상의 현금 대응, 20% 이하의 현물 대응(기자재, 대표자 인건비, 기존 직원 또는 팀원의 인건비, 사업장 임대료 등) 필요

○ 교육·멘토링 지원

▷ 입문, 특화,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및 분야별 애로해소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운영, 필수 이수 시간 없음

○ 성장지원 프로그램

- ▷ 판로확대, 마케팅, 협업, 투자유치 등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프로그램 지원
- * 국내외 전시회 및 컨퍼런스, 소비자반응조사, 홍보·마케팅, 영상제작, 데모데이, IR 교육 등

○ 인프라 지원

-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휴게실, 서버, 테스트베드, 기숙사 등 사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
- * 주관기관(4개 권역별 스마트벤처창업학교)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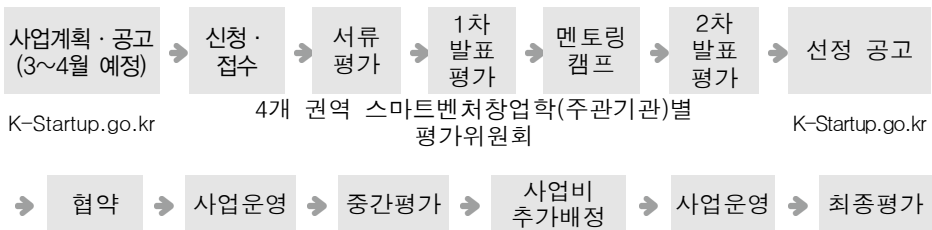
매년 3~4월, 케이 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

○ 평가 절차(서류평가부터 최종선정까지 약 2개월 소요)

- ▷ ① 서류 → 1차 발표 → 멘토링캠프 → 2차 발표 등의 평가과정을 통해 창업아이템(BM)의 기술성, 시장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신청자(대표자)는 서류평가 1일, 1차 발표평가 1일, 멘토링 캠프 3일, 2차 발표평가 1일 참석 필요
- *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함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 서류 등

처리 절차**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042-480-439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15-1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 안정적 사무공간 지원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를 도와드립니다.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전국 65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66억원)

* '16년 지원현황(9월말 기준) : 2,103개사 지원, 경영자문 870건, 교육 4,885건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 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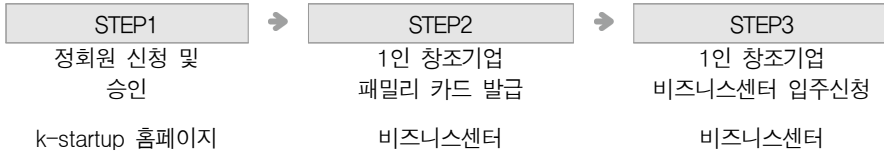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 1인 창조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형태의 작업공간
-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창업교육,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정보제공 등 경영 지원

신청·접수

연중 수시 신청·접수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모집

**정회원 승인 시 제출 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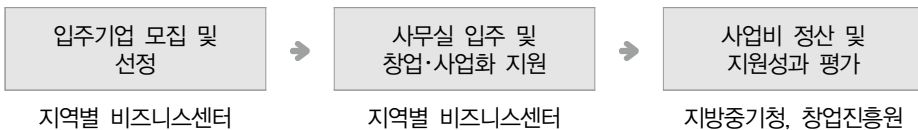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대표자 의지, 사업아이템의 독창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구체성 등에 대한 서류 및 발표 평가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자료실에 게재된 세부운영지침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연락처 부록 참조
- 창업진흥원 (전담기관) : 042-480-4381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K-Startup(시설·공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리스트 참조
- 사업관리시스템 : K-Startup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1인 창조기업인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 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1인 창조기업 해당이 되나요?
- A**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3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5-16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제품화·마케팅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제고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 규모 1인 창조기업 380개사 내외(52.24억)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예비창업자)인 경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해야 함

→ 용어설명

1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업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등

지원 내용

- (지원과제)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과제
- (지원조건) 1인 창조기업이 필요한 세부지원내용을 선택하되, 총 비용의 최대 80%(2,000만원 이내) 지원
- (세부지원내용) 홈페이지/앱 제작, 홍보영상 제작, 카달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광고,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출원 등

신청·접수

'17년 1월(상반기), 5월(하반기) 공고 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내용

- 대표자의 전문성, 제품/서비스의 창의성/독창성/기술성,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 및 발표평가

신청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연락처는 부록 참조)
- 창업진흥원(전담기관) : 042-480-4385, 4496

15-17

재도전성공패키지

| 교육 및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 (예비)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 등 재도전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총 200개사 내외(전체 예산 100억원)

- 재창업교육 : 200개 과제 내외
- 사업화지원 : 200개 과제 내외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16년 지원현황 : 100개 기업(재창업교육 100개, 사업화지원 100개)

지원 대상 사업 실패(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세금분납계획을 제출한 자는 가능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 규모 및 대상 등은 변동 가능

지원 내용 체계적인 실패원인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재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보육 등 재창업 순과정 일괄지원

- (재창업교육 및 멘토링) 실패원인 분석 등 재창업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실무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마케팅,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평균 : 3.5천만원) 지원

- (보육지원) 재창업자 전용 보육공간 R-Camp(서울, 부산 등)를 통한 입주 지원 및 자금, 마케팅, 네트워킹 등 연계지원
- (연계지원) 투자유치 IR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접수 '17년 중 2회 공고(1월, 6월)예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최종 선정 시 신청서 등에 명시된 증빙서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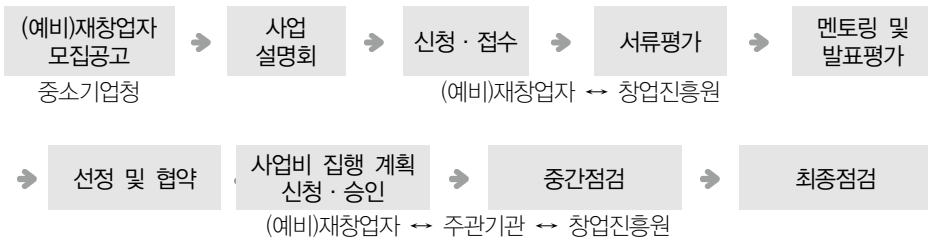
심사·평가내용

- 창업을 위한 준비성,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창업과제의 기술성 및 독창성, 창업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창업과제의 사업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
- 선정절차 :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멘토링 및 발표평가)
 - * 평가 내용 및 절차 등은 변동 가능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에 첨부 예정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 4474
- 중소기업청 창업포탈 케이스타트업(www.k-startup.go.kr)
-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제 16 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16-1-1. 소공인특화자금	569		
16-1-2. 성장촉진자금	570		
16-1-3. 일반경영안정자금	576		
16-1-4. 수출고용특별자금	578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16-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581		
16-2-2.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584		
16-2-3. 상권정보시스템	587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16-3-1. 소상공인 경영교육	590		
16-3-2. 역량Jump-Up프로그램	592		
16-3-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594		
16-3-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596		
16-3-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598		
16-3-6. 나들가게 육성	601		
16-3-7. 프랜차이즈화 지원	604		
16-3-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607		
16-3-9.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610		
4장. 소공인 특화지원			
16-4-1. 소공인 특화센터 사업	613		
16-4-2.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616		
16-4-3.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619		
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16-5-1. 희망리턴패키지	622		
16-5-2. 재창업패키지	624		
16-5-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626		
6장. 전통시장 활성화			
16-6-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629		
16-6-2. 상권활성화	632		
16-6-3. 온누리상품권 발행	635		
16-6-4. ICT 전통시장 육성	638		
16-6-5. 청년상인 육성	640		
16-6-6.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643		
16-6-7.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646		
16-6-8. 시장마케팅 지원	649		
16-6-9.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652		
16-6-10.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655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 16-1-1. 소공인특화자금
- 16-1-2. 성장촉진자금
- 16-1-3. 일반경영안정자금
- 16-1-4. 수출고용특별자금

16-1-1

소공인특화자금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규모

4,100억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기간 : 운전자금(5년, 거치 2년) / 시설자금(8년, 거치 3년)
- 대출 취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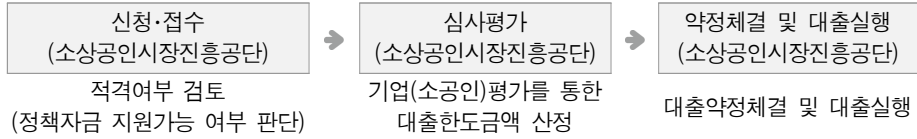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121, 7124, 7130)

16-1-2

성장촉진자금

| 장수 소상공인의 재성장 및 재도약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성장·재도약 자금 지원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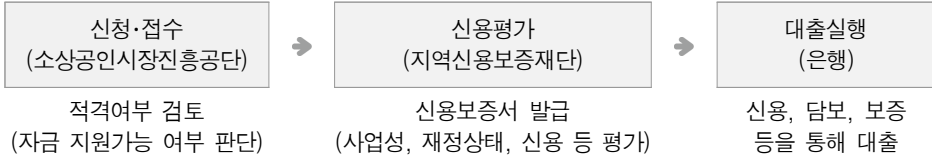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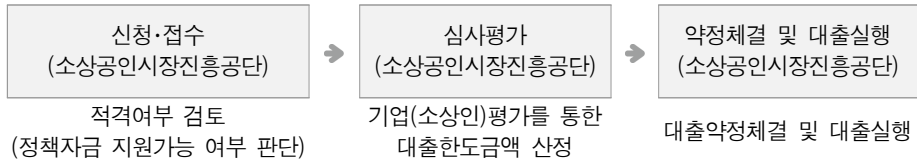
처리 절차

〈 상품·영업 서비스 분야 : 대리대출 〉



* 순수신용·부동산 담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시

〈 시설분야 : 직접대출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121, 7124, 7130)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자문및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설소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설소는 장애인자 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 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 이 지정한 업종

< 별표 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연락처

구분	센터	전화(FAX)	구분	센터	전화(FAX)	구분	센터	전화(FAX)
서울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광주 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대전 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경기인천지역본부	(062)954-2084 (062)954-2085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충남)천안·이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부산 경남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충북)제천센터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8024-5917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대구 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16-1-3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 지원

지원 규모 9,350억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자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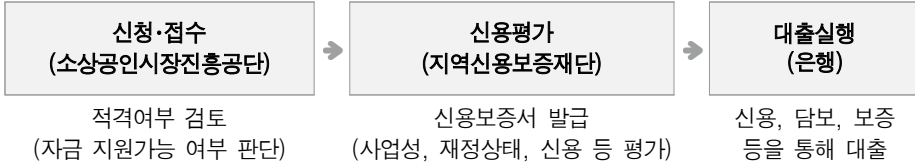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금리 등이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처리 절차



* 순수신용·부동산 담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시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121, 7124, 7130)

16-1-4

수출고용특별자금

| 소상공인의 수출 및 고용 활성화 지원

수출 소상공인 및 청년 고용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원 규모

500억원

지원 대상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또는 청년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 청년사업자 : 만 39세 이하 / 청년근로자 : 만 29세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한 대상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닐 것
- ✓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수출소상공인 1억원 / 청년사업자·청년근로자 고용사업자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제주,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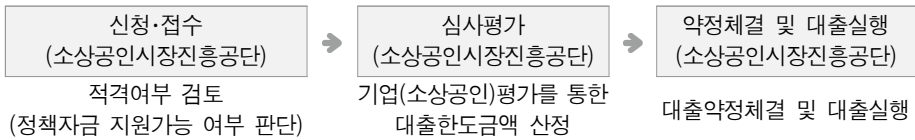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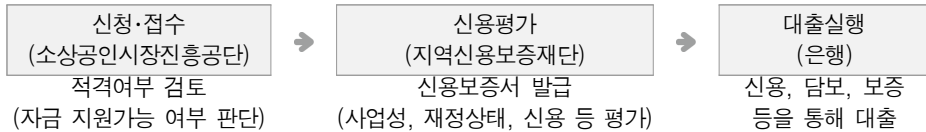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 신청서류 등

처리 절차

〈 수출소상공인 : 직접대출 〉



〈 청년사업자·청년근로자 고용사업자· : 대리대출 〉



* 순수신용·부동산 담보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실시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121, 7124, 7130)

궁금해요! 증기맨



Q 수출실적은 직수출만 가능한가요?

A 직수출과 간접수출 모두 가능합니다. 단, 한국무역협회 또는 시중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 16-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16-2-2.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 16-2-3. 상권정보시스템

16-2-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지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 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50명 내외(103.4억원)

* '16년 지원현황 : 412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단, 음식점업, 주점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신고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공통·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실시
- 점포체험교육 : 이론교육 수료생에게 체험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16주)
- 창업멘토링 : 점포체험기간 동안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
- 사업화지원 : 우수졸업생을 선발하여 매장모델링, 마케팅 등 사업화자금 지원 (120명, 최대 2천만원까지, 단, 자부담 50%)

신청·접수

'16. 12. 13 ~ '17. 1. 12

- 지역별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방문 및 우편 접수
 -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선발(5개 지역 1기당 225명 내외/2기 운영)
 -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전문성 및 유사경력 등 창업준비도 및 창업마인드 평가

이론교육장소	주 소	연락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02-723-0174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051-463-0212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053-353-7667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062-367-0135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042-363-7494

제출 서류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여부 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사업공고 참조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이론교육	집포 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지원
5기	'16.12.13 ~'17.1.12	'17.2월	'17.2월 ~3월	'17.4월 ~7월	'17.8월 ~11월
6기	'17.4월 ~'17.5월	'17.6월	'17.6월 ~7월	'17.8월 ~11월	'17.12월 ~'18.3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공단→ 교육생	전용교육장	체험집포	개별 사업화 수행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14, 7841, 784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7년 지원시책」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11

궁금해요! 증기맨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만 19세 이상으로서 신사업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 A**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예시: 3D프린팅 정밀모형 제작판매, 디지털 장례업, 반려견 놀이방 등)

16-2-2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 신흥개도국 해외 현지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전창업 교육과 해외 인큐베이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87명 내외(예산 10억원)

지원 대상

해외창업을 준비 또는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 우대 : '12~'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舊 소상공인진흥원) 해외창업 국내 교육 수료생

지원이 안되는 자

- ✓ 단순 관심, 업종 미선정, 자금 미확보 등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자
- ✓ 해외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자
- ✓ '14~'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외 인큐베이팅 참가자
- ✓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한 현지 창업활동 지원

- (해외 인큐베이팅) 현지사정에 능통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 사전준비(시장·사업타당성 조사 등) 및 현지 창업서비스(인허가, 법률 등 분야별 멘토링) 밀착 제공(6주)

구 분	세부내용
사무공간 지원	▪ 해외창업 준비를 위한 사무실, 인프라 등 지원
사업 타당성 검토	▪ 희망업종의 사업타당성, 현지 적용 가능성 판단
시장조사 실시	▪ 업종별 시장현황 및 트렌드 조사
사업파트너 매칭	▪ 창업아이템에 대한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섭외
법인설립 지원	▪ 사업자등록을 위한 절차 및 서류작성 등 지원
멘토 자문	▪ 법률·회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실시
홍보·마케팅지원	▪ 현지 파트너 섭외, 아이템 홍보 등 구체화된 사업아이템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및 활동 지원
현지네트워크 교류	▪ OKTA, KOTRA, KOICA 등 해외 공공기관의 협력 및 현지 한인과의 간담회 등 교류증진
사후관리	▪ 창업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 인큐베이팅 前 사전 오리엔테이션 과정 별도 운영(3일, 국내)

구 분	세 부 내 용
창업국가	▪ 창업환경, 산업, 법제도, 문화, 진출입지, 자금조달 방안 등
업종선택	▪ 현지 유망 업종 및 업종선택 방법, 현지 유망업종 분석 등
창업사례	▪ 현지 창업 및 실패사례, 성공방법, 팀빌딩, 애로사항, 유의할 점 등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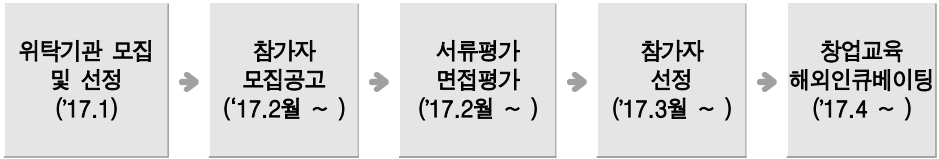
- 신청 및 접수 ('17. 2월 이후, 2~4회/연) → 참가자 선정 ('17. 3~9월) → 해외 인큐베이팅 ('17. 4~11월)

* 국가별로 2~4회 운영하며, 별도 공고를 통해 공지.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 * 창업적성검사 : 워크넷(<http://www.work.go.kr>)접속 → 직업정보·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성인용 심리검사) → 창업적성검사(20분) → 결과표 인쇄 → 제출
 - * 참가비(자부담) : 왕복항공료, 식비, 숙박비(1/2) 등이며 반환되지 않음

처리 절차



* 국가별로 2~4회 운영하며, 추진일정은 별도 공고를 통해 공지.

문의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www.smba.go.kr / (042)481-4491, 449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www.semas.or.kr / (042)363-781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16-2-3

상권정보시스템

|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예정지의 점포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7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 ▷ 지도상에서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 시설 등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
-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서비스
 - ▷ 상권내 업종별 과밀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출점시 예상되는 경쟁 수준을 측정하여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 ▷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 매출전망 등을 종합지수화하여 '경고등' 형태로 표시 : 주의(노랑) - 위험(주황) - 고위험(빨강)
- 점포평가서비스
 - ▷ 창업 예정지의 점포 접근성, 예상매출 등을 분석·평가해 주는 서비스
 - ▷ 창업예정지 주소, 희망업종, 창업비용, 매장면적 등을 입력하면 카드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성, 안정성, 활성도, 구매력, 유동지수 등을 분석
- 점포이력서비스
 - ▷ 특정 점포의 과거 개·폐업 변화 이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現 위치 점포에서 과거 영업한 업소를 추적 가능
 - ▷ 업소를 추적 가능

이용 방법

- 인터넷 이용
 - ▷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mba.go.kr>) 회원가입 후 이용

○ 모바일 이용

▷ 안드로이드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문의처

○ 콜센터(1644-5302)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644-530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A 상권정보는 37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10종 DB, 27종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데이터 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안내는 서비스별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상권 :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정도로 상업상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공간적 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통계청 조사·집계구, 도로망을 반영한 36만개 블록(업소수 50개 이상)이 2개이상 연결된 영역을 의미

주요시설 :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집객시설 :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로 백화점, 영화관, 대형쇼핑시설, 스포츠경기장 등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 16-3-1. 소상공인 경영교육
- 16-3-2. 역량Jump-Up프로그램
- 16-3-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16-3-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16-3-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16-3-6. 나들가게 육성
- 16-3-7. 프랜차이즈화 지원
- 16-3-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16-3-9.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16-3-1

소상공인 경영교육

| 업종 고급기술과 경영기법을 배우는 경영교육 지원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교육 및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1,000명 내외(42억원)

○ '16년 지원현황 : 11,000명

지원 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지원이 안되는 자

- ✓ 교육신청 당시 휴·폐업 또는 공단 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의 대상 업종을 영위 중인 자

지원 내용

- 전문기술교육(8,000명)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까지(1회당 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중복과정 제외) 지원)
- 경영개선교육(3,000명) : 소비자 트렌드, 업종별 경영전략 및 CS교육 등 경영개선교육 지원
 -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 교육비 무료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 존	
구분	지원한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70%이내 (최대40만원)



변 경	
구분	지원한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90%이내 (최대50만원)

신청·접수

'17.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c.sbiz.or.kr) → 소상공인 경영교육 → 교육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 042-363-7821

궁금해요! 증기맨



- Q**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소상공인 경영교육 - 원하시는 업종 또는 지역의 민간 교육기관을 확인하신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민간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가능
- Q**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강시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 A** 1인당 연간 2회(동일과정은 수강 불가), 교육비의 90%까지만 지원되며, 최대 한도는 과정당 50만원입니다.
- Q** 교육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 A** 교육비는 교육생이 미리 선납하여야 하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 교육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Q** 교육비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교육비 지원신청메뉴를 선택하신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6-3-2

역량Jump-Up프로그램

|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연계지원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컨설팅) 후 연계지원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500개 업체 지원(20억원)

지원 대상

전년대비 매출액 15%이상 감소 또는 2년 이상 매출액이 연속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 나들가게 지원사업,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신사업 육성지원사업 등 공단 유사사업 수혜업체

지원 내용

- (위기진단) 해당 업종 전문가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진단·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 등 지원
- (연계지원) 신제품·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 * 연계지원 대상자는 위기진단 컨설팅 수진업체 중 평가 후 선정되며, 부가가치세 및 전체 사업비의 10%는 본인 부담
- 세부사업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조건	지원조건
역량 Jump-Up 프로그램	-위기진단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지원 -신제품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지원, 법률자문, 내외부리모델링 지원	-연 1회 지원·협약기간 2개월 -최대 400만원 지원	전체 사업비의 10% 신청인 본인 부담 (VAT 별도 부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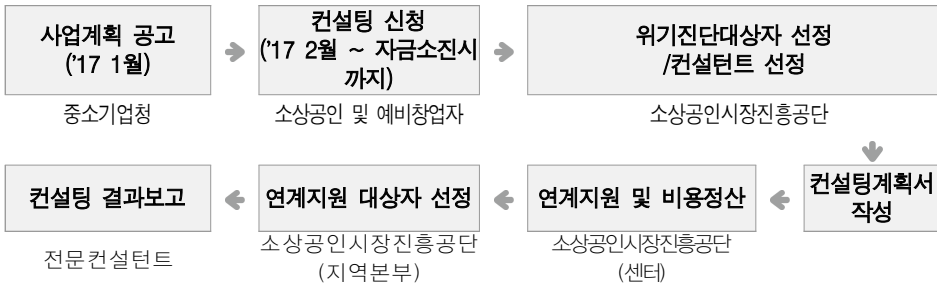
'17.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포탈(<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www.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소상공인컨설팅 후 역량 Jump-Up프로그램을 신청해도 되나요?

A 소상공인컨설팅과 별도로 연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역량Jump-Up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6-3-3

소상공인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마케팅전략·기술전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3,600개 업체 지원(36억원)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근로자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정책자금 연계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 세부사업내용

구분	수행	일수 (기간)	컨설팅 내용	지원조건
소상공인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	2~5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장기 집중관리 컨설팅 지원	자부담금 125천원 이내(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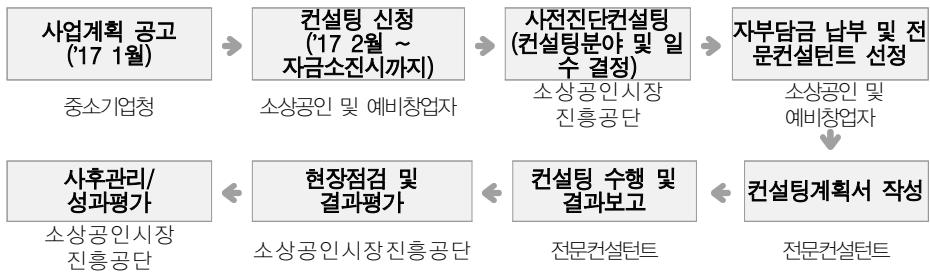
신청·접수

'17.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포탈(<http://www.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등록)
- 기존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별고지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처리 절차**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 <http://www.sbiz.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컨설팅 업체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전진단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지원일수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16-3-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

지원 규모 500개 업체(1억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연중(자금소진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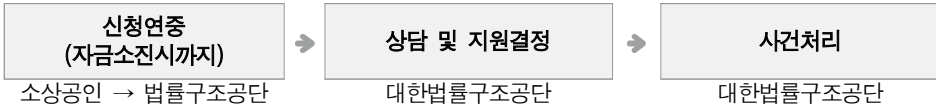
-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제출 서류

구 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

처리 절차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2~3)

16-3-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0개 설립지원(244억원)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완료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외 소상공인(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신청 제한)
- ▷ 소상공인 정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름

지원이 안되는 자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협업인프라(1억원 한도 내), 판로확대 및 협업전문교육·컨설팅 지원

- 협업인프라 구축 : 공동브랜드·공동마케팅·공동장비구매·공동R&D·공동네트워킹

- ▷ 소요비용 원칙 : 정부(70%), 자부담(30%, 현금출자 원칙)
- ▷ 기타사항 :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30%)
- 판로지원 : 박람회 · 전시회 참가 및 TV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지원 등
- 협업전문교육·컨설팅 : 협동조합의 이해, 협업사업 필요성, 조합설립 및 운영방법 등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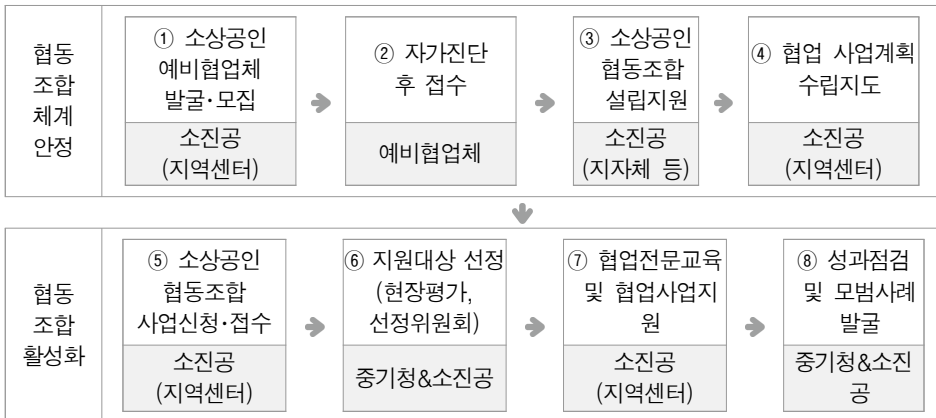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11~3,7722~7), 홈페이지(www.semas.or.kr)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1/5), 홈페이지(www.smba.go.kr)

궁금해요! 증기맨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해당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임.

16-3-6

나들가게 육성

|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동네슈퍼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나들가게 신규개점, 점포운영 개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100여개 나들가게(예산 64억원)

- 신규개점 지원 : 제한 없음
- 점포경영 지원 : 1,000개 내외 나들가게, 6억원
- 나들가게 선도지역 : 22개 지자체 1,100개 내외 나들가게, 58억원
 - * '15년 지원현황 : 1,500개 나들가게(개점 300개, 경영개선 600개, 선도지역 나들가게 600개)

지원 대상

- 아래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동네슈퍼
 - ① 점포 총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점포(슈퍼마켓)
 -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지원 내용

- 신규개점 지원
 - (POS 프로그램) 점포유형별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
- 점포경영 지원
 - (점포경영 개선) 점주의 선택에 따라 상품진열 개선, 점포운영 현장지도 및 컨설팅 등을 지원(소요비용의 10% 이내에서 점주 자부담)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자금대출) 경영안정자금 융자(최대 7천만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연계)
- 나들가게 선도지역 : 나들가게 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 및 경영 개선, 경영역량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난해 시범 운영되었던 ‘나들가게 공동세일잔이’ 16년부터는 정규행사로 연 2회(설명절, 추석명절 등) 이상 개최되며, 나들가게로 운영 중인 점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

신청·접수

’17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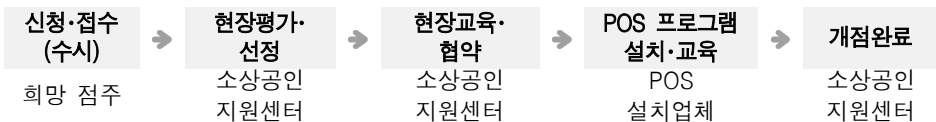
- 신규개점 지원 :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59개) 방문 신청
- 점포경영 지원 : 나들가게 POS를 통해 지원 신청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각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계획 및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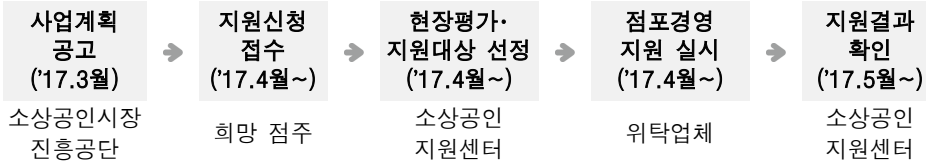
- 신규개점 지원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 ‘나들가게 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작성 가능
- 점포경영 지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나들가게 POS로 신청

처리 절차

- 나들가게 신규개점



○ 나들가게 점포경영 지원



문 의 처

- 나들가게 콜센터 : 국번없이 1566-90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 363-7741~5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8939

궁금해요! 증기맨



- Q** 나들가게 상품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A** 나들가게에 저렴한 상품공급을 위해 온라인 상품공급사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는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공급사별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상품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A**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2개의 선도지역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2개 선도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도지역에 위치한 나들가게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델숍 육성, 점포시설경영 개선 등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7

프랜차이즈화 지원

|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맹본부 시스템 체계, 브랜드 디자인 및 IT환경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멘토링,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40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16년 지원현황 : 44개 기업(유망27, 중소10, 연계지원 7)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즈와 신규 프랜차이즈

- 자격요건 :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로서 업력 최소 1년 이상
- 유망프랜차이즈는 직영점(사업주 본인) 1개 이상 또는 가맹점 10개 미만
- 중소프랜차이즈는 가맹점 10개 이상~20개 미만
- 연계지원은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선택적 종합지원

○ 세부사업 내역

지원분야	항목	내용	지원한도
	시스템 체계 구축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서의 체계 구축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업체당 개발비용 80%지원, 최대 40백만원 (최대 2지원분야의 항목별 선택가능)
브랜드 디자인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웹 홈페이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마케팅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 팜플렛,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멘토링	선배 프랜차이즈 CEO와 매칭을 통해 멘토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면담, 이메일 등 매칭 상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지원내용을 종합한 지원항목 BOX에서 수요자가 선택하여 최대 2분야 신청가능

기 존		변 경	
구분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① 지원분야 선택적 통합지원	80% (40백만원)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80% (40백만원)
- 시스템 체계 구축 (사후관리 포함)	신규, 연계 구분없음	- 시스템 체계 구축	최대 2분야 까지 지원
- 브랜드 디자인		- 브랜드 디자인	
- IT환경 구축		- IT환경 구축	
- 마케팅 지원		마케팅 지원	
② 홍보 및 멘토링	-	② 홍보, 멘토링, 교육	-

○ 이익공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 및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전환시, 우대지원(90%지원, 50백만원 한도)

신청·접수

'17. 1월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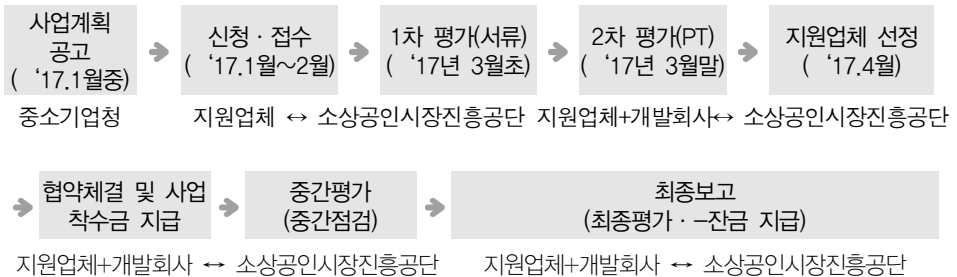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1차 서류평가 : 사업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계획서 평가(1.5~2배수 선정)
- 2차 PT평가 : 사업에 투입될 개발회사와 매칭하여 개발계획 평가(최종선정)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최근2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 1차 통과(서류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4, 7756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16-3-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수준별 연계지원을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서
업력 최소 1년 이상

- 직영점 보유 : 직영점 1개 이상과 가맹점 10개 이상
- 직영점 미보유 :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지원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랜 차이즈로 지정
II 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등 급	지 원 내 용	비 고
III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IV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환경 구축 분야(웹홈페이지, 모바일홈페이지, 온라인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프랜차이즈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용일부 자부담)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수준평가 심사비 국비 일부 지원
-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평가 및 등급 부여

신청·접수

‘17. 3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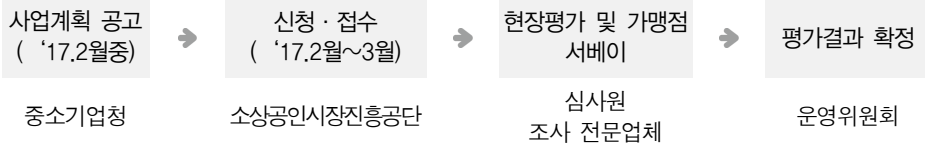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이메일(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무료)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등

- *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가능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54, 7756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395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준평가 이후 연계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16-3-9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지원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상담하여, 전문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담 센터

전국 59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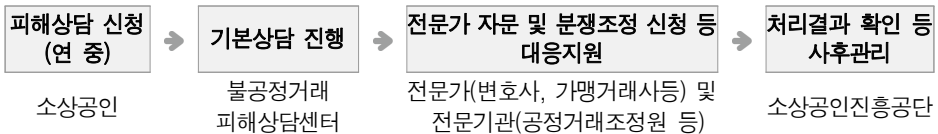
지원 내용

- (상담지원) 전국 59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전문가 파견)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불공정거래 전문가들이 피해유형별로 1:1 지원(필요시 현장파견)
- (기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활동 및 법령·제도 개선

신청·접수

전국 59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방문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 042-363-7759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368

궁금해요! 증기맨



Q 불공정거래행위란?

A 대기업,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 등의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4장

소공인 특화지원

16-4-1. 소공인 특화센터 사업

16-4-2.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16-4-3.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16-4-1

소공인 특화센터 사업

| 소공인 밀집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특화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6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상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지역, 업종확인 가능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제조업24개 업종 중 ①담배 제조업/②코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③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④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원 내용

특화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지원

- (특화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컨설팅) 경영애로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문화·예술 협업을 통한 디자인개선, 원자재 공동구매·생산, 수출·고용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등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 (방문, 센터 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 센터별 사업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은 지역 소공인특화센터에 문의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2, 7904, 7905, 7906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지원」 참조

< 소공인특화센터 현황('16년 11월말 현재) >

	시도	시군구	분야	기관명	대표전화
1	서울	중구(을지로동)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02-2277-2922
2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02-741-5366
3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02-2634-7727
4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02-3672-4348
5	서울	성북구(장위동)	의류봉제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02-919-9623
6	서울	성동구(성수동)	가족신발	서울산업진흥원	02-2115-0530
7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02-741-8755
8	서울	서초구(반포4동)	섬유(커튼 및 블라인드)	사단법인 한국차양산업협회	070-4848-0972
9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시흥산업진흥원	070-4170-5973
10	경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화성상공회의소	031-354-3641
11	경기	고양시(장항1동)	인쇄	(재)경기테크노파크	031-913-6611
12	경기	부천시(신흥동)	전기장비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032-234-5911
13	경기	안양시(호계1동)	전자부품	(사)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031-423-6726
14	경기	광주시(오포읍)	가구	(사)한국소설콘텐츠진흥협회	070-4436-3155
15	경기	용인시(영덕동)	전자부품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031-8067-5041
16	인천	연수구(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인천지회	032-723-9980
17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디자인센터	051-631-2050
18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경제진흥원	051-636-7518
19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족신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051-890-2333
20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2-228-2348
21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디자인센터	062-236-5013
22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053-355-0994
23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도심재생활문화재단	053-661-2357
24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226-5556
25	대전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042-939-4827
26	대전	대덕구(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042-629-7728
27	전북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전주벤처기업육성협의회	063-219-0342
28	전북	완주군(소양면)	종이(전통한지)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063-247-5004
29	전남	광양시(옥곡면)	기계금속	광양상공회의소	061-793-2030
30	전남	강진군(대군면)	비금속광물(청자)	강진문화재단고려청자연구소	061-430-5790
31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041-750-1653
32	서울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사)서울의류협회	02-865-9213
33	서울	도봉구(방학동)	섬유제조(양말)	(사)한국기업혁신진흥원	070-7862-9617
34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50-2890
35	충북	청주시(중앙동)	인쇄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043-225-1026
36	전북	순창군(순창읍)	식료품(장류)	(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063-717-1302

16-4-2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

| 수출중심 소공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우수한 직접생산제품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 * 전국공모형 : 250개사, 소공인특화센터 추천형 : 50개사
- * '15년 지원현황 : 208개사(1~4차 모집), 평균 30백만원 내외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로,

- 제조업력 3년 이상(폐업 업력 포함)이며,
- 자사제품을 직접생산하는 기업
 - ▷ 수입제품, 1차 농·수산물을 유통하거나, OEM(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납품)·ODM(상품의 기획·개발·생산·품질관리·출하까지 전 과정을 서비스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납품)·아웃소싱(제품의 생산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 등 위·수탁생산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 지원 제외 제조업종 : 담배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기업(간접수출실적 포함) 우대

지원 제외 업종

-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 '15~'16년 동 사업을 지원받은 자

우선선정

- ▷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만불 이상인 기업(간접수출실적 포함)

지원 내용

① 성장전략 수립 + ② 판매촉진비를 패키지로 지원

구분	지원과제	정부한도	비율
성장전략수립	성장전략 수립(1년)을 위한 전략전문가 컨설팅	5백만원	100%
판매촉진비	시장조사	시장조사	20백만원 내외 (컨소시엄시 40백만원)
	브랜드개발	제품디자인 개선, 포장디자인 개선	
	광고·홍보	방송광고, 지면광고, 지하철광고, 버스광고, 인터넷광고, 카탈로그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판촉물 제작	
	판매행사	행사참가, 팝업스토어 개최, 바이어 초청 행사 개최	
	온라인수출	온라인 쇼핑몰(B2C)* 판매대행 * 이베이, 아마존, 리쿠텐, 타오바오, 쿠팡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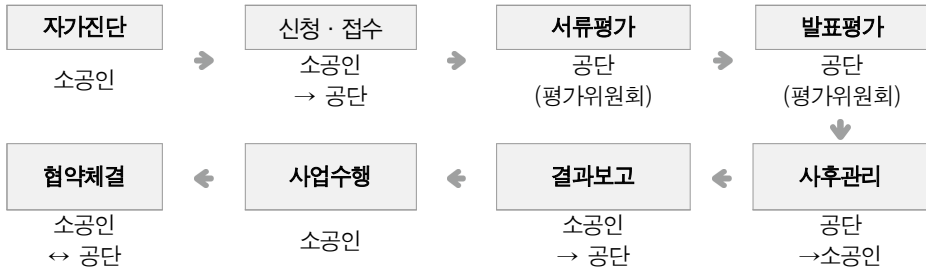
▷ 제품의 경쟁력,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의지 등

제출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9, 7914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조

16-4-3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기술역량향상 지원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진단, 계획 수립, 과제 개발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 과제 내외

- ▷ 전국공모 과제(70개 내외), 소공인특화센터 연계 과제(50개 내외)
- * '16년 지원현황 : 96개 과제 선정·지원, 평균 50백만원 내외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로

- 업력이5년(60개월) 이상이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업종(19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 * 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연계 지원과제의 경우 해당 센터의 관할지역, 업종에 해당해야함
 - * 지원 제외 제조업종 : 담배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원 제외 기업

-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 '15~'16년 동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원받은 자

지원 내용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 (1단계) 과제개발비 지원
 - ▷ 서류평가 통과 업체와 과제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사업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 * 단, 소공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제출 가능

○ (2단계) 과제개발비 지원

- ▷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 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 지원항목 : ① 인건비, ② 연구장비·재료비, ③ 위탁개발비, ④ 기술자문비 등 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임차비 지원만 가능(구입 불가)
- ▷ 단독과제의 경우 30백만원 이내, 협업과제*의 경우 50백만원 이내 지원
- * 협업과제란 2개 이상 소공인이, 대학·연구원(소) 등과 함께 수행하는 과제를 말함

신청·접수

'17년 상반기 중 공고(3회 내외)를 통한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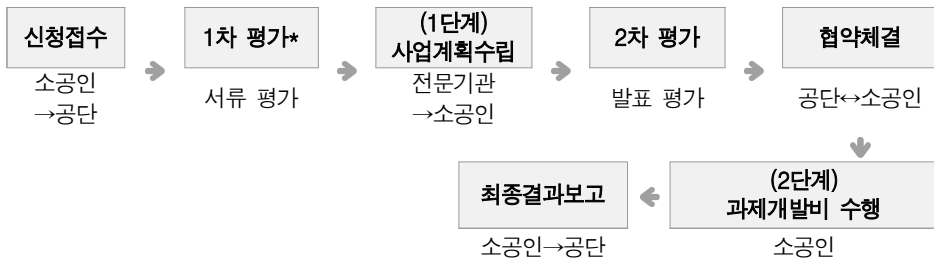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e.or.kr)에서 공지 확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증빙서류

- * 사업 공고 시 사업 신청관련 제출서류 공지 예정

처리 절차



- * 1차 평가의 경우 신청·접수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생략 가능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7~8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e.or.kr), 「지원사업-소공인 지원」 참조

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16-5-1. 희망리턴패키지

16-5-2. 재창업패키지

16-5-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16-5-1

희망리턴패키지

|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5억원, 7,5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폐업단계	→	폐업이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노동부) · 전직장려수당 지원 · 전환대출 융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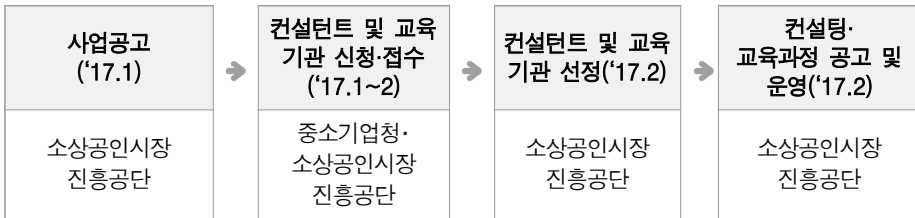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 재기교육 :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정보, 개인신용관리 등의 교육 지원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 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지원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6~8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전직장려수당은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정리 컨설팅 혹은 재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성공패키지 1 단계 수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75만원 분할 지급

16-5-2

재창업패키지

|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500명 내외(25억원)

* '16년 지원현황 : 2,500명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세무사, 회계사 등), 유흥향락업종(유흥주점, 도박게임장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과정당 60Hr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교육, 업종전문 이론 및 실습교육 등으로 구성(수행 : 민간교육기관)
- 재창업멘토링 :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멘토링 지원(수행 : 멘토단)

신청·접수 ' 17.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 042-363-7827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528, 4430

궁금해요! 증기맨



- Q** 재창업패키지 교육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16-5-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소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 * 도·소매업(50억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서비스업(10억원), 운수업(80억원)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위탁법인(시중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1만원 단위)
 -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 폐업·사망시 2.4%, 노령·퇴임시 2.1%(‘16.4분기 기준)
 - * 부금납입월수 30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

가입자 혜택

- 12개월 이상 납부 시 누적 납입금액(90%)을 한도로 대출 지원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후 2년간)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 www.8899.or.kr, 국번없이 1666-9988, 전화 02-2124-3342~3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6장

전통시장 활성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16-6-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16-6-2. 상권활성화
- 16-6-3. 온누리상품권 발행
- 16-6-4. ICT 전통시장 육성
- 16-6-5. 청년상인 육성
- 16-6-6.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 16-6-7.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 16-6-8. 시장마케팅 지원
- 16-6-9.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16-6-10.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16-6-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개성과 특색이 있는 전통시장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명품시장,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우수시장을 발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롤모델을 구축하는 지역선도시장, 1시장 1특색을 살려 대표브랜드를 창출하는 골목형시장을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167곳 내외 지원(99곳 선정, 565.5억 원)

- * '16년 지원현황 : 신규 98곳 포함 157곳, 558.5억원 지원
- 글로벌명품시장 : 10곳, 80억 원(3년간 시장당 50억 원 이내)
- 지역선도시장 : 10곳, 44억 원(3년간 시장당 최대 25억 원 이내)
- 문화관광형시장 : 84곳, 248.5억 원(3년간 시장당 최대 18억 원 이내)
- 골목형시장 : 60곳, 179억 원(1년간 시장당 6억 원 이내)
 - * 사업비 편성 :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 * 문화관광형, 골목형, 글로벌명품시장은 '17년까지 165곳, 200곳, 10곳 육성 목표
 - *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 가능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
 -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은 기존에 문화관광형시장이나 문전성시(문체부)를 지원받은 시장은 제외
- ✓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및 단계별(골목형→문화관광형→지역선도시장→글로벌명품) 지원은 가능하나 역으로 참여 불가
- ✓ 기존 지원을 받은 시장은 동일사업 중복 지원 제외

지원우대

-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 내용

시장별 특성을 발굴하여 살거리·즐길거리·볼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글로벌명품시장 :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상품·마케팅, 한류공연,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 지역선도시장 : 지역적 특색과 개성이 우수한 시장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활 문화공간 조성, 야시장, 한류공연, 전통체험 등
- 문화관광형시장 :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 등
- 골목형시장 :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신메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상품 진열 등

신청·접수

- '16. 12월 ~ '17. 1월
- ▷ 관할 지역 지방 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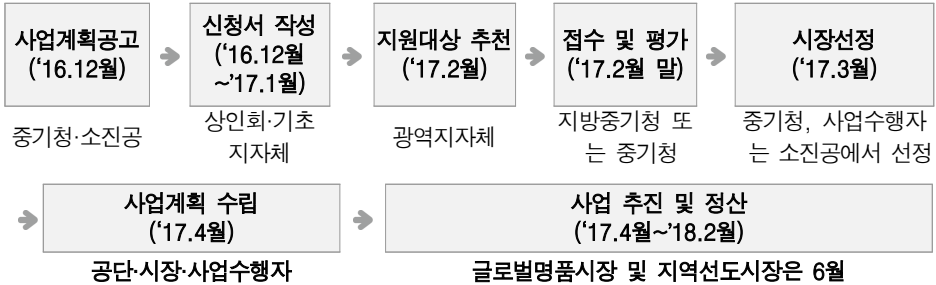
- 공통 :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시장 활성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시장 :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특성과 상권 환경 및 지리적 환경, 사업 추진 인프라 등
- 문화관광형시장 :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특화된 역사 요소 등 스토리텔링 가능성 등
- 골목형시장 :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 042-363-7621, 7782, 7623(글로벌 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7622, 7788, 7626(문화관광형시장), 7781, 7783, 7786, 7787, 7627(골목형시장)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47, 4562

궁금해요! 중기맨



- Q**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다 신청해도 되나요?
- A**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각 사업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므로 시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6-6-2

상권활성화

|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

개별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6개 상권활성화구역(구역당 3년간 총 18억원 지원, 연 6억한도)

* '15년 지원현황 : 6곳, 36억원 지원 ('14년 선정, 국비 100%)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구역 법적 요건

- ✓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 내용

-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 상권관리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기반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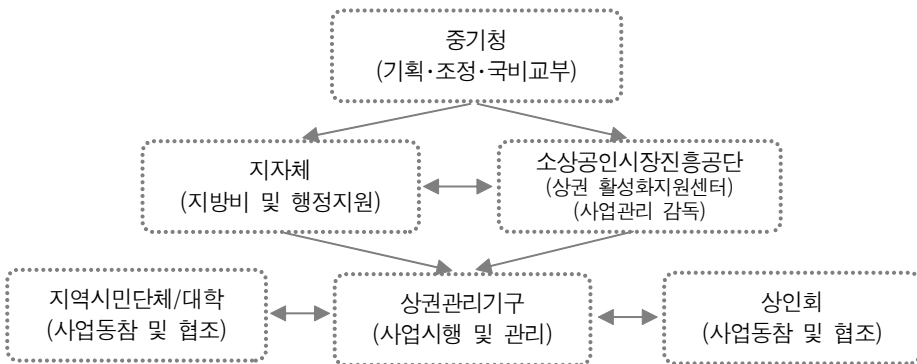
시범사업 성과 '11년 ~ '13년, 6개 구역* 지원

-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앱 등) 발굴
- 상권별 스토리 발굴을 통한 대표이미지(BI, 캐릭터 등) 구축 및 홍보물 제작
-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권특성별 이벤트 개최로 고객 및 매출확대
 - *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신규구역 운영 '14년 ~ '16년, 6개 구역지원

지원구역	내용
경기 성남	도시 상권의 재생 주체인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경기 의정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구역내 브랜드아이덴티티, 행복페스티벌, 공동마케팅 및 상인교육 등의 경영 혁신 사업 추진
충남 부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매력 넘치는 부여 조성
전남 순천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진행
울산 울주	전국 산악관광1번지 영남알프스마켓타운 클러스터 구축
부산 해운대	자유로운 문화와 예술 소비를 통해 자유 활동구역을 확보하고 외부 이벤트 유치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기획 진행

사업추진체계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82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56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상권활성화구역 법적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부 만족해야 신청가능한가요?
-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6-6-3

온누리상품권 발행

|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어느 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시중의 13개 금융기관 및 BC카드에서 구매 가능하며,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발행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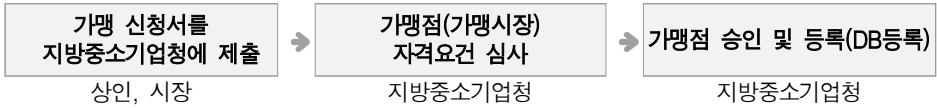
- '17년 약 1조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 * '16년 실적 : 1조원 판매

상품권 구매처

- 지류상품권 : 13개 금융기관
 - ▷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신협,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전자상품권 : BC카드 및 6개 금융기관
 - ▷ BC카드(02-3475-8491),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상품권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0)에서 확인
 - * 전자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전용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도 사용 가능, 사전에 BC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에서 소득공제(기명등록), 인터넷/ISP 등록 필요
- 가맹점 신청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
 - ▷ 신청 및 등록절차



* 신청서는 '전통시장통통(www.sijangtong.or.kr) - 온누리상품권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맹점 제한업종

-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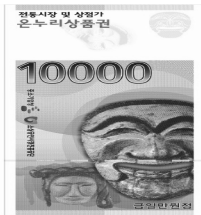
특 징

-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안전성 확보

상품권 이미지

- 지류상품권

일만원권



오천원권



삼만원권



- 전자상품권

오만원권(전자)



오만원권(팔도)



십만원권(전자)



십만원권(팔도)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 042-363-7641~7644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74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상품권 콜센터(☎ 1357 → 0번)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전통시장 등에 18만개 점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가맹점 검색 및 조회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용 바랍니다.

16-6-4

ICT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의 모바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ICT카페, 전통시장 앱 등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콘텐츠와 ICT를 융합하고 상인과 고객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규모

- (ICT추진단) 총 200개 시장 5,000명 교육 (예산 5억원)
- (ICT카페구축) 총 30개 시장 지원 (예산 3억원)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 제 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사업)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공통)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한 시장
- ✓ (ICT카페) 기존 ICT전통시장육성사업 기지원시장

지원 내용

- (ICT추진단운영) IT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ICT추진단을 통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스마트폰 활용 등 모바일 기초교육과 '매력넘치는 우리시장' 앱을 활용한 스마트전단지·쿠폰 발급 시스템의 활용교육 등 상인들의 ICT역량강화
- (ICT카페구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PC 등 ICT장비, 테이블 및 의자 등 고객편의기구, ICT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인테리어 지원

신청·접수

- 연중 수시신청 (예산범위 내)

제출 서류

- ICT교육신청서, ICT카페구축신청서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게시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 363-7778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 481-456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ICT추진단은 무엇 인가요?

A IT전문인력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및 밀착교육 실시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모바일 마케팅 교육 실시

16-6-5

청년상인 육성

| 청년에게 희망을, 전통시장에 활력을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청년상인 집적지구인 청년몰 조성으로 청년인력의 신규 고용창출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청년몰) 17개 시장, (창업지원) 20개 시장, 200개 점포 (193.5억원)
 - ▷ '16년 지원현황
 - * 청년몰 조성 : 17개 시도 127.5억원(시도당 15억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 창업지원 : 22개 시장, 208점포, 51억원(점포당 2.5천만원 이내, 국비 60~100%)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청년몰 : 일정구역 내 20점포 이상 확보 시, 창업지원 : 시장당 빈점포 5개 이상 확보 시 신청 가능)
 -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 청년상인은 만 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지원이 안되는 시장

- ✓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적합한 시장은 지원 제외

지원 우대

-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 ▷ 자치단체 사업비용 매칭시 우대
- ▷ 자치단체가 빈점포 매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시 우대

지원 내용

- 청년몰 조성 : 전통시장 일정구역 내 20개 점포 이상의 청년점포 및 고객 휴게공간·상인 협업공간 등 문화쇼팡·놀이가 집합된 Mall 조성 지원
 - ▷ 청년몰 구성 → 청년상인 입점 → 공동마케팅, 점포 컨설팅·경영 교육 등
- 창업지원 : 창업교육, 체험 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 빈점포 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 ▷ 전략업종 선정 → 공모 및 선정자 창업교육 → 체험점포 운영 → 정식 입점 → 경영·판로지원
 - * 지원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 자산(비품)

신청·접수

- '16. 12월 ~ '17. 1월
 - ▷ 관할 지역 지방 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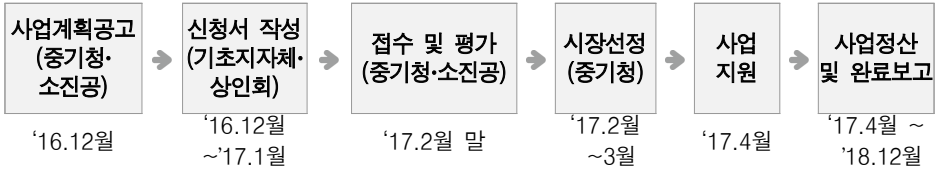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심사 : 시장의 사업 참여 결격여부, 가·감점 등 검토
- 현장평가 : 시장입지현황, 사업추진 실적 및 정부사업 참여현황 등
- 발표평가 : 사업추진 의지, 추진인프라,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운영의 적정성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5부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1, 7772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893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Q 청년상인 모집은 언제하나요?

A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 후, 청년상인 입점을 위한 전략업종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 별도 청년상인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16-6-6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접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문화기술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과물을 전통 시장에 접목시켜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7개 전통시장-대학 (29.6억원)

- * '16년 지원현황 : 22개 시장-대학 지원(대학당 최대 1.3억원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과 협업하는 2~4년제 대학교

-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 ✓ 특성화사업 참여시장(글로벌명품,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대학)

- ✓ 중소기업청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대학교

- * 교육부에서 발표한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참조

지원우대

- ▷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 내용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금(대학 당 최대 1.5억원)

- (커뮤니티 공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과 상품으로 전통문화 체험, 휴식, 관광공간 등 소비 및 놀이, 커뮤니티 공간 형성
- (ICT 접목) 시장 특성과 장점을 스마트·온라인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특화상품개발) 전통시장의 인기상품과 대표상품 개발, 시장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타 업종으로 파급
- (이미지혁신) 고객 쇼핑환경과 영업 공간 환경정비를 통한 테마 공간 조성 등 시장 이미지 제고
 -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시장 상인회에 귀속하며, 타사업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 성격(공동마케팅, 시장홍보, 상인교육, 장보가배송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불가
 - * 2년차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0%는 지원 제외, 70%는 차등 지원

신청·접수

'16. 12월 중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사업추진 전문기관 방문 및 우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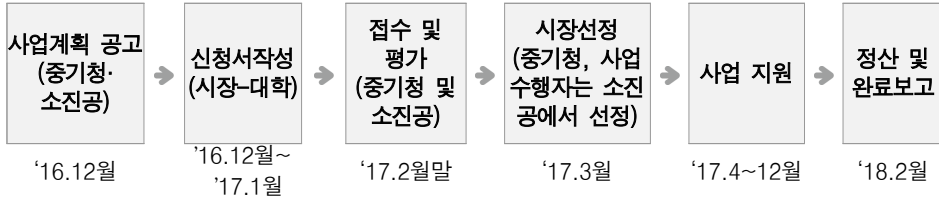
- 현장평가 : 사업추진의지, 지역밀착성, 시장편의성, 사업이해도, 실현가능성 등
- 대면평가 : 대학의 시장지원현황,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적절성, 창의성, 구체성, 기대효과 등
 - * (대학) 전통시장 지원 관련 학점 연계시 5점 가점, (시장) 최근 3년간 정부사업 참여 중 포상 실적이 있는 시장 우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581, 7562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
-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대학협력사업의 지원 연한과 지역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대학당 2년 최대 1,3억원 지원되며, 대학비율에 따른 지역당 비율 할당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서울·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5개 권역)
- Q** 연차에 상관없이 시장의 지원금액은 동일한가요?
- A** 2년차 시장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70%는 차등 지원하고, 하위 30%는 지원 제외됩니다.

16-6-7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 교육컨설팅인력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 및 안전점검으로 화재예방 유도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 및 컨설팅으로 시장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등으로 시장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아래 지원내용 참조 (192.6억원)

* '16년 지원현황 : 상인교육 36천명, 시장매니저 144곳 146명, 컨설팅 1,356건, 안전점검 747곳

- 상인교육 : 30,000명 목표(32.9억원, 국비100%)
- 상인조직역량강화(시장매니저) : 140곳 140명 내외, 2년 지원(연간 18억원, 국비 70~30%)
-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장자문, 점포지도 1,100건 목표 (7억원, 국비100%)
- 전통시장 안전관리 : 안전점검(29.7억원, 국비 100%), 화재감시시스템(105억원, 국비 7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안전점검은 무등록시장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안전점검 등 사업비의 30~100% 지원

○ 상인교육

교육형태	내 용
상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대학, 60곳) 점포경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교육 ○ (점포대학, 40곳) 디자인경영, VMD, POP, SNS마케팅 등 특화교육
상인대학원	○ 지도자과정(5곳) : 상인회장 및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
ICT 교육	○ ICT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활용능력 배양
맞춤형교육	○ 시장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상인의식개혁, POP, 친절서비스, 외국어 등
청년상인아카데미	○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를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
선진시장탐방	○ 국외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시설개선 및 경영기법 벤치마킹
워크숍	○ 전국단위 교육을 통한 역량배양, 네트워크 구축

- 상인조직 역량강화(시장매니저) : 행정·유통분야 전문인력 채용시 국비 보조
 - * 급여 1,700천원 기준, 시장 규모별(소,중,대) 국비 70~30% 지원(상인화지자체 30~70%)
- 시장활성화컨설팅 : 시설현대화·경영혁신·상권개발·시장정비사업 자문 및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점포 지도 제공
- 전통시장 안전관리 : 소방·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감시시스템 설치 지원

신청·접수

' 16. 12월 중(일부사업은 연중 수시)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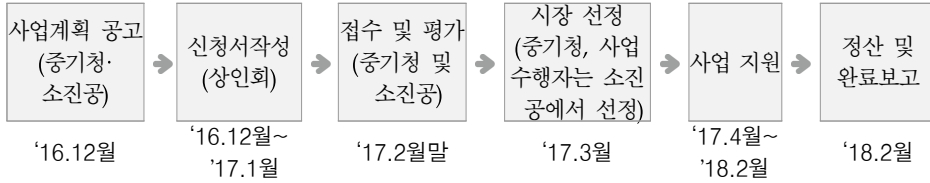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843, 7844(상인교육), 7865(시장매니저), 7862(시장활성화컨설팅), 7775(안전점검)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042-481-6870, 6871(안전점검)
-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 Q** 맞춤형교육 등은 몇 명이 신청해야 시장으로 강사 파견이 가능한가요?
- A** 20명 신청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 Q** 시장매니저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발생시 국비 보조가 가능한가요?
- A** 순수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여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상인회부담분)와 출장비 등의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16-6-8

시장마케팅 지원

| 공동마케팅그랜드세일 및 우수시장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세일·경품행사 등을 지원하는 공동마케팅 및 그랜드세일, 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상품전시회, 유공포상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등 전통시장 마케팅 활동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동마케팅 260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6곳
(39.7억원)

- * '16년 지원현황 : 공동마케팅 263곳, 그랜드세일 516곳, 코리아세일페스타 400곳, 우수시장박람회 1곳, 지역상품전시회 7곳
- 공동마케팅 : 260곳(33.7억원, 시장규모별 차등 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1곳(4.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 지역상품전시회 : 6곳(1.5억원, 국비 70%, 지자체 3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지역상품전시회 등의 마케팅 활동은 국비 70%~100% 지원

- 공동마케팅 : 공동마케팅(연중), 명절그랜드세일(2·9월), 대구모세일행사(5,10월) 기간 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등 이벤트 실시에 따른 마케팅·홍보비 지원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 유공 포상, 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지역 우수상품시장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그랜드세일 등 대규모세일행사 확대(연4회, 회당 300~500곳)
* 그랜드세일 2회(설·추석), 대규모세일행사 2회(5·10월)

신청·접수

'16. 12월 중

-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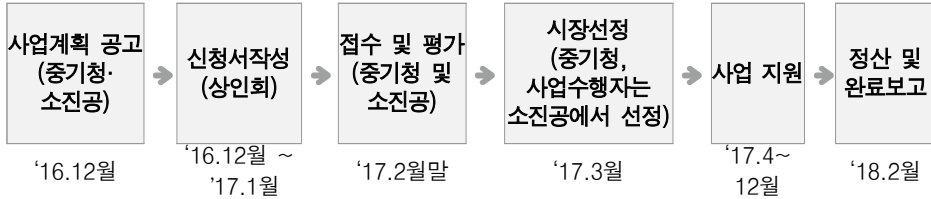
-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 042-363-7631, 7633, 7646(공동마케팅, 그랜드세일), 7635(전국우수시장박람회), 7631(지역상품전시회)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17, 8929(공동마케팅, 그랜드세일) 042-481-4574(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 중소기업청(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공지사항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궁금해요! 증기맨



Q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세일·경품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유·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 공동쿠폰사업, 공동포인트 제작 지원, 시장 홍보물 제작 및 송출, 홍보전단, 홈페이지 제작, BI·CI개발, 테마골목 브랜드, 패션쇼 등 시장 특성에 맞는 형태가 있어요

16-6-9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대형마트 및 SSM에서 실시 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한 전통시장만의 장보기·배송서비스를 도입 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장보기·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 '17년 총 84개 전통시장 지원(예산 18.6억 원)
- * '16년 지원 현황 : 66곳 지원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 내용

-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 홍보 및 주문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지원내용 및 금액 : 콜센터, 배송기사,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 분야별 월 인건비 단가 >

구 분	콜센터	배송인력	장보기도우미
월 인건비	1,360천원	1,570천원	700천원

○ 지원비율 : 연차에 따라 국비 90~50% 지원

< 연차별 국비 지원 비율 >

연 차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1년차	국비 90%, 자부담 10%	-
2년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30%
3년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정착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신청·접수

- ▷ (신규) '17. 4~5월 중
- *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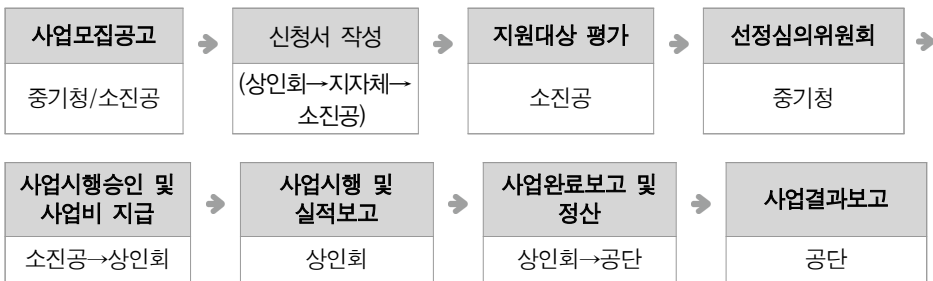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시장 선진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배송 인프라 구축현황 등

제출 서류

-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042)363-7633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0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궁금해요! 중기맨



- Q** 선정 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선정후 최대 3년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매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 先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Q** 3년 지원 종료 후, 신규시장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한가요?
- A** 3년 지원 종료 후에 신규 시장으로 사업 신청은 불가하며, 정착시장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착시장은 사업 모델발굴 육성을 위해 추진되며, 최대 2년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16-6-10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저렴한 비용의 공제료로 전통시장 화재 시 피해 보상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 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시 피해를 보상해드립니다.

사업 내용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상품 안내

- 가입대상 :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등록, 인정, 기타)
- 가입단위 : 시장(상인회) 및 개별점포
- 가입목적물 :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 ② 재고자산
 -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년(종료일의 16:00까지)
 - * '17년 1월부터 가입가능
- 보상방식 : 가입한도(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 자가점포 건물 1천만, 동산 1천만 기준 예시 >

구분		건물	동산	계	
주계약	재물손해	A급	27,400원	38,600원	66,000원
		B급	43,100원	58,400원	101,500원
특 약	화재배상책임	- 대인 :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 1억 한도		6,200원	
	임차자배상특약	건물 공제료의 10% 차감			

< 건물구조급수에 따른 등급구분 >

급별	주요구조부	기둥/보/바닥	지붕(틀)	외벽
A급(1~2급)		내화구조	내화구조 / 불연재료	내화구조
B급(3~4급)		상기 이외의 것		

지원이 안되는 점포

-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신청 · 접수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

제출 서류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 042-363-7773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3, 4516
-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fma.semas.or.kr

처리 절차



궁금해요! 증기맨



- Q**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A** 가입을 원하시면 '17년 언제든지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 심사의 절차를 거쳐 공제료를 납입완료하시면 납입일로부터 가입이 인정됩니다.
- Q** 민영보험사의 화재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가장 큰 차이는 보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사에서 판매되는 화재보험은 대부분 실손이 아닌 비례보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가액 부동산 5천만, 동산 2천만 원인 가입목적물에 가입금액 부동산 2천 5백만, 동산 1천만원 짜리 상품을 가입하고 일부(50%) 화재 발생 시, 민영 화재보험은 실제가액의 50%만을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실지금액은 부동산 1,250만, 동산 500만원만을 지급합니다. 이를 비례보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실손보상으로 부동산 2천5백만, 동산 1천만을 보상하며 확정된 피해액을 한도 내 전액 보상합니다.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입니다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제 17 장

타 부 처

17-1. 수출 중소기업 해외지사 대행	660	②지식재산권(IP) 담보·구입 대출	695
17-2. 미국 C-TRAT 방문심사 대응 지원	662	③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	696
17-3. 손쉬운 FTA 품목분류	664	17-16.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97
17-4. FTA 원산지 이해와 활용	666	17-17.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699
17-5.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669	17-18. SW지식재산권 평가 보증	701
17-6. 제3자 확인 및 인증수출자 제도	671	17-19. 무역기금 융자	703
17-7.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675	17-20. 무역보험 제도	705
17-8. 'SOS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677	17-21. 식품외식 종합자금(융자)	706
17-9.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679	17-22. 병역대체복무제도	707
17-10.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681	17-23. 외국인고용허가제	709
17-11.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683	17-24. 청년내일채움공제	711
17-12. 지식재산권 활용·보호 지원	684	17-25.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함께하기	712
17-13. 글로벌 IP기업 육성	687	17-26.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715
17-14.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사업	690	17-27.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718
17-15. 기술금융	692	17-2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720
①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694	17-29.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722

17-1 수출 중소기업 해외지사 대행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해외진출 단계별 수요에 따라 기초마케팅 지원(진입), 수출성약 지원(발전), 현지화 지원(확장) 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지원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 국내기업 : 대한민국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협약일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지원 불가

지원 대상 품목

- 고객사의 제조품목 및 주력수출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사와 무역관이 사전 협의하여 HS Code 6단위 1개 품목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 서비스 차별화

< 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안) >

구분	기간	총비용	주요내용1)	비중(잠정)	집중지원대상
진입	6개월	4백만 (자부담 12.5%)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현장진출 컨설팅	25% (1,250개사)	수출초보기업 (수출액 10만불미만)
발전	1년	9백만 (자부담 33%)	(수출 및 성약지원) 신규거래선 발굴, 전 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컨설팅,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시장·산업 동향 조사,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해외유통망 진출 등	70% (3,500개사)	수출유망기업 (수출액 10만불이상)
확장	1년	40백만 (자부담 30 ~ 50%)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 및 제휴,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 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 지원, 현지 법인설립, GVC, 기타	5% (250개사)	수출유망 및 강소기업 (수출액 100만불 이상)

1) 지원내용 중 최대 3개 항목 집중지원

지원 방식

- 현지 전담인력*이 1:1로 매칭 되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 OKTA 해외동포 무역인, KOTRA 지사화 전담직원, 중진공 해외민간네트

진행절차 및 문의처

-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지사화사업’ 신청 → 심사(서류 및 현장실사) → 선정 → 참가비 납부 → 협약 체결 → 지사화사업 수행

문 의 처

- OKTA(GBC사업팀) : 02-571-5360(gbc@okta.net)
- KOTRA(유망기업지원팀) : 02-3460-7426/7428(kotrajin@kotra.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국제협력처) : 055-751-9679/9680/9674(jake80@sbc.or.kr)

17-2

미국 C-TPAT 방문심사 대응 지원

미국 관세청은 자국 기업에 대한 C-TPAT 인증 심사 시 해외 거래업체까지 현지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출중소기업의 C-TPAT 심사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테러 만-관 협력 프로그램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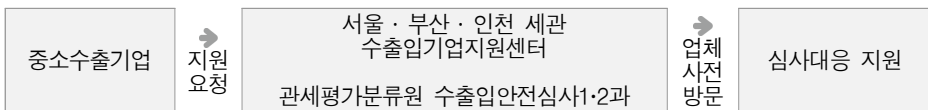
- C-TPAT 방문심사 대응 지원서비스
 - ▷ 관세청이 C-TPAT 방문심사에 적절한 심사대응이 어려운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 대국 세관의 방문심사 대응을 사전에 지원해 주는 서비스
 - ▷ C-TPAT 실무 체크리스트 작성법(절차상 표준, 문서화정책, 대인보안, 교육·훈련, 접근통 제, 물리적 보안, 운송수단 보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수출기업 중 C-TPAT 심사대상 업체는 지원 요청 가능

지원 절차

- 「C-TPAT 방문심사 대응 지원서비스」 절차



- 미국 관세청은 C-TPAT 방문심사 예정일 1개월 전에 국내기업에 통보
- 중소수출기업은 심사 예정일 3주전까지, 서울·인천·부산 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2과에 지원 요청
 - ▷ 지원요청 업체별 대응지원팀을 배정하여 사전방문 대응체계 사전 구축 및 지원서비스 실시

신청 및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48-1385(FAX 02-540-0211)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8(FAX 051-620-1118)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3(FAX 032-722-3811)
-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2과 : 042-714-7572, 7592(FAX 042-472-7830)

기타 사항

- 수출기업이 AEO 업체인 경우 상대국 세관의 방문심사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 ▷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관세기구 (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표준입니다.

17-3

손쉬운 FTA 품목분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 확인은 관세율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품목 번호

- 세계관세기구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로,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코드를 사용하나 7단위 이하는 국가별로 세분하여 달리 사용
-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화하고 있고, 미국은 10단위, EU는 8단위, 일본은 9단위를 기본으로 함

품목번호 및 관세율 확인방법

- 1단계 : 6단위까지 확인
 - * 6단위는 전 세계 공통이므로 6단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http://www.customs.go.kr>)
- 2단계 : 7단위 이하 확인
 - * 수출 상대국 관세율을 6단위 이하로 세분하여 정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관세 혜택 여부 확인이 가능
 -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http://www.customs.go.kr>)
- 3단계 :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청에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회신 받을 수 있음(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확인)
 - * ※ 품목 번호는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 목적
 - ▷ 품목분류가 어려운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이 정확한 품목번호를 회신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애로해소 지원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관세사(법인 포함)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
 - ▷ 우편 또는 방문 :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대덕테크노밸리내)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 042-714-7535)
 - * 처리기간 : 30일(공휴일, 자료 보정기간 등 제외)
- 품목번호 회신의 효력
 - ▷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품목분류 사전심사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 042-714-7535

17-4

FTA 원산지 이해와 활용

FTA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부여하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이유

-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FTA 체결국에 수출했다고 해서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음
- 따라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원산지 결정 기준

-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기준과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일반 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같이 적용

구분		종류
일반 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 원칙 ·충분가공 원칙 ·직접 운송 원칙
	분야별 특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 가능 물품 ·간접 재료 ·누적기준 ·세트 물품 ·부속품·예비 부품·공구 ·포장·용기
품목별 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 기관 증명 : 협정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
- 자율 증명 :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

구분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한-미국	한-인도	한-EU
증명방식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수출자	아세안 : 각 정부기관 한국 : 세관, 상의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인도 : 수출위원회 한국 : 세관, 상의	수출자
유효기간	2년	1년	1년	4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사용 원칙					당사국 언어, 한글

구분	한-싱가포르	한-터키	한-페루	한-호주	한-캐나다
증명방식	기관증명	자율증명	발효후 5년간:기관, 자율 발효후 6년부터:자율	한국 : 자율 호주 : 기관	자율증명
증명주체	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 상의	수출자	페루 : 통상관광부 한국 : 세관, 상의	호주 : 상의, 호주산업 협회 한국 :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유효기간	1년	1년	1년	2년	2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구분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국
증명방식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발급	기관발급
증명주체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한국: 세관, 상의 베트남: 미정	한국 : 세관, 상의 중국 : 미정
유효기간	1년	2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 일반적인 확인 방법 → FTA 포탈을 활용
 - ▷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서 'FTA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선택 또는 FTA 1380(<http://fta1380.or.kr>)에서 '관세율/원산지'-'원산지기준' 선택

- ▷ 수출 및 수출상대국(예:인도네시아)를 선택하고 품목번호 6단위 기재
- * 원산지 결정기준은 품목번호 6단위별로 규정되어 있음

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방법

- ① 재료 명세서, 부품 리스트 등으로 재료 내역 확인
-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재료별 구입 경로, HS코드 및 원산지 항목을 확인
 - ▷ 구입 경로 확인 시 원산지 결정 용이 : 국내·해외 구매 여부 확인(수출자가 직접 구매·생산한 것인지, 납품 업체가 생산·구매·납품한 것인지 여부 확인)
 - ▷ 구입 경로별 자체 확인건과 납품 업체 확인·의뢰(원산지 확인서 요청)건을 분리하여 확인
- ③ 재료별 원산지 결정
 - ▷ 확인 절차 : 수출자 직접 수입 부품 → 외부 공급자 수입 물품 → 자가 생산 부품 → 외부인 생산 납품 물품 순으로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것으로 마무리하는 형태로 결정
 - ▷ 국내 구매 부품을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납품 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 받기
- ④ 최종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
 - ▷ 부품의 원산지와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 제품(수출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결정

재료 원산지 확인서 유의사항

- ① 국내 업체가 생산한 재료라도 비원산지 재료일 수 있음
 - ▷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라 하더라도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② 수입재료 중 계약상대국의 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인정
 - ▷ 다만, 계약국에서 생산한 재료라 하더라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므로 반드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
- ③ 국내 구입한 재료 중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
 - ▷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 중에는 폐업 등의 이유로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 가격이 높거나 주요 부품인 경우에는 대체품을 구입하여 사용

문의처 FTA 콜센터 (☎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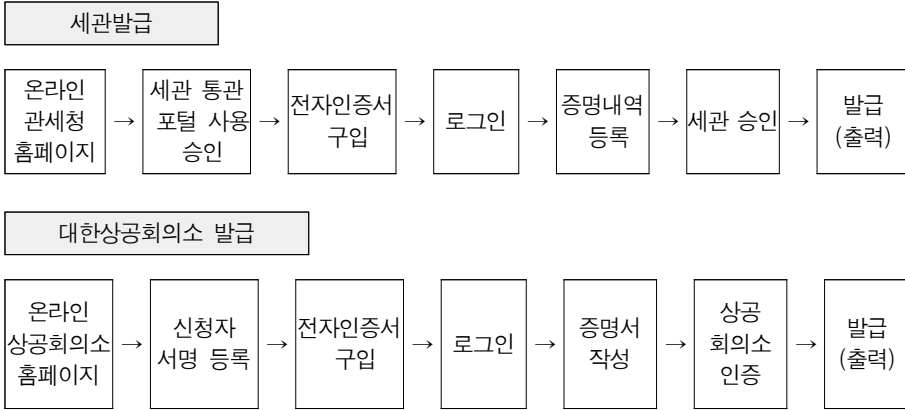
17-5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① 수출물품 HS Code 확인
 - ▷ 수출물품의 HS Code 및 FTA별 양허대상 여부확인(관세청,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 ②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율 확인
 - ▷ FTA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 확인
 - ▷ 확인 : 관세청(fta.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cert.korcham.net)
- ③ 원산지 소명자료 준비 원재료 목록,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 투입증명자료 준비
 - ▷ 재료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 원산지(포괄) 확인서
-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 : 자율발급
 - ▷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관리
 - ▷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
 -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관리

서명카드 비치	서명권자 지정	증명서 발급 및 서명	증명서 대장 기재 및 관리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서명·부서명 직책·성명 지정 일자 시유 기재	① 적용된 협정 명칭 ② 원산지 및 결정 기준 ③ 수출자의 성명 ④ 수출자의 전화 ⑤ 수출자의 FAX ⑥ 수출자의 서명 ⑦ 수출자의 서명 일자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① 작성 번호·작성 일자 ② 수출신고번호·수리 일자 ③ 품명·규격·HS·수량 ④ 원산지·생산자 또는 공급자 ⑤ 적용된 협정명칭 ⑥ 원산지결정 기준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 : 기관증명(상공회의소, 세관에서 발급)



- 원칙 : 선적 전 신청
 -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 ㉡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 ㉢ 원산지소명서
 -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선적 후 신청(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 ㉠ 앞에 열거한 수출물품 선적 전 신청서류
 - ㉡ 사유서(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사본
 - ㉣ 사유서 내용 입증자료(증명서 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⑥ 관련서류 보관
 - ▷ FTA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관련 서류 보관 (중국의 경우 3년)

문 의 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380)

17-6

제3자 확인 및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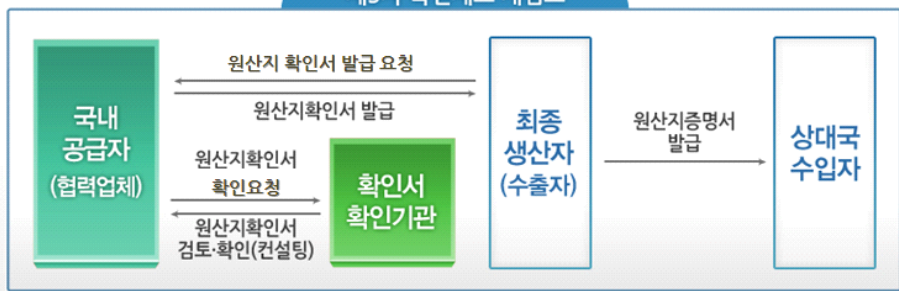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지원대상 수출(원청)기업에 원재료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기업

○ 지원내용 : FTA원산지확인서 정합성 확인 및 확인결과서 제공(무료)

- ▷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FTA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확인하고, 전담관세사 및 확인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제공
-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소속의 제3자 확인전담 관세사가 원재료 품목분류, 제조공정도, BOM(자재명세서) 등 FTA원산지확인서 내용 검증

제3자 확인제도 개념도



○ 지원기관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각 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제3자확인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인증수출자 제도

- 개념 : 기관 발급제 하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세관장의 인증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인증 물품에 대한 발급 절차를 간소화
- 인증받은 경우 혜택
 - ▷ 기관 발급 FTA(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 신청 구비 서류가 줄고, 발급 단계의 원산지 확인 절차를 생략해 신청 즉시 발급(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 ▷ 한EFTA FTA : 인증 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서명 생략, 상대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우대
 - ▷ 한EU FTA : 6,000유로 이상의 수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가능(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기 자유 발급 가능)
- 인증방법 및 절차
- ㉠ 업체별 인증수출자
 - ▷ 인증 요건

구분	세부요건
원산지증명 능력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원산지관련 업무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 전문가를 포함)를 지정·운영하는 자
법규 준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 ▷ 인증시 구비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신청서
 - 원산지인증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 인증수출자 협약서 (한-EU인증을 받더라도 수출자서명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세관에 제출하는 협약서임)
- ㉡ 품목별 인증수출자

▷ 인증요건

구분	세부요건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6단위 기준)을 수출하는 자 ▪HS6단위는 포괄적개념으로 대표모델의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확인 ▪HS6단위 개별품목인증이 아니라, HS6단위 전체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을 인증
원산지관련 업무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를 지정·운영하는 자
법규 준수도	▪요건 없음

▷ 인증시 구비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신청서
- 원산지인증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인증수출자 협약서(한·EU인증을 받더라도 수출자 서명을 생략하기 위해서 인증받은 세관에 제출하는 협약서임)

문의처

전국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구분	직통전화	비고
부산FTA활용지원센터	051-990-7126	
대구FTA활용지원센터	053-222-3105	
인천FTA활용지원센터	032-810-2835	
광주FTA활용지원센터	062-350-5886	
대전FTA활용지원센터	042-480-3044	
울산FTA활용지원센터	052-287-3060 ~ 1	
경기FTA활용지원센터(남부)	031-8064-1385	
경기FTA활용지원센터(북서부)	031-995-7481	
강원FTA활용지원센터	070-4351-1486	
충북FTA활용지원센터	043-229-2729	
충남FTA활용지원센터	041-539-4534	
전북FTA활용지원센터	063-711-2046	
전남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31	
경북FTA활용지원센터	054-454-6601(134)	
경북동부FTA활용지원센터	054-274-2233	
경남FTA활용지원센터	055-210-3048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 관세청 : 각 지역 관할 본부세관 FTA 담당부서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68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7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 1과	032-452-3163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FTA과	053-230-5251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 중소기업청

- 총괄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2-769-6957, 6947)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부서	전 화	팩 스	주 소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02)6678-4199	서울 양천구 목1동 917-6
인천지역본부	032)450-0533	032)442-3236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경기지역본부	031)259-7904	031)259-790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강원지역본부	033)259-7634	033)256-9614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대전지역본부	042)866-0153	042)866-0148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충남지역본부	041)621-3675	041)621-3689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충북지역본부	043)230-6833	043)230-6888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상로 50
전북지역본부	063)210-9911	063)210-9988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대구지역본부	053)601-5262	053)601-5301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3길 90
경북지역본부	054)476-9312	054)476-9319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광주지역본부	062)600-3051	062)956-7518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전남지역본부	061)280-8040	061)280-808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부산지역본부	051)630-7404	051)646-0502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울산지역본부	052)703-1132	052)703-1190	울산 남구 삼산로 274
경남지역본부	055)212-1373	055)212-136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제주지역본부	064)751-2054	064)751-20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

17-7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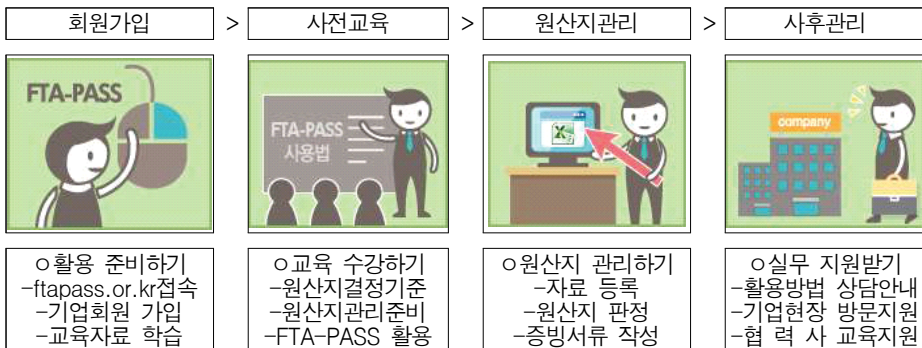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FTA-PASS

-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의 지원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보급하는 무료 원산지관리시스템
- 주요기능

구분	세부기능
정보 관리	-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등록 · 거래처, 물품, 자재명세서, 구매·판매가격 등 관리
원산지 판정	- 발효된 모든 F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판정 · 공급처를 기준으로 FTA와 PSR 일괄 자동판정
증빙서류 작성 및 전자유통	- 공급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증빙서류 작성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작성 - 작성하여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전자유통 지원 · 원산지확인서를 구매처에서 수신, 공급처로 송신
원산지 검증대응	- FTA 원산지 간접검증을 위한 제출서류 작성 · 관세청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서 작성 자동화 지원

- FTA-PASS 활용안내



FTA-KOREA

-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서비스인 uTradehub에서 제공하는 FTA 원산지관리서비스(FTA 원산지 판정/유통/보관)
- 웹기반으로 별도의 설치과정 없이 원산지 판정 및 입증서류 관리
- 여러 수출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서 사용이 적합
- FTA Korea 장점
 - ▷ 업종이나 업체규모에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이용가능
 - ▷ 인터넷 기반 서비스로 별도 설치작업이 없고, 초기 구축비용 및 운영 유지보수비용 절감
 - ▷ 기존 ERP보유업체의 경우 기존정보 연계모듈 지원
 - ▷ 기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유업체라도 협력사의 원산지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FTA Korea를 이용가능(전자문서 연계)
- 주요기능

구 분	세부기능
FTA 정보조회 시뮬레이션	- 협정별/지역별 원산지정보 조회 - FTA Rule 관리/ HS 코드 조회 - 시뮬레이션
기준정보 관리	- 회사/사용자/권한 관리 - 품목관리/구매업체관리/판매업체 관리/표준 BOM/ 제조공정관리 - 직접입력, 엑셀 일괄업로드
판정관리	-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제품별 원산지판정대상 - 제품별 원산지 판정/ 매출별 원산지 판정 - 개별확인서 발급/ 포괄 확인서 발급/ 증명서 발급
전자문서송수신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제품원산지출내역서 송수신 - 송수신관리(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미결요청서/결과통보서 등)
사후관리	- 서명권자대장, 확인서 수취사항, 발급 문서별 이력관리, 기준정보관리 등

- 이용방법
 - ▷ FTA Korea 회원 가입 신청(가입 신청시 FTA Korea 서비스 '사용' 선택) → 가입 승인 → FTA Korea 이용 (<http://www.ftakorea.co.kr>)

문 의 처

- FTA-Pass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원산지시스템팀 : 031-600-0770
- FTA-Korea : KTNET 전자무역서비스팀 : 02-6000-2031~2

17-8

'SOS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SOS1379'(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는 기술전문인력과 정보부족으로 기술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술 플랫폼'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산하 40여개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사업

- 기술애로해결, 장비지원, 인력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 드립니다
 - 제품설계, 생산공정, 시제품 제작 등 기술애로 발생 시 전문기술상담과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
 - ▷ 전국의 연구실험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시험 및 분석, 인증, 측정, 평가,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 부족한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 출연(연), 특성화대학 및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자문함으로써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
 -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공개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특허를 맞춤형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SOS1379 흐름도



수요발굴지원단

-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도약이 가능한 기술기반 중소기업 발굴, 기술이전 및 관련 후속지원 연계
- 지역별 출연(연)-기업-대학-유관기관 간 기술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기술교류, 기술상담 등 네트워킹 기회 마련

문 의 처

- 미래창조과학부 기업공감원스톱지원팀 : 02-2110-2473 / 02-751-0202
-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 1379
-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홈페이지(www.SOS1379.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 웹사이트 (http://ccee.creativekorea.or.kr)
- 미래부 창조경제진흥과 : 02-2110-1747

17-9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나노, 바이오,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신산업 및 주력 산업분야에서 정부가 미리 공지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창의산업 분야

- 지원내용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 세부 과제 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 정부지원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연평균 6.8억원), 3~5년 이내, 기업유형, 과제유형(원천기술/혁신제품)에 따라 개발비의 33~75% 지원
- 신청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소재부품산업 분야

- 지원내용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유류, 첨단뿌리기술, 주력 산업IT융합, 퍼블릭디스플레이 분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 세부 과제 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 정부지원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연평균 6.8억원), 3~5년 이내, 기업유형, 과제유형(원천기술/혁신제품)에 따라 개발비의 33~75% 지원
- 신청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시스템산업 분야

○ 지원내용 : 생산시스템, 나노, 로봇, 바이오, 조선, 의료기기, 그린카, 스마트 카, 연구장비, 지식서비스 등 관련 분야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 세부 과제 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 정부지원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규모 상이(연평균 6.8억원), 3~5년 이내, 기업유형, 과제유형(원천기술/혁신제품)에 따라 개발비의 33~75% 지원

○ 신청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 온라인(<http://itech.keit.re.kr>)을 통해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문의 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044-203-452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053-718-8476

관련 자료

- 2016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7-10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신청 대상

-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 수행기관(중소·중견기업) 기업유형에 따라 개발비의 50~67%지원
 - * 중소기업 67%(ATC는 65%), 중견기업 50%
- 분야별 지원 규모

구분	분야		지원내용
소재부품산업 전문기술개발	섬유생활 스트림간협력	섬유스트림	연 10억원내외, 3년
		패션스트림	연 3억원내외, 3년
		성숙산업고도화	연 3억원내외, 3년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		연 10억원내외, 5년
창의산업 전문기술개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		연 5억원내외, 3년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		연 5억원내외, 3년
	산업융합촉진사업		연 6억원내외, 3년
생산시스템산업 전문기술개발	튜닝부품기술개발		연 5억원내외, 3년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연 5억원내외, 3년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연 5억원내외, 3년
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연 5억원내외, 3년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		연 8억원내외, 3년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연구개발		연 8억원내외, 3년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연 5억원내외, 5년

* 상기 분야는 '17년 신규예산이 있는 사업임(해양융복합소재, 그록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 등 미포함)

신청 기간 매년 1월~4월

※ 분야별 세부 신청자격, 평가절차 등은 해당사업 신규 공고문 참조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보완(보충)설명자료 접수 및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온라인(<http://itech.keit.re.kr>)을 통해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개념계획서 신청(1~2월), 사업계획서 신청(3~4월)

※ 꼭 알아두세요!

○ R&D 완료 후 정액 또는 경상 기술료를 선택하여 기술료 납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확인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접수가 불가함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044-203-4525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053-718-8482

17-11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핵심 소재부품 및 특정 소재분야에서 정부가 미리 공지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 지원내용 : 외부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를 전제로 9개 분야 핵심 소재·부품 34개 품목의 기술개발 자금 (지정공모)
 - * 투자자연계형에 한해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신청 가능
- 정부지원 : 3년 이내, 연간 7억원 내외 지원, 총사업비의 67% 이내
- 신청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의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한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매년 1월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 지원내용 : 개발제품의 수요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9개 특정 소재분야 43개 품목의 기술개발 자금 (지정공모)
- 정부지원 : 3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총사업비의 67% 이내
- 신청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중소·중견기업과 개발제품 수요기업간 컨소시엄
 - *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요건임
- 신청기간 : 매년 1월

신청 방법

- 온라인(<http://itech.keit.re.kr>)을 통해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문의 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 044-203-4262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02-6009-8371

17-12 지식재산권 활용·보호 지원

중소기업 보유 특허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부문에 대한 전략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국제 특허분쟁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신청 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분야

구 분	주요내용
IP 제품혁신	① (제품문제 해결) 이종분야 특허검색 및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한 기존 제품 대비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문제(성능·품질·원가)에 대한 혁신적 해결 지원
	② (신제품 발굴) 이종분야 특허검색과 기업의 보유기술을 응용한 다른 분야의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신제품 아이템 발굴 및 신제품 개발시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해결 지원
	③ (제품 디자인) 이종분야 특허검색을 활용한 제품의 기능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제품디자인 융합 지원(3D기구설계 및 워킹목업 지원 포함)
	④ (디자인 개선) 상용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및 디자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기간 내 디자인 개선안 제시
IP 사업화	⑤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IP사업화 컨설팅 지원 ○ 1차(공통지원) - 기업의 IP경영진단 및 산업·시장동향분석을 통한 IP경영전략 및 IP사업화 계획 수립 ○ 2차(IP사업화 계획에 따른 선택적 지원) - 마케팅 (시장 및 기술트렌드 분석, 소비자경쟁사 분석/조사 등) - 신사업 (사업영역 탐색 및 수요예측, 전략개발 등) - 금융연계 (담보대출, 보증투자) 지원 등 컨설팅 제공

지원 내용

- 최대 7천만원(기업부담금 10~30%) 이내

신청 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기업선정(서류, PT) → 사업수행사선정 →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IP활용전략수립 → 사후관리

신청 기간 매년 1~3월**문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02-3459-2937

2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신청 대상**

-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기업

지원 분야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컨설팅 제공

컨설팅 유형	지원 내용
수출사전분석	수출(예정) 또는 전시회 제품의 기존 해외 IP권리 침해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방안 마련 등
특허보증대응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여부 분석, 회피설계방안,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라이선스전략	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선싱 전략 등을 제공
분쟁확대예방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하기 위한 전략 제공
K-브랜드 보호	해외 진출 기업 상표의 현지화 및 분쟁정보 제공 등 무단 선등록 상표·디자인권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 협상 지원 등

지원 절차

신청·접수	신청기업 : 방문, 우편, e-mail 접수
	▼
선정심사	
	▼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계약	지원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수행기관 → 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중간·최종 보고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02-3459-2937

17-13

글로벌 IP기업 육성

| 신속한 출입국 수속 지원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사업

신청 대상

- 해외권리화 출원/등록 비용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 특허/상표/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에서 중소기업의 니즈에 따라 선택

구분		지원 한도	지원 내용
해외권리화	출원	특허(PCT국제) : 3,00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이내 상 표 : 2,500천원 이내 디자인 : 2,800천원 이내	해외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특허기술 시물레이션		6,000천원 이내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맞춤형 IP맵	특허	20,000천원 이내	특허/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디자인 활용 전략 수립 보고서 제작
	디자인	15,000천원 이내	
특허&디자인 융합		35,000천원 이내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40,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예정)한 중소기업에게 현지 언어, 문화, 상황 등을 고려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 지원
글로벌 IP 경영진단		15,000천원 이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추진
선택형 IP		10,000천원 이내	다른 정시 지원 프로그램에서 누락·탈락되었지만, 지식재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단, 지원한도는 기업의 자부담 30%(현물 10% + 현금 20%)를 우선 적용
- **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년(3년간 지원)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 17년 수출 예정** 기업
-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신청 방법

- 신청 :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www.ripc.org)

문의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구 분	연락처	주 소
서울	02-2222-3867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400 서울산업진흥원1층서울지식재산센터
경기	031-500-304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인천	032-810-287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강원	033-749-332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충남	041-559-574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대전	042-930-4455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9로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206~208호
충북	043-229-273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부산	051-974-9061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2
울산	052-228-3084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97 ulsanripc@ucci.or.kr(공통업무용)
대구	053-242-8079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경북	054-274-5533	경상북도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333
경남	055-210-308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전남	070-4421-6845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광주	070-7853-7590	광주광역시북구추암로249 이노비즈센터7층(월출동987)
전북	063-252-9301	전주시덕진구반룡로109 전북TP벤처지원동105호

구 분	연락처	주 소
제주	064-755-25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경기북부	031-877-6944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234
수원	031-8000-945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부천	070-7094-5455	경기도부천시원미구평천로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3호
춘천	033-254-6580	강원춘천시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보듬관403호
태백	033-552-5555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88-1
강릉	033-643-441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충주	043-843-7005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31
부산남부	051-645-9684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607 새마을회관6층
안동	054-859-3093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40
구미	054-454-6613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진주	055-762-9413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55
순천	061-741-5411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6

17-14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지원사업

생산·제조에 대해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 아웃소싱 기업의 매칭 및 소요비용을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Factoryless Goods Producers) : 부품, 완제품 조립을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웨어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신청 대상 15년 지원현황 23건

- 소프트웨어 역량*이 우수한 벤처·중소기업*(창업초기 기업 포함)으로서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제조 서비스 활용(아웃소싱)*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SW 등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 및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기획·설계 단계에서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역량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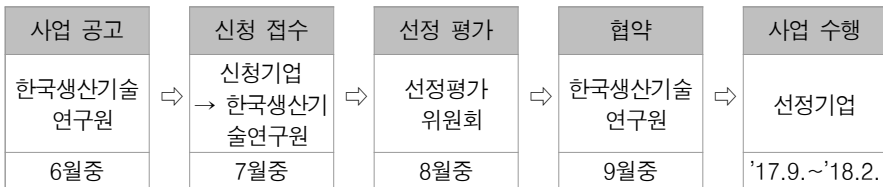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6월 중 공고
- 지원방식 : 자유공모(공장없는 제조기업이 단독으로 신청)
- 신청방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tech.re.kr) 사업 공고의 신청서류 작성 후 전자파일 및 원본 제출

지원 내용

-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아웃소싱 소요비용 지원
 - ▷ **(생산기업 매칭 및 컨설팅)**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사업 목표에 대해 최적의 생산 아웃소싱 기업들을 매칭하여 요구 스펙 구현 컨설팅, 공정 노하우 컨설팅,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등을 제공
 - ▷ **(아웃소싱 지원)**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기획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Pilot 생산 소요비용 지원
 - * 생산·제조 아웃소싱 지역은 국내로 국한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3천만 ~ 6천만원 이내*
 - * 과제별 차등 지급,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

추진 절차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 044-203-436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031-8040-6785

17-15 기술금융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기술평가에 근거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합니다.

신청 대상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중견 기업

지원 조건

- 기술등급에 따라 금리 등 우대 지원 가능

지원 절차

(예시: 기술신용평가기반 대출)

사전상담	시중은행 또는 국책은행(산은·기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진행
기술평가신청	금융기관 담당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의뢰
기술신용등급 결정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기술정보DB(TDB)를 바탕으로 기술신용등급 산출하고 금융기관에 제공
대출결정	금융기관은 기술신용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대출 가능 여부 결정

기술금융 현황

- 대출
 - ▷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력 및 신용도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필요한 자금 지원
 - ▷ 지식재산권(IP)평가 기반 대출 :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융자·투자 복합)
- 투자
 -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 TCB 등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16.10월 현재,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7,440억원 펀드조성 완료)
 - ▷ 지식재산권(IP) 펀드 : 우수 IP매입 및 수익화, 우수 IP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16.10월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신규 IP펀드 조성 완료)

기술평가 인프라

-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에 기초하여 금융권의 기술금융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14.7)
 -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기업의 기술력과 재무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정보를 산출하여 금융기관에 제공
 - ▷ 기술정보DB(TDB) 구축 :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술정보와 평가정보를 한 곳에서 집적·가공하여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평가기관에 알맞게 제공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기술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TDB로서 기능을 수행 중

기술정보 DB(TDB : Tech Data Bas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이 기술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TDB로서 기능을 수행 중
 - ▷ 280개 만관 협약기관으로부터 약 1,100만건을 수집하여 25개 기관에 제공 중 ('16.10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Tech Credit Bureau)

-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4개사가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 중('16.10월 기준)
 - ▷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합산하여 최종 기술신용등급 산출 제공

[기술신용등급 산출 (예시)]

기술신용등급		기술등급 및 신용등급		
A+	↑ 우수	AAA	■ 기술등급	
	↑ 보통 ↓ 취약	AA	T1	■ 신용등급
		A+	T2	AAA
		A-	T3	AA
		BBB	T4	A+
		BB	T5	A-
		B+	T6	BBB
		B0	T7	BB
		B-	T8	B+
		C	T9	B0
C+		T10	B-	
C		CCC		
C-		CC		
D		C+		
		C-		
		D		

문 의 처

- 전국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기업은행 영업점(☎ 1588-2566) 또는 시중은행 영업점

17-15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은행별 상이)
- ※ (산업은행)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등급 T6 이상인 기술력 우수 중소·벤처기업
- ※ (기업은행) 은행자체신용등급 B이상인 중소기업 중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등급 T6(KED는 T7) 이상, 기술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

신청 기간

 연중

지원 조건

-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
- 기술등급에 따라 금리 우대 지원 가능

신청 절차

- 영업점 방문·상담 후 신청

유의 사항

- 주요 경영진이 신용유의정보 등 대출결격사유가 없어야 됨
- ※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4.7월 기술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후 '16.10월말까지 약 189,766건, 91.3조원 규모(신규 및 증액기준 55.3조원)로 지원 중 (은행전체실적)

문의처 전국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기업은행 영업점(☎ 1588-2566)

17-15 지식재산권(IP) 담보·구입 대출

- ②

사업에 필요한 우수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기업 (개인기업 제외)
- 지식재산권(IP) 구입 중소기업 (개인기업 제외)

신청 기간

연중

지원 조건

- 금리 : 지식재산권(IP) 담보비율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대금리 적용
- 한도
 - ▷ (산업은행) 기업당 10~200억원 및 IP가치평가금액 이내, 또는 IP구입금액의 80% 이내
 - ▷ (기업은행) 기업당 10억원, 또는 지식재산권(IP)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80% 이내
- ※ IP구입은 등록된 IP의 매매(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License)에 한함

신청 절차

-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상담 후 신청

유의 사항

-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정부공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 후 자금지원 가능
- 주요 경영진이 신용유의정보 등 대출결격사유가 없어야 됨

문의 처

전국 산업은행 영업점 ☎ 1588-1500, 기업은행 영업점 ☎ 1588-2566

17-15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보증

- ③

창업·성장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입보책임을 면제하여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창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신용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법인 창업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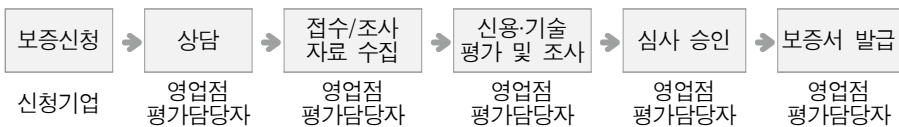
신청 기간

연중

지원 조건

- 보증료율 : 보증심사등급별 일반보증료율 ± 가산 또는 차감보증료율
- 보증비율 : 기업특성에 따라 100%~90%

신청 절차



유의 사항

- 비보증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권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지원
- 투명경영 이행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 책임 부과

문의 처

전국 신용보증기금 영업점(1588-6565) 및 기술보증기금 영업점(1544-1120)

17-16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비를 융자 지원하여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도모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 내용

- 지원대상자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

지원 내용

- 용자규모 : 12월중 통합 공고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지원대상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ESCO 포함), 대기업은 제외
- 대출금리 : 1.75%(변동금리, 국고채-1.25%, '16년 4/4분기 현재)
 - * 중소기업, ESCO투자사업인 경우 1.5%, ESCO투자사업은 고정 2.75% 가능
-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ESCO투자사업의 경우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지원 분야

세부사업	예산	지원대상사업(설비)
ESCO투자사업	'16년 12월중 공고	ESCO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		폐열회수설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설비, 진단결과 개선사업, 노후보일러 교체 등 81개 품목(群)

세부사업 현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의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등 ESCO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시설투자비를 용자지원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지원조건
 -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
 - 대출금리 : 변동금리(1.5%) 또는 고정금리(2.75%)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산업체 등 절약시설 투자사업
 - ▷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등 기타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지원
 - ▷ 지원조건
 - 대출비율 : 소요자금의 100%이내(중소기업은 100%)
 - 대출금리 : 변동금리(1.75%, 중소기업은 1.50%)
 - 대출기간 :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 044-203-5385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지원실 : 031-260-4367

17-17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를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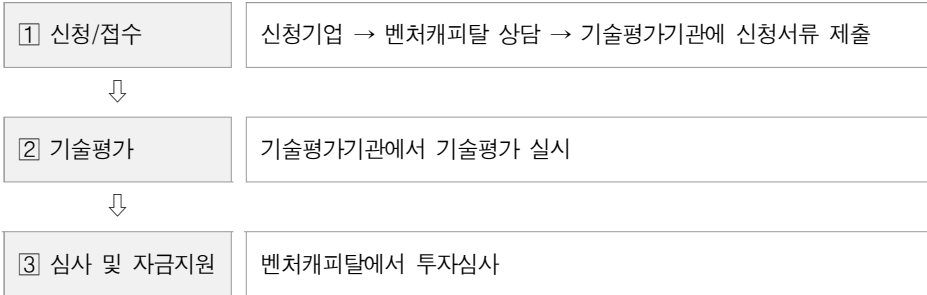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 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8.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9. 상기 1~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TCB(Technology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기관) 심층평가 대상 기업

지원 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항목	정부지원 내역	기술평가기관
벤처캐피탈 등에 의한 투자심사용 기술평가 비용 지원	기술평가건당 1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보증기금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니스평가정보 ○ 이크레더블 ○ 한국기업데이터

지원 절차



- ① (신청/접수) 신청기업은 신청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벤처캐피탈 담당자와 사전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기술평가기관에 신청

※ 신청서류는 www.tf.or.kr에서 다운로드

- ② (기술평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보고서를 벤처캐피탈에 송부

- ③ (심사 및 자금지원) 벤처캐피탈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심사를 토대로 투자 여부, 투자규모와 조건 등을 결정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02-6009-4341

17-18 SW지식재산권 평가 보증

SW지식재산권(특허,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보증을 통해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SW분야 특허 및 컴퓨터프로그램을 보유한 중소SW기업

지원 조건

- SW분야 지식재산권 보유 조건
 - ▷ 신지식재산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완료 건
 - ▷ 산업재산권(특허)등록완료 및 심사진행 중인 건
 -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

신청 기간 연중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IP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유의 사항

- SW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 가능하도록 30일 이내 발급된 특허·프로그램등록(원)부 제출

신청 절차

<IP(SW지식재산)평가보증 지원 절차>



- (평가심사) 보증규모 산정을 위한 기술사업계획 검토, 기술평가심사 실시

절 차	내 용
1. 서류검토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등 검토
2. 현장실사	○ 대상기업 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 기술사업화 계획 등 분석
3. 기술평가	○ KIBO 내부평가표(KTRS, KTRS-SM) 적용 및 등급 산출(B이상 지원가능) ○ 기술평가 제규정에 따라 가치금액 산출 및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4. 보증심사	○ '보증심사운용요령' 등 보증관련 제규정에 따라 심사

- (보증서발급) 전자보증제도에 따라 전자보증서 발행(KIBO→금융기관)

구 분	내 용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
보증지원 한도	IP(SW지식재산) 가치평가금액 이내(동일 기업 최대 10억원)
보증료	보증확정·보증서발급에 따른 보증료 납부*

*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기준 보증료율(B등급의 경우 1.6%)에 감면/가산기준 적용

신청 및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기술금융담당 : 02-2132-1345
- 기술보증기금 : 02-2155-3773 및 지점(예비상담)

17-19 무역기금 융자

국내외전시회참가, 수출상담회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해외홍보 등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사

신청 시기

-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초

융자 조건

- (대출금리) 연 2.75%(고정)
- (대출기간) 3년(2년 거치후에 연4회 균등분할상환)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융자 절차

- 융자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무역협회 무역기금 사무국 및 국내지역본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 추천업체는 융자희망은행에 자기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
- 융자희망은행 융자심사가 완료되면 무역협회는 해당회차 융자일에 신청업체가 지정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기금을 융자

용자 기관

- 시중은행(8개)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 지방은행(6개)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문의처

지역본부명	전화번호	주소
무역기금사무국	(02) 1566-511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층 (우:06164)
부산지역본부	(051) 993-3300/6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중앙동) 부산무역회관 7층 (우:48939)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753-7531/3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5층 (우:41256)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43-9400/2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3층 (우:62364)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338-100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월평동) 대전무역회관 4층 (우: 35220)
인천지역본부	(032) 420-0011/3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 (주안6동) 르네상스타워 11층 (우:22134)
강원지역본부	(033) 256-3067/8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퇴계동) 국민연금춘천회관 7층 (우:24376)
충북지역본부	(043) 236-117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우:28399)
전북지역본부	(063) 214-699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파정로 164 (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층 (우:54843)
경남지역본부	(055) 282-4115/6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257 (용호동) 경남무역회관 5층 (우:51430)
경기남부지역본부	(031) 259-785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2층 (우:16229)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995-61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1호 (우:10390)
울산지역본부	(052) 287-3060/1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연암동)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우:44248)
제주지역본부	(064) 757-28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2동)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우:63217)

17-20 무역보험 제도

무역보험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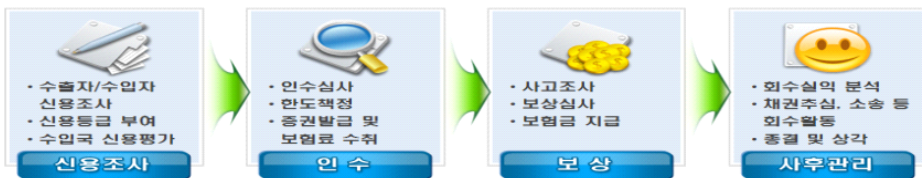
대 상 거 래	보 험 종 목
소비재 수출	▪ 단기수출보험
플랜트·선박 등 자본재 수출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공사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수출기반보험
해외투자	▪ 해외투자보험
환율이자율 가격변동 위험	▪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부품소재산업	▪ 신뢰성보험
원유 및 중요광물 등의 수입	▪ 수입보험

보증 종류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

대 상 거 래	보 증 종 목
원자재 구매용 무역금융 조달	▪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선적후 네고자금 조달	▪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무역보험 이용절차



문 의 처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17-21

식품외식 종합자금(융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가공원료 매입자금, 노후시설 현대화 자금, 외식업체 육성자금 및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지원 육성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전처리업체,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 등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80% 융자
 - * 융자조건 : 금리 고정금리 2%~3%(변동금리 선택가능), 시설자금(3년거치 7년 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예 산

'17년 예산 : 120,280백만원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지원 : 86,880백만원(217개소)
- 농식품기업 시설현대화 : 10,000백만원(13개소)
- 외식업체 육성 : 2,400백만원(7개소)
-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 지원 : 21,000백만원(30개소)

지원 대상

-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국내산 농산물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자금
- 외식업체육성자금 : 시설 및 국내산 식재료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 농공상용합형 중소식품기업육성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매년 1월말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무관리처(061-931-1142)
 - * 융자대상 여부 문의 후 사업장소재 지사에 융자관련 서류 제출

17-22

병역대체복무제도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 총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

제도 구분

① 산업기능요원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②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신청 자격

구 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업체 지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공장 등록)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3자, 기업-학교-학생)협약 벤처기업은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 확보한 연구소 보유 법인 *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요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역)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보충역) 조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계 석사 이상 * 보충역은 자연계 학사이상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36개월

추진 절차



* 접수기관, 추천기관 현황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청기간 및 접수처

- ① 산업기능요원 : 매년 6월, 중소기업청
 -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 ② 전문연구요원 : 연2회(1월,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 제도 총괄 :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 2815)
- 산업기능요원 접수 총괄 :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042-481-4482)
 -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 전문연구요원 접수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02-3460-9150)

17-23

외국인고용허가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종류:E-9)을 도입하는 일반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비자종류:H-2)를 도입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
-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능)에는 추가로 1년10개월간 근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 간 근무

도입 국가 (일반고용허가제 16개국)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 * 도입규모, 제도개선 등 중요사항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12월경)

신청 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및 어업
 - * 신청대상 기업 규모(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을 1인이상 고용해야함
- 지원제외 대상 : 위의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신규외국인력은 1·4·7·10월(세부일정은 www.eps.go.kr참고)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 ▷ 온라인(www.eps.go.kr) 또는 방문 제출
-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 절차

- ① 내국인 구인 노력 : 7일~14일 이상 워크넷 등을 통한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채용을 못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허가신청가능
- ② 고용허가서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및 온라인 신청
- ③ 외국인 근로자 추천 : 고용센터에서 3배수 이내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업체에 추천
- ④ 고용허가서 발급 :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중에 사용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 ⑤ 근로계약체결 : 고용허가서에 신청한내용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되어 송부
 - * 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정가능
- ⑥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⑦ 입국 및 취업교육 : 입국후 2박 3일 취업교육
 - * 취업교육비(사용자부담) : 제조업·서비스업 195천원, 농축산어업 210천원, 건설업 224천원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및 신규고용 한도(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이하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이하	4명 이하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이하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이하	5명 이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이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이하	6명 이하
201명 이상 300명 미만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281~4

17-2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청년
 - ▷ 취업경력 1년 미만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만 35세 ~ 39세이나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 가능
 -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최고 만39세)
-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 벤처지원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지원 내용

-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지원
 - * 정부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본인 적립금 300만원 → 1,200만원+ θ (이자)
- 기업 :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2년간 고용유지시 500만원 지원
 - *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300만원은 청년자산형성에 기여(적립)

신청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이용하여 운영기관에 신청

문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고객센터 (☎ 1800-7900)

17-25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함께하기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제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통 주점업(56211), ③무도유통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gambling 및 베탱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제의 근로자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2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지원수준 및 인원한도

- (지원 수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수의 120% 한도, 단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 파견, 사내하도급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한도 없음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사업개요

일자리 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 또는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모든기업)
 - ▷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
 - ▷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년간 지원
 - *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기업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도소매, 숙박, 금융, 보험등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 (지원 범위) 지원 대상시설 등을 설차개산·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1/3 이내로 함

- ▷ (지원 금액) 일자리함께하기를 통해 증가된 근로자 1인에 대하여 비제조업은 500만원, 제조업은 1,000만원을 산정하여 지급,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투자비 용자(모든기업)
 - ▷ (지원 범위) 지원 대상시설 등을 설차·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로 하되 사업주가 투자한 총 금액의 2/3 이내로 함
 - ▷ (용자 금액) 용자금액의 한도는 50억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25억원임
-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 (지원 금액)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월 최대 40만원 지원
 - ▷ (지원 한도)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추진 절차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문의 처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044-202-754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관련 자료

- 사업주 지원 고용안정사업 시행지침(/17.1.1. 통합개정)

17-26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지원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 및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도모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사업

신청 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파견 대상

-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 내용

- 기업별 1명, 3년 이내(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비고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①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②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30%지원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70%지원

신청 방법

- 상시 온라인(<http://partner.nst.re.kr>)신청

문 의 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R&D센터 ☎(044)287-7386~7389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신청 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

지원 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당해 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3년간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3년 추가 연장 가능

구분	석사	박사
기준연봉	4,000만원	5,000만원
연간 정부지원액 (기준연봉대비 50%)	2,000만원	2,500만원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를 채용하여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 중에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17. 1. 1 ~ ' 17. 10. 14. 온라인(<http://partner.nst.re.kr>)신청

문의 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기업R&D센터 ☎(044)287-7380, 7382~5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신청 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인력

- 대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는 10년,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 + 3년 추가 연장 가능(최대 5,000만원/연 한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신청기간 중 경력연구인력을 채용하여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활용 중에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17. 1. 1 ~ ' 17. 6. 3. 온라인(<http://partner.nst.re.kr>)신청

문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증개센터 ☎(02)3460-9083~5, E-mail : manpower@koita.or.kr

17-27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사업 개요

- 50인 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요인 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한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지원비율 (건설업)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의 70% 10명 이상 (1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의 50%	<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의 70% <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의 50%	<input type="checkbox"/> 소요비용의 70%

신청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제조서비스업 등	건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input type="checkbox"/>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고용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input type="checkbox"/> 노동부, 공단 감독·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신청 대상 연중 수시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관련서식 : <http://clean.kosha.or.kr> → 고객센터 → 서식모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044-202-7728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 052-703-0625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 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개요**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

지원 내용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가 이용하는 안전보건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시설 등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소요비용의 50% 지원)
- 단,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비용에 한해 지원(건축비, 관리비 및 운영비 제외)

신청 대상

-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대표자 협의회 등 사업주 협의회 대표, 사업주
 - * 참여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로 신청 당시 보험료를 체납중이지 않아야 함

신청 방법 연중 수시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관련서식 : <http://clean.kosha.or.kr> → 고객센터 → 서식모음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 044-202-7728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 052-703-0625

17-2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하청협력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 * (예) 주택구입자금, 장학금, 체육문화활동, 생활원조,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개보수비 등 지원
 - ** [별표 1] 사내근로복지지원금의 종류, [별표 2] 근로복지시설설치비 지원금 지원기준 참고
-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 도급업체로부터 출연을 받는 경우 비용 일부를 50%이내 매칭지원
 - ▷ 둘 이상의 기업이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 출연금의 50%이내 재정지원

지원한도 및 지원절차

- (지원한도) 기금법인 2억원한도(예산사정에 따라 조정)
- (지원절차) ① 사업계획서 토대로 지원심사 위원회에서 지원심사 → ② 지출 증빙자료 제출 → ③ 지출금액의 50% 매칭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지원시기)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참조
-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② 서약서, ③ 지원사업계획서, ④ 기금법인 정관, ⑤ 법인등기부등본(대기업, 중소기업, 기금법인 각각), 사업자등록증사본(대기업,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확인서(중기청발급), ⑦ 기금법인 해당 연도사업계획서(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서, 추정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영계획서)

문의 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04~5

17-29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용

제도 개요

- (개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중소 기업이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
- (도입배경) 우리 주변에는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이 있어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창업기업들이 많습니다.
 - ▷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아 이러한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용가능 기업)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 ▷ 창업 후 7년 이내이거나, 프로젝트성 사업을 하는 자
 -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은 업력에 관계 없이 가능
 - *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테업 등은 제외
- (자금조달 유형) ① 지분증권(주식 등), ② 채무증권(채권 등), ③ 투자계약증권(특정 프로젝트 투자)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가능

○ (자금조달 한도) 연간 7억원

이용 안내

○ 클라우드펀딩 희망 기업은 클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해 펀딩 관련 안내 (모집 절차 등)를 받을 수 있고, 펀딩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기업은 현재 등록된 중개업자의 펀딩 현황, 특징 등을 보고 적합한 중개업자를 선택하셔서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하세요.
- ▷ 클라우드펀딩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재무서류, 사업 계획서 등을 클라우드펀딩 개시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클라우드펀딩 등록 중개업자 현황 (' 16.11월 기준)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인크	•유캔스타트
•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와이클라우드펀딩	•KTB투자증권	•펀딩포유
•우리종합금융			

* 중개업자 세부 현황은 클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www.crowdnet.or.kr)에서 확인 가능

클라우드펀딩 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 클라우드펀딩 투자를 위해 클라우드펀드 Seeding 펀드(78억원), K-클라우드 펀드(260억원), 문화콘텐츠 마중물펀드(100억원)를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 펀딩 성공기업은 IBK희망펀딩대출(1,000억원), 매칭투자조합(100억원), 모태펀드 등을 통해 완화된 요건으로 후속 투융자를 지원합니다.
 - ▷ 기업투자정보마당 등록 기업의 펀딩 성공 시 입주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성공기업은 스타트업 전용거래시장(KSM)에 별도 요건 없이 등록가능하며, 코넥스 시장에도 지정자문인 없이 특례 상장 가능합니다.
 - ▷ IR 교육 및 VC엔젤 대상 IR Day 참가 기회도 제공합니다.

문 의 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02-2100-2674)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사이트 클라우드넷(www.crowdnet.or.kr),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 한국성장금융(www.kgrowth.or.kr) 등에서 확인 가능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발행일 : 2017년 1월

발행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3957

팩 스 : (042)472-7929



중소기업청

www.smba.go.kr